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표지 측면 >

2005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5. 12.

연구수행기관	새사회연대
연구책임자	이 창 수 (새사회연대 대표)
공동연구자	윤 영 철 (한남대학교 교수) 김 영 옥 (아주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자	신 수 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 조 영 임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사무국장) 오 영 경 (새사회연대 정책위원)

< 내지 좌측면 하단 >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뒤표지 좌측면 하단 >

*** ISBN 숫자에 맞는 바코드표도 함께 넣어주세요.**

ISBN 89-90475-88-0 93330

요 약

유엔은 2000년 새천년발전목표(MDGs)를 선포하고 빈곤, 문맹, 여성차별 등 8대 목표와 16대 실천과제를 위해 48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유엔은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회원국에 2005년까지 측정 가능한 수준의 이행조치계획을 요구하는 등 사회 및 인권분야에서 통계의 활용과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은 1990년대부터 각 분야별로 각종 지표를 개발해 왔으며, 2000년 UNDP가 발간한 “인간발전보고서”에는 인권과 발전의 상호연관성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통계를 명시적으로 적시한 바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ILO도 수차례 회원국에 관련 공식기록(통계)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인권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높아졌고 인권전담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인권상황을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예비적인 연구로 정부(또는 국가)의 인권관련통계의 실태파악이 요구된다.

하지만 인권통계는 개념을 확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인권통계를 통계법상 승인통계 전체와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기타 기관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통계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간행된 통계를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계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권통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준거들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및 인권관련 국내법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특히 국내법의 경우에는 각 규정이 인권적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 물론 이렇게 규정한다고 해도 인권통계 전체를 확정하기 어렵고 모두 수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다소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부 인권통계를 중앙행정기관 등이 인권정책의 수립·집행·평가를 목적으로 인권분야의 제 현상과 요구를 수치적으로 조사·보고·가공하여 작성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료로 조작적인 정의를 내렸다.

또한 통계의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 역사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즉, 인권분야의 발전 정도는 민주주의 이행 및 법치주의 실현정도가 좌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행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인권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이를 분석틀 속에 반영하여 정부인권통계를 분석하였다.

인권 각 영역의 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영역에 따라 억제할 영역과 점진적으로 실현할 영역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개별과 집단의 인권문제를 구제·예방·존중·증진하는 분야로 인권현상을 구분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시계열적인 인권상황의 변화를 분석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은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각 영역의 범주화는 합의된 틀이 없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을 준거로 하고, 국내적 현실을 고려하여 '인간의 존엄',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 '법질차적 권리'로 범주를 나누고, '아동권리협약'은 '시민적 권리'에, '수형자의 권리'는 '법질차적 권리'에 포함시켰으며, 각종 차별문제는 각 범주에서 토론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자유권분야의 통계는 일반적으로 권리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중앙행정기관들의 직접적인 관장사무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관련 간행물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비인권적인 통계항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통계관련규정이 미비하거나, 관련 규정이 있어도 오히려 비인권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런 기초에서 수립된 통계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또 사회권분야의 통계는 통계청의 사회지표통계의 혁신에 힘입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정책공급자 중심의 통계가 주류를 이뤄 인권의 주체인 국민의 인권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공식통계 작성 및 공표과정에서 기존통계 중에서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요 약

부정적인 지표 또는 항목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며, 인권침해 예방과 보장, 증진을 위해 인권 중심의 통계 및 지표 개발이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인권전담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기본통계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청과의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각 부처에서도 인권관련통계 및 지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목 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8
1. 연구대상 - 18	
1.1 연구대상기관 - 18	
1.2 연구대상간행물 - 20	
1.3 준거가 된 국제인권문헌 및 법령 - 21	
2. 연구방법과 한계 - 23	
2.1 연구방법과 내용 - 23	
2.2 연구방법의 한계 - 24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인권분야에서 통계적 지표 적용의 유용성과 제약성	25
1. 통계적 지표 적용의 유용성 - 27	
2. 통계적 지표 적용의 제약성 - 28	
제2절 인권관련정부통계의 정의	29
1. 개념과 범위 - 29	
1.1 인권의 개념과 범위 - 29	
1.2 정부의 개념과 범위 - 32	
1.3 통계의 개념과 범위 - 32	
2. 정부인권통계의 이념과 정의 - 33	
제3절 인권통계의 동향 및 연구	36

1. 유엔기구 - 36	
1.1 UN 통계위원회 - 36	
1.2 UN 경제사회이사회 - 36	
1.3 ILO/WHO/FAO/UNDP/UNESCO - 37	
2. EU/OECD/기타 선진국 - 38	
3. 국내 - 39	
제4절 인권현상의 통계적 적용	40
1. 인권침해 등의 구제·예방과 통계적 적용 - 42	
1.1 ①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2	
1.2 ②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4	
2. 인권존중·증진과 통계적 적용 - 45	
2.1 ③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5	
2.2 ④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6	
3. 통계적 적용을 위한 예비적 구성 - 46	
제5절 인권분야의 재구성과 인권항목	50
1. 인권의 적용원리와 인권의 범주 - 50	
1.1 인권의 적용원리 - 50	
1.2 인권의 범주 - 52	
1.2.1 인간의 존엄 - 54	
1.2.2 시민적·정치적 권리 - 55	
(1) 시민적 권리 - 55	
(2) 정치적 권리 - 56	
1.2.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57	
(1) 경제적 권리 - 58	
(2) 사회적 권리 - 59	
(3) 문화적 권리 - 59	
1.2.4. 법절차적 권리 - 60	
제6절 인권관련통계의 실태파악을 위한 준거틀	62

제 3 장 인권분야별 정부통계실태와 현황분석

제1절 인권관련통계	64
-------------------------	-----------

1. 연구대상기관 및 대상통계 - 64	
가. 기관 및 통계/지표의 선정 - 64	
나. 연구대상통계의 수집방법 - 66	
다. 통계작성기관별 연구대상통계 - 67	
(1) 중앙행정기관 - 67	
(2) 부속기관 - 68	
(3) 대법원 - 69	
(4) 헌법재판소 - 70	
(5) 기타 지정기관 - 71	
라. 연구대상 간행물목록 - 72	
제2절 인권영역별 정부통계의 실태	74
1. 인간의 존엄 - 74	
1.1 천부적 자유와 존엄 - 75	
1.2 생명권 - 79	
1.3 신체의 자유와 안전 - 86	
1.4 강제노동과 노예 금지 - 90	
1.5 고문금지 - 93	
1.6 법 앞에 평등 - 95	
2. 시민적·정치적 권리 - 98	
2.1 시민적 권리 - 98	
2.1.1 사생활의 자유 - 99	
2.1.2 거주이전의 자유 - 102	
2.1.3 국적취득권 - 105	
2.1.4 아동의 권리 - 107	
2.1.5 재산소유권 - 110	
2.1.6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113	
2.2 정치적 권리 - 115	
2.2.1 의견표현의 자유 - 116	
2.2.2 언론·출판의 자유 - 118	
2.2.3 집회·결사의 자유 - 120	
2.2.4 참정권 - 122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126	
3.1 경제적 권리 - 126	
3.1.1 사회보장권 - 126	

- 3.1.2 노동에 대한 권리 - 133
- 3.1.3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 140
- 3.1.4 유리한 근로조건향유권 - 143
- 3.1.5 노동조합의 권리 - 145
- 3.2 사회적 권리 - 148
 - 3.2.1 가족형성권 - 148
 - 3.2.2 적정생활수준향유권 - 152
 - 3.2.3 건강권 - 157
- 3.3 문화적 권리 - 161
 - 3.3.1 교육에 대한 권리 - 162
 - 3.3.2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저작권 - 165
 - 3.3.3 자기문화향유권 - 170
 - 3.3.4 인권질서추구권 - 171
- 4. 법절차적 권리 - 174
 - 4.1 법적 인격체의 인정 - 174
 - 4.2 법적 구제권 - 176
 - 4.3 인신보호 - 178
 - 4.4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 181
 - 4.5 적정절차 - 183
 - 4.6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 184
 - 4.7 죄형법정주의 - 186
 - 4.8 수형자의 권리 - 188

제 4 장 결론 : 요약 및 정부통계의 개선사항

- 1. 총평 및 개선방향 ----- 191
- 2. 부처별 인권통계실태의 개괄 및 개선제안사항 ----- 194

참고문헌	-----	
195		
부록	-----	198
<부록1>	인권영역별 관련국제인권조약(예시)	
<부록2>	인권영역별 관련국내법령(예시)	
<부록3>	인권영역별 인권통계 및 지표목록	
<부록4>	정부통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기관별)	
<부록5>	통계작성기관의 인권영역별 통계/지표수(종합)	

<부록6> 연구대상의 인권통계현황

표 목 차

- <표 1-1> 인권준거틀 마련을 위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내법령 23
- <표 2-1> 인권현상과 연구영역의 비교 41
- <표 2-2> 인권현상영역과 통계적 지표의 이념형 42
- <표 2-3> 인권현상의 제 차원 48
- <표 2-4> 인권현상의 통계적 적용을 위한 예비적 구성 49
- <표 2-5> 인권의 범주와 내용별 실체적 권리 53
- <표 2-6> 인권관련통계의 실태파악을 위한 증거틀 63
- <표 3-1-1> 연구대상통계현황 66
- <표 3-1-2>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대상통계현황 67
- <표 3-1-3> 부속기관의 연구대상통계현황 68
- <표 3-1-4> 대법원의 연구대상통계현황 69
- <표 3-1-5> 헌법재판소의 연구대상통계현황 70
- <표 3-1-6> 기타 지정기관의 연구대상통계현황 71
- <표 3-1-7> 연구대상 간행물목록 72
- <표 3-2-1-1> 작성기관별 '천부적 자유와 존엄' 관련지표수 76
- <표 3-2-1-2> 작성기관별 '생명권' 관련 지표수 83
- <표 3-2-1-3> 작성기관별 '신체의 자유와 안전' 관련지표수 88
- <표 3-2-1-4> 작성기관별 '강제노동과 노예 금지' 관련지표수 91
- <표 3-2-2-1> 작성기관별 '사생활의 자유' 관련지표수 101
- <표 3-2-2-2> 작성기관별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지표수 104
- <표 3-2-2-3> 작성기관별 '아동의 권리' 관련지표수 109
- <표 3-2-2-4> 작성기관별 '재산소유권' 관련지표수 112
- <표 3-2-2-5> 작성기관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관련지표수 115
- <표 3-2-3-1> 작성기관별 '의견표현의 자유' 관련지표수 118
- <표 3-2-3-2> 작성기관별 '참정권' 관련지표수 125
- <표 3-2-4-1> 작성기관별 '사회보장권' 관련지표수 128
- <표 3-2-4-2> 작성기관별 '노동에 대한 권리' 관련지표수 136
- <표 3-2-4-3> 작성기관별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관련지표수 141

- <표 3-2-4-4> 작성기관별 '유리한 근로조건향유권' 관련지표수 144
- <표 3-2-4-5> 작성기관별 '노동조합의 권리' 관련지표수 147
- <표 3-2-5-1> 작성기관별 '가족형성권' 관련지표수 150
- <표 3-2-5-2> 작성기관별 '적정생활수준향유권' 관련지표수 155
- <표 3-2-5-3> 작성기관별 '건강권' 관련지표수 160
- <표 3-2-6-1> 작성기관별 '교육에 대한 권리' 관련지표수 164
- <표 3-2-6-2> 작성기관별 '문화생활참여권 등' 관련지표수 167
- <표 3-2-6-3> 작성기관별 '인권질서추구권' 관련지표수 173
- <표 3-2-7-1> 작성기관별 '법적 구제권' 관련지표수 178
- <표 3-2-7-2> 작성기관별 '인신보호' 관련지표수 180
- <표 3-2-7-3> 작성기관별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관련지표수 182
- <표 3-2-7-4> 작성기관별 '적정절차' 관련지표수 184
- <표 3-2-7-5> 작성기관별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관련지표수 186
- <표 3-2-7-6> 작성기관별 '죄형법정주의' 관련지표수 188
- <표 3-2-7-7> 작성기관별 '수형자의 권리' 관련지표수 189

약 어 표

- ACR ;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미주인권협약
- AFR ; African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 ASA ;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 미국통계학회
- CAT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조약)
- 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조약)
-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조약)
- DG JLS ;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Justice, Freedom and Security : 유럽위원회 사법자유안전사무총장실
- DWD ; Decent Work Deficit : 품위있는 노동결손지수
- DWI ; Decent Work Index : 품위있는 노동지수
- ECR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EPEC ; European Policy Evaluation Consortium : 유럽정책평가콘소시엄
-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 인간개발지표
- I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국제자유권조약)
- ICCPR-OP1 ;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선택의정서(국제자유권조약 제1선택의정서)
- ICCPR-OP2 ;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2선택의정서(국제자유권조약 제2선택의정서)
- ICERD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인종차별철폐조약)
- ICESCR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국제사회권조약)
- ICRMW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조약)
-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
- 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새천년발전목표
- ODWI ; Overall Decent Work Index : 품위있는 노동 총지수
- UDHR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세계인권선언
- 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유엔개발계획
- 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보건기구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유엔은 빈곤, 문맹, 기아, 여성차별, 안전하지 않은 식수 및 열악한 환경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정하고, 이 같은 사회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현방안 가운데 하나이자 핵심적인 도구로서 관련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MDGs는 제55차 유엔총회기간중인 2000년 9월 18일 채택한 유엔새천년선언(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¹⁾을 구체화해 실천목표를 정한 것이다. 유엔은 MDGs를 통해 8대 목표(goals)와 18개 실천과제(targets)를 실현하기 위해서 48개의 지표(indicators)를 제시²⁾하고, 회원국들이 2005

1) UN 문서번호: A/RES/55/2. 이 선언은 147명의 국가 및 행정 수반을 포함해 189개 국가가 채택하였다. 이는 유엔회원국들이 모든 사람이 발전에 대한 권리(right to development)를 실현하고 전 인류가 결핍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을 공약한 문서로, 그 주요한 내용은 빈민해결 등 인권을 중심에 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진보의 근본으로 삼은 것이다. 이 선언은 유엔회원국들이 “포괄적인 접근과 공동전략”을 촉진하여,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제를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2) MDGs의 8대 목표(예시)

8대 목표(예시)	16대 실천과제(예시)	관련지표(예시)	추진 기구(예시)
1.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의 제거	1. 하루 1달러 이하 소득층을 2015년(1990년 대비)까지 절반으로 감소	1. 일일 1달러 이하 소득 인구수	World Bank
		2. 빈곤격차율	

년까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이 전략적인 국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조치³⁾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국내소비에서의 최빈층 비율(5분위)	
	2. 기아자 비율을 2015년(1990년 대비)까지 절반으로 감소	4.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율	UNICEF-WHO
		5. 음식에너지소비 최소 수준 이하의 인구 비율	FAO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3. 2015년까지 세계 모든 어린이(남/여)의 완전한 초등교육과정 완수를 보장	6. 초등교육과정 순등록	UNESCO
		7.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비율	
		8. 15세에서 24세까지의 문해율	
3. 성 평등 촉진/여성 역량 강화	4. 가능한 2005년까지 초등·중등 교육에서, 2015년 이내에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 불균형 제거	9. 초등, 중등, 교육별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 비율	ILO
		10. 15세에서 24세까지 문해남성에 대한 문해여성비율	
		11. 비농업부문 임금고용에서의 여성 범위	IPU
		12. 여성의 의회 의석비	
4. 아동사망률 감소	5. 5세 미만 사망률을 2015년(1990년 대비)까지 2/3로 감소	13. 5세 미만 사망률	UNICEF-WHO
		14. 영아 사망률	
		15. 홍역 면역접종을 받은 1세아동 비율	
5. 모성 건강 개선	6. 산모사망률을 2015년(1990년 대비)까지 3/4으로 감소	16. 산모사망율	
		17. 전문 보건인이 입회한 출생률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과의 전쟁	7. 2015년까지 HIV/AIDS 확산 정지 및 역전 시작	18. 15세에서 24세 사이의 HIV감염 산모 여성	UNAIDS-WHO-UNICEF
		19. 피임을 대비 콘돔 사용율 ① 고도로 위험한 섹스 시 콘돔 사용 ② HIV/AIDS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15세에서 24세 인구 백분율 ③ 피임분포율	WHO-UNICEF UN Population Division
		20. 10세에서 14세의 아편을 하지 않는 학생 대비 아편 사용 학생비율	UNICEF-UNADS-WHO
	8.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의 확산을 2015년까지 정지 및 역전 시작	21. 말라리아와 연관된 확산 및 사망율	WHO
		22. 말라리아 위험 지역내에서 효과적인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조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UNICEF-WHO
		23. 결핵과 연관된 확산 및 사망율	WHO
		24. DOIS(국제면역 TB통제전략)으로 제거된 결핵발병 사례 비율	
<이하 생략> * 원문 출처: http://unstats.un.org/unsd/mi/mi_goals.asp			

유엔 차원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90년대부터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있었으며, 주요 분야로 아동, 환경과 개발, 인구와 발전, 인간정주, 식량, 여성, 사회발전, 교육분야에서 191개의 순지표(net indicators)를 개발해 왔다.⁴⁾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 지표가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지만, △더 나은 정책개발 및 진행사항 점검 △법률, 정책 및 관행의 의도하지 않은 충격 확인 △어려운 거래에서 사회적 합의 강화 △거부 또는 침묵하는 이슈 제기 등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⁵⁾을 유엔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지표(statistical indicators)는 인권을 실현하는 데 강력한 분석도구로 이는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풀뿌리활동가, NGOs 및 국가가 자신들의 중요한 행동을 확인하고 그 행동을 설명하도록 해 준다.⁶⁾ 유엔은 MDGs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에 제시한 지표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각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효적으로 정책이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엔이 인권분야에서 강력한 정책도구로 통계적인 적용을 공식 채용한 것은 2000년판 인간발전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00)에 언급하면서 부터이다. 유엔은 “인간발전은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핵심이며, 인권은 전면적인 인간발전에 핵심”⁷⁾으로 파악하고, 인간발전분야의 지표를 인권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인권분야에 통계적 지표의 적용에 관한 유엔의 흐름에 대해서는 뒤에서 검토한다.

3) UN 사무총장이 2001년 9월 6일 유엔총회에 보고한 "Road Map Toward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유엔문서번호: A/56/326)을 참조.

인터넷 원문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1/526/07/PDF/N0152607.pdf?OpenElement>

4) 아동지표는 세계아동정상회담(뉴욕; 1990)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표는 유엔환경개발대회(리오 데 자네이로; 1992)에서, 인구와 발전에 관한 지표는 국제인구발전대회(카이로; 1994)에서, 인간정주관련지표는 유엔인간정주대회(이른바 Habitat II, 이스탄불; 1996)에서, 식량관련지표는 세계식량정상회담(로마; 1996)에서, 여성관련지표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베이징; 1995) 및 제23차 유엔총회 특별회기(뉴욕; 2000)에서, 사회발전에 관한 지표는 세계사회발전정상회담(코펜하겐; 1995/ 제네바; 2000)에서, 모두를 위한 세계교육대회(다카; 2000)에서 논의되었다.

5)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p. 89

6) 위의 보고서 같은 곳.

7) 위의 보고서, p. 2.

유엔이 인권분야에서 통계적 지표를 활용한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인권지표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른바 6대 주요 인권조약⁸⁾을 비준한 우리 정부는 각 조약의 절차규정에 따라 유엔자유권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등 해당부서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유엔전문기관에 인권상황, 즉 각 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영역의 공식기록(official human rights records)을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 정부의 인권보고서들을 검토한 유엔의 해당이행감시위원회들은 관련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적어도 인권분야에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엔이 국가 간의 협의체라고 본다면 인권분야에 관해 유엔에서 요구하는 기록이나 자료는 공식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국가가 그것을 생산, 가공, 제시해야 할 영역인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에 제출하는 데 그치는 통계적 지표와 수치를 작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엔이 조약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요식적이고 일회적이며 중장기적인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인권관련기구에 제출하는 정부보고서는 그 주기⁹⁾가 길기 때문에 유엔이 한 국가의 관련통계수치와 지표 개발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연구는 인권분야에서 유엔의 경향과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된다.

국내적으로는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식 발효되고, 그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구가 탄

8) 6대 주요국제인권조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ESCR; 1976년/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76년/1990년), ‘인종차별철폐조약’(ICERD; 1969년/1979년),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 1981년/1984년), ‘고문방지조약’(CAT; 1987년/1995년), ‘아동권리조약’(CRC; 1990년/1991년)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조약’(ICRMW; 2003년 발효)을 포함하여 7대 국제인권조약이라고도 한다.

* 괄호의 앞 년도는 조약 발효년도를 의미하고 ‘/’ 뒤의 년도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년도를 말한다.

9) 체약 당사국은 정부보고서를 ICESCR과 ICCPR은 5년, ICERD는 2년, CEDAW는 4년, CAT는 2년, CRC는 5년, CAT는 4년 마다 제출할 의무가 있다.

생했다.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존재가치를 갖고 있지만, 인권을 자기책무로 하는 기구가 설치되었다는 점은 인권행정 분야의 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기능인 △ 인권정책의 수립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 △ 인권교육 및 홍보 △ 국내외 협력은 국가적 기능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권전담국가기관의 역할이 예방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후조사·구제에 중점을 두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인권침해 등의 발생과 구제의 반복이 된다. 유엔 MDGs의 목표가 구체적인 억제효과 또는 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한 것을 보면, 통계적 지표는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s)라는 행정적인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인권전담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기에 인권행정분야를 정착시키고 전국적인 인권현상과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인 틀을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합적인 인권보장체계가 확립되었다기보다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견제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부처에서는 관장사무별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지만, 인권이라는 맥락을 갖고 있을 뿐 인권정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앙행정부처가 그 관장사무를 집행할 때 파생되는 현상을 파악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하는 각종 통계 가운데에서 인권과 관련한 통계를 수집·분석·재구성하여 인권관련통계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큰 목적 중의 하나다. 이를 통해 국가사무를 종합적인 인권행정과 연결시키는 틀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행정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국가의 통계정책을 인권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인권의 통계적 접근을 용이하게 할 근거를 제공하며, 흩어져 있는 인권관련 정부통계를 종합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종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통계 가운데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반인권적인 지표가 있다면 이를 비평할 것이다. 정부공식
부문의 인권관련통계지표의 실태를 파악하는 이번 연구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주체인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설명책임(human rights
accountability)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시키고, 유엔 등의 국제적
인 인권보장의무를 능동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며, 인권행정분야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1 연구대상기관

이번 연구는 정부의 인권관련통계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인권관련통계를 새로 작성하거나 인권지표 또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은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가운데 법규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국가차원의 통계를 주요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처·청인 중앙행정기관¹⁰⁾,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인권침해구제기관 및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고 인권과 관련된 통계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이번 연구의 주요대상기관(이하 ‘연구대상기관’)이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3조에서 말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¹¹⁾, 지방자치법

10)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이상 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포함),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대검찰청 포함), 국방부(병무청 포함), 행정자치부(경찰청, 소방방재청 포함), 과학기술부(기상청 포함), 문화관광부(문화재청 포함), 농림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포함),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특허청 포함),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포함),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철도청 포함),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포함).

11) 특별지방행정기관에는 ①노동행정기관(노동부 소속 지방노동(청/사무소) 46개 기관), ②세무행정기관(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과 세무(지)서, 관세청 소속 세관/세관출장소/세관감시소 등 177개 기관), ③공안행정기관(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지소/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대검찰청 소속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 경찰청 소속 지방경찰청/경찰서/파출소/지구대,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파출소 등의 1,599개 기관), ④현업행정기관(정보통신부 소속 체신청/감독국 우체국/소속국 우체국/우편집중국, 철도청 소속 지역사무소/지역관리역/역 등의 2,470개 기관), ⑤기타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보훈청/보훈지청, 조달청 소속 지방조달청/대전출장소/출장소, 통계청 소속 통계사무소/출장소, 병무청 소속 병무지청/병무신고사무소/지방병무사무소,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대/공항기상대, 공항기상관측소/지방기상청/기상대/레이더관측소/기상관측소,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산림항공관리소 지소, 산업자원부 소속 광산보안사무소, 중소기업청 소속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 특허청 소속 서울사무소,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검역소 및 그 지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환경출장소/지방국토관리청/홍수통제소, 건설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김포항공관리사무소/지방공항출장소/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출장소/제주항공관리사무

제2조 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¹²⁾,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헌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¹³⁾과 정부위원회(행정위원회¹⁴⁾와 자문위원회¹⁵⁾ 모두 포함)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외된 연구대상기관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시험연구기관¹⁶⁾·교육훈련기관¹⁷⁾·문화의료기관¹⁸⁾·생산제조기관¹⁹⁾·기타 행정기

소,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사무소 등 388개 기관) 등이 있다. 자세한 정부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는 “2005 행정자치통계연보”(행정자치부, 통권 제8호, 2005, 서울)을 참조.

12) 국세심판원, 특허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이 있다.

13) 2005년 8월 현재, 정부의 한시조직으로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규제개혁기획단, 통일부 산하의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산업자원부 소속의 원전사업기획단의 3개 기관이 있다.

14)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등, 국무총리 소속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과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의 소청심사위원회, 법제처 소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환경부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노동부 소관 노동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등과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41개 행정위원회가 있다.

15) 자문위원회는 2005년 8월 현재 헌법에 근거를 둔 4곳, 법률에 근거를 둔 230곳, 대통령령으로 설치 근거가 있는 85개로 모두 319개 자문위원회가 있다.

16) 시험연구기관은 모두 77개 기관으로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안보연구원,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보건연구원, 행정자치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등,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 정보통신부 소속 전파연구소, 국세청 소속 국세청 기술연구소, 관세청 소속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 산업자원부 소속 기술표준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원 등, 농림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과학원 등이 있다. 행정자치부, 위의 같은 책 참조.

17) 교육문화기관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민속박물관, 해외홍보원, 통일교육원, 자치인력개발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세공무원교육원, 학술원사무국, 예술원사무국, 국립현대미술관,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철도경영연수원, 서울과학관, 민방위교육관,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궁중묘관리소(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칠배의총관리소, 지구관리소, 현충사관리소 분소, 지구관리소 출장소,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부여박물관, 대구박물관, 청주박물관, 진주박물관, 김해박물관, 공주박물관, 제주박물관, 춘천박물관, 덕수궁미술관, 궁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중앙소방학교,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의 70개 기관이 있다. 행정자치부, 위의 같은 책 참조.

18) 의료기관은 경찰병원, 국립(서울, 나주)병원, 정신간호조무사양성소,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마산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국립(공주, 부곡, 춘천)병원, 특수질병진료소, 약물중독진료소, 국립소록도병원 분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의 16개 기관이 있다. 행정자치부, 위의 같은 책 참조.

19) 생산제조기관은 철도청 소속의 철도차량정비창(서울, 부산, 대전), 고속철도차량정비창(서울,

관²⁰⁾ 등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의 장이 통계법 제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동법 제3조 제2호의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동법 제4조에서 말하는 통계 ‘지정기관’인 경우에 그 부속기관은 연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 외의 지정기관이 통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지정통계가 아니라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작성한 ‘일반통계²¹⁾’의 경우는 이번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도 연구대상기관이 자체 규정 또는 통계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작성한 통계와 연구진이 인권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통계는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1.2 연구대상간행물

연구대상간행물은 통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통계청장이 승인한 통계로 동법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통계결과로 공표되고,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²²⁾이 검토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간행물의 범위에 제외되어 있더라도 연구대상기관에서 연구대상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한 간행물 중에서 주로 통계를 조사·가공·수록한 간행물·연보²³⁾·연감²⁴⁾과 인권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대상기관의 백서²⁵⁾ 일부는 연

부산)의 5개 기관이 있다.

20) 기타행정기관에는 재정경제부 소속의 금융정보분석원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비롯해서 건설교통부 소속의 항공안전본부, 법무부 소속의 치료감호소,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기록원, 농림부 소속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일부 소속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산업자원부 소속의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산, 익산), 소방방재청 소속의 중앙119구조대 등 332개 기관이다.

21) 통계법 제3조 제3호.

22) 2005년 3월 1일 현재 중앙행정기관별 승인통계현황은 통계청 53, 재정경제부 3, 과학기술부 2, 환경부 11, 행정자치부 5, 법무부 3, 교육인적자원부 1, 문화관광부 7, 농림부 20, 산업자원부 16, 건설교통부 18, 보건복지부 35, 노동부 16, 정보통신부 6, 해양수산부 14, 경찰청 2, 국세청 1, 관세청 1, 대검찰청 1, 산림청 11, 특허청 1, 중소기업청 6, 농촌진흥청 2, 병무청 1, 식품의약품안전청 3, 공정거래위원회 1, 해양경찰청 1, 소방방재청 4, 중앙인사위원회 1로 모두 246 종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승인통계목록(제29호)”, p. 11(통계청, 2005, 대전)을 참조.

23)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05 행정자치통계연보” 등이 있다.

24) 이 분류에는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통계연감”,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환경부가 발간한 “환경통계연감”,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문화통계연감” 등이 있다.

25) 환경부가 발간한 “환경백서”, 노동부가 발간한 “노동백서” 등이 있다.

구대상간행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으로 수집·조사·가공된 통계간행물은 연구대상간행물에서 제외했으며, 보도자료, 각종 홍보·해명자료 등의 형식으로 발표된 통계도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대상에는 조사·보고·가공 등의 작성방법으로 간행된 통계가 모두 포함되며, 작성주기별로 월 이하·분기·반기·연·연 이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통계간행물이 포함된다. 다만, 연 이상 주기의 통계간행물 가운데 비정기 또는 수시로 작성 또는 발표되는 경우에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계에 국한해서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1.3 준거가 된 국제인권문헌 및 법령

이번 연구의 범위에는 정부의 관련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적인 기준(이하 “인권준거틀”)을 마련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 인권준거틀을 구성하는 데 이용한 국제인권문헌(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세계인권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76년 발효; 이하 ‘국제사회권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76년 발효; 이하 ‘국제자유권조약’)“인 이른바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과 국제자유권조약에 따른 2개의 선택의정서²⁶⁾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1군으로 하고, 6대 주요 인권조약

2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76년 발효)”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제2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가운데 1군에 속하는 국제사회권조약과 국제자유권조약을 제외하고 "인종 차별철폐조약(ICERD; 1969년 발효)",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 1981년 발효)", "고문방지조약(CAT; 1987년 발효)", "아동권리조약(CRC; 1990년 발효)"과 우리 정부가 가입·비준한 주요 ILO협약²⁷⁾, 인권과 관련된 국내법의 해당 조항들을 2군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무관하지만 국제적인 인권문헌으로 수용되는 지역의 주요 인권문헌들²⁸⁾도 2군 조약에 포함시켜 참조하였다.

구 분	국제 인권 조약	국내관련법령	통계관련법령
1군 (기본 문헌)	UDHR, ICESCR, ICCPR, ICCPR-OP1, ICCPR-OP2	헌법	통계법
2군 (주요 문헌 + 지역 문헌)	CEDAW, ICERD, CAT, CRC, ILO 협약 No. 100, ILO협약 No.111, ILO협약 No. 122 *지역협약 : ECR, ACR, AFR	인권관련 국내 법률 및 인권 관련조항	연구대상기관의 통계관련규정

<표 1-1> 인권준거틀 마련을 위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내법령

2. 연구방법과 한계

2.1 연구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속한다. 정부의 인권관련 통계현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인권준거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서 국제적으

death penalty, 1989년 발효).

27) 이번 연구에서 인권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검토한 것은 우리 정부가 가입·비준한 주요ILO 협약 가운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00호, Convention Concerning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11호, Convention Concerning Discrimination in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고용 정책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22호, Convention Concerning Employment Policy)” 등이다.

28) 국제적으로 주요인권조약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역인권조약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ECR;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미주인권협약(ACR;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Banjul]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과 그 의정서들이다.

로 승인되고 우리 정부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주요 지역문헌 및 헌법의 기본권조항들을 결합하여 인권의 내용을 주제별·영역별로 유형화하고, 그 영역에 따라 하위의 인권내용을 구축하고 이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항목·지표로 제시할 것이다. 이 항목과 지표는 유엔이나 유럽연합 등의 기구와 산하전문기관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를 참조하여 구성하게 된다. 다만, 이번 연구가 정부공식부문의 인권관련통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권준거틀 개발을 위한 심화는 되지 않을 것이다.²⁹⁾

이번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경험적인 연구, 즉 조사연구분야에 속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각 인권주제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인권기준에 따른 공식통계의 존재여부와 각 항목의 적절성을 인권시각에서 조사하게 된다. 통계 또는 통계적 지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예비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가공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된 목적이자 방법론이다.

이번 실태파악은 2005년 3월 1일 현재의 승인통계현황과 2005년 10월 1일 현재까지 발간된 통계간행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인권관련 정부통계의 변화추세를 거시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사형제도의 폐지와 같이 국제인권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현행 국내법의 인권관련조항도 이 연구에서는 인권준거틀의 하나로 제시된다. 즉, 현재까지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권침해 등의 예방과 증진의 맥락에서 이를 분석한다.

이번 연구는 통계기법을 인권에 적용하기 위해 통계가 인권과 친해지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과학으로서의 인권통계분야를 개척한다기보다 상품, 즉 가치로서의 인권통계의 필요성과 현실을 드러내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론적인 연구에 속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2장에서는 인권통계분야의 연구동향 및 인권준거틀을

29) 유엔국제노동기구(ILO)의 이른바 “품위 있는 노동(Decent Work)”를 위한 지표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0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인간발전보고서”와 보고서에서 통계수치로 제시한 “인간개발지표(HDI)”는 이번 연구뿐만 아니라 향후 인권관련 지표 개발이라는 후속연구에 유용하게 참고될 수 있다.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정부통계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하고 인권준거들에 따라 정부공식통계를 비평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정부의 인권통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실효적인 인권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다.

2.2 연구방법의 한계

이번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형태의 통계와 그 지표를 수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 전체를 검토하지 못한 점이다. 둘째, 인권준거들은 구체적인 하위 개념 및 항목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유엔체계와 ILO 협약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가입·비준하지 않은 조약에서 규정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셋째, 국내법규정 자체가 인권적인지 비인권적인지를 비평하지 않고 있다. 국내법적인 기준에 맞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인권적인 통계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가끔씩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인권분야에서 통계적 지표 적용의 유용성과 제약성

전 미국통계학회(ASA;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I. Richard Savage 회장이 1984년 그의 취임연설에서 “통계학자들의 과제로 인권현안에 대한 통계학의 적용문제”를 공식 제기³⁰⁾하면서, 통계학계에서 인권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치학계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영역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가 통계학계보다 훨씬 더 일찍 진행되었다.³¹⁾ 또 인권과 인접하거나 중첩된 영역인 사회과학분야,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관련통계와 그 지표가 비교적 오래 전부터 학문적인 관심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유엔 수준에서 공식통계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 최근의 일³²⁾일 뿐만 아니

30) I. Richard Savage, "Hard-Soft Problems" Presidential Addres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0 (1985): 1-7.; Thomas ② Jabine and Richard P. Claude ed., Human Rights and Statistics: Getting the Record Straight, 서문, p. xi, (1992,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에서 재인용.

31) 초기 정치학분야에서 인권 관련 지표 연구는 주로 정치적 권리 특히 언론의 자유(Ralph L. Lowenstein, "Measuring World Press Freedom as a political Indicator"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1967 참조.)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거나, 정치적 지표 또는 사회 지표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정치적 권리에 대한 기준 및 관련 지표에 관한 통시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Kenneth ① Bollen, "Political Rights and Political Liberties in Nations: An Evaluation of Human Rights Measures, 1950 to 1984", ed. Thomas ② Jabine and Richard P. Claude, Human Rights and Statistics: Getting the Record Straight(1992,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pp. 188-215를 참조.

32) 유엔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는 1994년 4월 특별회기에서 전문 및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공식통계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을 채택하였다.

전문은 <http://unstats.un.org/unsd/methods/statorg/FP-English.htm>을 참조.

라 사회지표와 관련해서도 1989년 사회지표에 관한 핸드북³³⁾이 제작·배포되면서 방향이 설정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간발전보고서를 통해서 공식적인 통계로 사회분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엔이 인권분야에 통계를 활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인간발전보고서 2000”(Human Development Report 2000)을 발간하면서 부터이다.

ASA가 통계학자들의 인권분야에서의 역할에 대해 공식 거론한 1984년 이후 16년이 지나서야 유엔의 인권관련기구에서 인권분야에서의 통계적 지표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과 통계와의 결합을 통해서 인권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었거나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의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인권계에서 인권 의무(human rights obligation)를 갖고 있는 정부의 국제기준 준수 또는 미 준수(non-compliance) 규모를 확정하는 수단으로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중이다.³⁴⁾

1. 통계적 지표 적용의 유용성

이러한 논쟁은 당시 유엔 사회권특별보고관(UN's Special Rapporteur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인 Danilo Türk 교수가 1989년부터

33) 유엔은 유엔헌장 제55조에 따라 “더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및 경제적·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동조 A항), “경제적·사회적 및 보건적 국제 문제와 관련 국제문제의 해결과 문화적 및 교육적 국제협력”(동조 B항),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동조 C항)를 촉진시킬 의무가 있다. 유엔은 헌장 제55조 A항의 실현을 위해서 유엔 통계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을 통해 “Report on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tandards and Levels of Living”(1954년 발간)을 마련하였고, 유엔전문기관인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UNESCO),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Levels of Living: Interim Guide(1961년 발간)”을 발간한 바 있다. 삶의 수준을 넘는 포괄적인 사회지표에 대한 예비적인 가이드라인인 “Social Indicators: Primary Guidelines and Illustrative Series, on Social Indicators(ST/ESA/STAT/SER.M/63, 1978년 발간)”이 제작·배포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완전히 합의에 이른 사회지표에 관한 해설서는 1989년에 유엔통계실 경제사회부에서 발간한 “Handbook on Social Indicators(ST/ESA/STAT/SER.F/49)”이 되므로 사실상 국제적인 수준에서 사회지표의 개념통일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봐야 한다.

34) Soctt Leckie, "Statisticians as Human Rights Defenders: Putting Economic and Society Rights into Economic and Social Statistics", 제52차 국제통계기구(ISI;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대회 발표문(헬싱키, 1999년8월10일-19일).

1992년 사이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부정확한(또는 부분적으로 잘못된) 통계, 무신뢰성, 조작된 통계의 오용잠재성, 비교가능하지 않는 데이터와 기타 결함이라는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하면서부터 인권 준수를 확정하는 많은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통계적 데이터의 이용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높아 졌다.³⁵⁾

인권분야에 통계적 지표의 적용 또는 활용을 옹호하는 논지를 보면, 첫째로 특정집단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하게 드러내 가해책임자의 설명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³⁶⁾, 둘째로 인권침해의 범위와 특징을 이해하고 공론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³⁷⁾, 국가정책적인 요청으로 인권분야에서 통계적 이용이 법제화³⁸⁾되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제도와 같은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 인권의 지표가 요구되고 있다³⁹⁾는 점을 든다. 더 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계가 인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부적절한 이용이나 침해를 은폐하는 데 대해서 통계학자들이 이런 왜곡된 통계를 바로 잡는 것으로 인권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⁴⁰⁾

35) UN do③ E/CN.4/Su②2/1990/19.

36) Richard P. Claude and Thomas ② Jabine, "Exploring Human Rights Issues with Statistics", ed. Thomas ② Jabine and Richard P. Claude, 위의 책, p. 6.

37) 위의 책, 같은 곳.

38) Richard P. Claude and Tomas ② Jabine, 위의 논문 p. 26. 미국은 1990년 "혐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또는 민족에 기초한 편견에 대한 증거를 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명하고 있다.

39)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pp. 89-90.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헌법으로 모든 정책에 인권영향평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해외공직원조를 하기 위해서 인권지표를 근거로 삼는다.

40) Scott Leckie, 위의 논문, pp. 2-3.

2. 통계적 지표 적용의 제약성

통계적 지표를 이용하는 데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제기하는 논자들의 대부분은 인권분야의 통계적 지표의 이용을 반대하기보다는 난점들을 지적한다. 즉, 인권분야에 대한 통계적인 활용이라는 가치론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로 과학적인 통계를 얻기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통계활용의 한계를 지적하는 학자들은, 인권분야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여서 개념을 수치화하기 복잡하고, 그렇다고 단순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며⁴¹⁾, 인권을 통계적인 개념으로 재정의(redefinition)하거나 인권범주를 정하는 것이 가변적⁴²⁾이며, 신뢰할 만하고 포괄적인 통계수치를 수집하기 어렵고⁴³⁾, 비수치적인 자료인 인터뷰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 또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⁴⁴⁾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한 분야의 인권에 대해 통계적 지표로 해석·평가할 경우에도 실제로는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⁴⁵⁾ 통계적 접근의 절대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41) Robert Justin Goldstein, "The Limitations of Using Quantitative Data in Studying Human Rights Abuses"; Thomas ② Jabine and Richard P. Claude ed., 위의 책, pp. 35-38.

42) Robert Justin Glodstein, 위의 논문, p. 38-39. 논자는 고문에 대해서 국제사면위원회(AD)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신체적인 고통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1971년 북아일랜드에서 자행한 영국 정부의 잔혹한 처벌에 대해서 1976년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만장일치로 이를 확인하였지만, 1978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Human Rights Court)는 13대 4로 이를 기각하였다는 예를 제시하였다.

43) Robert Justin Glodstein, 위의 논문, pp. 41-49.

44) Robert Justin Glodstein, 위의 논문, pp. 49-54.

45) Bermúdez는 유엔이 1975년부터 10년간 펼친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유엔 여성 10년 계획(UN Decade for Woman)"을 정하고 1975년과 1979년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한 것에 주목하고, 스페인에서 이 기간 동안에 교육, 경제사회 활동,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러한 사회적 진전이 노인의 고립 문제, 가족에서 남성과 아버지의 역할변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 등 다른 문제를 낳았다면서 통계적 증명의 한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Rosa M Bermúdez, "Gender Equity: Is there Statistical evidence?", 제52차 국제통계기구(ISI;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대회(/세계통계대회) 발표문(헬싱키, 1999년 8월 10일 - 19일)을 참조.

제2절 인권관련정부통계의 정의

이번 연구에서 인권관련정부통계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이 분야에 대해 학문적·조작적으로 용어를 정의한 연구가 드물다. 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인권 및 통계 또는 국가기관을 표현한 정부 가운데 어느 영역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범위와 연구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는 가치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위해서는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의 범위와 대상이 애매해질 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목적도 불분명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연구와 관련이 있는 “인권”, “정부”, “통계”라는 용어를 검토하고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거론한 뒤, 이번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다른 조건과 개념을 포함시킬 정부(또는 국가)인권통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조작적인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릴 것이다.

1. 개념과 범위

1.1 인권의 개념과 범위

인권은 이론적으로 정의 내리기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권위 있는 정의도 없다⁴⁶⁾. 또한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료하다.⁴⁷⁾ 혹자는 인권을 인간이 내재적으로(/기 때문에) 갖는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또는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여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여기에는 생명·자유·안전·재산에 대한 권리, 법의 동등한 보호, 양심·사상·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와 정부참여권 등이라고 주장

46) Rita Cantos Cartwright and H. Victor Condé ed., *Human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 Dictionary and Documents Volume 1(ABC-CLIO, in③, California, 2000)*, p. 109.

47) William Sweet, "Theories of Rights and Political and Legal Instruments"; William Sweet ed., *Philosophical Theory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niversity of Ottawa Press, Ottawa, 2003)* p. 2.

한다. 또 인권을 기본적으로 “평등할” 권리 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주창자들은 문화 및 경제영역에서의 언어적·인종적·가시적 소수자, 가난한 자, 주변화된 집단 및 장애인의 권리에 주안점을 둔다. 이들은 특히 문화 또는 경제발전에서 교육 및 참여의 배제와 같은 “학대(abuses)”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⁴⁸⁾ 일부 주창자들은 복지수급자 또는 실업자에 대한 대출, 용자, 은행계좌, 전화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기업관행을 이 “학대” 범위에 포함시킨다.⁴⁹⁾ 인권에 대한 이러한 다른 해석, 즉 모호함과 불명료함은 권리의 기원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권리를 자연에서 “발견한” 원칙으로 보는 자연권론자⁵⁰⁾들은 “개인에 기초하여 국가의 자의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권을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론자들은 인권과 관련된 헌장, 선언, 헌법, 국제적인 합의문, 협약 및 의정서와 같은 정치적·법적 문서들이 바로 권리의 집이라고 주장한다.⁵¹⁾ 한편 “보편적인 인권”을 “불필요하고, 모호하고, 아나키적이며, 위협스럽다”⁵²⁾고 보기도 하고, “인권 또는 ‘평등권(equal rights)’은 특정시기에는 약간의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진부하고 말뿐인 쓰레기(obsolete verbal rubbish)가 되었으며, 인권은 단순히 계급이익에 복무할 뿐”⁵³⁾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권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역사적인 평가에 따라 인권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인권의 실체와 성격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세계인권선언(UDHR)이 선포된 이후에는 논쟁할 의미가 적어졌다.⁵⁴⁾⁵⁵⁾ 이 뿐만 아

48) William Sweet, 위의 논문, pp. 2-3.

49) Report of the Panel to Review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The National Post 보도(2000년 6월 22일자); William Sweet, 위 논문, p. 3에서 재인용.

50) 자연권은 자연법이론과 조응하는 개념이며, 인권은 자연권의 부분이라는 견해도 있다. 자연권(natural rights) 및 자연법(natural law)의 관계에 대해서는 Howard P. Kainz,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ed. William Sweet, 위의 책. pp. 19-25를 참조.

51) William Sweet, 위의 논문. p. 3.

52) Jeremy Bentham, "Anarchical Fallacies", 저작전집; ed. J. Bowring, (London, 1838-43), Vol. II. pp. 489-534.; William Sweet, 위의 논문. p. 4에서 재인용.

53) Kar Marx,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1875)"; Selected Writings, ed. David McLella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p. 564-570.; William Sweet, 위의 논문, 같은 곳에서 재인용.

54) 세계인권선언의 두 내용을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는 이른바 A조약과 B조약이라는 형태로 각각 비준동의하여 국제인권규범으로 발효되면서 인권에 대한 보편성 논쟁은 사실상 종식

나라 인권행정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인권의 범위와 영역이 국제적인 인권문서와 국내적인 법률로 규정되고, 개별적인 인권사건들에 대해서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나 유럽인권재판소 등과 같은 국제인권구제기관 또는 국내사법절차에서 형성된 결정과 판결로 인권이 해석되고 적용⁵⁶⁾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권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인 인간이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시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조건”⁵⁷⁾으로 “인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⁵⁸⁾”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과 동법 동조 제4호에 규정된 평등권에 대한 법적 대상범위⁵⁹⁾ 및 헌법 제10조 내지 22조에서 규정⁶⁰⁾하고 있는 기본권의 범위에서 발생시키거나 해결하기 위한 침해·구제·보호·존중·예방·증진시키는 일체의 제도적

되었다. 또,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 of rights)과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승인한 UDHR의 거의 모든 조문에서 “누구든지(everyone)”를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ICCPR에서는 “모든 민족(all peoples)”(제1조)을, 대부분의 조항에서는 “모든 인류(Every human being)” 또는 “누구든지(everyone)”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권의 보편성과 보편적 존중을 UDHR, ICCESR(전문), ICCPR(전문)에 명기하고 있다. 오히려 인권분야의 핵심적인 논쟁은 그 성격이 아니라 인권의 실질적 보장과 사법적 적용과정에서 인권내용을 풍부화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는 파생권리의 문제와 관련이 깊을 수 있다.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최근 인권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국제협약들에 의하면 기본인권에는 사람의 생존권, 존엄권, 언론권, 노동권, 보수권, 자결권, 교육권 등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들이 속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그 누구도 침해, 유인, 훼손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이다.”고 보고 있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국제법사전”(2002; 평양). p. 582.

56) 국제조약감시기구와 지역조약감시기구, 각국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에서 국제인권조약, 각국의 헌법 및 법률의 적용문제, 즉 사법적인 인권기준에 대한 비교론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Nihal Jayawickrama, *The Judic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Law: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Jurisprudenc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을 참조.

57) 이창수, “인권이란 무엇인가?: 자연권론과 기본권론의 비판적 성찰”; 새사회연대 간부 인권세미나자료, 2001.(미발표 논문 초안).

5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후단.

59)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대상으로 보고 있다.

60)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의 범위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관습법을 인정(법 제2조 제1호)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구제의 대상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보장수단과 국민적인 법적 권한 또는 국가의 의무“로 한정한다.

1.2 정부의 개념과 범위

인권분야에서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주체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정부는 국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인권관련통계의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그 범위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구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은 어떤 면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의 통계는 그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제외한다. 반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인권보호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비교적 관련통계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이번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협의의 정부 또는 국가는 행정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을 의미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인권통계실태조사에서 정부의 개념은 제1장 제2절에서 말하는 연구대상기관을 말한다. 이때 정부란 국가사무의 집행기관이라는 의미에서 행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담지자(bearer) 또는 보유자(holder)로서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의 일차적인 의무주체(duty-holder)로서의 정부, 즉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들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1.3 통계의 개념과 범위

이 연구에서 말하는 통계란 정부가 정책의 수립, 평가에 활용하고 국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공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작성하는 통계, 즉 국가사무로서의 통계를 말한다.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정보원,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을 제외하고 헌법으로 설치된 법원(대법원만 대상으로 한다)과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원칙으로 부속기관을 제외한다)이 작성한 승인통계(지정통계와 일반통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주로 연구

기관)과 기타 지정기관의 지정통계,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이 작성하고 통계청이 고시한 지정통계와 일부 일반통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위법규로 그 부속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정부통계라고 한다)를 말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2005년 3월 1일 현재 승인통계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간(약 5년 이내)내에 작성되어 공공에 알려지는 통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가공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가 모두 포함된다.

2. 정부인권통계의 이념과 정의

정부인권통계의 주요이념은 △신뢰성 △설명책임성 △공식성 △공개성 △적시성 △목적성·가치지향성(/의도성)⁶¹⁾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행위, 특히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용은 국민에게 그것을 알권리가 발생한다. 필리핀 헌법은 기본적인 인권의 요구와 권리에 관한 통계보고상의 허위와 사술(fraud and deception)을 개선(remedy)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²⁾ 필리핀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제3조 제6항은

국민의 공공관심사에 대한 정보권리는 인정된다. 공식기록 및 공식적인 행위(acts), 집행사무(transactions) 또는 결정에 따른 문서와 보고서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의 기초로 사용된 정부의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단,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⁶³⁾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의 정보에 대한 권리, 특히

61) 인권통계는 △인권영역에 대한 더 낮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국가(기관) 간의 비교 가능 △국가(기관)의 수행업무에 벤치마킹 가능 △정책발전을 위한 정보제공 △인권에 대한 공식 설명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2) Richard P. Claude and Thomas ② Jabine, 위의 논문, p. 25.

63) Richard P. Claude and Thomas ② Jabine, 위의 논문, 같은 곳. 필리핀은 마르크스 독재정권 시절 보건통계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왜곡 보고되어 결국은 신뢰할 만한 보건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른바 민중의 힘(people's power)에 의해서 국민혁명을 이룬 뒤 헌법에서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명문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Richard P. Claude and Thomas ② Jabine, 위의 논문, p. 26을 참조.

정보접근권을 법률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의 인권통계는 우선 국가가 자기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로 통계 및 관련지표의 통계적 데이터로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로 국가가 공식적으로(officially) 조사·작성한 통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문제는 국가의 고유의 사무로 이와 관련된 통계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임하여 작성하게 하더라도 국가의 작용, 즉 주무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넷째로 공개성의 원칙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기도 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알 수 있는 정도의 공개성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작성된 인권관련통계를 단순히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수반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간행물, 관보, 공보 등 일체의 게시 및 공시방법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특정집단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형태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제공도 포함된다.

다섯째로 통계, 특히 인권침해 및 차별과 같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통계는 관련정책을 단순히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되거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하여 적절한 시점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로 인권통계는 현재의 비인권적인 상황 또는 관행을 객관적이고 총체적·부분적으로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거나 인권보장조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⁶⁴⁾ 즉, 인권관련현상을

64) 한 통계를 구성하는 지표의 종류를 단순지표, 수행지표, 일반지표로 나누어 보면, 단순지표(simple indicators)는 통상 절대적인 수치로 표현되는데, 어떤 상황이나 과정을 상대적으로 편견 없이 서술할 목적으로 작성되며, 수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s)는 기준과 목적과 평가 및 비교 등의 준거를 포함하고 하고 있어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다. 또 일반지표(general indicators)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표가 아니며, 종종 여론조사나 서베이 및 일반통계로 기관의 외부에서 수행한 통계이다. 인권과 관련된 통계 또는 지표는 가치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행지표의 범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복지, 교육 등 분야의 지표가 여기에 속한다.; John Fielden and Karen

서술하기 위해서 통계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통계를 토대로 과학적인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통계작성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된 인권관련 통계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위에서 조작 정의한 인권, 정부, 통계의 개념을 요약하면, 정부인권통계란 “중앙행정기관 등이 인권정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이용할 목적으로 국가범위(외국과의 비교도 포함됨)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파악·구제조치 등과 인권의 담지자인 국민의 인권보호·보장, 인권침해 등의 억제·예방 및 인권증진에 관한 현상을 수치적으로 조사·보고·가공하여 작성하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의도적이고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수치적인 자료”를 의미한다.

제3절 인권통계의 동향 및 연구

1. 유엔기구

1.1 UN 통계위원회

유엔통계위원회는 일반, 인구, 에너지, 환경, 젠더, 인간정주, 산업, 국민 계정, 사회통계, 무역의 분야에서 통계와 지표 및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각국의 통계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WHO, UNDP 등의 보건통계 또는 인간개발지표(HDI) 등 유엔산하 전문기관의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식회의에서 보고한다. 유엔통계위원회가 인권 전반에 걸쳐서 통계를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에너지, 환경, 젠더, 인간정주 및 일반적인 사회통계뿐만 아니라 MDGs와 인권과 관련이 있는 영역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각국에 배포하고 있다. 유엔통계위원회는 또한 각 그룹별로 특정 인권관련관심사에 대해 통계분야에 이슈를 제기하거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2 UN 경제사회이사회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등 6대 조약의 기구에 각국은 인권기록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인권기록이 매년 진행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만한 통계적 자료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 전반에 걸쳐 통계적인 연구가 진행된다고 보다는 각국의 서술적인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인권에 대한 통계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권현안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을 분석할 만한 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⁶⁵⁾⁶⁶⁾

65) 유엔 지속가능한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사회 영역)로, 4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 빈곤과의 투쟁 : 실업률, 빈곤의 인구조사지표, 빈곤격차지수, 사각빈곤격차지수, 소득

1.3 ILO/WHO/FAO/UNDP/UNESCO

노동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른바 품위 있는 노동(decent work)을 계량화하기 위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수행지표인 품위 있는 노동지수(DWI)⁶⁷⁾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집중하고 있다. 최근 들어, 1990년대 중반의 자료를 토대로 시간당 저임금, 초과노동시간, 실업, 학교미등록, 청년실업, 남녀간 노동력참여격차,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품위 있는 노동결손지수(DWD; Decent Work Deficit)에 대한 연구가 Bescond, Chataignier, Mehran에 의해서 수행되었다.⁶⁸⁾ 이와 비슷한 지표로 품위 있는 노동총지수(ODWI; Overall Decent Work Index)는 젠더불일치, 고용,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대화 영역의 지표들이 연관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건강에 대한 권리영역의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각국에서는 건강권에 대한 자유권적인 측면의 통계 및 지표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질병의 치료, 예방, 진료시설에 관한 복지적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권 및 발전에 대한 권리의 맥락에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인권의 범위로 일반화시키지만, 관련지표개발과 통계적인 운영은 미미하다. 유

불평등에 관한 지니지수, 남성 대비 여성 평균임금비율, 인구학적 순유입이주비용

- 인구학적 역동성과 지속성 : 인구성장률, 순유입이주비용, 총출생률, 인구밀도
- 교육, 공공인식 및 훈련의 증진 : 학교-연령별 변화율, (총 그리고 순) 초등학교등록, (총 그리고 순) 중등학교등록, 성인문해율, 초등교육 5년차에 이르는 아동수, 학교생 활기대년, 남성과 여성의 학교등록비율격차, 노동력 있는 1백명 남성 당 여성의 비율, 교육에 대한 GDP(총국내) 소비
- 건강보호와 증진 : 기본적인 위생, 적절한 배설처리시설(화장실)을 갖춘 인구 퍼센트, 안전한 식수 접근, 출생시 생존기대율, 적절한 출생체중, 영아사망률, 출산사망률, 아동의 영양상태, 전염성 아동 질병에 대한 면역, 피임보급, 식량에서 검출된 화학잔류 비율, 지방보건진료에 공헌한 국가보건지출, GNP대비 총 국가보건지출
-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발전·증진 : 도시인구성장률, 1인당 내연차량별 화석연료소비, 자연재해로 인한 인간 및 경제손실, 도시 공식 및 비공식 정주민구 및 지역, 사람 당 전용면적, 소득을 대비 주택가격, 1인당 기반시설지출.

66) 유엔전문기구에서 인권관련 또는 인접분야의 지표 개발의 연혁은 주 4)를 참조.

67) 노동보호를 규정한 국내법 및 국제적인 문헌을 토대로 한 거시 지표, 노동보호체계지표, 입법을 통한 조치로 노동원칙과 규칙을 실현하는 지표, 노동보호보장의 효과성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68) Iftikhar AHMED, 'Decent work and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2(2003), No. 2,(ILO) p. 264.

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표(HDI)는 상당한 방법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수준, 기대여명, 국민소득 영역과 다른 거시지표들과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UNDP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통계적인 수단으로 하는 젠더발전지표(Gender Development Index)⁶⁹⁾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⁷⁰⁾를 발표하고 있다. UNESCO는 교육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의 권리와 관련된 통계는 주로 문해율 또는 문맹률과 등록학생수 정도의 미미한 통계를 갖고 있다가 1998년 10월 파리에서 고등교육에 관한 세계대회(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를 계기로 관련지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⁷¹⁾

2. EU/OECD/기타 선진국

유럽연합 차원뿐만 아니라 영국 등 회원국 및 호주, 뉴질랜드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개발하여 통계로 인권분야의 일부를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인간개발지표에 환경과 노동에 대한 권리영역을 포함시키고 범죄 피해자의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으며, 아직 각종 지표가 개발중에 있다. 영국의 경우는 지방정부 수준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개발중에 있으며, 뉴질랜드는 각 부처의 통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편했거나 개편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뉴질랜드 통계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표이긴 하지만 인권을 독자적인 통계영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관련통계의 과제에 자국민의 인권의식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환경권과 관련해 지표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69) 통계청에서는 남녀평등지수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평균수명과 문해, 취학률, 남녀소득 격차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70) 여성의 경제(수입), 정치(국회의석수), 전문(전문 또는 관리) 영역에의 참여정도를 반영하는 이 지표는 여성이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지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나타낸다.

71) 고등교육 지표에 관한 연구는 John Fielden and Karen Abercromby의 “Accountabil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newal of Higher Education(2001;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을 참조.

3. 국내

국내의 통계는 1970년대까지 경제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92년부터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에 따라 점차 비경제적인 지표, 즉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형평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중장기정책에도 제시되었다.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비경제분야는 전체 통계과제수의 33%를 차지하고 있다.⁷²⁾

인권분야와 유사한 영역의 정부통계인 ‘한국의 사회지표’가 1979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인권지표의 개발이나 통계를 연구한 실적은 없다. 다만, 몇몇 인권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연구성과들이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86년과 199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여성관련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했으며, 1994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 “여성사회지표개발”(김양희·윤혜미, 한국여성개발원, 1996년)이 발간되어 사회지표 전반에 걸친 차별과 여성의 고유성을 반영한 통계지표를 개발하였다. 노동통계와 성인지문제를 다룬 “노동통계의 성인지적 개선방안”(문유경, 한국여성개발원, 2001년)도 연구되었다.

아동의 권리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아동인권상황의 파악을 위한 지표나 지수의 개발은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1990년대에 한국아동단체협의회⁷³⁾에서 두세 차례에 걸쳐 아동의 사회복지관련통계를 시도하였으나, 아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아동권리학회⁷⁴⁾가 1999년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연구”를 발표하였고, “한국의 아동지표”(한국아동권리학회, 학지사, 2001년)가 발간되었다. 한국아동학회⁷⁵⁾가 2001년 발간한 ‘아동발달백서’에도 관련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2003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동권리지표개발연구⁷⁶⁾를 진행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2006년 4월 아동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⁷⁷⁾

72) 최봉호,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방안’, “국가통계 발전방향 심포지엄 자료집”(대한통계학회, 2005년 12월).

73) <http://www.kocconet.or.kr>

74) <http://www.kccr.or.kr>

75) <http://www.childkore.or.kr/>

76) <http://www.kihas.re.kr/html/jsp/main.jsp>

77) 연구진과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전문가 간담회(2005.10.28) 내용 중 요약.

제4절 인권현상의 통계적 적용

인권 그 자체는 인권내용과 인권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사회적 현상과 결부시켜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기준과 논리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현실 속에서 언제나 인권현상 또는 인권문제라는 한 사회가 다루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역동성을 띠게 된다. 인권과 관련된 통계를 조사하거나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인권문제, 즉 “사람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며 그것을 유린하는 행위와 투쟁하는 것에 대한 문제”⁷⁸⁾에 대한 현황·해석·적용 등에 유용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권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거나 개선하려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노력과 실천의 총체인 인권현상을 통계와 어떻게 연관시키는가는 이번 연구에서 의미 있는 영역이다.

인권문제(human rights cases)는 그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간과 주체, 즉 인권침해자와 인권피해자의 문제이다. 인권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권문제를 해결(solving or resolving) 또는 개선(improving)하려는 한 어떠한 힘(any entitlements or powers) - 국가의 제도·정책·권한행사, 사회관행, 민간단체, 여론, 이해당사자 또는 의무당사자들 - 의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인권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결 또는 개선하려는 방법으로는 대중적 해결과 구조적 해결이 있으며, 이미 발생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앞으로 제기될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78)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같은 책, 같은 곳.

인권현상						
인권문제		인권문제 해결/개선				
발생 시점	주체		해결/개선(피해구제)시점		해결/개선 주체	해결방법
			대증적(사례별) 해결의 경우	구조적(집단적) 해결의 경우		
현재	가 해 자	피 해 자	현재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	국가의 제도·정책· 권한행사, 사회관행, 민간단체, 여론, 이해당사자, 의무당사자 - 피해 직접 구제 및 가해자 처벌 - 제도개선, 관행변경, 재발방지책 마련
사법기관 또는 인권피해구제기관의 영역						
인권 데이터 수집	인권지표에 의한 통계와 분석		인권지수에 의한 정책평가와반영 ⁷⁹⁾		국가(정부)	(예시)
	연구영역 (인권영역별 통계실태조사)		사례별 통계지표	종합통계 지표·지수		- 사례유형별 인권침해현황 통계 - 인권영역별 추이현황통계 - 종합인권 통계 분석
통계의 영역						

<표 2-1> 인권현상과 연구영역의 비교

이런 맥락에서 통계와 인권이 만나는 지점은, 첫째로 개별인권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대증적인 행정절차·집행 차원; 이하 1차적인 해결), 둘째로 집단적이고 누적된 인권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구조적인 문

79) 조사된 인권지표상의 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인권현상 가운데 해결측면을 강화하거나 인권문제의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반영하는 단계.

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관련정책을 수립·평가하는 차원; 이하 2차적인 해결)이다. 이 연구에서는 1차적인 해결차원에서는 피해구제(remedy to victims)와 인권존중(respect to human rights)을 조응시키고, 2차적인 해결 차원에서는 침해예방(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or abuses)과 인권증진(promotion of human rights)이라는 개념을 접목시켜 통계의 역할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인권현상의 영역	1차적 해결	2차적 해결
개별적인 인권문제 차원	①군(개별 + 피해구제)	②군(개별 + 침해예방)
집단적인 인권문제 차원	③군(집단 + 인권존중)	④군(집단 + 인권증진)

<표 2-2> 인권현상영역과 통계적 지표의 이념형

1. 인권침해 등의 구제·예방과 통계적 적용

1.1 ①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국가의 인권현상에서 개별적인 인권문제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인의 차별로 나타나는데, 그 양상은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 즉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별로 △권위주의의 정권단계 △민주주의의 이행기단계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로 나누어 개별적인 인권차원과 통계의 적용분야를 검토한다.

첫째, 권위주의의 정권단계에는 주로 인권침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살인, 고문, 의문의 죽음, 강제실종 등 주로 인간의 존엄, 생명권 침해 및 안전에 대한 침해가 대부분이다.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야만적인 국가폭력, 즉 범죄행위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가해자(perpetrators)는 주로 국가권력이나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자행하게 된다. 피해자는 정치적 반대자그룹에 속하거나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운동에 관여하는 자와 권위주의정권에 항거하는 학생그룹에서 발생한다. 또 집회·결사, 언론·출판,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거나 제한되고, 서

신 및 통신 검열 등 국가권력의 통제가 강화된다. 주로 국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는 총체적으로 부정되고 권력집단에게 특권과 특혜가 부여된다. 이 경우 인권관련통계는 그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과학적·계량적 도구로서의 신뢰할 만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전용통계로 조작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발표되거나 남게 된다. 이때의 통계는 인권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합리화수단이 되어 그 과학성은 부인된다. 중대한 인권침해의 해결가능성은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된다.

둘째, 민주주의의 이행기단계는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단계로 상대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된다. 오히려 인권문제는 주로 과거 국가가 행한 중대한 침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right to truth)에 집중되고,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는 표면적으로 잠복하게 되지만, 신구세력 간의 긴장관계로 인해 법의 지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때 인권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통계는 바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침해와 유린을 밝히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유효하다. 이른바 이행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 또는 정의의 회복(restorative justice)시기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엔이 직접 과거청산의 모델을 제시해 정부 측과 저항세력이 자행한 인권유린을 조사했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⁸⁰⁾에서는 통계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예를 들어 수십만 건에 달하는 고문사례를 유형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고문의 실체를 더 객관화하기도 하였다.⁸¹⁾

이 과정에서 통계는 인권침해와 유린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피해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객관화시켜 방대한 수의 개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불법연

80) 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남아공의 이행기시기에 대한 비교연구는 '이행기의 정의프로젝트'(The Project on Justice in Times of Transition)팀이 수행한 연구가 아주 유용하다. <http://www.pjtt.org/index.htm>

81) 각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참여했던 과학기술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Advancing Science, Serving Society의 Science & Human Rights팀이 수행하였다.

행, 그 시기, 구금시의 공포, 고문당한 형태, 후유증과 그 유형 등을 수집, 조사, 분석하는 데 통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에서는 인권현상은 주로 국가 또는 일부 국가구성원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자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 작동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사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즉, 기업집단, 언론 등과 같이 국가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우월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정부가 행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다. 국가범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이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므로, 통계는 주로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사영역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법적 근거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통계운영제도는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예방의 촉진자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사영역에서 인권침해와 차별로 인한 피해는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법적 제도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인권기준의 해석과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과정이 중요하다.

1.2 ②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이 군은 ④군과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분야에 집중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현행제도의 평가와 환류과정이다. 권위주의의 정권단계에서는 ①군의 이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개선이나 반영은 형식적 또는 장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별사건에 대한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작·왜곡되어 그 적용가치가 거의 없다. 민주주의의 이행기단계에서 통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①군에 속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병행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조사·분석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가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실행되면, 국가의 잠재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을 억제·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계량적인 자료가 축적되고 실제로 이를 통해

권위주의 하에서 용인되었던 각종 인권침해제도와 관행을 교정하는 데 기여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에서의 통계는 사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국제기준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며 정책적으로 반영된다. 이런 맥락은 ④군에서의 주된 역할이 된다.

2. 인권존중·증진과 통계적 적용

2.1 ③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③군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문제가 특정집단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배제와 관련이 있다. 권위주의의 정권단계에서는 주로 정치적 반대자 집단의 형성과 총체적인 의사표현은 불허되거나 관리가능한 집단의 온건한 형태로 왜곡된다. 여기에 속한 집단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이 부인되거나 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없거나 구제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부인되고 권위주의정권을 유지시키는 제도가 강화된다. 또 노동자, 빈민, 농민 등도 산업구조조정 등 산업발전단계에 맞물려 사회적인 권리들을 제도적으로 억압당한다. 이 배제된 집단의 문제 해결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의 자구적인 대항 또는 자체 해결로 가능해 진다. 즉, 사법의 총체적인 실패로 이 영역에서 통계의 역할은 무의미하다. 민주주의의 이행기단계에서 이 배제된 집단 또는 이에 대한 집단적인 인권침해는 새로운 행위자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되고, 이에 따르는 제도적인 정비와 법의 개정 및 제정움직임이 나타난다. 과도기라는 복잡성으로 인해 집단적인 인권문제들이 폭발적으로 이슈화되거나 불법(illegal) 또는 법외(unlawful)의 배제집단이 합법화되면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대화가 촉진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인권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를 뒷받침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이 단계에서 통계는 주로 선진국의 선행경험소개와 이에 맞는 제도적인 정비에 집중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에서 집단적인 인권문제는 개발과 집단적 환수라는 평등의 영역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국가의무로서의 인권교육이 실시되며, 반인권적인 사회

관행이 통제된다. 검찰·경찰 및 군대 등의 공권력행사기관에서 인권존중의 법치주의가 강화된다. 이 단계에서는 새롭게 인식한 인권문제와 인권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통계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2.2 ④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이 군에서의 인권현상들은 자유권영역에서 각종 반민주·반인권적 악법의 개폐와 사회권 실현의 문제가 정책적인 과제로 제기된다. 권위주의의 정권단계에서 이 영역은 철저히 무시되고 오히려 군, 재벌 등 특정집단을 위한(/통한) 국가정책이 우선시되는 성장 위주의 정책이 진행된다. 따라서 집단적인 인권문제와 관련된 통계는 국가 차원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이행기단계에서는 인권존중과 인권 진은 내면화되지 못하는 모색기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정치적 지형에 따라 이 영역의 진전이 좌우되어 국회의 입법적인 체계정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집단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과제는 제도정비인데, 통계는 이 과정에서 유용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에서는 집단적인 인권문제는 국민들의 권리향유에서 기회균등의 수준을 넘어 법제도 및 정책 결과에서의 균등과 관련이 있다. 기존에 무시되었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현실화하는 정책적인 인권문제들이다. 한 사회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기준(standards)을 마련하고, 이를 지표(indicators)와 함께 측정 가능한 잣대(measurable criteria)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권통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통계적 적용을 위한 예비적 구성

위에서 우리는 인권현상을 개인적·집단적 차원의 인권문제(인권현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 및 보호조치(법절차적인 해결)·인권존중·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법제도적인 개선)와 대응시켜 비교해 4개 군의 인권현실의 영역을 만들고 민주주의의 진척정도에 따라 3개 단계로 구분하였다. 우리 사회는 부분적으로 과거청산 및 각종 반인권적 악법의 개폐문제 등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행기단계와 실질적인 평등과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한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를 동시에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정권단계의 인권현상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4개 군과 2개 단계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인권영역의 내용을 도출하여 이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모델을 도출하는 일은 인권관련통계를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이 표에서 언급된 각 단계별 주요인권분야와 정책은 언급되지 않은 다른 분야의 인권을 배제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하게 나타나는 인권현상을 묘사한 것이다.

인권현상	관련 주요인권분야(와 행정분야)		통계의 적용방법
①군 개별 인권 구제	이행기단계	- 자유권 주로 생명권 침해(조사/구제)	설계(항목 개발)/수집/작성
	공고화단계	- 국가: 인권 전 분야(조사/구제) - 사영역: 차별(조사/구제)	국가: 설계(발생유형과 원인 및 조치)/수집/작성/분석/공표) 사영역: 설계/수집(특히 차별 실태)/작성/공표/분석/응용*
②군 개별 인권 예방	이행기단계	- 자유권 생명권 침해(공표/피해자의 명예회복조치), 인권구제전담기구(NI)(설치)	분석/공표/응용*
	공고화단계	- 사회권분야·사회적 소수자 - 국가: 피해구제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강화) - 사영역: 인권피해자의 소송 등 법적 지원(강화)	설계/수집/작성/공표
③군 집단 인권 존중	이행기단계	- 자유권 사회적 대화/협약(추진), 인권 교육(수립)	설계(국민의식/교육수요의 파악)/수집/작성
	공고화단계	- 사회권(실질적 평등) 인권교육(실시), 반인권관행(통제), (검·경·군 등의) 인권존중의 법치주의(강화)	설계/수집/작성/분석/응용*
④군 집단 인권 증진	이행기단계	- 자유권 반인권적 법제도(개폐)	
	공고화단계	- 인권 전 분야 국가: 국제기준의 종합적인 인권정책(개발·이행·실시) 사영역: 자율준수체계(운영)	(각종 통계의)종합(지수개발 포함)/분석/응용*

<표 2-3> 인권현상의 세 차원

* '응용'은 '관련정책의 수립·평가·환류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의미함.

또 위의 표를 단순화시켜 모델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군과 ②군을 '개별인권문제'로, ③군과 ④군을 '집단인권문제'로 대체시키고, '이행기단계'와 '공고화단계'를 통합하여 현재의 우리 사회로 간주하여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각 인권영역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이나 정책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인권의 각 영역을 도출하면 <표 2-4>와 같이 재구성된다. 이 표는 다시 제5절에서 검토될 인권영역별 재구성항목과 연결시켜 제6절에서 본격적인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인권현상	주요인권(행정)영역
개별 인권문제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침해예방(주로 자유권분야)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
집단 인권문제	△국가의 반인권관행 극복 및 통제(주로 자유권분야) △관련법제도의 개선(사회권분야) △인권적용범위의 확대(사영역 포함) △종합적인 인권정책의 수립

<표 2-4> 인권현상의 통계적 적용을 위한 예비적 구성

제5절 인권분야의 재구성과 인권항목

1. 인권의 적용원리와 인권의 범주

1.1 인권의 적용원리

인권의 적용범위는 “모든 인간(for all)”이 된다. 따라서 인권은 보편성(universality)을 띠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두를 포괄(all-inclusion)한다.

또한 국제인권장전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조약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⁸²⁾하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⁸³⁾하고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범위와 시민적·정치적 권리범위의 모든 인권은 서로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성격(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all human rights)이 있으며⁸⁴⁾, 이럴 경우에만 각 인권들은 온전하게 향유될 수 있다. 또 모든 인권은 동등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⁸⁵⁾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⁸⁶⁾, 모든 사람은 법

82) ICESCR 전문.

83) ICCPR 전문.

84) Theo Ban Boven, "The International System of Human Rights"; ed.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외,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 Under Six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UN Publication, Sales No. GV.E.97.o.16, 1997; Geneva) p. 6.

85)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Declaration on Right to Development, 1986)에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는 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이다;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이행, 증진, 보호에는 동일한 관심과 긴급한 고려가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 평등하며, 법의 동등한 보호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⁸⁷⁾ 즉,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로서 차별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남녀평등의 원칙⁸⁸⁾을 명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차별 등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하게 되어 있다.⁸⁹⁾

인권을 향유주체에 따라 개별적 권리(individual rights)와 집단적 권리(collective rights)로 구분하기도 한다. 인권은 초기에는 개별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국제인권장전에서는 대부분 “누구나(everyone) … 권리를 가진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를 선언할 자유와 같은 것은 개별적인 권리이면서 집단적인 권리에 속한다. 가족의 권리(right of family)와 노동조합의 자유(trade union freedoms) 또한 여기에 속한다. 좀 더 큰 규모의 집단적 권리로는 공통의 인종, 종교 및 언어적 결속을 가진 상당한 규모인 경우의 소수자의 권리가 있으며, 인민의 권리(people’s rights)⁹⁰⁾도 이에 속한다. 후자의 파생권리로는 자결에 대한 권리(right to self-determination)⁹¹⁾, 발전에 대한 권리(right to development)⁹²⁾,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리(right to peace and security),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가 있다.⁹³⁾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여성, 성적 소수자, 이주노동자, 노인, HIV/AIDS 환자 등 집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성격을 갖고 있는 특정집단의 인권현상들은 실체적 권리로서가 아니라 일반적 인권침해와 차별의 영역에서 검토될 것이다.

86) 세계인권선언 제2조, ICCPR, 제2조의 1 참조.

87) 세계인권선언 제7조.

88) ICCPR 제3조.

89) ICCPR 제20조의 2.

90) 민족의 권리와 인권과의 변증법적 관계는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에서 승인되었다. AFC는 최초로 민족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문서이다.

91) 자결에 대한 권리는 ICESCR 제1조와 ICCPR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993년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비엔나선언 및 행동강령(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으로 재확인되었다.

92) 발전에 대한 권리는 발전에 대한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 규정되고 비엔나선언 및 행동강령에서 재확인되었다.

93) Theo Ban Boven, 위의 논문, pp. 6-7.

1.2 인권의 범주

인권을 범주화하거나 구분하는 일반론은 없다. 프랑스법학자 Karel Vasak은 인권의 3세대론을 정리하였다. 그는 1982년 편저서인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Human Rights"(영문판 수정편집은 Philip Alston)에서 프랑스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liberté) 평등(égalité), 박애(fraternité)에 조응하여 제1세대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세계인권선언 제1조~제21조), 제2세대 인권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2조~제27조), 제3세대 인권을 연대권(solidarity rights)(세계인권선언 제28조~제30조)으로 분류하고, 제1세대 인권을 소극적 자유로 제2세대 인권을 적극적 자유로 보았다.⁹⁴⁾

국제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Nihal Jayawickrama는 인권의 형식적 범주 - 자유권 또는 사회권 - 와는 무관하게 35개의 실제적인 권리로만 구분하고 있다.⁹⁵⁾ 또 John S. Gibson은 국제사회권조약, 국제자유권조약과 기타 국제인권문서를 분석하여 △시민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 △법적인 (적정절차) △정치적인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 △경제적인 (노동에 대한 권리) △사회적인 (건강에 대한 권리) △문화적인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집단적인 (민족자결에 대한 권리) △기타 모든 범주를 포괄하는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로 구분한 뒤 이를 5개 범주로 구분했다.⁹⁶⁾

이번 연구진은 실태조사를 위해 인권의 작동원리를 배제하고 실제적인 권리의 범주를 정했는데, △인간의 존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

94) Joseph Wronka, *Human Rights and Soci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1998;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anham, Maryland, US) pp. 27-32.

95) Nihal Jayawickrama, 위의 책 참조. 그는 실제적 권리를 자결의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노예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수형자의 권리,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피의자의 권리,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아동의 권리, 공공 생활 참여에 대한 권리, 평등에 대한 권리, 소수자의 권리, 노동관련 권리, 사회보장관련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적 생활에 대한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의 35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으로 간주하였다.

96) John S. Gibso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1996, Scarecrow Press, In③, Lanham, Maryland, US)를 참조. 그는 인권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법적인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집단적 권리 △선언적 권리로 분류하였다.

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법절차적 권리로 구분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2-5>과 같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인권범주	하위범주	내용별 실제적 권리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노예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	사생활의 자유(명예/명성/정보통신/통신/혼인선택 포함), 거주이전의 자유(망명권 포함), 국적취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정치적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알권리·정보접근권 포함),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발안권, 참정권, 공무참여권, 청원권 포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권, 노동에 대한 권리, 적정보수의 권리, 유리한 노동조건향유권(월 권리 포함), 노동조합의 권리
	사회적 권리	가족형성권, 적정생활수준향유권(식량권, 물에 대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 포함)
	문화적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권, 저작권, 자기문화 향유권 포함), 인권질서추구권
법절차적 권리	법절차적 권리	법적 인격체의 인정, 법적 구제권, 인신보호,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 권리

<표 2-5> 인권의 범주와 내용별 실제적 권리

1.2.1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은 인권, 즉 구체적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핵심과 근원을 이룬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주체성(자주적 인격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또는 포기가 불가능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에서 의미하는 인간은 역사성이나 사회성에서 탈피한 고립된 개인으로서의 이기적 인간도 아니고, 현대적 복지사회에서 단순한 구성분자로서의 집단주의적 인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과 공동체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인간의 독립적 가치를 침해함이 없이 공동체구속성과 공동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⁹⁷⁾ 이러한 인격주의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은 반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진다.⁹⁸⁾ 이는 도덕적 측면에서는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 가치’를 나타내지만, 법적 측면에서는 초국가적 자연법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⁹⁹⁾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한계원리로 작용하는 것으로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은 인간 우선의 원리, 국가의 최우선적 실천목표, 국가작용의 가치판단기준 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인간의 존엄에는 주로 시공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거나 침해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처분 불가능한 권리의 내용이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컨대 천부적 자유(Freedom), 사형의 금지를 포함한 생명권, 국가에 의해 침해당하지 아니할 신체의 자유(Liberty)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97) BVerfGE 4, S. 15 f. 이를 ‘인격주의 인간상’이라고 한다.

98) 김철수, 헌법학신론, 제11전정신판, 박영사, 2001. p. 245.

99) 허영, 한국헌법론, 신판, 박영사, 2001, p. 313.

1.2.2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헌법적 차원에서 보면 자유권적 기본권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분류와 관련하여 헌법적인 기본권 분류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국내법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자유와 권리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권의 초국가적 개념성을 존중하여 국내법인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 체계가 아닌,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등의 인권분류체계에 주안점을 두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분류하고 있다.

(1) 시민적 권리

시민적 권리는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적 발전단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라는 적극적 의미보다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의미를 가진다.¹⁰⁰⁾ 이는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인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회적 의무 또는 사명으로부터의 자유로 해석된다. 이러한 시민적 권리는 첫째,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원리로 둘째, 재산의 취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원리로 셋째, 무엇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원리로 작용한다. 이는 개인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향유해야 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적 권리에 기초한 평등이란 자연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라는 의미로서 ‘기회의 평등’에 그 중심적 가치를 둔다. 기회의 평등이란, 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⁰¹⁾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등의 인권분류에 입각하여 개인의 명예와 명성을 포함하는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망명권, 국적취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소유권, 양심·사상·종교의

100) 김형식, “복지국가와 시민적 권리”, 「사회과학연구」, 제9집(1996),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 13 참조.

101) 김형식, 위의 글, 같은 곳.

자유 등이 시민적 권리에 편성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특수성 및 아동의 권리의 복합성(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고려하여 별개의 권리로 체계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특별한 권리보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동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인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의 주체여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참작하여 아동의 권리를 시민적 권리로 편성하였다.

(2) 정치적 권리

민주주의정치는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에 참가하며, 정치과정을 적절히 통제하는 정치방식이다. 그리고 정치적 활동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원초적 욕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도 인간의 제1차적 요구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민주주의정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리가 바로 정치적 권리이다. 즉,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은 국가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그러한 조직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유권자로서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¹⁰²⁾로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 외에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표명하는 정치적 자유와 국가의 의사형성에 협력하는 일련의 정치적 활동권을 총칭하는 권리이다.

정치적 권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에 의해 발전되었다. 정치적 권리가 보다 구체적인 양태를 띠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의 성장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자본주의가 생명력 있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사유재산제에 동의하는 한편,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다른 집단의 자원과 산출에 대한 분배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정치제도를 용인하여야 한다.¹⁰³⁾ 민주주의국가

102) 김형식, 위의 글, p. 15.

103) 김형식, 위의 글, p. 17.

에서는 그 정치적 질서가 바로 그 구성원인 국민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므로 정치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권리에는 정치적 자유에 속하는 양심·사상·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참정권에 속하는 정치적 참여권과 공무담임권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시민적 권리에 편성하지 않고 정치적 권리에 귀속시킨 것은, 이들 자유가 현실세계에서는 주로 정치적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2.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사회권조약은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전제하며, 이에 각 개별국가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권으로서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20세기 초에 탄생되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자유의 이념을 강조하는 근대적 자유주의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권은 사회적 정의, 실질적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권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통한 기본권의 보장을 의미하는 적극적 급부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기본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됨으로써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목록을 크게 보충 확대하였으며, 그 이후 사회적 기본권은 세계 각국의 헌법으로 나아가 국제적 인권으로 널리 보급 전파되었다.¹⁰⁴⁾

사회적 기본권의 보편화는 무엇보다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초국가적 인권

104)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p. 518.

의 확대를 인정받고 있다. 자유권은 당연히 그 성격상 초국가성을 인정받지만, 사회권은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청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내적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협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권의 보장은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가에 공통된 문제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회권도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미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 이하에서 각종 사회적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22조), 근로의 권리 및 노동삼권(제23조), 휴식 및 여가의 권리 등(제24조), 건강의 권리 및 모성의 보호 등(제25조), 교육의 권리(제26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제사회권조약은 노동과 휴식에 관한 권리(제7조), 노동삼권(제8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혼인과 가족의 보호 및 임신부와 어린이의 보호(제10조), 인간다운 생활수준의 보장 및 개선(제11조), 건강권(제12조) 및 교육권(제13조, 제14조) 등 사회권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1) 경제적 권리

사회권의 일반적 성격과는 달리 경제적 권리의 내용은 재산권의 보장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재산권의 보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와 재산권목록에 포함되는 내용의 지속적인 추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대에는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보장에서 상대적 보장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3조도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문화하고 동시에 제3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재산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한계를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으로써 입법자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통하여 사회적 규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사회적 권리

인간의 실질적 평등의 보장은 자유와 평등의 형식적인 조화만을 고려한다면 현실에서 적절하게 보장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보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제25조에서는 건강의 권리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 권리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권조약에서도 광범위하게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권리는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관심을 통해 비로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하며, 그 핵심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그에 따른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급부는 헌법 제32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형태로 행해지며, 그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각종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급부활동은 주로 국가의 사회적 과제수행을 통해서, 즉 사회보험, 사회부조(생활보호), 사회복지 등의 수단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권리는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인간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 수단을 보장하는 것이다.

(3)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에 대한 개념논의는 사실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성질에 대한 논의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문화상대주의 또는 다문화주의의 틀 속에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편으로 기본권보장의 보편성과 상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난해한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문화상대주의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행복추구를 저해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고 부정될 수 없는 권리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법적인 문제를 문화와 연관시킬 때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화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요소가 실로 다양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은 인정하여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문화적 권리를 기본권의 영역에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또는 더 나아가서 인권의 개념을 흔히 국제조약이나 선언문에 기초해서 정의하고 실현하는 것 이외에도 법률적 구현을 통해서 각 개별문화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2.4. 법절차적 권리

법절차적 권리는 국가권력, 특히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인해 개인의 인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신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원시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¹⁰⁵⁾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인신의 자유의 침해는 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나타난다. 형사사법절차에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는 물론, 그 이전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재판 이후인 형집행절차가 포함된다. 형사사법절차에서 개인의 인신의 자유를 실체적 자유로 보장하는 동시에 이 실체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 권리가 바로 법절차적 권리이다.¹⁰⁶⁾ 따라서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보장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시민적 권리에 해당되는 제 권리는 법절차적 권리를 통해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장된다.

여기에서의 법절차적 권리 역시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등의 인권분류에 따라 법적 인격체의 인정, 체포·구속·처벌과 관련된 법적 구제권, 체포·구속적부심과 보석 및 항소와 관련된 인신의 보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정절차의 원칙, 이중위험금지와 관련된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 권리로 편성되어 있다.

105) 김철수, 앞의 책, p. 307.

106) 허영, 앞의 책, p. 334 이하.

특히 '법 앞에 평등'을 법절차적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인간의 존엄으로 편성한 것은, 법 앞에 평등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법에 있어서의 평등', 즉 법 내용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용에서뿐만 아니라 입법에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¹⁰⁷⁾는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107) 김철수, 앞의 책, p. 267.; 허영, 앞의 책, p. 324 참조.

제6절 인권관련통계의 실태파악을 위한 준거틀

사회현상으로서 인권현상을 계량적인 측정방법인 통계로 비교하기 위한 작업을 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라고 하고, 이 지표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들의 유의미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인권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들의 유의미성은 관련통계를 작성하는 자체의 방향과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통계(또는 항목)의 존재여부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각 항목의 타당성이란 그 통계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항목이 제시된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타당한 항목이란 바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인권침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예방과 관련지어 고려한 것을 의미하는데, 개념적으로는 인권적·인권친화적·비인권적·반인권적 항목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이 된 통계간행물의 각 지표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이 인권적 또는 친인권적인지(인권기준에 부합되는 항목)와 비인권적 또는 반인권적인지(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이번 연구에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통계실태는 결국 인권지표 또는 인권항목들의 존재여부 차원과 대상통계들이 인권적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차원을 포괄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인권지표 또는 해당항목을 추가해야 할 과제를, 후자의 경우에는 비인권적인 항목을 인권(/친화)적인 항목으로 대체하고 반인권적인 항목을 삭제 또는 인권(/친화)적인 항목으로 대체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인권관련통계지표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과 비인권분야통계에서의 권리 중심적인(rights-based) 항목의 개발을 위해서는 일정한 준거가 있어야 한다. <표 2-4>에서 우리는 인권현상의 통계적 적용을 위한 예비적인 구성표를 만든 바 있다. 그리고 <표 2-5>에서는 인권의 범주와 내용별 실제적 권리를 비교·검토하였다.

<표 2-4>를 통계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더 간결하게 정리하면, 우선 개별

/집단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이미 주요인권(행정)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다. 또 주요인권(행정)영역 가운데 자유권분야의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영역 △사회권분야의 관련법제도 개선 △종합적인 인권정책의 수립은 이번 실태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인권(행정)분야는 자유권 및 차별영역과 관련해서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침해예방 △반인권적 관행의 극복과 통제, 사회권 및 차별영역과 관련해서는 △인권적용범위의 확대를 주요한 측정지표로 삼는다. 그리고 <표 2-5>의 내용별 실제적 권리에 위의 인권(행정)영역의 주요 측정지표를 대응시킬 것이다. 이를 개념화하면 <표 2-6>과 같다.

실체적 권리	유형	인권(행정) 분야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차별금지	인권침해 차별	·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침해예방 · 반인권적 관행의 극복과 통제	
사생활의 자유(명예/명성/정보통신/통신 /혼인선택 포함), 거주이전의 자유(망명권 포함), 국적취득권, 아동의 권리,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침해 차별		
의사표현의 자유(알권리·정보접근권 포함),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발안권, 참정권, 공무참여권, 청원권 포함)	인권침해 차별		
사회보장권, 노동에 대한 권리, 적정보수의 권리, 유리한 노동조건향유권(월 권리 포함), 노동조합의 권리	인권침해 차별		· 인권적용범위의 확대
가족형성권, 적정생활수준향유권(식량권, 물에 대한 권리, 주거권, 건강권 포함)	인권침해 차별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권, 저작권, 자기문화향유권 포함), 인권질서추구권	인권침해 차별		
법적 인격체의 인정, 법적 구제권, 인신 보호,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적정절차,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죄형법정주의, 수형자의 권리	인권침해 차별	·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침해예방 · 반인권적 관행의 극복과 통제	

<표 2-6> 인권관련통계의 실태파악을 위한 준거틀

제 3 장 인권분야별 정부통계실태와 현황분석

제1절 인권관련통계

1. 연구대상기관 및 대상통계

가. 기관 및 통계/지표의 선정

정부의 인권관련통계 또는 지표를 완벽하게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인권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어떤 면에서 국가사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상을 정하는 데는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된 국가기관은 중앙행정부처와 외청 및 부속 기관들이 주된 골격이다. 여기에 행정부는 아니지만, 국민의 인권피해구제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법원(대법원)의 통계를 포함시켰다. 참정권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검토하였다.

연구대상통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였다. 우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지정한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중앙행정부처(부속기관 포함)와 민간기관을 모두 포함시켰다. 통계청이 지정하지 않은 일반통계인 경우 민간기관이 작성한 경우는 제외시켰다. 이 경우에는 인권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통계는 공적인 통계로 국가의 행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청이 지정한 통계(지정통계)와 각 부처 등이 일반적인 직무에 의해서 작성한 통계(일반 통계) 가운데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를

모두 포함시켰다. 다만, 부속기관의 작성한 일반통계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이 자체 규정에 의해서 작성¹⁰⁸⁾하거나 규정 등으로 그 통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속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위임한 경우에는 공식통계로 보아 포함시켰다.

통계와 관련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 기관은 한정되었거나 특정승인통계에 대한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통계에 포함시킬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는 못되었다. 부속기관, 특히 연구기관이 작성한 일반통계도 중앙행정기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통계를 고유사무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권과 관련이 있는 통계를 생산한 경우에는 연구대상통계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승인통계 인지와는 무관하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여성통계연보”와 같은 통계관련간행물 및 기타 연감, 백서 등의 이름으로 발간되는 공식간행물에 수록된 통계나 지표 가운데 인권과 관련이 깊은 것들은 모두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런 연보에 수록된 관련지표들이 대부분 여타의 관련승인통계 간행물을 재구성한 가공통계에 속한 경우에는 원 간행물에 특정한 표시만을 해 중복을 피하였으며, 기타 재가공하거나 관련부처 또는 연구소에서 인용하여 수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표로 삼았다.

이번 연구에서 검토한 대상통계들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것들이다. 통계 및 지표를 인권의 각 영역 가운데 하나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표들은 가장 주된 개념의 인권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진들은 먼저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공식통계 가운데 인권과 관련이 적거나 단순한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지표를 1차로 선별하여 각 인권영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이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 또는 지표들은 인권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인권의 각 영역과 서로 조응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통계/지표들로 2차로 선별된 것들이다.

108) 정보통신부의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통계”는 “전기통신감청 및 통신자료제공관련 업무지침(2000년 6월)”에 의해서 통계가 작성된다.

나. 연구대상통계의 수집방법

연구대상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정부승인통계목록”(2005.3.1 기준)과 각 부처 홈페이지 및 별도의 통계관련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위에서 언급한 연구대상통계를 추출하여, 이를 토대로 대상통계를 목록화하였다. 이 대상통계 가운데 인권과 관련이 거의 없거나(/미미하거나) 단순한 항목으로 구성된 통계와 지표를 제외하여 이번 연구와 관련된 “인권관련정부통계”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권(행정)분야의 세부관심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지표를 목록화하고, 연보·연감·백서 및 보도자료 등에서 인권관련통계를 확인하거나 보완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인권관련통계 또는 지표들은 <부록 3>에 있다. 그 외 통계실태조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한국통계조사현황(상, 하)(통계청 발간)을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다음의 표는 연구대상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구 분	작성 기관별	작성 통계수	종 류 별	
			지정통계	일반통계
계	48	295	73	219
중앙행정기관	27	227	58	169
부속기관	12	53	3	50
기타 지정기관	7	12	12	-
대법원	1	34	월보 23, 기보 4, 연보 7	
헌법재판소	1	18	일반통계 15, 헌법재판활동현황 3	

<표 3-1-1> 연구대상통계현황

(단위 : 기관, 종)

주1 : 종류별 수치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계의 수는 포함시키지 않음.

주2 : 부속기관이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써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함.

주3 : 대법원의 통계는 법원통계규칙(개정 2005.08.25 규칙 제1954호), 헌법재판소의 통계는 헌법재판통계내규(전문개정 2005.2.16 헌법재판소내규 제68호)에 따라 작성됨.

다. 통계작성기관별 연구대상통계

(1) 중앙행정기관

	계	종 류 별		인권 관련성 정도		
		지정통계	일반통계	직접관련	간접관련	거의없음
계(29)	227	58	169	168	16	43
통 계 청	51	36	15	32	12	7
재 정 경 제 부	2	0	2	-	-	2
과 학 기 술 부	1	1	0	-	-	1
환 경 부	9	1	8	9	0	0
행 정 자 치 부	9	1	8	9	0	0
법 무 부	6	-	6	6	-	-
교육인적자원부	1	-	1	1	-	-
문 화 관 광 부	6	-	6	6	-	-
농 립 부	19	5	14	6	-	13
산 업 자 원 부	12	2	10	9	-	3
건 설 교 통 부	17	1	16	13	-	4
보 건 복 지 부	33	2	31	33	-	-
노 동 부	13	4	9	13	-	-
정 보 통 신 부	5	2	3	4	1	-
해 양 수 산 부	14	2	12	9	-	5
경 찰 청	2	-	2	2	-	-
국 세 청	1	-	1	-	-	1
관 세 청	1	-	1	-	-	1
검 찰 청	1	-	1	1	-	-
산 립 청	11	1	10	6	-	5
특 허 청	1	-	1	1	-	-
중 소 기 업 청	6	1	5	4	2	-
농 촌 진 흥 청	2	-	2	2	-	-
병 무 청	1	-	1	1	-	-
식품의약품안전청	3	-	3	3	-	-
해 양 경 찰 청	1	-	1	1	-	-
소 방 방 재 청	4	-	4	4	-	-

<표 3-1-2>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대상통계현황

(단위 : 종/ 2005.3.1 기준)

(2) 부속기관

	계	종 류 별		인권 관련성 정도		
		지정통계	일반통계	직접관련	간접관련	거의없음
계(12)	53	3	50	48	3	2
한국토지공사	1	1	-	-	-	1
한국산업안전공단	1	1	-	1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단	1	-	1	1	-	-
한국산업인력공단	4	-	4	4	-	-
국민건강보험공단	2	-	2	2	-	-
국립공원관리공단	1	-	1	1	-	-
한국철도공사	4	-	4	-	3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1	5	6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	1	1	-	-
한국교육개발원	3	-	3	3	-	-
한국노동연구원	1	-	1	1	-	-
한국여성개발원	28	-	28	28	-	-

<표 3-1-3> 부속기관의 연구대상통계현황

(단위 : 종/ 2005.3.1 기준)

(3) 대법원

	통계 종류별 목록			인권관련성
	월보	기보	연보	
계(34)	23	4	7	
민사(5)	상고심민사사건표	상고심 항소심 국가사건표	상고심 항소심민사사건 종류별건수표	있음
	민사재항고 신청사건표		민사사건소기별건수표	있음
행정· 선거 사건 (6)	대법원단심선거 소송사건표			있음
	상고심선거소송사건표			있음
	선거재항고 신청사건표			있음
	상고심행정소송사건표			있음
	행정(재)항고 신청사건표			있음
	상고심행정소송사건 청벌처리결과표			있음
특허 사건(3)	상고심특허소송사건표			있음
	특허재항고 신청사건표			있음
	제1심외국인특허소송 관계인원수표			있음
가사 사건(4)	상고심가사사건표		상고심 항소심가사사건종 류별건수표	있음
	가사(재)항고 신청사건표		가사다류사건 소기별건수표	있음
형사 사건(11)	상고심형사사건인원수표	형사사건처리기간별 인원수표	상고심형사공판사건 죄명별인원수표	있음
	상고심사회보호처분 청구사건인원수표	보석청구사건인원수표	상고심 항소심형사사건결 과인원수표	있음
	형사신청사건표		형사보상처리죄명별 건수표	있음
	국선변호인선정사건표			있음
	즉결사건인원수표			있음
	영장발부인원수표			있음
소년보호사건 (1)	소년보호(재)항고 신청 사건표			있음
가정보호사건 (1)	가정보호(재)항고 임시조치 배상신청· 국선보조인선임사건표			있음
기타사건(1)	감치 과태료 사건인원수표	수입인지수입액표	벌과금액표	있음

<표 3-1-4> 대법원의 연구대상통계 현황

(단위 : 종)

(4) 헌법재판소

	통계 종류별 목록			인권관련성 여부
	월간	분기간	연간	
계(18)	9	1	8	
일반통계 (15)	심판사건총괄표	심판사건처리표	심판사건총괄표	있 음
	심판사건누계표		주문별심판사건처리표	있 음
	주문별심판사건처리표		청구원인별헌법소원심판 사건표(§68①)	있 음
	청구원인별헌법소원 심판사건표(§68①)		청구원인별헌법소원심판 사건누계표(§68①)	있 음
	각하사유별헌법소원 심판사건표(지정재판부)		각하사유별헌법소원 심판사건표(지정재판부)	있 음
	신청사건표		신청사건표	있 음
			헌법소원심판사건 대리인선임표	있 음
			연도별심판사건 접수및처리현황표	있 음
헌법재판 활동현황 (3)	법률에대한심판사건 처리현황			있 음
	주요심판사건결정목록			있 음
	법률에대한심판사건 미제현황			있 음

<표 3-1-5> 헌법재판소의 연구대상통계현황

(단위 : 종)

(5) 기타 지정기관

	계	종 류 별		인권 관련성 정도		
		지정통계	일반통계	직접관련	간접관련	거의없음
계(7)	12	12	-	4	-	8
한국은행	6	6	-	-	-	6
한국산업은행	1	1	-	-	-	1
국민은행	1	1	-	1	-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	1	-	1	-	-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1	1	-	1	-	-
한국철강협회	1	1	-	-	-	1
대한건설협회	1	1	-	1	-	-

<표 3-1-6> 기타 지정기관의 연구대상통계현황

(단위 : 종/ 2005.3.1 기준)

라. 연구대상 간행물목록

분 류	간 행 물 명	분 류	간 행 물 명
연보(14)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연감(6)	문화통계연감(문화관광부)
	임업통계연보(산림청)		병무연감(병무청)
	철도통계연보(철도청)		사법연감(대법원)
	2004건설교통통계연보 (건설교통부)		한국통계연감(통계청)
	2005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환경통계연감(환경부)
	2004농림통계연보(농림부)		2004노동통계연감(노동부)
	2004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기타(29)	감염병발생주보(보건복지부)
	2005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2004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국가유공자및제대군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에너지통계연보 (산업자원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2004통계연보(공정거래위)		국민구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05해양수산통계연보 (해양수산부)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5행정자치통계연보 (행정자치부)		국민체력실태조사 (문화관광부)
	2003화재통계연보 (소방방재청)		농림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 등 조사(농림부)
백서(8)	2004경제백서(재정경제부)	농업총조사(통계청)	
	2005경찰백서(경찰청)	농업통계정보(농림부)	
	2005노동백서(노동부)	보선업무자료(철도청)	

<표 3-1-7> 연구대상 간행물목록

주 : 자세한 사항(관련통계, 발간주기 등)은 <부록6. 연구대상인권통계현황> 참조.

분 류	간 행 물 명	분 류	간 행 물 명
통계자료 (16)	2004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4산업자원백서(산업자원부)		시도별추계인구(통계청)
	2004정보통신백서(정보통신부)		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청소년백서(문화관광부)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환경백서(환경부)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지면적통계(농림부)		지가동향(한국토지공사)
	고용보험통계월보(한국산업인력공단)		철강보(한국철강협회)
	국립공원기본통계 (국립공원관리공단)		축산물생산비(농림부)
	농협조사월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가구와개인의경제활동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산업통계(문화관광부)		한국교육인적자원지표 (한국교육개발원)
	산업재산권통계월보(특허청)		한국통계조사현황(상, 하), 2004 (통계청)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 (소방방재청)		1999제왕절개분만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소년통계(통계청)		2002생명표(통계청)
	취업통계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2004범죄분석(경찰청)
	2003건강보험통계월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범죄분석(대검찰청)
	2004문화예술통계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상반기정보화실태조사 (정보통신부)
2004사회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4생활시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4정보화통계집(정보통신부)		2004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 조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4년도전국보육교육이용및 육구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절 인권영역별 정부통계의 실태

1. 인간의 존엄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은 인권 및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국가작용을 금지하는 근거¹⁰⁹⁾가 된다. 최근에는 인간의 존엄을 인권의 기본원리로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독자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고문, 인신매매, 노예제, 생체실험, 대량학살과 같이 인간의 인격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할 경우, 인간을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인간존엄의 직접적 침해를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존엄권의 보장을 강조하는 경향이 새롭게 대두되었다.¹¹⁰⁾ 인간의 존엄을 포괄적인 기본원리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권리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했을 때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런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당연히 배제되는지의 구별실익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인권의 기본원리로서 이해하지만 그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실체적인 권리성을 인정한다. 천부적 자유와 존엄 및 법 앞에 평등은 인권의 기본원리이면서도 실체적인 권리이며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 금지, 고문금지 등을 이 영역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권리로 보았다.¹¹¹⁾

1.1 천부적 자유와 존엄

109)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3, p. 220.

110) 장영수, 위의 책, p. 221.

111) 헌법학자들 가운데 인간의 존엄의 성격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 권영성 교수는 인간의 존엄을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 되는 최고의 헌법이념으로 이해할 때에는 성격상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p. 357), 김철수 교수는 인간의 존엄이 직접 침해된 경우는 그 밖의 기본권 침해와 달리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권리성을 인정한다.(김철수, 헌법학개론, 2002, p. 375) 이에 대해 허영 교수는 이 문제를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허영, 한국헌법론, 2002, p. 315) 장영수, 위의 책, p. 221에서 재인용.

유엔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¹¹²⁾하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¹¹³⁾고 인정하고 있다. 또 모든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된다고 보고 있다.¹¹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간의 내재적인 자유와 존엄성은 인권의 기본원리로 간주할 수 있지만, 국제자유권조약 제10조 제1항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간의 존엄을 고유하면서도 실제적인 구금자의 권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권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은 하나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권영역과 연결하여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¹¹⁵⁾ 이 영역에서는 천부적인 자유를 박탈당한 구금자의 인간존엄성과 관련하여 구금자의 최소처우 및 건강관련개념과 출생 이전에 있는 태아와 관련된 개념들이 포함된다.

1.1.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구금형태, 구금자처우의 최소기준, 구금자의료, 의료인윤리 및(/관련) 침해에 대한 감독체계, 예방조치, 피해자진정의 보장¹¹⁶⁾
- 인간배아, 인간복제, 관련범죄와 예방조치
-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 외국인협오, 인신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 착취
- 빈곤위험계층(the-risk-of-poverty), 미성년가장, 독거노인
- 방송·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 등의 공적·사회적 책임

112) 세계인권선언 전문.

113) 세계인권선언 제1조.

114) 국제사회권조약 전문.

115) 사회권의 전 영역에서 최소한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116)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21(1992) Par① 1-8.

② (잠재적) 관련내용¹¹⁷⁾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이 영역의 정부통계는 거의 없다. 즉, 인간계놈이나 유전자복제 및 정보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전혀 통계를 내고 있지 않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04년에 유전자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통계청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고 유전자병의원들의 배아냉동보관상태 등을 파악한 정도이다.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통 계 청	1
	보건복지부	14
계		15

<표 3-2-1-1> 작성기관별 '천부적 자유와 존엄' 관련지표수 (단위 : 개)

1.1.2 평가

이 영역과 관련된 정부통계는 태아와 영아사망과 관련된 통계 및 지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2004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관

117) EPEC, "Preparatroy study for the impact assessment and ex-ante evalu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gency: Annexes To the Final Report"(2005), p. 15를 참조. 유럽 정책평가 콘소시엄(EPEC; European Policy Evaluation Consortium <http://epe3info>)은 유럽위원회 사법자유안전사무총장실(DG JLS;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Justice, Freedom and Security)이 기본권보호청(Fundamental Rights Agency)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구 발주하여 유럽 내의 인권현안과 정책목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최종보고서는 2005년 2월에 제출되었는데, EPEC는 이 보고서에서 인간의 존엄의 영역과 관련된 지표로 △빈곤위험영역 아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범위 △ 한정된 수용역량과 대비한 초과수용인 수준 △위법한 아동포르노그래피 웹사이트 수 △인신매매로 유죄 확정된 수를 제시하고 있다.

련지표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있다. 이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인데, 국제인권문헌에서 성차별은 가장 핵심적인 차별로 간주되고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¹¹⁸⁾ 불법 배아복제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한 관련통계 또한 불비한 상태다. 이에 파생되는데, 의료인의 윤리문제와 관련된 통계도 거의 없다. 아동포르노그래피 등 인간이 절대적 약자에 대해 착취하는데 관한 통계와 지표도 공식적인 정부통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빈곤위험계층과 미성년가장, 독거노인의 경우처럼 타자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경우가 아니라, 처해있는 사회·경제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계층이나 사람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방치를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을 부정당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언론이 이차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도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관심영역이므로 당연히 세부관심지표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통계도 없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최근에 시행되어 이에 관한 범죄통계 등도 아직 없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생체실험이나 배아복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행위 △인신매매 등 직접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것과 관련된 통계를 체계화하여야 하며, 또한 구급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통계가 있어야 함.
- 배아에 관한 종합관리통계(병의원별 냉동보관배아현황, 병의원별 배아식현황, 인공수태시술기관의 배아냉동보관동의서 현황, 생명공학업체의 배아이용현황 등)

118) 성별로 사람을 구별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으로 단순한 차별관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인신매매범죄의 현황 및 예방 그리고 실태에 관한 통계
- (아동/노인/여성)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주관적 지표)
-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실태와 범죄현황
- 구급시설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실시현황
- 사회구조적인 약자에 대한 실태와 관련된 통계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천부적 자유와 존엄 영역의 공식통계가 거의 없는 것 자체가 우려할 만함. 또한 천부적 자유와 존엄을 일반적인 사회관행으로 인식하거나 사회온정주의에 기대어 공적 영역에서 이 영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임.
- ‘성차별에 대한 인식’지표는 가정·사회·학교·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교육정도별로 남녀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의 학력별 항목보다는 ‘공무원’을 포함한 직업군별로 항목을 교체해야 함. 또 평가척도를 ‘있다, 없다’라는 이분법 하에서 각 답에 3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음. 질문을 ‘성별에 의한 차별이 인간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보느냐 아니냐’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척도방법 등을 따로 개발해야 함. 이 지표는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한 유형인 성차별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영아사망조사’통계를 구성하는 ‘출생신고자료’의 항목 중 ‘적자여부’라고 표현한 것은 비인권적인 용어로 ‘혼인내 출산 또는 혼인외 출산’이라고 하든지 아예 그 항목은 삭제되어야 함.
- ‘사망진단서 모집자료내용(영아사망)’지표의 양로원, 고아원 항목은 ‘노인보호시설’ 또는 ‘아동보호시설’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함.
- ‘태아’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이 부족한 상태로 ‘태아사망원인’에 대해서 별도의 통계를 개발해야 함.

1.2 생명권

모든 인간(human being)은 생명에 대한 내재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¹¹⁹⁾

119) 국제자유권조약 제6조 제1항.

여기서 인간은 누구든지(everyone) 또는 모든 사람(every person)이라는 개념보다 더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따라서 태아도 생래적인 생명권을 갖고 있다고 본다.¹²⁰⁾ 생명에 대한 권리(right to life)는 인간의 최고권리(supreme rights)¹²¹⁾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도 당연히 포함된다.¹²²⁾ 생명권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로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권은 실질적인 인간으로서 살 권리를 말하며, 생존권(right to livelihood)과도 연관이 깊다.¹²³⁾ 국가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차적인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교통사망률과 같은 사고사망률,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영양실조와 전염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¹²⁴⁾

생명권은 응급조치를 포함한 의료적 치료에 대한 접근권 등 신체적 훼손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독극물 및 유해물질, 쓰레기 투기¹²⁵⁾ 그리고 자동차 및 비행기 소음 등 사회·환경적인 요인도 잠재적인 생명권 침해요인이 된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전쟁과 기타 대규모 폭력행위를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다고 보고, 전쟁 등을 회피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

120) 독일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누구든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everyone has right to life)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신 14일째부터 생명이 있다고 전제하고 생명권은 출생 이전에 생명이 발전하는 다양한 단계들 간 또는 출생과 태아 사이에서 어떠한 구별도 할 수 없는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기본법에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모든 살아있는 인간’(every living humanbeing), 즉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 개인(every human individual possessing life)으로 당연히 태아도 생명권을 갖는다고 결정하였다.(1975년 2월 25일 결정)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p. 246-247에서 재인용.

121)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6(1982).

122) 독일법원은 나치정권하에서 정신지체자를 살해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살인을 공식적인 법률로 부여하거나 관용할 수 없으며, 입헌국가에서 이러한 행위를 승인하거나 그 행위자의 처벌을 면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Nial Jayawickrama, 위의 책, p. 252를 참조.

123) Nial Jayawickram, 위의 책, pp. 258-260.

124)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6(1982).

125) Nial Jayawickram, 앞의 책, p. 270.

고 있다.¹²⁶⁾ 아울러 핵무기의 설계, 실험, 제조, 보유, 배치를 반인도적인 범죄로 승인하여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인류는 생명권의 중대한 위협에 빠지게 된다¹²⁷⁾고 보고 있다. 국가는 형법규정 등의 입법과 기타 효과적인 예방조치 등을 통해서 생명권 침해를 예방할 일차적인 책임(supreme duty)을 지고 있다.

1.2.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사망, 수명, 위법한 살인¹²⁸⁾
- 낙태, 영아사망, 교통 및 산재사망
- 안락사(뇌사), 사형제¹²⁹⁾, 자살, 자살교사와 자살방조, 촉탁에 의한 살인특수직수행자
- 집단학살, 사법외·자의적·약식 처형, 인종청소, 강제낙태, 강제실종살해위협
-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존권과 응급치료에 대한 접근
- 장기매매, 인간복제, (국가의) 생체실험과 기억의 강제적 확인¹³⁰⁾, 거세, 체형
- 독극물, 유독물질, 소음
- 전쟁, 핵무기
- 불법폭력에 대한 방위, 적법한 범집행(체포, 탈출예방) 및 소요 및 테러진압¹³¹⁾

126)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6(1982).

127)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14(1984).

128) EPEC는 위의 보고서에서 생명에 대한 권리 영역에 △위법한 살인(unlawful killings)수 △일반적인 사고사망수 △교통사고수 △광신도에 의한 사망자수를 제시하고 있다. EPEC, 위의 보고서, 같은 곳을 참조.

129) 국제자유권조약 제6조 제4항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5항에는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에는 사형제도의 존치를 이 조약이 인정하는 것으로 원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상 사형제도를 생명권의 침해로 보고 있다.

130) 거짓말탐지기나 약물최면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기억을 확인하는 것은 명백히 신체를 훼손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장영수, 위의 책, pp. 273-274 참조.

-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② (잠재적) 관련내용¹³²⁾

- 직접침해 : 특정인에 대한 고의적 살인(예, 즉결 처형, 사범의 살인, 법적 살인(사형), 민간기관(/인물)에 의한 정치적 살인, 형법상의 일반 고의살인, 강간치사, 지참금문제로 인한 사망(dowry death)/방화로 가장한 배우자살인(예, bride burning)¹³³⁾, 관습살인, 살인이 실연되는 영상물에서의 사망(death in snuff films), 특정한 특징을 가진 자에 대한 살인, 유아살인(infanticide), 태아살인(feticide)¹³⁴⁾, 존속살인(parricide)), 분쟁중 살인, 전투원간의 살인, 비전투원의 계획적 살인, 집중사격을 받은 비전투원의 사망, 대학살에서의 사망(무차별/임의적인 살인, 데모 및 집단 행사시의 살인/사망, 폭발물에 의한 무차별공격에 의한 살인, 경찰작전중 무차별발포에 의한 살인), 특정지역의 사망(예, 구금시설 및 유치장에서의 사망, 교정시설 또는 집단수용소에서의 몰살, 이송 및 강제 행진과 같이 이동중 사망, 피난지 및 소개명령지역 등에서의 사망), 원인미상의 사망, 설명되지 않은 사망, 살인 미수, 기타 직접적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고문 또는 가혹행위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신체적·심리적·성적 폭력의 형벌이 악화되어 자연사한 경우, 과실치사, 아사,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거부 당해 사망한 경우, 관련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망, 불구를 만

13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1950) 제2조 제2항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폭력을 행사한 결과 초래된 생명을 박탈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는데, 거기에는 불법폭력에 대한 방위, 적법한 체포와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탈출 예방 목적, 폭동 또는 소요를 진압할 목적으로 취한 적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132) EPEC는 △기본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 △의료서비스자원의 분배흐름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물질의 이용 및 장기매매와 복제를 금지하는 (회원국의) 입법비율 △장기매매 유죄확정수를 별도로 신체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의 잠재적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EPEC, 앞의 보고서, 같은 곳을 참조.

133)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생명권 박탈의 한 형태로 인도에서 주로 화재로 가장해 지참금을 가져오지 못한 어린 신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지참금을 이유로 살인하는 경우 또는 방화한 뒤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살인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Angela K. Carlson-Whitley, Dowry Death: A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under article six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http://www.law-li@utoronto.ca/Diana/fulltext/carl.htm>) 참조.

134) 태내에서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태아에 대한 살인 또는 낙태.

들고자 한 경우의 사망, 사고를 가장한(staged) 사망, 자살강요, 안락사, 오인사망)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예, 사형제),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사형제 부활),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검찰과 경찰의 범죄통계에 살인 등의 통계가 있지만, 실적 위주의 통계로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또는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의식적으로 통계에 반영한 항목은 거의 없다. 또한 단순히 연령, 발생장소, 교육, 성별 등 일반적인 범죄상황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이 통계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록 과거의 사건이긴 하지만, 민간인 학살사건이나 사범의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 및 법무부 등의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범죄' 중심의 통계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의 관련통계는 정확하게 사건으로 처리된 사례만을 의미하므로 통계상에 상당한 암수/암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각의 통계와 그 간행물에 명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통계들은 단순히 범죄 발생과 용의자 및 피의자의 검거, 기소 등 일련의 통계를 넘어 신고 되지 않은 사건 또는 국민의 사건해결만족도, 용의자와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통계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통 계 청	2
	보건복지부	36
	대 법 원	1
계		39

<표 3-2-1-2> 작성기관별 '생명권' 관련지표수 (단위 : 개)

1.2.2 평가

'생명권 침해'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 영역과 관련한 정부통계는 주로 질병에 의한 사망원인 등은 보건복지부가, 범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통계를 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질병과 관련된 통계는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통계와 그 예방에 관한 통계는 많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차별적이며 비인권적인 관행의 항목과 용어가 많이 있다.

범죄통계 가운데 살인의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정도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현행은 범죄자 파악항목이 요식적이고 특정지역을 명시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와 같은 업종 또는 같은 지역, 같은 나이 대에 속한 집단에 대해 혐오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제 수준의 범죄통계현황은 관할서에 보유하고 중앙 차원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범죄자 나이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 "범죄분석"과 대검찰청 "범죄분석"의 각 통계/지표에는 대상집단의 연령, 지역 등과 범죄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과거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자료를 재구성하고 사법외, 약식처형 그리고 현행법상의 사형선고자와 사형집행자 및 관련 통계를 포함시켜 생명권 존중을 위

한 하나의 통계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함.

- 과거 국가개입 생명권침해사건현황
- 국가가 직간접으로 관여된 생명권침해사건현황 및 침해
- 신고 되지 않은 사망사건표본조사
- 중대한 범위반(인권침해) 예방활동실적 및 성과지표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경찰과 검찰이 각각 발행하는 통계간행물인 '범죄분석'(두 기관의 제목이 같음)은 법원이 확정판결하기 전의 사건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통계간행물의 제목을 '범죄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함. 경찰과 검찰의 통계 또는 그 간행물의 명칭은 '형사사건통계' 또는 '형사사건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지표와 그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범죄자'라는 용어는 경찰단계(기소전 단계)의 통계인 경우에는 '용의자'로, 검찰단계(기소후 단계)에는 '피의자'로 각각 바뀌어야 함.
- 또한 '소년범죄자'와 관련된 지표에서 '소년'은 만 20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용의자'라고 하여야 함.
- '학생범죄자'의 범위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의 신분을 범죄와 연결시키는 차별적인 인식으로 보여 관련지표를 없애는 것이 타당함.
- 경찰의 '범죄통계'에서 말하는 '죄종별'도 법원처럼 '죄명' 정도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범죄분석'의 지표 가운데 '여성범죄자'라고 특별히 명기하는데, 이는 역으로 '남성범죄자'의 관련통계를 별도로 명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특별히 여성과 관련된 범죄와 개연성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저지른 범죄'(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통계를 내거나 지표를 둘 필요가 없음. 또 여성과 미성년자범죄와 관련한 지표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실부모, 계부모, 실부계모, 실부무모, 실모계부,

실모무부, 계부무모, 계모무부, 무부모, 미상으로 구분하여 지표항목을 내고 있는데, 전체 사건의 수와 실제로 위의 항목에 속하는 사건의 비율을 보면 범죄예방을 위하여 항목을 냈다기보다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로 보이고 차별적인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런 구분의 항목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함.

- 혼인하지 않은 성인인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부모와의 관계를 인적사항에 명기하도록 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함.¹³⁵⁾
- 이외에 차별적인 항목 또는 용어로는 범행시 정신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검찰과 경찰이 모두 “정신이상”, “정신박약”¹³⁶⁾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는 용어로 각각 “정신상실” 또는 “정신미약”으로 하거나, “정신장애” 또는 “정신지체”로 표현하여야 함.
- 우리 헌법은 자백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의 두 통계간행물은 자백여부를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음. ‘(일부/)자백’항목은 ‘범죄사실인정(/일부 인정)’으로 바뀌어야 함.
-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학력을 범죄와의 연관성 없이 표현하는 것은 학력적인 차별을 의미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용의자와 피의자의 연령대를 구분한 것도 단순히 10년 단위로 하고 있어 수사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군에 속하는 연령대의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경향은 개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 연령이나 학력은 범죄 또는 그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재조정해야 함.¹³⁷⁾

135) 대검찰청, 범죄통계개선시행(대검기획 61101-571, 2001. 5. 14), p. 23 참조. 또한 동 ‘개선시행’ 및 통계에 나타난 비인권적인 용어 또는 항목 가운데 ‘계모’를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후처’라고 하고 계부를 설명하면서 ‘어머니가 다시 얻은 남편’이라고 하여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각각 ‘아버지의 새 부인’ 또는 ‘어머니의 새 남편’이라고 해야 하며 ‘미혼’은 ‘비혼’으로 바뀌어야 한다.

136) 검찰의 경우, ‘정신박약’의 경우를 ‘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 저능자’로 설명하고 있으며, ‘기타 정신장애’를 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 변태성욕자 등)로 설명하고 있어 차별적인 의식이 심각하게 드러난다; 대검찰청, 위의 공문. p. 22.

137) 예를 들어 형법상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14세 미만, 미성년자, 특히 유엔에서 말하는 아동의 범위에 속하는 18세 이하, 연소자에 해당하는 19세(음비법 등에 의한 연령), 20세 이상의 경우는 해당죄명과 유사한 연령구분이 필요하다.

- 반드시 해당지표들에는 예를 들어 “해당집단에 속하는 국민이 이 지표의 제목이나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통계년도의 범죄상황을 표현한 것임”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삽입하여야 함.

1.3 신체의 자유와 안전

신체의 자유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구속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음 없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즉 신체활동의 자유를 의미한다.¹³⁸⁾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다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중요한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체포·감금 등)은 이미 신체에 대한 훼손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¹³⁹⁾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 신체의 자유는 인신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강조된다.¹⁴⁰⁾ 이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즉 안전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따라서 자유와 안전(liberty and security)은 동전의 양면이다.¹⁴¹⁾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박탈된 상태 이외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신체의 안전은 또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으로 화재, 각종 자연재해,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할 자유가 포함된다. 여기서는 국가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주로 다룬다.

신체의 자유의 보호 방법, 즉 국가로부터 신체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게 될 법절차적 권리에서 다룰 것이다.

1.3.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불법 및 위법한) 체포·구속, 압수·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및

138) 장영수, 앞의 책, p. 275.

139) 장영수, 위의 책, 같은 곳.

140) 장영수, 위의 책, 같은 곳.

141) J.E.S. Fawcett, *The Applic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Oxford: Clarendon Press, 1987) p. 70;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p. 375-376에서 재인용.

강제노역

- 정신지체장애자 또는 전염병감염인의 예방적 격리, HIV-AIDS감염인 다수인보호시설
- 자의적 구금¹⁴²⁾, 납치, 적법하지만 합리적이고 필요성이 없는 구금, 자연재판
- 지연된 난민심사, 외국인보호, 추방, 강제출국, 고지의무,
- 일시구금조치(interim custody measure),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적 감시,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예방적 구금
- 강제실종(forced disappearance)
- 각종 화재, 자연재해, 범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권리

② (잠재적) 관련내용¹⁴³⁾

- 직접침해 : 외국인 추방사안의 재심기회 박탈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는 주로 안전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공권력집행기관들이 주로 범질서 또는 범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직무범위에 속한 사업실적을 축적 또는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얼마나 억제했고 안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거의 없다.

142)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는 경우 △의사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평화로운 집회 등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자유권조약에서 규정한 개인의 권리행사문제를 초래하는 소송의 결과인 경우 △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 경우 가운데 한 가지 이상 관련이 있으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채택하였다.; Nial Jayawickram, 앞의 책, p. 377에서 재인용.

143) EPEC는 △재판 없는 구금건수 △위법체포에 대한 제소건수 △재소자 가운데 청소년의 범위 △재판 전 구금평균기간의 변화를 잠재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EPEC, 앞의 보고서, 같은 곳을 참조.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통계청	48
	법무부	17
	건설교통부	2
	해양수산부	8
	경찰청	18
	검찰청	49
	식품의약품안전청	24
	소방방재청	30
	한국철도공사	3
	대법원	7
	한국여성개발원	1
	계	207

<표 3-2-1-3> 작성기관별 '신체의 자유와 안전' 관련지표수 (단위 : 개)

1.3.2 평가

'신체의 자유와 안전' 영역의 공적 통계는 방대하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특정한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통계간행물에서는 앞의 '생명권' 에서 논의한 대로 기존관행을 극복하고 관련 통계와 지표를 마련하고 비인권적이거나 차별적인 항목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설·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찰, 경찰, 소방방재청, 법무부 등이 관할하고 있다. 이 분야의 통계는 주로 범위반자(또는 사건) 관련통계와 화재, 자연재해, 구조활동, 교통, 보호관찰이 주된 영역이 되는데, 통계의 성격이 주로 관련부서의 자기업무에 대한 축적 또는 실적에 대한 기록(records)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보고한 보고통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는 국민 또는 이용자의 만족도조사나 국민인식조사와 같은 조사통계가 거의 없다. 즉, 국

가의 직무에 대한 인식은 관리적인 측면에 있고 국민의 인권에 눈높이를 맞추려는 인식이 통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정신지체장애자 또는 전염병감염인의 강제적 예방조치(이른바 예방적 격리)현황
- 집회·시위 시 경찰의 예방적 일시구금조치(interim custody measure)현황 및 불법감금현황
- 보호처분된 외국인의 기간별 보호현황
-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관련민원인 만족도조사
- 뺑소니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실적 및 내용
- 장애인(및 저소득자)의 운전면허응시율/합격률/면허취득률/활용률 및 장애인운전교육에 대한 지원실적
- 교통경찰관 1인당 1일 평균현장근무시간
- 교통경찰관 1인당 담당차량수
- 순찰지구대 범죠태제(예방)지표
- 경찰관 1인당 1일 단속/순찰평균시간
- 성폭력피해자(/일반범죠태제)현황 및 사건처리 만족도조사
- 화재예방활동의 유형별 실적
- 구급/구조활동에 대한 만족도조사
- 보호관찰자의 민원 및 진정사건처리결과에 관한 통계
- 시·군·구별 화재발생 시(/화재 신고 시)부터 현장도착시간현황
- 아동실종현황
- 납북자(/월북자)실종현황
- 군내 폭행사건피해자현황
- 군복무중 실종 및 군무이탈자현황
- 공무상 상해를 당한 경찰, 군인 및 공무원현황
- 구속사건 중 무죄판결건수 및 평균구금일수
- 구속사건 중 재판을 받지 않은 사건(불기소, 기소유예 등 포함) 및

평균구금일수

- 위법체포에 대한 진정/제소건수
- 청소년수형자 황
- 확정판결 전 피의자평균구속기간 및 변화에 관한 통계
- 체포영장/구속영장기각률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전체적으로 관리와 실적 위주로 관련항목이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비인권적임. 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함.
- ‘연도별 불법무기자진신고 및 색출실적’은 자진신고와 경찰의 자체 노력인 색출실적을 구분하여야 함.
- 범죄통계와 관련해서는 1-2 생명권영역의 ③ 평가 부분과 동일함.

1.4 강제노동과 노예 금지

인간은 누구든지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¹⁴⁴⁾는 금지된다.¹⁴⁵⁾ 아울러 어느 누구도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 조건부 석방으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된 경우, 병역 및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인 역무¹⁴⁶⁾를 제외하고는 강제노동을 요구받지 않는다.¹⁴⁷⁾¹⁴⁸⁾ 노예나 예속상태는 개인의 지위와 삶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며, 강제노동(forced or compulsory labour)은 수행하는 노동과 용역을 특징짓는 기술적인 용어이다.¹⁴⁹⁾

144) 노예제도, 노예거래 및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의 철폐에 관한 ILO 보충협약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1956)에서는 △부채예속(debt bondage) △농노(serfdom) △대가를 전제로 본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여성의 혼인, 아내 및 자식의 양도, 미망인의 상속 등의 제도 또는 관행 △부모 또는 후견인의 18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위한 입양에 관한 제도와 관행 등을 총체적으로 예속적인 지위(servile status)로 보고 있다.

145) 세계인권선언 제4조, 국제자유권조약 제8조 제1항과 제2항.

146) 의무소방활동, 서비스를 대신한 의무적 부담금의 부과 등이 있다.

147) 국제자유권조약 제8조 제3항.

148) ILO협약 제1095호(강제노동철폐협약,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1957).

1.4.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강제노역, 사회봉사명령, 대체복무, 벌금, 예비군/민방위동원, 공익근무요원
- 성적 착취, 아동노동, 섹스관광, 인신매매
- 시설수용자의 사실상의 강제노역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우리나라에서 노예제는 부정되고 강제노동은 법률에 의해서 부과된다. 이 영역은 자유권과 관련되는데, 비교적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영역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지표는 거의 없다. 또 항목도 관리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 강제노동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 특히 국가가 부과하는 군역의 일환으로 사실상 비자발적인 노동을 하거나 군복무중에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공식통계가 전무하다.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법 무 부	23
계		23

<표 3-2-1-4> 작성기관별 '강제노동과 노예 금지' 관련지표수 (단위 : 개)

1.4.2 평가

강제노동의 금지는 국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영역에서 행해지는 모

149)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 357.

든 형태의 노예제도의 금지를 의미하는데, 국가영역에서 합법 또는 불법 강제노역에 대한 적절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사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제노역에 대한 국가의 조사통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 고발 또는 입건된 사건의 통계도 불비한 상태다. 법원에 의한 사회봉사명령 정도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으로 강제노동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는', 즉 비자발적인 형태의 모든 노동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의식이 부족한 상태의 반영이다. 군복무와 관련한 비자발적인 노동과 합법적인 강제노동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것인 만큼 별도의 통계 또는 지표를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강제노역자의 노임지급실태와 노임의 적립방법에 관한 통계
- 벌금을 대신하여 강제노역을 하는 자의 수
- (생계 등을 이유로 한) 예비군/민방위동원 거부자수
- 공익근무요원의 현황과 근무실태통계
- 군복무시 비군사적인 영역의 노동이 이루어진 횟수(예, 제설작업, 홍수피해복구, 산불진압 등에 예외 없이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경우)
- 섹스산업의 현황과 종사자(특히 미성년자)의 인권실태조사통계
- 시설수용자의 (사실상의) 강제근로와 임금지급현황
- 실업계고등학생의 취업연수근무실태
- 유해환경에 노출된 아동의 수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해당사항 없음>

1.5 고문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torture)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cruel) 비인도적이거나 (inhuman) 굴욕적인(degrading) 대우나 처벌(treatment or punishment)을 받지 아니한다.¹⁵⁰⁾ 여기서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원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¹⁵¹⁾를 말한다. 고문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의 심각하고 고의적인 형태(an aggravated and deliberate form)로 구성된다.¹⁵²⁾ 반대로 잔인하거나 비인간적¹⁵³⁾이거나 굴욕적인¹⁵⁴⁾ 처우는 고문의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행위¹⁵⁵⁾를 의미하지만, 이들 개념의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형법에는 가혹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고문 등은 국제자유권조약 제 10조 제1항의 구금자의 생명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규정을 보충하며, 고문당사자가 내외부공무원이든 사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¹⁵⁶⁾ 또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인 사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정보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¹⁵⁷⁾ 사람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right to personal integrity)의 침해로는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 처형기도

150) 세계인권선언 제5조, 국제자유권조약 제7조, 고문방지조약.

151) 고문방지조약 제1조 제1항.

152) 유엔총회결의문 제3452호(XXX)(1975년 12월 9일).

153) 흉악(atrocity) 또는 적어도 야만(barbarity)에 이르게 하는 어떤 것. Mark W. Janis, Richard S. Kay, Anthony W. Bradley, *European Human Rights Law: Text and Materials*,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p. 129.

154)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모욕하거나 격하시키거나(humiliating or lowering as to human dignity) 또는 오물 등을 뿌리거나 낮선 사람 앞에서 알몸으로 열병시키거나, 배설물을 강제로 먹게 하거나 자신의 국가원수의 초상을 훼손시키게 하거나 조롱을 야기시킬 것을 계산하여 옷을 입게 하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로 형성된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위의 책, pp. 123-132를 참고.

155) 고문방지조약 제16조 제1항 참조.

156)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20(1992), para 2.

157) UN, *Manual Human Rights Reporting*(1997), p. 199.

(attempted execution)의 3가지 범주가 있다.

1.5.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고문, 가혹행위, 직권남용, 처형기도
- 구타, 잠 안 채우기, 음식물 안주기 등의 고문방법, (고문의 한 형태로의) 강간
- 사형수, 수형자
- 외국인, 군대

② (잠재적) 관련내용¹⁵⁸⁾

- 직접침해 : 가정폭력 등 신체적 폭행(physical assaults), 성폭력, (특히 여성의) 생식기훼손, 단순협박(피해자협박, 피해자가족협박, 피해자의 지인 및 동료에 대한 협박 포함), 죽음협박(피해자에 대한 죽음협박,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죽음협박, 피해자의 지인 및 동료에 대한 죽음협박 포함), 감시, 추적(stalking), 성적 괴롭힘, 신체적·성적·심리적 폭력(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추행, 고문), 대량검거 또는 통행금지 등 집단처벌, 시설수용자에 대한 폭행 및 성폭력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해당통계/지표 없음>

1.5.2 평가

158) △특정 상황에서의 고문을 금지하는 강행입법건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는 강행입법을 가진 (국가의) 비율 △독립된 전문가의 우려사항.

이 영역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주로 공권력 집행기관에서 발생하는 고문 등은 민주주의가 이행되면서 예외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예외적인 상황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상황 변화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고문 등이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곧 그런 의식이 완전히 불식되었거나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미약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암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은 자들을 상대로 한 이 분야의 조사통계가 있어야 한다.

이 분야의 통계지표는 그 발생이 아주 미미하더라도 통계를 잡는 것 자체가 친인권적인 국가행위의 관행을 만드는 일이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공무원의 고문 및 가혹행위사건통계
- 사형확정자의 현황(사회경제적 지위 포함)과 처우에 관한 통계
- 수사 또는 조사 시 가혹행위 및 고문, 협박, 폭행, 폭언 등의 강박을 받았거나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건수 또는 진정/제소건수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1.6 법 앞에 평등

법 앞에 평등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차별에 대해서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는 개념을 포함하며,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¹⁵⁹⁾ 법 앞에 평등은 국제자유권조약 제2조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동등한 보호를 포함하는 독자적이고 실체적인 권리이다.¹⁶⁰⁾ 어떠한 차별도 없

159) 국제자유권조약 제26조 참조.

이 법 앞에 평등할 권리는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와 마찬가지로 인권 보호와 관련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성한다.¹⁶¹⁾ 따라서 국가가 입법을 할 때에도 법 앞에 평등이 적용된다.¹⁶²⁾ 여기서 ‘법’은 법 그 자체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¹⁶³⁾ 법의 동등한 보호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의 내용과 적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공공재산과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the right of access to public property and services)¹⁶⁴⁾을 포함한다.

1.6.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법적용조건의 평등, 법의 동등한 보호, 차별에 대한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 혼인, 공무원, 초등학생, 혼인외 출생(illegitimacy), 국적, 경제적 신분 장애, HIV감염인
-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¹⁶⁵⁾
- 특권금지, 열등하거나 적대적인 집단/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공공재산 및 서비스를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

② (잠재적) 관련내용¹⁶⁶⁾

160)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18(1989), para 12.

161)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18(1989), para 1.

162)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18(1989)을 참조.

163)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 821.

164)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이하 아프리카인권헌장) 제13조 제3항.

16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차별금지대상에서 위의 개념어그룹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것임.

166) △차별관련진정 및 소송건수 △소수자집단 중 고용된 수 △장애인 가운데 장기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16-64세 사이의 인구비율 △혐오·선동금지입법의 존재여부.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해당통계/지표 없음>

1.6.2 평가

법 앞에 평등은 일반적인 관행 속에서 구현되는 경우와 법률 등의 법령으로 이러한 평등을 실현하는 경우로 구별하는데, 전자의 문제는 국가권력의 행사 또는 미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사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실체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차별 일반을 포괄¹⁶⁷⁾하기 때문에 차별영역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통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차별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차별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상당하다. 전염병예방 또는 테러예방 등의 일시적인 형태로 특정집단을 차별대우하는 것에 관한 통계를 잡지 않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일 수 있다. 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이유로 권리가 유보되거나 행사를 억제당한 사례 또는 집단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부당한 차별조치의 남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유형별 차별관련민원(국가기관 일반), 진정(국가인권위원회) 및 제소(법원) 또는 고발(경찰 또는 검찰)건수
- 기업활동과 관련된 차별인식조사
- 16세~64세 사이의 만성장애인 인구비율
- 특정병력환자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물에 특정시간,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167)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여성통계연보”가 대표적이다.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예, 자체 행사를 이유로 한 공공서비스의 지연 또는 거부)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인간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기초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강화·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인권법상 국제자유권조약으로 명문화되면서 그 권리가 실체화되었다.¹⁶⁸⁾ 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자유를 중심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억압이나 폭력 또는 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¹⁶⁹⁾ 넓은 의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자유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및 신체보존권과 법절차(/집행)적 권리,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포괄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인간의 존엄과 법적 권리(legal rights)를 제외한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2.1 시민적 권리

시민적 권리는 국가나 개인으로부터 특정한 삶의 공적·사적 영역을 간섭받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시민적 권리는 비정치적인 권리로 자유와 처우에 있어서의 평등을 확보하여 시민사회에서 개인(persons)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입법을 통해서 보장된다. 하지만 내재적인 시민적 자유는 입법으로 규정되든 폐기되든 상관없이 국제자유권조약에서 규정하는 보편성이 적용된다.¹⁷⁰⁾

2.1.1 사생활의 자유

168) John S. Gibson, 앞의 책, p. 42-43.

169)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권백서 제1집”, p. 17.

170) Rita Cantos Cartwright and H. Victor Conde, "Human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 Dictionary and Documents, p. 27(2000, ABC-CLIO, In③, California).

사생활은 개인의 인격과 직접 연결되면서 공적인 관련성이 적은 영역이다. 사생활의 자유는 가정(family), 주거(home) 또는 통신을 포함한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인(/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며, 그러한 간섭과 공격(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¹⁷¹⁾ 여기서 '불법적'(unlawful)이라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¹⁷²⁾, '자의적 개입'(arbitrary interference)도 법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¹⁷³⁾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거(home)는 거주하거나 직업을 수행하는 장소¹⁷⁴⁾이자, 독점적으로 사용·거주하고 있는 사적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¹⁷⁵⁾ 여기서 통신이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행해지는 의사(=정보)의 교환을 총칭하며, 따라서 통신은 의사전달의 수단이며, 의사표현의 한 형태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¹⁷⁶⁾

사생활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때에도 관련 입법은 개입을 허용하는 명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사례별로 하여야 한다.¹⁷⁷⁾ 또 공공기관이나 사적 개인 또는 집단이 컴퓨터, 데이터뱅크, 기타 장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유는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¹⁷⁸⁾ 사생활의 자유는 독자적인 인격권으로 인정된다.¹⁷⁹⁾ 정확하게 말해서 사생활의 자유는 특정한 '사생활의 영역'(zones of privacy)을 보장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생명권과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헌적으로 법원이 발전시켜 온 개념이다.¹⁸⁰⁾

2.1.1.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171) 세계인권선언 제12조, 국제자유권조약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참조.

172)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6(1998), par① 4.

173)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6(1998), par① 5.

174)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6(1998), par① 5.

175) 장영수, 앞의 책, p. 301.

176) 장영수, 위의 책, p. 306.

177)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6(1998), para 8.

178)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6(1998), para 10.

179)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 599.

180)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같은 곳.

- 인격권,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자기정보결정(/통제)권
-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 (불법)도청, 감청, 검열, 감시, 압수/수색영장
- 피해구제방법
- 사적 주거지의 침입, 사적 문서의 탐독, 사적 대화의 경청, 미행, 도청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적인 사실의 폭로
- 컴퓨터, 데이터뱅크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유, 데이터보호 아이디어의 도용
- HIV감염자, 동성애자, 전과, 인간관계 등 개인정보의 탐지 및 폭로
- 용의자의 동의가 없는 혈액 및 머리카락의 샘플링
- 신분확인, 가족관계
- 사생활형성권, 혼인 및 가족형성, 동성(同性)결혼, 명의도용으로 인한 결혼, 강제결혼, 혼인해소가정의 자식에 대한 보호

② (잠재적) 관련 내용¹⁸¹⁾

- 직접침해 : 명성(reputation)에 대한 침해(명예훼손(defamation), 구두 비방(slander), 문서에 의한 비방(libel)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181) △승인된 용의자 감시 요청 건수 △강제퇴거(deportation)의 결과로 헤어진 가정 수 △강제퇴거 뒤 재결합한 가정 수 △통신의 사생활을 침해(intrusion)로 인한 진정(/소송) 건수
△등록된 데이터 침해(/명의도용)에 대한 진정(/소송) 건수 △데이터 등록자의 파괴로 인한 변경 요청 건수
△동성 결혼 건수 △등록된 동거자 또는 혼인 건수 △명의도용 결혼 적발 건수 △강제 결혼 적발 건수.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정보통신부	15
	병 무 청	1
계		16

<표 3-2-2-1> 작성기관별 '사생활의 자유' 관련지표수 (단위 : 개)

2.1.1.2 평가

사생활의 자유영역은 광범위하다. 따라서 관련 통계 또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적 통계가 그렇듯이 이 영역의 통계도 인권침해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 속에서 제정된 정보통신분야의 법률에 근거해 작성되는 통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맥락에서의 통계나 지표는 매우 드물다. 정보통신방법에 의한 통계의 경우도 보고형식의 단순사업실적을 반영하고 있을 뿐 권리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맞는 지표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승인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상의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개인정보의 확인 및 수정요구건수
- 행정기관 등의 보유데이터베이스 및 공동이용현황건수(년간)
- 행정기관 등의 보유데이터베이스 해킹 및 도용건수
- 개인신용정보의 도용건수
- 내사종결사건의 통화내역조회횟수
- 각종 민원서류의 발행실적(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 금융기관의 인터넷개인정보 공유실태와 유출건수
- 개인정보(특히 신용불량자)의 불법매매현황
- 각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실적과 유출건수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시 신청건수 당 대상자와

관련자의 전화번호의 수 및 통신자료대상의 평균건수

- 통신업소의 사생활관련대행에 관한 실태조사
- 휴대용전화번호 및 주민번호의 도용실태
- 환자의 진료기록 및 병력(病歷)유출현황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병무청이 발행하는 ‘징병신체검사통계’ 중 ‘역종별, 신체등위별, 학력별 현황(종합)’지표에서 불합격자의 항목으로 ‘신분결함’, ‘신체결함’이 있음. ‘신분결함’에 속하는 자는 수형자,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등 법적으로 병역대상자가 아닌 자인데, 이 집단에 속한 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하하는 항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역면제판정을 받을 집단이나 이에 속하는 자를 ‘신체결함’이라고 적시함으로써 비하하고 차별하고 있음. 따라서 ‘신분결함’항목은 ‘(병역)제외대상’, ‘신체결함’은 ‘신체적 곤란’ 또는 ‘신체불합치’ 등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징병검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는 과정에서도 대졸자 이상과 고졸자 이하의 학력자를 구별함으로써 징병대상자가 고학력자임을 확인하는데, 이는 징병대상자를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등급에 따라 확정하는 현행제도¹⁸²⁾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회를 덜 가진 집단 및 대상자를 간접차별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2.1.2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영토 내에서 이동의 자유, 영토 내에서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자국을 포함한 특정국가를 떠날 권리와 자국으로 귀환할 권리가 포함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도 이런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망명권도 여기에 속한다.¹⁸³⁾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동의 자유(freedom of

182) 병무청은 2004년부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등으로 고등학교 중퇴자와 중학교 졸업자 중 신체등위 1~3급자를 현역대상으로 판정한다; 병무청, 보도자료(2004년도 징병검사 결과), 2004년 12월 3일자 참조.

183) Nihal Jayawickram, 앞의 책, p. 441.

movement)를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서술하고 있다.¹⁸⁴⁾

2.1.2.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이동
- 세입자 등의 일시적인 부재, 주민등록
- 여권발급의 거부, 출국자가족의 불이익금지, 전투지역 및 적성국가 등 특정지역 및 국가로의 출국제한조치
- 망명, 난민¹⁸⁵⁾, 실향민, 새터민, 난민의 귀환권, 대규모강제이주의 금지
- 국가안보, 공공안전 및 범죄예방, 공공보건, 공공도덕(성매매 목적 관광), 미성년자
- 외국인추방, 자의적 추방의 금지, 추방외국인의 권리¹⁸⁶⁾

② (잠재적) 관련 내용

- 직접침해 : 유배(internal exile), 추방(exile), 퇴거(eviction), 전환(displacement), 봉쇄하기(blockading), 여행제한, 귀환권(right to return)의 부인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 차별행위 : 여성의 실질적인 이동제한, 성별에 의한 차별정책

184)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7(1999).

185) △조직적 난민의 수 △이의절차신청자수 △단독미성년자인 난민신청자수 △단독 미성년자인 난민승인자수.

186)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정서(서명일: 1984년 11월 22일, 발효일: 1988년 11월 1일) 제1조 제1항에는 합법체류외국인은 자신의 추방조치에 대해서 △이의제기권 △사건재심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국과 당사자 앞에 출두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외의 여행의 자유 등 이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공식통계들은 주로 외국인, 전염병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격리와 관련이 깊다. 또한 강제철거도 이 영역에 속하지만 뒤의 적절한 생활을 향유할 권리에서 검토한다. 이동수단의 적절한 제공 및 주민등록법상 거주지의 이동도 이 영역에 속한다. 공식통계는 주로 행정적인 기록을 수집한 자료로 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관련지표수		
작 성 기 관	통 계 청	60
	법 무 부	16
	건설교통부	15
	해양수산부	8
	한국철도공사	1
계		100

<표 3-2-2> 작성기관별 '거주이전의 자유' 관련지표수 (단위 : 개)

2.1.2.2 평가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퇴거외국인의 재입국률
- 강제출국대상자 또는 보호조치대상자의 이의신청건수와 수용율
-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보호조치 제외)
- (고용허가제상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작업장이전신청건수와 불허된 건수
- 취업목적의 내국인출국현황 또는 장기해외체류자현황
- 특정전염병자와 감염인에 대한 격리조치건수와 그 조치에 대한 민원/이의신청/진정/고발/제소건수

- 장애인의 이동수단별 현황과 동행 등의 지원현황
- 장애인의 접근과 관련한 (목표 대비) 개선실적현황
-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 받는 자의 이 분야 개선만족도
-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4조의 거주지이동상황 신고이행실태 및 처벌상황
- 주민등록직권말소건수와 이에 대한 민원/이의신청/진정/고발/제소건수
- 국내(또는 국제)여객선 및 여객항공기의 취항, 취소, 결항률 및 국민의 불편제기현황
- 내국인의 국가별 비자신청과 발급건수(/비율)
- 외국인의 비자신청과 발급거부건수(/비율)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2.1.3 국적취득권

국적과 관련된 권리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국적을 바꿀 권리 등이 포함된다.¹⁸⁷⁾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지며,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¹⁸⁸⁾ 아동의 국적취득권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무국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아동이 합법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으며, 부모가 무국적인지의 여부도 상관없다.¹⁸⁹⁾ 여성은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하는데 남성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외국인과 결혼 또는 혼인중에 남편의 국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국적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무국적으로 되거나 남편의 변경된 국적을 강제 받지 않으며, 그 자녀도 국적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¹⁹⁰⁾

187)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참조.

188) 국제자유권조약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아동권리조약 제7조 제1항 참조.

189)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7(1989) par① 8.

2.1.3.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무국적자, 이중국적자, 내국인, 외국인, 귀화
- 국적취득, 국적변경, 국적보유
- 신생아, 아동, 친권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해당통계/지표 없음>

2.1.3.2 평가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내국인의 국적이탈자수(국적취득국별)
- 재외교포(국적이탈자 포함)의 국적회복자수
- 외국인의 귀화신청건수와 승인수 및 비율
- 미등록이주노동자 아동의 국적 또는 영주권취득건수
- 내국인 아동의 해외국적 또는 영주권취득건수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2.1.4 아동의 권리

국제인권법상으로 아동은 특별한 주의와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190) 여성차별금지조약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18세 미만을 성인으로 취급하는 법률이 없을 때에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¹⁹¹⁾ 아동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갖고 있으며, 아동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보호는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아동은 자신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 부모, 법적 후견인 및 가족의 상황에 기초한 차별로부터 보호된다.¹⁹²⁾ 공사기관들이 수행하는 아동 관련 일체의 행위에는 아동들의 이익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¹⁹³⁾ 생명, 생존 및 발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인 발전이 완전히 보장¹⁹⁴⁾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존중¹⁹⁵⁾하여야 한다. 또 국가는 아동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유해로부터 보호¹⁹⁶⁾, 전쟁 및 분쟁중의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 장애아동의 특별한 처우·교육·주의에 대한 권리, 건강, 무상초등의무교육, 경제적인 착취로부터의 보호¹⁹⁷⁾, 일체의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의 보호, 15세 미만 아동의 군대충원금지 등을 하여야 한다.¹⁹⁸⁾

2.1.4.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특별한 보호, 아동수형자
- 의사에 반하는 가족과의 분리, 불법이송(illicit transfer),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학대, 경제적 착취,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사용, 아동의 유기, 매매, 성매매
- 유해환경의 제거, 무상초등의무교육
-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방임
- 아동의 여가

191) 아동권리조약 제1조;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s No. 17(1989), par① 1.

192) 아동권리조약 제2조.

193) 아동권리조약 제3조.

194) 아동권리조약 제6조.

195) 아동권리조약 제12조.

196) 국제사회권조약 제10조 제3항.

197) 국제사회권조약 제10조 제3항.

198) 국제자유권조약 제24조 제1항.

② (잠재적) 관련내용¹⁹⁹⁾

- 직접침해 : 아주 낮은 최소 노동연령, 혼인외 아동에 대한 차별, 외국인의 가족상봉기회박탈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정부 통계는 아동의 권리에 기반하기 보다는 복지의 대상으로 보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는 차원에서 통계가 작성되어 있다.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지표’에 청소년의 고문문제와 입양아동지표를 수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통계에 아동건강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지표에 기반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아동상담소에 관한 일반사항과 실적들에 관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소년범죄자 및 여성소녀범죄자에 관한 사항의 통계를, 법무부는 소년수형자, 대법원은 보호소년에 관한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통계로 유지하고 있다.

관련지표수		
작 성 기 관	통 계 청	4
	법 무 부	3
	교육인적자원부	4
	보건복지부	15
	검 찰 청	11

199) EPEC, 앞의 보고서 부록, p. 18.

	대 법 원	16
	계	53

<표 3-2-2-3> 작성기관별 '아동의 권리' 관련지표수 (단위 : 개)

2.1.4.2 평가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미성년자의 형사입건(또는 형확정자, 미성년가장의 수 등)
- 미성년가장 중 형사입건수
- 원인별 미성년수형자 중 재범(/누범)비율
- 미성년수형자의 부과징역형별 현황
- 미성년수형자의 부모 및 후견인, 기타 관계인의 면회횟수
- 수용시설 또는 보호시설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의 실태조사
- 수용시설 또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비자발적인 노동실태
-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자녀의 부모상봉제한건수
- 아동(또는 미성년)가장의 병원이용률(비교)
- 아동상담소이용자의 만족도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범죄분석'에서 아동을 '소년'으로 통칭하거나 '여성소녀범죄자'를 특별히 구분한 것은 남녀차별의 관행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미성년' 또는 '아동'(/'어린이')²⁰⁰⁾로 고치고 성별분리 통계가 필요하다면 남녀별로 통계내는 것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 '여성소녀범죄자 처분결과' 지표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함.
-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보건복지 통계연보' 가운데 '요보호아동현황보고' 통계에서 '아동상담소 상담아동발생유형' 지표의 항목을 '비행·부랑아, 기아, 학대·방치아, 미아, 일반아동, 기타)로 표시하고 있는

200) 아동권리조약에서 아동은 만 18세까지를 의미한다.

데, 일반아동과 다른 아동을 구분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 지표 자체의 적절성도 문제가 되므로 지표에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의 위 통계에서 '아동상담소 상담아동발생배경'지표의 결손가정, 결합가정, 영세가정, 일반가정, 복합상태가정 등 항목은 차별관행의 극단적인 형태로 특정집단에 대한 이유 없는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거나 문제시하므로 완전 개편되거나 관련지표가 삭제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의 위의 통계에서 '미혼모부모'라는 항목은 삭제되어야 함. 아동에게는 부모일 뿐이기 때문임.
- 법무부 교정국의 '재소자수용'통계 가운데 소년수형자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미성년수형자' 또는 '아동수형자'로 바뀌어야 함.
- 대법원 "사법연감"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관련지표들에 나타나는 '보호소년'의 지표명이나 항목 모두 '보호미성년' 또는 '보호아동'으로 바뀌어야 함.
- 대법원의 위 간행물에서 '보호소년 교육정도별 인원'지표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2.1.5 재산소유권

세계인권선언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the right to own property)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²⁰¹⁾ 가장 논란이 많은 인권의 한 영역이다.²⁰²⁾ 재산소유가 자연권인지의 여부와 사적 재산(private property)이 근대사회의 토대인지 아니면 근대사회의 만약의 뿌리인지를 둘러싼 근본적인 철학적·이념적인 차이로 인해 통일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²⁰³⁾ 이런 맥락에서 국제사회권조약과 국제자유권조약에서는 이 권리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²⁰⁴⁾.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생존수단(means of subsistence)을 박탈할 수

201)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202) David Robertson, "A Dictionary of Human Rights"(1997: Europa Publications Limited), p. 163.

203) David Robertson, 위의 책, 같은 곳.

204) Nihal Jayasickrama, 앞의 책, p. 909.; David Robertson, 위의 책, 같은 곳.

는 없다.205) 유럽206), 미주207), 아프리카208) 지역 인권문헌에서는 각각 소유 재산 향유권, 재산이용 향유권, 재산권으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 권리를 영업의 자유(freedom of conduct a business)까지 확대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재산(property)의 개념과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 재산수용(expropriation)시에 보상권의 형성에 관한 의견도 다양하다. 다만, 사적 재산의 몰수(confiscation)와 보상지급을 하지 않은 재산박탈의 경우는 국제자유권조약 제26조에 열거된 차별사유 가운데 ‘재산’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09) 특허 및 상표권과 같은 형태의 재산권은 뒤에서 다룬다.

2.1.5.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재산, 공익재산, 소유
- (유/무상)몰수, 환수, 수용, 박탈, 정당한 보상
- 공공이익, 금융기관의 채권, 조세

205) 국제사회권조약 제1조 제2항, 국제자유권조약 제1조 제2항 후단을 참조.

206)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조약 제1추가정서(서명일 : 1952년 3월 20일, 발효일 : 1954년 5월 18일) 제1조 제1항에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의 소유재산의 평화적 향유(peaceful enjoyment of his possessions)를 보장하고, 자의적인 박탈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국가는 일반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세금이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률을 시행할 권리를 가진다.

207) 미주인권아동권리조약 제21조 제1항에서 개인의 재산사용권과 향유권(the right to the use and enjoyment of his property)을 인정하고 사회이익으로 법률유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공의 이용이나 사회적 이익으로 인한 권리행사가 어려운 때에는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을 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항에서는 고리대금 및 기타 형태의 사람의 착취를 법률로 금지시켰다.

208) 아프리카인권헌장 제14조는 개인의 재산권(right to prosperity)을 보장하면서 공공의 필요(public need)와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익(general interest)을 위하여 적절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9) Simunek v. The Xzech Republic,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516/1992, HRC 1995 Report, Annex X.K. 재인용, Nihal Jayasickrama, 앞의 책, p. 910에서 재인용.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절도 등에 의한 부정한 이익(looting), 문화재 및 예술품 파괴(vandalism), 건조물 등의 파괴, 금품강요 등 강탈(extortion), 건축허가의 거부, 토지권리증과 기타 재산증빙서류의 압류(confiscation), 재산(가)압류, 토지수용(land expropriation)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재산소유권과 관련한 공적 통계는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자동차의 소유여부를 부과한 정도의 통계가 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재산소유제한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통계는 없다.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행정자치부	5
	농림부	5
	건설교통부	20
	산림청	9
	대법원	14
계		53

<표 3-2-2-4> 작성기관별 '재산소유권' 관련지표수 (단위 : 개)

2.1.5.2 평가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자동차등록거부현황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거래불허처분에 대한 소송 및 위헌신청 건수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거래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 및 위헌신청

사건에서 원고건수 및 승소율

- 강제경매물건의 현실가와 낙찰가의 비율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소송건수
- 금융기관의 담보주택 및 담보토지에 대한 압류 또는 강제매각건수
- 토지이용에 관한 분쟁건수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2.1.6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이 영역은 사상²¹⁰⁾, 양심²¹¹⁾, 종교 및 신념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general right*)²¹²⁾와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 등으로 이를 표명할 자유라는 구체적인 권리의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종교 및 신념을 갖지 않거나²¹³⁾ 선택의 자유와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²¹⁴⁾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변경시킬 자유도 보장된다. 여기서 종교는 유일신교, 무신교, 다신교 등을 상관하지 않고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²¹⁵⁾, 신생종교 및 소수종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권리로서의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는 '절대적'(absolute)이며, '신성하고'(sacred), '침해할 수 없는'(inviolable) 것으로 간주되며, (내면적인) 사상 및 (도덕적인) 양심, 보편자·창조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제한을 가할 수 없으며, 종교 또는 신

210) 올바른 사회질서에 대한 주장이나 견해, 즉 세계관적 입장을 뜻한다. 장영수, 앞의 책, p. 335를 참조.

211) 선악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뜻하며, 양심형성의 자유, 침묵의 자유, 양심을 지킬 자유, 양심을 실현할 자유로 구성되어 있다. 장영수, 위의 책, pp. 335-339를 참조.

212) 장영수 교수는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를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 취급하여 인간의 자율적 정신활동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인정된다. 내면적인 정신활동과 그 결과를 외부로 표현할 때 서로 형성되고 발현된다고 보고 전자에 속하는 권리를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로, 후자에 속하는 권리를 언론의 자유로 하여 두 집단의 권리를 모두 정신적 자유의 범위로 구분한다. 장영수, 위의 책, p. 311.

213)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2(1992), par① 2.

214) 국제자유권조약 제18조 제2항.

215)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22(1992), par① 2.

념을 외부로 표현할 때만이 정당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들 제한도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과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공보건 및 공중도덕 타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2.1.6.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사상, 양심, 확신, 신념, 종교
- 신앙, 예배, 행사, 선교
- 국교, 소수종교, 신생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 휴일예배, 성직자, 특수신분관계(종교학교, 군대, 교도소)에서의 차별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종교행사의 규제, 특정이념전파의 규제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이 분야의 공식통계는 거의 없다.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통 계 청
	2
계	
2	

<표 3-2-2-5> 작성기관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관련지표수 (단위 : 개)

2.1.6.2 평가

이 영역의 권리는 주로 내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적의 기록보다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주관적인 통계와 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정부기관 또는 공공시설에서 특정종교의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 특정종교에 대한 혐오범죄현황
 - 사이비종교와 관련된 피해자와 피해규모
-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2.2 정치적 권리

정치적 권리는 개인이 사회의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하거나 행동 또는 통제를 하는 것을 보장한 권리이다. 투표권, 선거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그리고 모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공공 및 정부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또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의 일부이다.²¹⁶⁾ 이들 권리들을 향유하기 위해 전제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표현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집하며 집회 등을 통해서 이를 표현하는 영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²¹⁷⁾

2.2.1 의견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나 개인에게나 의견형성과 의견표현능력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인권의 한 영역으로 인정된다. 의견 형성의 자유는 관련 정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제약받기 때문에 알권리(the right to know)는 의견형성의 자유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권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전제이다. 표현의 자유와 그 관련 권리들은 반대를 공공연하게 제기하는 것을 수용하고 대중성이 없는 견해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와 권리를

216) Rita Contos Cartwright and H. Victor Conde, 앞의 책, p. 176.

217) 정치적 권리는 국제자유권조약 제24조에서 규정한 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협의로 구분 지을 수도 있지만, 정치적 결정과 업무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1조)로 이해하여 직접참여의 전제 또는 다른 형태의 파생권리들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하여야 한다.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to seek)·접수하고(to receive) 전파할(to impart)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²¹⁸⁾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불법적으로 제한될 때, 다른 개인은 동시에 정보를 접수(receive)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국제자유권조약 제19조 제1항에서는 간섭 없이 의견을 보유할 권리(the right to hold opinions)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예외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²¹⁹⁾ 구술, 서면, 출력된 형태, 예술의 형식이나 자신이 선택한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²²⁰⁾ 모든 형태의 정보와 생각들의 쌍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²²¹⁾ 표현의 자유는 병영의 문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의사 표현의 자유에는 예술²²²⁾ 및 학문의 자유도 포함된다. 학문의 자유에는 과학기술의 자유도 포함된다.

2.1.1.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의견보유, 표현
- 의사형성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보공개
- 알권리, 회의공개, 회의록공개, 자기수사기록 등의 열람
- (사전)허가 및 검열
- 예술창작과 표현, 학문과 대학의 자치 및 관련소송 또는 진정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의견표현의 자유 관련소송/진정사건의 건수

218) 세계자유권조약 제19조 제2항.

219)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0(1983)을 참조.

220) 표현의 자유 가운데 매체에서의 구술방식이나 일부 사적인 영역의 서면, 예술작품의 형식을 제외한 프린터물과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영역은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다룬다.

221) Ni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p. 665-670을 참조.

222) 헌법재판소는 예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 장영수, 앞의 책, p. 427을 참조. 하지만 예술의 자유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한 유형인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예술은 국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의 창조적 발현으로서 형상화되는 것이며, 구속받지 않는 창의성, 기존의 것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탄생되는 객관화되기 어려운 고도의 주관성을 특징으로 갖기 때문이다. E. Denninger, ①①O.(anm.49), S. 850f. 장영수, 앞의 책, p. 425에서 재인용.

- 주장과 설명책임
- 직접침해 : 알권리 침해(예, 정보의 미고지, 정보의 존재여부확인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예, 검열(censorship), 현존자료의 활용금지, 강연금지, 공연금지, 남녀 모두에 대한 복장규제), 예술창작에 필수적인 자유의 침해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 차별행위 : 특정 성의 의복규제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법률조항 자체에서 비인권적인 요소가 제거되어 관련 통계가 거의 없다.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문화관광부	2
계		2

<표 3-2-3-1> 작성기관별 '의견표현의 자유' 관련지표수 (단위 : 개)

2.1.1.2 평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의 청구권적인 부분에 대한 통계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이 영역에서는 국민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인터넷상의 의견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의사를 공유할 목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신문 등에 의견을 쓰거나 투고하는 국민비율

- (이유별) 행정정보의 비공개결정횟수와 비율
- 행정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재판건수
- 공무원의 자기직무에 관한 설명의무와 책임의무에 대한 태도
- 병영내의 정훈교육에 대한 사병들의 인식조사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2.2.2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체적인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의 자유, 즉 의사표현과 의사수령 및 의사매개를 포함한 의사소통의 전 과정²²³⁾에 속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내심에서 형성된 양심, 사상, 종교, 신념 및 확신이 구체화되어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 영역의 인권은 일반적으로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사상이 표현되지 못하거나 언론이나 출판의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이 자유롭게 형성한 양심과 사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또한 투표권, 선거 및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통해서 자기의사를 정립하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정보를 획득할 권리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현대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들이 개인에 대한 통제 내지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도 증대되고 있다.²²⁴⁾

2.1.2.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신문, 방송의 허가/검열금지
- 의사표현자(표현의 자유, 전파의 자유)
- 의사매개자(전화, 전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223) 장영수, 앞의 책, p. 344.

224) 장영수, 위의 책, p. 349.

- 의사수령자(정보원, 정보원에 대한 접근, 정보취득방법의 자유, 정보수령거부의 자유)
- 취재(정보수집)의 자유, 편집의 자유, 보도의 자유, 전파·보급의 자유, 광고의 자유
- 명예훼손, 통신비밀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출판의 제한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해당통계/지표 없음>

2.1.2.2 평가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한 공식통계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영역은 위의 의견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제한받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수용정도나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공연 및 영상물에 대한 사후검열/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건수
- 관련소송 패소판결의 경우 패소자의 판결에 대한 태도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2.2.3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

는 자유를 말한다.²²⁵⁾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다수자의 권리라기보다는 소수자의 권리²²⁶⁾에 속한다.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권리인 집회가 비평화적인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²²⁷⁾ 하지만 국제인권문헌에서는 평화적인 집회를 인권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률도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²²⁸⁾하고 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폭정에 대한 항거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였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가 반드시 평화적일 때만 권리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저항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야 한다.

결사의 자유는 정당 및 기타 사회운동단체의 결성,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화 및 노동조합의 결성과 참여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결사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형성하고 조직적 의사에 복종하는 것을 가리킨다.²²⁹⁾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로 집단적인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단체에 속하는 개인과 법인간의 권리분쟁도 야기된다.²³⁰⁾

2.1.3.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야간집회의 허가제, 중요공공기관 주위의 옥외집회금지, 불법단체의 집회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조합 등의) 직장폐쇄, 특정집단(조합/단체/조직/기관)에 대한 불시 단속(raid)과 불법수색, 특정집단의 금지, 감시, 집회/회합에 대한 제한조치, 회의 및 다중행동금지

225) 장영수, 앞의 책, p. 373.

226) 장영수, 위의 책, p. 372.

227) David Robertson, 앞의 책, p. 86.

2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평화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를, 제5조에서는 폭력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29) 독일결사법 제2조 제1항. 장영수, 위의 책, p. 387에서 재인용.

230) David Robertson, 위의 책, p. 87.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해당통계/지표 없음>

2.1.3.2 평가

이 영역의 자유는 집시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찰의 '범죄분석'에는 범죄, 즉 불법·폭력시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관련지표가 거의 없다. 따라서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통계를 승인통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장기간 동일한 집단이 동일한 장소에 집회신고를 한 건수
- 이미 집회신고 되어 다른 집단의 집회신고가 반려된 건수(장기간 집회신고 된 건수는 별도로 작성)
- 불법 등의 시위전력을 이유로 동일인 또는 동일집단의 집회를 불허한 건수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사이버 경찰청(<http://www.police.go.kr>)의 경찰통계자료실에서 파악한 '불법·과격·폭력시위현황'의 지표²³¹⁾(연구진 임의선정)에는 집회시위의 횟수와 불법·폭력시위의 횟수를 나란히 명기하고, 화염병시위와 최루탄사용의 항목, 부상자라는 항목을 두고 있는데, 지표명도 '범위반시위현황'이면 충분함. 뿐만 아니라 항목에서도 '집회시위의 횟수'와 '범위반시위의 횟수'를 비율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사유를 '불법'과 '폭력'시위로 구분하여야 함. 최루탄의 사용여부는 이 지표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폭력시위에 대한

231) 이 연구에서 이 지표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영역에 배치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진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표로 만들거나 아니면 최루탄의 사용에 관한 항목뿐만 아니라 ‘자진해산’, ‘폭력행사’, ‘동원진압경찰병력’, ‘경찰 및 시위자의 피해상황’ 등을 동시에 병기하여야 함.

2.2.4 참정권

정치참여권, 즉 참정권은 공적 사안의 해결에 관한 의사의 수렴과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권리를 말한다.²³²⁾ 여기에는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권리, 즉 선거권과 국민이 스스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 즉 피선거권을 포함한 공무담임권²³³⁾, 국가적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투표권과 정당을 통해 국가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가 포함²³⁴⁾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동등한 조건으로 접근할 권리와 기회가 포함된다.²³⁵⁾ 이렇게 본다면 참정권은 단순히 개인이 선거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무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권리를 포함하므로 공직생활참여에 대한 권리와 기회(right and opportunity to participate the public life or affairs)²³⁶⁾를 의미한다. 아울러 자신이 국가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발안권과 자신이 선택한 공무원을 소환할 권리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청원법에 의한 청원 및 입법청원 그리고 감사청구제도와 같은 것도 광범위

232) 장영수, 앞의 책, pp. 437-438.

233) 공무담임권은 단순히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직 공무원, 임명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행정직 또는 교육직공무원과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소속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자문 기구(consultative or advisory bodies)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법률에 의해서 공청회,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협의의 형태로 보장되기도 한다.

234) 장영수, 위의 책, pp. 438-439.

235) 국제자유권조약 제25조(C).

236) 세계인권선언 제21조 제1항에는 정부에 참여할 권리(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초과정에서는 공무수행참여(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가 더 우세한 의견이었다. UN Document A/2929, chap. VI, S. 172);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 805에서 재인용. 국제자유권조약 제25조에는 공직수행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the right and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로 규정되어 있다.

한 의미에서 참정권에 속한다. 참정권은 국민의 의지(the will of the people)가 정부권위의 기초가 된다는 원칙에 유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인이 공무수행(conduct of public affairs)을 구성하는 과정²³⁷⁾에 참여하는 권리²³⁸⁾여서, 국제자유권조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와 헌법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의미하는 자결권과는 구별된다.

2.1.4.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투표권, 피선거권,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 (발안권, 소환권), 청원권, 감사청구제도
- 선거를 하지 않을 권리, 무소속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후보자격의 제한
- 보통, 평등, 비밀투표(/선거)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선거권의 부정, 선거인에 대한 방해(disenfranchisement of voter), 공직출마의 부인, 피선거권의 부인, 부정선거, 선거협박(예, 선거운동원에 대한 괴롭힘)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선거관련 통계지표가 2종, 공직참여와 관련한 지표가 2종, 서비스만족도와 관련한 지표가 2종이 들어 있다. “여성통계연감”에는 여성과 비교된 선거관련통계지표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

237) 공무수행이란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치권력의 행사, 특히 입법적, 집행적, 행정적 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모든 공공행정과 국제·국내·지역·지방·향촌 수준에서 정책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사안이 모두 포괄된다.

238)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25(1996).

회의 각급 선거총람에서 재가공된 2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 각 부처위원회의 여성위원참여현황’ 등 여성의 정부참여관련지표 2종이 수록되어 있다. 또 여성관련단체의 현황을 총괄한 지표도 있다.

행정참여도에 관한 공식통계는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03)에 있는 ‘문화정책에 문화예술인의 의사반영만족도’지표가 있고, 각 문화영역의 항목에 5점 척도로 표시되어 있다.

사법연감에는 선거소송사건 누년비교표 등 5개의 관련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통계청	6
	문화관광부	1
	대법원	5
	헌법재판소	2
	한국여성개발원	5
계		19

<표 3-2-3-2> 작성기관별 '참정권' 관련지표수 (단위 : 개)

2.1.4.2 평가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직접적인 권리영역이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선거와 행정부 내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인 통계지표가 개발되어 있다. 특히 성평등문제를 공무원의 비율 및 고위공직자의 비율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통계는 정부정책에 참여하거나 정부작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통계청의 서비스만족도조사와 문화관광부가 정책수혜자이자 정책형성집단인 문화예술인에게 정책의사반영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하지만 만족도조사와 관련해 통계청의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하여 5점 척

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문화관광부의 해당지표는 불만족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그 원인에 대한 관련지표가 추가로 필요하다.

-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각 부처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현황과 의견반영실적(/비율)
 - 선거정보의 획득방법에 관한 통계
 - 정책반영 및 정책/행정서비스만족도와 불만족원인조사
 - 각종 행정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직업별 참여현황
 - 국민의 국정참여도 총조사
 - 중앙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방문횟수와 자유게시판 참여유형별 통계
-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중 '민원서비스만족도' 및 '민원서비스 불만이유'항목에서 '초졸 이하'항목을 '중졸' 이하와 통합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국민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

3.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3.1 경제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 권리는 시민적, 자유권적 인권과는 달리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불리며, 사회국가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개인의 생존을 확보하고 행복한 생활의 실현을 도모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경제권은 적극적으로 개인의 소유를 보장하는 의미로서의 권리증진이라기보다는 공공복리의 실현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해주는 사회적 측면이 내포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3.1.1 사회보장권

모든 사람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결핍의 경우²³⁹⁾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²⁴⁰⁾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는 ‘만족할 만한 수준’(a satisfactory level)을 의미한다.²⁴¹⁾ 이 권리는 국가가 공공부조 또는 사회보험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²⁴²⁾을 말하며, 사회보장의 범위에는 개인의 통제 밖의 이유로 인해 생존수단을 상실한 모든 위험(all the risks involved in the loss of means of subsistence for reasons beyond a person’s control)을 포괄한다.²⁴³⁾ 유럽사회헌장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 등을 통해서 사회보장비용을 줄일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하면 국가보장이라는 중요한 골간을 수정하는 것이 된다.²⁴⁴⁾ 또한 수형자의 수형기간 만큼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정할 수 없는 제한이다. 노동허가 제하에서의 외국인노동자도 내국인노동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실업상태의 특정기간에만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을 때 국가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에 반한다.²⁴⁵⁾ 사회보험제도로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재해보상보험 등이 있고 이밖에도 사회구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구호시설에는 양로원, 고아원, 보육시설, 조산원, 무료진료소 등이 포함된다.

3.1.1.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사회보험, 실업급여
- 노령 연금, 이혼/사별로 인한 급여, 너무 낮게 책정된 급여, 장애수

239)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후단.

240)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및 제25조 제1항, 국제자유권조약 제9조.

241) ILO 사회보장(최소기준)협약(협약 제102호)을 참조.

242)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243)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6(1995).

244) 헝가리 헌법재판소결정, Case No.56/1995(1995년 9월 15일), (1995) 3 Bulletin on Constitutional Case-Law 311,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 866에서 재인용.

245)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6(1995).

당의 미지급, 장애인 돌봄이에 대한 미지원

- 최저생계비, 최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²⁴⁶⁾
- 부양의무자의 사망에 따른 피부양가족에 대한 급여의 미지급
- 국가 또는 사용자의 사회보장프로그램 미실시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장애수당의 부인, 낮게 책정된 최저생계비, 실질적 최저빈곤층에 대한 급여지급의 거부, 특정업종의 사회보장급여의 거부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가족과 복지분야에 걸쳐 17개의 지표가 수록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랑인, 아동, 정신질환자, 노인 등의 사회보호시설, 요양시설, 복지시설,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등의 현황과 운영에 관한 지표 44개를 갖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보험통계”에 수록된 고용보험관련 41개 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소득층 자활사업실태조사”와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연구”에 수록된 보건근로빈곤층 및 최저생계비관련 지표 101개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246) 실제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30% 범위에 있는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못한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한다.

관련지표수		
작 성 기 관	통 계 청	17
	보건복지부	44
	한국산업인력공단	41
	국민건강보험공단	8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1
	한국여성개발원	6
계		293

<표 3-2-4-1> 작성기관별 '사회보장권' 관련지표수 (단위 : 개)

3.1.1.2 평가

이 영역에 속하는 통계들은 대부분 복지적 관점에서 수록되거나 복지관련입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사항을 통계화하였다. 복지수급대상자의 권리 혹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측면의 통계적 지표가 부족하고 일부 지표항목들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료 납부연체자의 가계소득별 조사현황
- (소득의 중단으로 인한/사유별) 사회보험료 납부면제신청자수와 승인율
- 5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가입신청률
- 국민연금 장애급여수급자의 가계소득이 최저생활에 미치지 못한 건수
- 국민연금 장애급여수급자 중 장애등급변동율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수급자의 소득실태
- 소득별 건강보험급여액
- '한국의 사회지표' 중 '정부세출의 기능별 구성'과 '국민 1인당 GDP 대비 기능별 세출' 지표에 '사회개발' 항목을 넣어 관심항목을 세분화하

여야 함.

- ‘한국의 사회지표’ 중 ‘60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여부’지표와 연동하여 ‘60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자 중 생활실태’(거동 도움의 유무, 바깥출입횟수 등)등 항목을 개발해야 함.
- ‘한국의 사회지표’ 중 이 영역에 속하는 노인관련 각종 지표의 항목 가운데 연령구분을 현행은 ‘60세~64세’, ‘65~69세’, ‘70세~79세’, ‘80세~89세’, ‘9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60세부터 1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사회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통계정보시스템²⁴⁷⁾에서 확인한 ‘정신질환자시설수용자 및 종사자의 현황’(분기/보고통계)²⁴⁸⁾통계 가운데 ‘2005년도 1사 분기 정신요양시설입소환자의 현황’지표를 보면 ‘1분기 퇴소’란의 하위항목 중 ‘치유’, ‘전원’, ‘사망’, ‘기타’의 항목이 있음. 여기에 ‘유료/무료위탁자’와 ‘연고자 유/무’도 병기해서 통계를 작성하여 절대적인 약자를 보호하여야 함²⁴⁹⁾. 또 ‘기타’ 항목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알리지 않고(/미통보) 떠남(/이탈)’과 ‘자원퇴소’자는 별도의 항목으로 현황이 발표되어야 하며, ‘재입소자(다른 요양시설에 있던 경험 포함)현황’ 관련지표/항목 개발도 필요함.
- “보건복지통계연보”(2004년 12월 발행)의 ‘부랑인생활시설의 수 및 생활인원현황 - 시도별 : 1990-2003’ 통계에서 퇴소자를 구분하는 항목 가운데 전원(轉院)²⁵⁰⁾의 경우는 ‘다른 시설 또는 (정신/)병원 입원’

247) <http://www.mohw.go.kr:8012/common/index.jsp> 참조.

248)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실려 있는 ‘정신요양시설의 수 및 수용자의 수’(연간)에는 입소자의 ‘유료/무료’위탁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연령별로 18세 미만과 18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해 위에 인용한 통계(분기별 보고, 승인통계)에는 연령구분이 없다. “한국통계조사현황(상권)”(2004년, 통계청, p. 477)에 의하면 이 통계의 작성주기는 매분기이고, 조사한 다음 해에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

249) 장애인복지 생활시설 등 시설과 관련한 통계사항은 거의 분기별 보고통계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승인통계에 속하고 조사한 다음 해에 “보건복지통계연보”(연간)에 수록해 실는다. 정신질환자시설수용자 및 종사자의 현황통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소자란 하위에 “유료/무료”를, 퇴소자란 하위항목 중 “전원, 사망, 기타”에는 “유료/무료”와 “연고자 유/무”를, “기타” 항목 하위에는 “미고지이탈”과 “자원퇴소”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세부항목으로 통계를 내야 한다.

등으로 항목을 세분하여야 하며, 재입소자의 통계지표를 개발하여 병원퇴원 뒤 재입소율 및 재입소자별 재입소횟수와 원인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함. 또한 시설생활수용자의 항목에 입소기간별로도 통계를 내고,²⁵¹⁾ 입소자 중 직업보도대상자의 현황은 새로운 지표로 개발되어야 함.²⁵²⁾ 아울러 입소자 1인당 국가/지방자치단체보조금의 지급 현황 및 보조금의 지급총액은 용도별로 통계를 내야 함. 입소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주별 평균노동시간 및 월별 노임에 관한 지표(현금의 보관방법 포함)도 개발되어야 함.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1인당(/1가구당/가구구성원당)(월별) 평균 급여집행실적(지역별,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통계의 연령구분항목 중 '18세 미만' 또는 '0~4세', '5~9세' 등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미성년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60~64세' '65~69세' 등으로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노인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항목을 각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공표하여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통계로 사용하여야 함.
-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중 유료(또는 실비) 생활자의 월별 평균부담비용 및 조달방법관련지표
-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추정조사(또는 전

250)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한 복지시설 내에 다른 법인이지만, 사실상 복지시설의 장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이 있거나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병원들이 따로 있어 수시로 입원과 퇴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실제로 '현원'과 '입/퇴소' 또는 '입/퇴원'으로 잡히기도 하고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전원, 입원 등의 통계항목에서 다른 생활시설로 가는 것인지, 심신미약 또는 발병에 의해서 입원하는 것인지 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그 병명 또는 그 원인도 통계로 내야 한다.

251)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와 동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한 '보장시설' 구분을 보면, 부랑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7호)에 따라 상담요원이 입소자를 "직업보도대상자·전원조치대상자 및 장·단기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동 규칙 제12조 제3항 제2호)하고,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동 규칙 제12조 제4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입소자의 입소기간별 현황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52)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7호) 제12조 제3항의 2 참조.

수조사)와 그 원인에 관한 통계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고용보험통계월보²⁵³⁾”에 수록된 고용보험통계에서 피보험자와 관련된 지표들과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사업과 관련된 각 지표들의 항목에 학력별 및 소득수준별로 통계를 내야 실질적인 보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의 지표에서 가능하면 1인당 급여평균수령액을 학력별, 소득별로 구분하여야 함.
- 일용직노동자의 고용보험가입현황 및 미가입이유
- 고용보험 고용형태별(정규직, 상용직,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가입 및 수급절차 등에 대한 홍보실적
- 상대적 빈곤선²⁵⁴⁾에 속한 자의 각종 보험급여지급현황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노후준비방법’지표의 항목 중 ‘초졸 이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과정까지 인 바, ‘중졸 이하’로 통합하여야 함. 앞으로 유사한 통계항목은 같음. ‘준비 없음’ 항목에 ‘사유’를 구분하여 통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의 사회지표’의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 지위’에 관한 지표항목 중 ‘임금봉급근로자’(employee)를 ‘근로자’·‘임금노동자’ 또는 ‘피고용자’·‘피용자’라고 개선하고, (‘임원’, ‘중간관리자’) ‘숙련/미숙련임금노동자’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내야 함.
- ‘한국의 사회지표’의 ‘60세 이상 생활비(용돈)의 마련방법(2002)’(Method of receiving living costs aged 60 years & over)의 지표명에서 ‘용돈’이라는 말은 노인을 자기생활의 주체자로 보지 않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차별적인 언어로 보임. 이 지표를 ‘60세 이상

253) 월별 고용보험통계는 “고용보험통계월보”로, 분기별로는 “고용동향분석”에, 연간으로는 “고용보험통계연보”로 발간된다.

254) OECD는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최저임금이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수준에 분포하고 있음; 정경은,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 주최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문, 2005. 4. 28) 참조.

생활비의 마련(충당)방법'으로 바뀌어야 함.

-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노인문제'지표의 영문표기를 'Problems of old man'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차별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old man'을 'the aged' 또는 'the elderly'로 하여야 함. 또한 지표 자체가 노인은 문제가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노인이 주체적으로 느끼는 노인의 일들(daily affairs)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된다고 간주되는 영역만 지표로 잡는 것은 비인권적인 접근방법임. 그리고 전 세대가 인식하는 '노인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노인 연령대의 항목은 '60세 이상'으로 잡아 노인들의 태도나 인식을 간과하고 있음. 노인항목은 연령 또는 직업·소득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가 반기별로 집계하고 있는 "부녀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현황보고"²⁵⁵⁾는 통계명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적절한 표현도 아님. '부녀(婦女)'라는 말은 '시아비가 있는 여자' 또는 '기혼 여성과 여자'를 통칭하는 말로 봉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평등원칙에 부합되지 않음. 따라서 '부녀'를 '여성' 또는 '어머니'로 고쳐야 함.²⁵⁶⁾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모자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보고"라는 통계로 나타남.

- 부랑인생활시설과 관련한 통계인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2005년 6월 현재)항목 가운데 입소자와 퇴소자란에 '자진입소'항목은 '자원입소'로 바꾸고, 기밀수용자수란의 하위에 있는 '건강상태별'의 항목 중에서 '정신박약'은 '정신지체'로 바뀌어야 함. 또 '기타'항목은 부랑인시설의 운영실태를 볼 때 '퇴원'한 뒤 재입소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통계로 잡아야 함. 이보다 앞서 발간된 보건복지부 공식

255) 1996년 10월 이전에는 "모자보호시설 및 미혼모 시설 현황보고"라는 통계명을 사용했다.; "한국통계조사현황(상권)"(2004; 통계청), p. 452 참조. 그런데 "보건복지통계연보"(2004년 12월 발행)에는 아직도 "모자보호생활시설수 및 생활현황 - 시도별: 1985-2004"로 되어 있으며, 부녀복지시설수용자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256) 기존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칭되고 가족과 관련된 업무가 2005년 6월 23일자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통계는 여성가족부의 관장사무로 변경되었다.

통계간행물인 “보건복지통계연보”(2004년 12월 발행)에는 ‘부랑인생활 시설수 및 생활인원현황 - 시도별 : 1990-2003’의 항목에 퇴소자란에는 ‘도망’ 이라는 항목이 있음. 이 항목은 반인권적일 뿐더러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용어여서 ‘알리지 않고(/미통보) 떠남(/이탈)’으로, 또한 ‘정신박약’항목도 ‘정신지체’로 바뀌어야 함.

3.1.2 노동에 대한 권리

인간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권리의 하나가 바로 노동에 대한 권리이다. 이 권리는 자유롭게 선택 또는 수용한 노동 또는 활동을 통해서 삶을 영위할 기회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고용될 권리를 말한다.²⁵⁷⁾ 따라서 개방경제하에서 국가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다.²⁵⁸⁾ 국가가 영속적인 실업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 판단여부는 계획된 고용정책의 존재여부에 달려 있다.²⁵⁹⁾ 또한 고용기회에 있어서 차별은 금지되며, 동일한 노동 [가치]에 동일 보수(/임금)를 지급하여야 한다.²⁶⁰⁾ 국가는 기술적·직업적 지도와 훈련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²⁶¹⁾

이러한 노동의 문제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자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교육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노동에 대해서도 의무가 부가되어 있다. 노동권은 해고자유의 제한,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적 노동기회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노동의 권리는 헌법 제32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해고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 이외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당한

257)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 국제사회권조약 제6조 제1항.

258) 하지만 국가의 완전고용의무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해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높고 안정된 고용을 달성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의무는 결과의 의무가 아니라 수단의 의무이다.

259) ESC Committee of Independent Experts, Conclusions I, 13-14; II, 3.

260) 세계인권선언 제3조, 국제사회권조약 제7조.

261) 국제사회권조약 제6조.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한 경우에 쉰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쉰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해고의 예고(제32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제33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3.1.2.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일하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선택 또는 동의한 노동, 동일노동 동일 보수, 직업훈련 및 소개, 고용기회의 균등
- 강제노동, 아동노동, 노동매매, 임금차별, 승진차별, 모성 및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나이 등에 의한) 고용차별, 특정질병(예, B형간염, HIV-AIDS감염인)에 의한 고용차별의 금지
- 청년실업, 적극적 고용정책의 무시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노동접근권의 침해(예, 채용상의 차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 취업권(the right to sheltered employment)의 부인, 개별노동자의 권리침해(예, 비자발적 또는 강제노동, 임금지급의 거부, 노동인가(work license)의 철회 또는 제한, 직업이동의 자유와 작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등), 집단적인 노동자의 권리침해(예, 부적절·위협·열악한 노동조건, 해고노동자의 복직거부, 작업장접근의 거부, 좌천, 승진기회박탈/배제, 강제 또는 자의적 전근, 작업장의 감시), 직업교육·훈련기회의 박탈(/제한) 및 과도하게 한정된 직업훈련프로그램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

작위)

- 차별행위 : 특정 성에 대한 노동기회의 제한, 성별/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취업의 제한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이 영역에 속하는 공식통계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의 기초적인 통계에 직업 또는 생계수단 등의 형태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실업 및 고용과 관련된 교육정도, 성, 평균임금, 임금, 근속연수, 장애인 등 다양한 통계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는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이 국가의 기본통계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고용을 적시한 장애인과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제기 되어 온 성별에 의한 문제, 고용기회의 균등과 관련한 통계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노동에 관한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통계가 상대적으로 적다.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의 통계와 같이 산업 위주의 통계에서는 이를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과 관련된 통계 또는 인력수급의 차원으로 주로 다루고 있고, 동일업종의 해고나 실업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농업과 임업, 수산업/어업 등 관련주무부서의 기본조사 또는 총조사에서는 관련업종의 노동자 또는 실업 및 고용상태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통 계 청	412
	문화관광부	20
	농 립 부	10
	산업자원부	34
	보건복지부	1
	노 동 부	5
	정보통신부	4
	해양수산부	6
	중소기업청	2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1
	한국산업인력공단	7
	한국교육개발원	1
	한국노동연구원	1
	대 법 원	1
한국여성개발원	5	
계		546

<표 3-2-4-2> 작성기관별 '노동에 대한 권리' 관련지표수 (단위 : 개)

3.1.2.2 평가

노동에 대한 권리의 전제는 완전고용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완전고용을 정책의 기조로 삼기보다는 일정수준의 실업률을 전제로 실업정책이 이루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에 대한 권리, 즉 국가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의무와 관련된 통계는 극히 제한적이며,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노동기회 또는 노동박탈과 같은 통계는 거의 없다. 또한 실업자의 생활상태 등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고통과 관련한 지표

는 더 개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노동부의 공식통계지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연구편제상 적정임금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를 다른 장으로 배치한 이유도 있지만, 노동부의 승인통계목록이 상대적으로 적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처럼 승인통계의 하나로 전 분야에 걸쳐 실업관련통계가 관리되고 있는 이유도 있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해고자의 해고유형에 관한 통계
- 중소기업의 취업 1년 이내에 이동하는 노동자의 수 및 그 원인조사
- 비전염성질병을 이유로 한 해고자수
- 월별 정리해고된 노동자수
- 해고 등을 이유로 한 분기별 파업횟수
- 해고무효소송 또는 진정건수와 그 결과
- 통근차량의 제공(또는 상응하는 지원)여부현황
- 산업별, 업종별, 기업별 고용율과 실업률의 상대적 비율
- “2004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구성비’지표의 ‘미혼’ 항목은 ‘비혼’ 또는 ‘단독(/독신)’으로 바뀌고, ‘기타’ 항목은 ‘사별’ 또는 ‘이혼’으로 세분되어야 하며, 여기에 부양가족의 유무를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함.
- 요인별 사업주의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연령계층별 지표들에서 ‘15세~19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취업자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조사대상자에 비정규직도 포함되어야 함.
- 귀농인에 대한 농업기술지원실적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1차 연구대상통계이지만 인권관련성이 적어 인권간접통계로 분류하고 분석대상에서 빠진 통계 중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광

업·제조업 통계조사”, “광공업동태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 통계조사”, “도매업동태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서비스업동태조사”, “환경산업통계조사”, “문화산업통계조사”,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등의 지표 또는 항목에 모두 ‘종사자수’가 있는데, 종사자라는 말은 단순히 일 또는 기업 및 업종에 소속된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어 ‘피고용인수(근로자수)’와 ‘자영인수’로 세분하여 항목을 바꾸어야 함. 이는 ‘종사자’를 항목으로 쓰고 있는 다른 대상통계나 지표도 동일함.

- “2004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된 ‘직업별 취업자구성비’ 지표와 기타 직종을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 모든 통계지표에는 최근 기준에 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종사자’로 표기함. 이는 일면 사람 중심으로 항목을 표시한 것이기는 하나, 의미상 직군을 표기하는 것이 덜 차별적임.(예, 서비스종사자 -> 서비스직 또는 서비스직근로자, 전문가 -> 전문직, 기능원 -> 기능직, 단순노무종사자 -> 노무직 등 (이하 같음))

- “2004 한국의 사회지표”의 ‘55세 이상 취업자비율’ 지표는 연령기준을 55세로 정한 것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사실상의 노동상실 또는 노인에 속하는 연령으로 바뀌어야 함. 따라서 지표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55세부터 1세 간격으로 통계를 추계하든지 지표명을 ‘60세 이상 취업자비율’로 하여야 함. 오히려 ‘55세~ 59세 실업자수와 실업기간 및 구직활동기간’을 지표로 개발하여야 할 것임.

- “2004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외국인근로자현황’(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서 가공) 지표 중 최근 연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예술홍행’ 항목은 예술을 상업과 결부시켜 예술가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인식으로 ‘공연예술’²⁶²⁾로 바뀌어야 함.

- “2004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항목이 아주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결혼 또는 출산과 결부해서 인식하고 있음. ‘결혼과 취업에 관한 태도’로 지표를 바

262) 해당비자인 E6비자는 ‘공연·예술비자’이다.

꾸고 남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항목으로 통계를 내야 함.

- “2004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여성취업장애요인’지표와 “사회통계조사”통계의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지표의 항목에는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과 ‘여성의 능력부족’이라는 항목이 있음. 이 항목은 또 다른 항목인 ‘사회적 편견과 관행’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기준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또는 객관적인 항목과 남성 중심의 불합리한 항목이 같이 있음. 따라서 두 항목은 삭제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관행’의 항목의 하위항목으로 세분해서 배치하여야 함.

- “2004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의 ‘노동생산성지수’지표는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물적 생산성지수로 작성되었는데,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도 통계를 내야 하며, ‘부가가치 생산성지수’도 별도의 통계를 잡아야 함. 그 이유는 물적 노동생산성지수가 전체 노동생산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 조사의 목적이 기업의 사업재배치 등 관리목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도로 측정하는 것이 노동자의 일할 권리에 가까운 지표임.

- “노동통계연감”(2004년판)에 수록된 ‘산업(중·소분류)별·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상의 지위별·성별 종사자수’지표에서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및 무급종사자’,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항목을 두고 있는데, 현재 통계에 대상이 되지 않는 주18시간 이하의 무급종사자는 착취에 해당하므로 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나 지표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고 또 고용기간만을 종사상의 지위로 보아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으로 보는 것은 비인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음. 항목을 ‘정규직’과 ‘상용직’(직접계약직 또는 파견직을 구분), ‘비정규직’(1년 미만으로 고용된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을 구분) 등으로 모두 통계를 내야 함.

3.1.3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적정보수란 노동의 생산성과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합리적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임금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물질적인 최

소한의 생활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임금수준인 최저임금과는 구별된다. 적정보수는 공정한 임금²⁶³⁾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국제자유권조약의 다른 조항들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이 권리는 자기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decent living)²⁶⁴⁾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충분한 보수를 의미한다. 즉, 적절한 삶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자유권조약 제11조와 연관되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보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법상에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적·경제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결국 노동3권의 행사 및 그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 등을 통해서만 제도개선이 가능한 상태이다.

3.1.3.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공정한 임금, 부양자의 임금
- 최저임금, 최저임금적용의 배제업종, 특수고용직의 보수, 부양가족상 황과 무관한 임금체계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노동자 일반에 대한 침해(아주 낮은 최저임금의 책정, 적절한 설명 없는 최저임금의 시행, 특정업종의 최저임금적용배제, 최저임금제의 유보)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보수는 공식통계에

263) 동등하고, 정당하며 합리적인 임금을 말한다. 국제사회권조약 제7조(a)(i).

264) 품위 있는 생활이란 적절한 의식주와 교육,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적인 물질 필수품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 860. 국제사회권조약 제7조(a)(ii).

서 임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통계청에는 경제지표상의 소득부문과 물가, 소비, 부채 등 가계경제활동과 연동해서 판단하여야 할 통계들이 있다. 노동부의 통계에서는 평균임금과 임금격차 등의 다양한 형태의 관련통계와 지표가 확인된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인의 임금실태에 관한 각종 통계와 지표를 갖고 있다.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통계청	51
	문화관광부	4
	보건복지부	1
	노동부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0
	대한건설협회	7
계		132

<표 3-2-4-3> 작성기관별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관련지표수 (단위: 개)

3.1.3.2 평가

적정한 보수와 관련해서 노동부의 통계는 형식적으로는 임금차별 또는 임금격차에 대한 통계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복리비 등 급여이외의 급부에 해당하는 통계도 정리되어 있지만, 물가와 직접 연동한 실질임금 및 적정노동과 적정임금을 비교하는 지표들은 찾을 수 없다. 이 분야는 향후 추가로 연구하여 관련통계와 지표를 개발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월별) 최저임금적용 배제사업장 및 피고용자수와 임금실태
- ILO의 품위 있는 노동(decent work) 기준에 부합되는 보수관련 종합통계모델의 개발

- 특수고용직노동자의 생활실태조사
- 급여형태별(연봉제 등) 소득수준비교
-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시도 평균횟수(년간) 및 타결률
- 업종별 임금교섭시 최초임금액(/임금인상률)과 타결임금액(/임금인상률)(평균)
- 업종별(/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시간 및 동일노동 대비 평균임금의 격차
- 임금채불현황 및 해결방법, 해결하는 데 드는 평균기간
- 농업 외 직업을 갖고 있는 농가수
- 월별 교통비 대비 출퇴근비용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2004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 가운데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연간경상소득’ 등 관련지표의 ‘무직(not empolyed)’항목은 사회통념상 이 분류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비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고용’ 또는 ‘미취업’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3.1.4 유리한 근로조건향유권(월 권리 포함)

국가는 유리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자 및 사용자단체에 대한 자문과 감독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²⁶⁵⁾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자기보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휴식²⁶⁶⁾, 여가²⁶⁷⁾,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²⁶⁸⁾, 유급정기휴무일²⁶⁹⁾ 및 공휴일의 보수에 대한 권리 등²⁷⁰⁾ 자신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가 보장된다. 우리나라는 노동조건기준의 법정주의를 채택하여 근로기준법으로 노동자의 유리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산전·산후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이 영역에서 노동자는 해고예정사실을 사전에 통고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계속 노동할 권리, 즉 고용안정의 권리를 갖고 있다.

3.1.4.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
- 연가, 월차, 정기휴무일, 노동시간, 출산휴가
- 집단해고, 해고의 사전통고, 아동 및 여성의 야간노동금지, 취업아동의 등교시간노동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불평등한 임금지급,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거부, (국공립미술관(/음악당/극장)의 높은 입장료 또는

265)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제2조 제3항, 국제자유권조약 제7조 (b).

266) 개인이 자신의 원기를 재충전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활동의 정지(real cessation of activity)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67) 개인이 정신 및 관심을 계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여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는 통상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의 제공을 말한다.

268)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장의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더 긴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269) 사용자는 휴무일의 노동과 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보다 많은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70) 국제사회권조약 제7조 (d).

그 전시(/공연)기간의 장기화 및 관람 등 시간의 과도한 제한, 유급정기휴가의 부정, 공휴일 보수 지급 거부, 여성 노동자의 유급출산 휴가 접근권 거부, 사전에 충분한 통고 없는 해고, 유해 작업장에서의 아동노동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노동부의 공식통계에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상황’ 등 산재관련통계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상황’ 등 재생 가능한 노동을 위한 건강보호조치통계가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성별 재해율과 모성보호휴가 및 산전후 휴가를 “고용보험통계연보” 등에서 가공하여 통계를 낸다.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통계청	3
	노동부	40
	한국산업안전공단	1
	한국여성개발원	3
계		47

<표 3-2-44> 작성기관별 '유리한 근로조건향유권' 관련지표수 (단위 : 개)

3.1.4.2 평가

작업장 등에 관한 사항은 법정사항이므로 비교적 통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쉼 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을 위한 휴식을 암시하는 근로시간 등의 통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한 국가는 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쉴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무상 또는 저렴한 문화접근기회에 관한 통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산재관련판정에 대한 불만율(/진정율 및 제소율/승소율)
-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율
- 산재노동자의 가족상황실태조사
- 공공문화시설의 무료입장실적
- 생산직 또는 제조업노동자의 공공문화시설이용통계
- 산재노동자의 산업재해판정의 불수용율(/관련민원/진정 및 제소/소송건수)
- 1인당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월차 등 유급휴가의 승인건수 및 비율
- 업종별/연령별(특히 19세 미만 아동노동자) 산재발생률
- 업종별 근무여건만족도
- 19세 미만 학생노동자의 학교결석률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3.1.5 노동조합의 권리

국제사회권조약 제8조에서는 노동조합 및 그 연합체의 결성, 조직, 가입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국제조약에서만뿐만 아니라 헌법 제33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인정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른바 노동3권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노동3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노동조합 자체를 집단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인권보장의 법적 주체로 승인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들 권리를 행사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노동3권은 또한 근로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²⁷¹⁾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하

271) 장영수, 앞의 책, p. 582.

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최소한의 허용에 머물렀고 현행헌법에서 약간 완화되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정도로 조정되었다.

3.1.5.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파업, 노동조합의 불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노동조합의 설립유보 및 허가제
- 노동조합 참여를 이유로 한 승진 및 급여의 차별, 노동조합사무실 접근금지
- 직권중재,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 공권력에 의한 파업파괴, 노동자대표자의 부정, 단체교섭의 거부 및 단체교섭 없는 정리해고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단체교섭권의 침해(예, 단체교섭의 거부, 적절한 교섭체계의 부인), 노동조합결성 및 참여권 침해(예, 노동조합의 불인정, 노동조합에 대한 제한조치, 조합원재산의 압류 등의 제한조치, 노동조합의 통신시설 접근금지 또는 방해, 일방적인 정리해고, 노동조합의 회합에 대한 물리적 공격, 노동조합회합의 부인), 파업권(예, 파업파괴활동 (strike-breaking)),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금지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이 영역의 공적 통계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노동통계연감”에 수록되어 있다.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통 계 청	1
	노 동 부	8
	한국여성개발원	1
계		10

<표 3-2-4-5> 작성기관별 '노동조합의 권리' 관련지표수 (단위 : 개)

3.1.5.2 평가

노동부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일반을 지정통계가 아닌 일반통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이자 노동자의 여타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표와 항목도 갖고 있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법외노동조합의 현황 및 조합원의 조직률
- 파업을 단행한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자 등에게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한 사건수
- 노동조합의 활동비 및 기금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건수와 총액
-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소송사건의 승소율/패소율
- 유니언숍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현황
-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가입률/조직률
- 파업에 참여한 이유로 징계 당하거나 해고당한 건수
- 노동조합활동(파업 포함)과 관련해 징계당한 건수
- 노동조합이 없는(페이퍼/옐로우 노동조합 등 사실상 노동자의 대표체가 아닌 경우 포함) 기업수
- 정리해고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없거나 불성실한 협의를 한 기업수
- 노동조합 결성신고접수 및 반려현황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2004 노동통계연감”과 “2004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된 지표 가운데 ‘노사분규’라는 용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산업평화를 깨버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반인권적인 표현임. 이는 ‘파업발생수’ 또는 ‘단체행동건수’로 고쳐야 하며, 같은 통계간행물에 나타난 ‘근로손실일수’도 노동조합의 파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지표 또는 항목임. ‘근로손실일수’라는 지표 또는 항목과 함께 단체행동으로 인한 ‘임금상실총액’ 및 ‘보전현황’을 추가로 통계를 내야 함.

3.2 사회적 권리

국제사회권조약은 제11조에서 가정의 존중,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기아에서의 해방 등의 규정을 두어 가족형성의 의의를 선언하고 있다.

3.2.1 가족형성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떠한 제한 없이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 결혼은 의사를 갖고 있는 배우자의 완전하고 전적인 합의로 이루어지며,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사회와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보장받는다.²⁷²⁾ 각각의 배우자는 혼인, 결혼 기간 및 이혼 시에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며 헤어질 때에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취하여야 한다.²⁷³⁾ 헌법도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²⁷⁴⁾

특히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부양과 관련하여 민법 제826조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상호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급출산휴가를 보장한다

272) 세계인권선언 제16조, 국제조약 제16조.

273) 국제자유권조약 제23조 제4항.

274) 헌법 제36조.

거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양육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양육을 위한 사회적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여야 한다. 출산에 대한 권리(reproductive right)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2.1.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결혼(예,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결혼, 법에 의한 강제결혼의 금지, 여성의 법정혼인연령을 낮게 책정하지 않을 것, 최소결혼연령의 규정)
- 어머니의 지위(예, 이혼의 불허금지, 이혼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어머니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 배우자의 평등(예, 계약결혼/중혼/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 등의 침해)
- 가족계획(예, 정부의 가족규모개입 또는 영향/강제낙태/대가족에 대한 중과세/조건부 보건혜택/태아의 성감별, 강제임신/장애여성의 사전동의 없는 낙태 등의 금지)
- 모성보호(예, 모성휴가 등의 급부/모성의 노동조건)
- 아동보호(예, 노동최소연령의 미규정, 위험한 작업조건의 아동)
- 후견인, 입양상의 차별, 성인교도소에의 아동구금,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한 부모와의 별거
- 아동안전(예, 아동학대, 구금중인 아동)
- 가족보호(예, 가족급여, 출생지위, 출국 등에 의한 가족상봉, 가정내 폭력, 가족위기)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혼인금지, 강제결혼, 강제단종, 강제피임, 강제임신중절, 피임접근금지, 강제임신, 강간·성적 박해·절단에 의한 감염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한국의 사회지표’와 기타 다른 통계에 다양한 형태로 가족과 관련된 통계와 지표가 수록되어 있다. 다른 권리영역에 비해서 이 영역은 비교적 체계적인 공적 통계가 있다. 대법원의 경우 주로 가정 및 호적 관련소송사건들의 통계가 존재한다.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통계청	105
	보건복지부	3
	대법원	16
	한국여성개발원	3
계		127

<표 3-2-5-1> 작성기관별 ‘가족형성권’ 관련지표수 (단위 : 개)

3.2.1.2 평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통계나 지표가 잡혀 있다. 또한 주관적인 만족도조사도 실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하지만 차별을 반영한 과거의 통계가 그대로 실시되거나 비인권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성 소수자의 가족형성권에 대한 태도조사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2004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된 ‘유배우부인당 평균출생아수’에서 ‘부인’을 ‘여성’이라고 표현하고, 교육정도를 나타내는 항목 중 분류로 “초졸 이하”는 삭제하고 “중졸”을 “중졸 이하”로 통합하여야 함.(이하 다른 지표에서도 같음) 또한 유배우여성의 건강을 위한 통계라면 ‘유배우자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평균출생아수도 포함되어야 함.

- “2004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에서 ‘가족계획실천율’이라고 지표는 사실상 피임의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였느냐를 알아보는 지표인데, ‘실천’이라는 용어를 넣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계획과도 상관성이 떨어짐. 또 출산에 대한 권리는 여성에게 있으며,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에 속함. 따라서 국가가 피임 및 피임도구의 이용 등을 권장하는 듯한 표현 및 지표는 반인권적인 정책으로 보임. 따라서 관련지표명은 완전히 바뀌어야 하며, 오히려 “진료소나 보건소 등의 피임관련실적”으로 지표가 바뀌어야 함.
- ‘연령별 여성이혼율’에 특별히 여성을 명기할 필요가 없으며, ‘연령별 이혼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오히려 합의이혼의 경우 누가 먼저 이혼을 제의했는가의 여부가 더 유의한 지표일 것임.
- ‘편부모가구비율’ 중 ‘혼인상태’를 구분하는 항목에 ‘미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성인인 미혼자녀의 경우에 취약가구로 분리되는 것은 무리이며, 부모가 있으나 실질적 미성년가장의 항목을 새로 편성하고 ‘편부모’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음.
- ‘한국의 사회지표’ 2. 가족부문에서 가족형성의 관심영역 하위에 세부관심영역으로 ‘가족의 해체’를 두고 여기에 ‘평균이혼연령’, ‘조이혼율’, ‘사유별 이혼구성비’를 개별지표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의 개념을 양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전제로 한 분류임.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고, 가족형성과 가족관계의 해소에 문제가 되는 대상은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체라는 용어는 부적절함. ‘가족관계의 변경 또는 해소’라고 하고 ‘변경’의 경우는 자녀 등 기존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해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지표화하거나 아예 세부관심영역에 ‘가족의 해체’의 용어를 수정해야함.
- ‘가족의 형태별 분포’ 지표는 혈연가구수만을 대상으로 핵가족과 직계가족, 기타로 구분하는데, 여기에는 남성 중심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1인가구비혼인가족도 포함되어야 함.
- ‘결혼에 대한 태도’ 지표와 별도로 ‘독신에 대한 태도’ 지표가 나와야

함.

- '인구총조사' 통계에서 '성씨, 본관'에 관한 통계는 시대에 맞지 않는 지표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의 "사법연감" 중 '가정폭력행위자(가정구성원별) 인원' 지표에서 '계부모와 자' 또는 '직모의 서자관계' 등의 항목은 삭제되어야 함. '가정폭력행위자(교육정도별) 인원'에서 '무학'은 차별적인 용어로 '배울 기회가 없었음'으로 개선되는 것이 타당함.

3.2.2 적정생활수준향유권(의식주)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²⁷⁵⁾ 또한 국가는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²⁷⁶⁾ 특히 국가는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요구되는(which are needed)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²⁷⁷⁾ 이때 요구되는 조치는 기술적·과학적 지식으로 영양관련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분배방식을 향상시켜야 하며,²⁷⁸⁾ 세계는 공정한 식량분배질서를 만들어야 한다.²⁷⁹⁾

이 개념에는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가 포괄된다. 일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적절한 식량, 적절한 의복, 적절한 주택 및 가구에 접근할 것과 이차적으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식수, 위생, 공공운송수단 및 공공보건, 교육 및 문화시설을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포함된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을 권리도 여기에 속한다. 특히 적절한 식량 및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다

275)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전단. 국제사회권조약 제11조 제1항 전단.

276) 국제사회권조약 제11조 제1항 후단.

277) 국제사회권조약 제11조 제2항.

278) 국제사회권조약 제11조 제1항의 1.

279) 국제사회권조약 제11조 제1항의 2.

른 인권영역과 연관되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세입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며, 강제철거(forced evictions)²⁸⁰⁾는 법과 국제인권문서의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가 된다.²⁸¹⁾

3.2.2.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식량생산(예, 농업개혁 프로그램, 손실을 끼치는 농업개혁, 토지분배, 소작에 대한 정책, 농민단체, 맑은 식수에 대한 접근의 거부, 식수오염, 산성비, 동물에 대한 남획, 농업장비의 지급, 농업기술의 발전, 지속 가능한 개간)
- 식량접근(식량부족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 필수식량의 봉쇄, 운송인프라의 구축여부 및 관세, 독점규제, 농산물의 덤핑방지, 수형인의 영양)
- 식량소비(예, 영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또는 비료, 안전한 식량기준 및 검열, 영양에 대한 소비자정보의 제공)
- 식량보전(예, 저장소, 식량에 대한 물리적 접근 및 경제적 접근에 대한 권리)
- 주거권(예, 긴급쉼터, 불법철거, 세입자의 보호, 부적절한 재정주, 적절한 공간의 확보, 소음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거주자의 자유 등)
- 절대적인 또는 상대적인 빈곤선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적절한 주거권의 침해(예, 각종 직접 침해하는 행위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적 재정주(social resettlement)에 대한 권리의 부인, 세입자의 강제철거), 적절한 식량권의 침해(예,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권의 거부, 생산자원의 봉쇄, 식량 안전을 위협하는 생산관행(예, 화학농약과 같은 유해첨가물의 사용), 필수식량자원의 봉쇄, 식량가격의 인위적 폭등, 기초식량공급품에 대

280)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에서 적절한 형태의 법적 또는 기타 보호에 대한 접근 없이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의 의지에 반하여 영구 또는 일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281) Committe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7(1997).

한 금지적인 중과세 또는 불필요한 과세, 농업상품의 시장덤핑, 건강한 환경권의 침해(예, 천연자원의 악화(예, 공해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 및 시행(예, 적절한 주거를 위해 충분하지 못한 최저임금, 미숙하거나 부적절한 농업개혁 프로그램, 농민에게 불리한 농업개혁 프로그램),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예, 전세 및 월세지원 대책의 부재)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적정한 생활에 대한 권리영역의 통계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와 보건복지부 및 그 부속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통계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민간기관으로 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주택가격'과 관련된 현황통계가 통계청의 지정통계로 관리된다. '복지욕구조사'통계는 앞으로 이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갈려는 징후로 보인다.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통 계 청	145
	환 경 부	54
	문화관광부	1
	농 립 부	15
	산업자원부	20
	건설교통부	5
	보건복지부	25
	해양수산부	2
	산 립 청	13
	농촌진흥청	1
	해양경찰청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2
	국 민 은 행	14
	계	454

<표 3-2-5-2> 작성기관별 '적정생활수준향유권' 관련지표수 (단위 : 개)

3.2.2.2 평가

이 영역은 적절한 의·식·주에 대한 권리인데, 여기에는 주거와 쾌적한 환경 및 식량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 아동, 여성가구 주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국가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들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인데, 국내법적인 정비는 잘 되어 있지 못하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단속 위주의 통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관련한 통계가 미흡하다. 또한 주거와 관련해서도 개발과 관련하여 주택을 재산으로 보는 데 그치고 주거라는 권리 중심의 통계는 부족하다. 아울러 주택가격의 동향을 비록 지정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관행

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적절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지표개발
- 사회적 유해환경에 대한 지표의 개발
- 방학중 결식아동의 수
- 미성년가구주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지표
- 강제철거 집행과 개발지구세입자의 주거실태
- 식품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경보체계의 도입을 위한 지표개발
-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유통실태
- 주택 공개와 주택소유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사고통계'는 단순하게 사고로 인한 오염을 통계내고 있는데, 그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환경권 침해'(예, 사고해역의 통과 및 접근금지일수 등) 및 '생업에 미친 영향평가'도 포함되어야 함.
-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지표 가운데 주택담보의 담보능력변화추세 등이 추가되어야 하고 주택담보현황과 함께 공표되어야 함.
- 전력공급계약의 해지가구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미성년가정세대주의 수와 그 비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미성년가정세대주의 주거시설(/집)에 겨울철 평균온도 또는 에너지사용비율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활동제약자실태조사'는 사실상 재가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인데, 위 통계명칭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문제를 시혜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비인권적임. 통계명칭을 '장애인생활복지욕구실태조사'로 바꾸어 장애인의 권리문제로 명확하게 하여야 함. 또한 조사주기가 5년이어

서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고 의례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도 격년정도가 적절할 것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보고' 지표도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우선 지표명칭에서 편의시설이라는 용어는 권리 중심적인 용어가 아니라 시혜적·행정적 용어임. 따라서 지표명을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설치 및 개선현황'으로 바꾸고 설치대상수와 실제설치수, 설치율의 항목에 덧붙여 개선대상의 수와 실제개선의 수 및 개선율을 포함시켜야 함.

- '소년소녀가정세대 현황보고'의 지표명도 '미성년가정세대 현황보고' 또는 '미성년세대주(/원) 현황보고'로 바뀌어야 함. 항목 중 '미재학자' 항목은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로 구분해서 통계를 내야 함.

3.2.3 건강권

국제사회권조약 제12조 제1항은 건강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ealth)를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을 누릴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²⁸²⁾, 같은 조약의 본문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안녕(well-being)이 완전한 상태이며 단순히 질병(disease) 또는 질환(infirmity)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⁸³⁾ 권영성 교수는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권리가 건강하게 될 권리(the right to be healthy)는 아니다.²⁸⁴⁾ 따라서 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특히 취약하고 주변화

282) 유엔이 보는 건강권에 대한 공식해석은 식량, 영양, 주거, 안전한 식수접근, 적절한 위생상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및 건강한 환경과 같은 환경과 같은 건강을 결정하는 범위까지 건강한 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사회적인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14(2000)를 참고.

283) WHO 현장 전문.

284) 건강에 대한 권리는 자유(freedoms)와 보장(entitlements)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 자유의 측면에서는 성출산의 자유 등 건강과 몸에 대한 자기통제권 및 고문, 동의 없는 의료적 치료 및 실험에서 자유로울 권리와 같이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포함된다. 반면 보장

된 집단이 차별 없이 건강시설, 재화, 용역에 접근 △영양상 적절하고 안전한 최소필수식량에 대한 접근(기근으로부터의 자유) △기초적인 쉼터, 주거, 위생 및 안전한 식수의 적절한 공급 및 필수약품의 제공 및 접근 △역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전체 국민의 건강관심사에 기하여 국가의 건강 전략 및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권리에 대해 국가는 특별히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질병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 조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²⁸⁵⁾

3.2.3.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진료(예, 일차건강진료에의 접근, 출산상담 및 건강진료, 아동발달, 아동영양, 아동기면역)
- 건강진료서비스(예, 진료서비스에의 접근, 건강진료서비스보조금의 부족, 진료거부, 건강진료시설, 의약품의 공급, 의료윤리(예, 약물남용, 의료연구, 의료연구시 통보와 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생의학연구)
- 의료인력(예, 분쟁시의 의료인의 중립, 의료인의 처벌 또는 기소, 의료인의 독립성 훼손)
- 공중보건(예, 방역, 예방적 보건조치, 의학적 지식의 교육, 질병의 예방·치료·통제, 공중에 알리지 않은 전염병)
- 의료정보(예, 의료기록, 의료정보에의 접근, 의료적 위협의 은폐)
- 의료시설(예, 정신보건/요양시설, 정신보건치료, 장기간 영장 없는 시설유치, 미인가시설, 주변화된 집단의 의료접근)
- 의료전달체계(예, 법정전염병)

② (잠재적) 관련내용

의 측면에서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기회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건강보호체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 883.
285) 국제사회권조약 제12조 제2항 (a)~(d).

- 직접침해 : 금지할 정도로 비싼 의료비용, 장애인 및 무의탁자(/노인)에 대한 의료지원금의 부인, 일차의료/진료상의 접근 차별, 특정지역에 대한 일차건강진료의 무제공, 건강진료서비스의 제공실패, 전염병의 확산, 적절한 치료의 거부,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건강권과 관련한 공식통계는 보건복지부와 그 부속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집중되어 있다. 통계청은 이런 원통계를 가공하여 '한국의 사회지표' 등의 통계로 재구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영역도 환자의 권리나 건강관련정보의 문제, 의료윤리처럼 인권영역에서 중요부분의 통계는 아직 형성중에 있거나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 병무청통계의 경우는 명백히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통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는 청년남성들의 신체상태와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통계청	32
	문화관광부	13
	보건복지부	106
	병무청	2
	식품의약품안전청	32
	국민건강보험공단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한국여성개발원	6
계		282

<표 3-2-5-3> 작성기관별 '건강권' 관련지표수 (단위 : 개)

3.2.3.2 평가

이 영역의 공식통계들은 대부분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집단적인 정책 또는 의료정책이나 체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 개별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통계는 적은 편에 속한다. 난치병 또는 전염성질환, 위생, 방역, 병상 수, 체력과 체격에 대한 통계가 주를 이룬다. 이것은 건강에 대한 이해가 아직 신체의 온전한 기능 여부와 근력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정신건강과 사회건강이라는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지식정도는 건강권의 중요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통계에서 건강관련 지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국가로부터 당연히 구호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 의식의 형성을 위해서 의료지식 및 의료윤리와 관련된 정보의 전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통계가 시급히 마련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연간의료분쟁건수 및 총액과 재판결과
- 의료지식홍보 및 전달실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의료접근권에 관한 실태
- 사회적·환경적 장애 또는 사회적·환경적 건강에 대한 이해도
- 만성질환자 및 난치병환자들의약품 입 및 의료비지출현황
- 난치병치료약의 특허현황과 국내(/국가)의약분야의 특허보유현황
- 응급대처요령의 숙지 및 관련지식의 전파실적
- 수형자 등 구금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에 관한 국민적 태도
- 노인성 및 성인성질환에 대한 국가의 공적지출비율
- 유행성 또는 전염성질환의 예방백신의 확보율 및 무료접종실적
- 의료기관이용시 일반환자/건강보험적용환자/의료급여환자의 동종질병관련입원 비교
- 육체노동자 중 10대 상병과 치료현황
- 공중보건의의 1일 평균의료상담회수와 상담자의 만족도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보건복지부의 ‘한센병 관리사업실적’통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통계자료실에는 나환자등록관리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나환자’는 ‘한센인’으로 바뀌어야 함. 또한 지표명을 등록 및 관리로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인식이 아니라 난치병환자에 대한 방치/격리/관리적 의미를 담고 있어 지표명도 ‘한센인 치료현황’으로 바뀌는 것이 타당함.
- “2004 한국의 사회지표”통계 중 ‘한방의료기관 이용자비율 및 평균 방문횟수’항목에서 “무학”을 “교육기회 놓침” 또는 “교육기회 없음”으로 하여야 함.

3.3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는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문화상대주의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공유하는 개별문화는 각각 독자적인 세계인식이나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우열관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상대주의이며, 문화적 권리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향유하자는 취지이다.

3.3.1 교육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최소한 초등단계의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술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²⁸⁶⁾ 국가는 적당한 장학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²⁸⁷⁾ 아울러 자녀의 부모 또는 후견인은 초등교육기관의 선택시 우선권을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교육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헌법 제31조 제2항은 교육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수준과 국가발전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정치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는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전제한다. 이는 학교교육이 공교육에 기초해있고, 국가가 학교교육을 관리하면서 교육시설, 교과과정, 교사의 수급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역할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education)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인권영역 가운데 하나이면서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아동과 성인에게 능력향상을 위한 일차적인 도구가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right to be learned)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은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자유는 교사와 학생의 학문적 자유가 수반될 때에만 향유될 수 있다.²⁸⁸⁾

3.3.1.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286)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국제사회권조약 제13조 제2항 (a)~(c).

287) 국제사회권조약 제13조 제2항 (d).

288)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13(1999).

① 관련개념어

- 초등무상교육(예, 특정집단/성인/무국적자 등 모든 사람의 초등교육불가능, 원거리에 있는 학교, 통학버스의 미제공, 장애인편의시설의 미제공, 과도한 등록금, 가정에서 만든 교복의 거부, 충분한 교과서의 무상보급, 각종 잡부금의 거출, 부적절한 환경의 학교시설과 교실, 문제해결의지, 사적 교육모니터의 실패, 불충분한 초등교육기간, 교재의 불충분한 제공, 학생 대비 교사비율, 교사자질의 모니터, 교사의 저임금, 고용된 아동의 등교보장, 취약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족, 정부의 교육지출, 교육의 차별해소정책)
- 비국가학교의 설립(예, 학교선택권, 국가보조금의 지급, 소수자/특화학교의 인가)
- 중등교육(예, 점진적인 무상교육의 도입, 중등·기술·직업학교접근권)
- 고등교육(예, 교육기회의 평등, 학문연구의 자유와 교육기관의 자치)
- 평생교육, 문해교육, 전통문화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편제, 성인교육, 학제, 장학제도 등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금지될 정도의 과중한 수업료(prohibitive school fees), 부적절한 학교건물과 교실조건, 원거리통학, 무상교재의 불충분한 제공, 학생과 교사비율의 과도한 차이, 유자격교사의 부족, 교과를 이수할 충분한 교육기간의 부족,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하였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사립학교설립의 금지 및 제한,
- 차별행위 : 특정집단의 초등교육에의 접근 박탈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통계청	63
	보건복지부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
	한국교육개발원	304
계		400

<표 3-2-6-1> 작성기관별 '교육에 대한 권리' 관련지표수 (단위 : 개)

3.3.1.2 평가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학교급별 컴퓨터보유현황' 지표는 '학생별 주당 평균컴퓨터접근횟수와 실질시간 및 교육시간' 등의 지표로 대체되어야 함.
- 각급학교(반년별)의 인권교육실시현황 및 실적
- 국민의 연간공공도서관 이용평균횟수와 이용평균시간
- 노인(/여성)의 문자해독률 및 아동·청소년/성인의 기능성문맹률
- 가구당 구사 가능한 외국어 언어수와 종류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에서 '졸업생진학률' 지표 중 '고등학교 -> 대학' 항목은 오히려 미진학률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항목은 '실업', '입대', '결혼', '취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기회 또는 직업훈련기회에 대한 평가로 삼아야 하며, 인문계, 상업계, 공업계 등의 각종 계열별로 통계를 내야 함.

3.3.2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저작권

국제사회권조약은 제15조에서 과학문화의 보존·발전·보급·과학연구·창작활동의 자유와 존중,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창작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보호, 과학적·문화적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²⁸⁹⁾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²⁹⁰⁾ 과학적 연구와 창작활동을 위한 불가결한 자유도 보장한다.²⁹¹⁾

이 권리영역의 국내법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1996년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을 비준하였다. 체약국은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보호를 위해 동맹을 형성하고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번역권, 복제권 등의 재산적 권리와 저작자인격권을 정함과 동시에 그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동안 및 사후 50년으로 규정한다.

3.3.2.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문화생활참여를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
- 과학기술의 진보와 향유(예, 인간 엄에 반하는 과학적 관행, 대중의 과학적인 이익에의 접근금지, 건강을 파괴하는 과학적 연구 등)
- 도덕적·물질적 이익 보호(예, 공공질서와 공중도덕에 반하는 발명 또는 산물의 특허인정, 권리를 침해하는 발명 혹은 산물의 특허보장, 저작권보호의 공표지연, 과도한 특허절차비용, 문헌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책의 부재, 문헌저작물의 무단복제, 문헌저작물의 표절, 원산지의 미명기, 지적재산권, 문화의 재생산 및 이용을 규정한 관습법 또는 규정, 민요의 무단사용, 공적인 도메인의 개인소유, 문화유산의 소유권 승인 등)
- 과학 및 문화의 보존(예, 집단적인 문화재산의 부인, 문화재의 도굴,

289)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290)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

291) 이 분야에 대한 유엔의 공식견해인 General Comment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문화적 정체성의 자유로운 선택/변경, 비자발적 혹은 사실상의 문화적 박탈, 문화적 재산의 자의적인 제거/박탈, 선동, 인종차별적인 활동·조직 또는 그것을 지원으로 문화적 정체성 존중의 무시 등)

- 과학적 연구와 창작활동의 자유(예, 언어선택, 예술훈련예술가의 지위증진 및 보호, 과학연구에 대한 접근의 법적 제한, 공식발표전 공표, 과학연구 공유의 자유, 과학자단체 회원가입거부, 과학자의 국내 이동 및 출입국금지, 통신금지 등)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문화생활참여권의 침해(예, 공공창작물에 대한 철거), 과학기술향유권의 침해(예, 인간존엄에 반하는 과학적 실험, 과학적 이익의 일반접근 부정, 공공질서와 양속에 반하는 발명 또는 생산품의 특허인정, 인권을 파괴하는 발명 또는 생산품의 특허인정)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선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하였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문화생활향유권과 과학기술이용권은 주로 문화관광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정보통신부와 통계청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통계는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컴퓨터와 IT통계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누릴 권리와 관련된 지표보다는 특허와 기술 그 자체에 대한 통계가 주를 이룬다.

관련지표수		
작성기관	통계청	118
	과학기술부	9
	문화관광부	47
	정보통신부	64
	특허청	1
	국립공원관리공단	41
	대법원	12
계		292

<표 3-2-6-2> 작성기관별 '문화생활참여권 등' 관련지표수 (단위 : 개)

3.3.2.2 평가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공공미술관의 국민참여프로그램 유무 및 총 참여인원수
- 공공미술관의 입장료수익과 흥행목적의 전시회유치건수와 일수
- 공공미술관 및 음악당, 공연장의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설치여부
- 공공미술관의 작품매입비용
- 기업의 문화예술분야의 기여형태와 기여총액
- 시군구별 (지역) 문화예술인총람 존재여부 또는 현황유지
- 연간 시군구별 지역주민참여형 문화행사개최건수와 연참여인원
- 주민자치센터 또는 문화의 집의 문화관련프로그램 참여주민수(중복 회피)
- 시군구별 정기적인 문화예술제 실시여부와 관련지출현황
- 시군구별 게임방현황 및 청소년이용실태
- 시군구별 옥외공공극장 또는 공연장소 존재여부 및 운영실적
- 지자체와 해외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문화교류현황 및 실적
- 시군구별 문화수요조사
-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통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는 개인의 단순한 정보통신기기의 설치와 이용 및 인터넷쇼핑 등인데, 이것은 정보화에 대한 개념에 인간의 편의성만 있지 국가나 공공영역의 역할은 없음. 따라서 해당정보화실태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컴퓨터구입지원 및 인터넷망 지원실적',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가능정도', '전자메일의 사용인구수', '장애인의 인터넷이용현황 및 비율',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지원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인터넷시설이용경험 및 동 컴퓨터시설의 노후화정도'에 대한 통계를 내야 함.

- 국내개발 소프트웨어 중 프리웨어의 종류 및 보급건수
- 시군구의 등록소프트웨어 가운데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종류별 건수 및 총액
- 소프트웨어 또는 온라인게임 운영홈페이지에서 반인권적인 요소가 있어 유통이 금지되거나 차단된 홈페이지
- 국비 또는 지방비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실적 및 주민배포현황
- 최근 1년 내에 개봉된 영화를 지자체 문화시설에 무료로 상영한 수
- 국가의 특허건수와 특허의 사회적 활용실적
-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지원연구실적의 사회화정도에 관한 실태조사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2004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주거와 교통·문화와 여가·교육” 중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방법’과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이유’ “지표는 여가에 대한 권리를 왜곡시키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여가의 권리는 쉼 권리(right to rest)와 달리 ‘정신적이거나 자신의 관심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위의 지표들은 모두 개인이 노동일 이외의 시간에 쉬는 방법으로 잘못 이해하고 구성된 항목임. 여가, 즉 레저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공공영역이 ‘국민 개인이 자기의 관심사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개인들의 관심사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이중적인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음. 특히 불만족이유와 관련해서는 국가 또는 공공영역의 서비스 및 시설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빠져 있음.

따라서 이들 지표에 대한 항목들은 전면 개편되어야 함. '음악감상방법' 지표는 방법이라는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인터넷 등의 유무료사이트의 이용 및 mp3 플레이어의 이용 등 그야말로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진정한 문화적 향유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산업 또는 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결국 사회지표는 기업의 입장 또는 그 수단이나 방법으로 구성하고 보다 본질적인 내용인 국가의 국민에 대한 봉사 또는 기회제공 및 여가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표는 거의 없음.

여가와 관련된 지표항목들 가운데 개인의 교육정도라는 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지표를 잡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이를 대체해서 '소득수준'별로 잡아야 함. 이렇게 할 때 국가는 경제적 약자의 여가를 보장할 하나의 정책을 시사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문화국가의 창달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임.(이하 같은 통계 등에서 '여가' 또는 '레저'로 표현되어 있는 지표들은 모두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대폭 개편되어야 함)

-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청소년통계"에도 청소년들이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방문 또는 관람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보다 문화의 실질적인 향유와 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여부로 지표와 항목이 바뀌어야 함. 예를 들어 공공미술관의 청소년입장료는 아주 저렴한데, 해외유명작가(?)를 유치하여 고액의 입장료를 받고 또 도록을 고가에 구매하여야 한다면 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은 실질적으로 문화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문화권으로 보면, 지자체의 문예회관 또는 문화회관 등에서의 영화상영시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지 개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 상업적인 영화관에 갔는지의 여부는 중심적이라고 할 수 없음.

3.3.3 자기문화향유권

자기문화향유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양식을 미화하여 그것을 절대시하는 한편, 타 집단에 대해서도 그 규범을 유용하여 반감을 갖거나 증오, 열악한 것으로 보는 자기민족중심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소수민족이나 자치민족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堂堂하게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3.3.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부인, 전통적인 혼례의 부인 또는 불법화, 전통적인 신념(예, 전통적인 토지부속물의 훼손, 전통종교의 부인 또는 불법화 등), 전통적인 권위의 부인, 전통적인 재산권의 부인, 전통적인 이름의 법적 부인 등)
- 미디어의 전통언어사용 제한 또는 금지, 국영매체의 문화다양성 반양실패, 학교교과과정에 문화유산의 미포함, (전통)언어교육프로그램의 부족, 문화교육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부족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특정언어사용(특정문화관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전통문화 또는 문화재와 관련한 통계는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관련주무부서에서 내고 있다. 하지만 그 부서의 업무활동기록에 대한 단순한 축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국가통계로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해당통계/지표 없음>

3.3.3.2 평가

관련중앙행정기관 등은 관련통계를 자체통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통계로 관리되어야 한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인간문화재 및 그 이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전통문화의 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한글의 바른 사용을 위한 국가기관의 교육 및 홍보실적
- 전문용어의 한글화 또는 간편화실적
- 해외소재(또는 약탈문화재)현황 및 보전/반환노력의 실적
- 재외공관 및 재외한국문화관 등의 운영실적
- (국립/)공공민속박물관 등의 운영실태와 지원현황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3.3.4 인권질서추구권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의무²⁹²⁾와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 행사할 수 없으며,²⁹³⁾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²⁹⁴⁾ 이는 권리와 자유의 추구 그 자체를 막기 위한 자기파괴금지조항으로,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인 질서를 주장하고 추구할 권리를 하나의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자기파괴금지조항에 따라 모든 권리와 자유는 추구되어야 한다.²⁹⁵⁾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제28조의

292)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

293)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3항.

294) 세계인권선언 제30조.

295) UNHCHR, Fact Sheet No. 3(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An

기준은 조약법의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자유권조약과 국제사회권조약에서 동일한 조항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이 조항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진행중이다.²⁹⁶⁾

3.3.4.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저항권, 권리와 자유행사의 내재적 한계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파괴하는 일체의 세력, 선동, 조직, 관행, 제도를 확대·유지·부활시키는 일체의 행위, 인권관련입법의 지연된 입법 및 정책수립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하였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이 영역의 통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파시즘은 언제나 인정할 수 없듯이 인권을 부인하고 국가주의적인 체제와 질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부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방계적인 통계로는 시민사회의 현황과 시민사회에의 참여도 등이 이와 가장 유사한 통계들이다. 또한 인권질서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이

introduction to the core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treaty bodies), p. 11.

296) Hoe Lim, Trade and Human Rights: What's at issue?, 미주 28을 참조. 이 Working paper는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25차 회의(2001년 4월 23 - 5월 11일, 제네바)에 논의될 제5주제와 관련하여 WTO 대외협력관인 필자의 개인견해로 제출되었다.

기도 한데, 계층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실상의 신분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2005년 6월)도 이 분야의 대표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의 통계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그 지표와 항목도 더 보완되어야 한다.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통 계 칭	6
계		6

<표 3-2-6-3> 작성기관별 '인권질서추구권' 관련지표수 (단위 : 개)

3.3.4.2 평가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 또는 인권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앞으로 이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인권단체와 인권전문가들의 비인권/반인권관행에 대한 태도조사
- 기업 또는 사업주(/CEO)의 인권에 대한 태도조사
- 국민인권의식지표의 개발
- 인권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조사
-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제한을 직접 의도하거나 우려가 큰 입법에 관한 통계
- 공직자(특히 선출직)의 인권성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 “2004 한국의 사회지표”통계 중 ‘사회적 이동가능성에 대한 태도’지표에서 소득별 통계가 있어야 함.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중 ‘사회단체참여도’지표에서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는 사회일반의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영역의 항목으로 포괄되는 것이 타당하며, 항목 중 ‘사회봉사단체’를 세분화하여야 함. 즉, 사회단체와 봉사단체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직능단체와 시민운동단체, 인권단체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는 적십자 등 공적 봉사단체와 자발적인 봉사단체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이 지표에서는 참여방식과 시간 등을 같이 통계내야 함.

4. 법질차적 권리

4.1 법적 인격체의 인정

법적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the right to legal personality or the right to recognition as a person)는 세계인권선언 제6조²⁹⁷⁾와 국제자유권조약 제16조²⁹⁸⁾에 규정되어 있다. 국제자유권조약의 초안에는 제16조에 “누구도 법률적 인격을 빼앗기지 않는다²⁹⁹⁾”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법인’(juridical person)이 아니라 인간을 강조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현재의 본문으로 결정되었다.³⁰⁰⁾ 여기서 말하는 “법 앞에 인간”(person before the law)은 모든 개인과 그 개인의 권리행사역량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인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⁰¹⁾ 즉, 모든 사람은 법률의 주체가 되며 객체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의 신분증발행은 인간으로서의 승인을 함축하고 있다.³⁰²⁾ 여기에는 소수자 또는 정인지체와 같은 이유로 사람

297)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298)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shall

299) No persons shall be deprived of his juridical personality.

300) UN document A/2929, Chapter VI, sections 97-8; Nihal Jayawickrama, 앞의 책, pp. 595-596에서 재인용.

301) Nihal Jayawickrama, 위의 책, 같은 곳.

302) *Darwinia Rosa Monaco de Gallicchio v. Argentina*, Human Rights Committee,

의 법적 행위능력을 의심받지 않는 것³⁰³)도 포함된다.

4.1.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주민등록증발급 및 지문날인의 거부, 인감증명발급의무, 신분확인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뇌사자의 법적 사망판단, 미아 및 실종자에 대한 법적 사망선고, 독재정권의 해외에 거주하는 난민과 지하활동을 벌이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망선고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하였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이 영역의 인권은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도 하지만, 국가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인데, 지금까지의 관행은 국가가 국민을 통제 또는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해당통계/지표 없음>

4.1.2 평가

민주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의무주체이고, 국민의 법률 행위의 주체이지 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호적제의 문제 등도 국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Communication No.4000/1990, HRC 1995 Report, Annex X.② Nihal Jayawickrama, 위의 책, 같은 곳에서 재인용.

303) Un document ①4625, section 25. Nihal Jayawickrama, 위의 책, 같은 곳에서 재인용.

생활의 필요에 따라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 기존통계들을 재구성하거나 제기되는 관련현안에 조응하는 통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주민등록증발급거부자(/미발급자)의 현황
- 지문 및 유전자 등 국민의 생체적인 정보의 강제취득현황
- 인감증명서 발급실적 및 도용건수
- 잘못된 신상에 관한 국가기록의 시정요구건수와 실현건수
- 과거 권위주의정부 하에서 자행된 국민에 대한 왜곡된 국가기록실태조사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4.2 법적 구제권(체포, 구금/처벌중 또는 후)

법절차적 권리로서의 법적 구제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예컨대 수사, 재판 및 형집행절차)에서 부당하거나 불법한 처우를 받게 되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의 구제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법경찰관 등의 불법한 체포·구금행위로 인해서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³⁰⁴⁾이 인정된다. 형집행절차에서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역시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구금되었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청구권³⁰⁵⁾이 인정된다. 특히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으로 야기된 인신 침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게 지움으로써 사후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려는 점에서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원인책임을 추궁하는 국가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³⁰⁶⁾

304) 형사보상법 제29조.

305) 형사보상법 제28조.

306) 허영, 한국헌법론, 신관, 박영사, 2001, p. 360 이하 참조.

4.2.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국가배상청구
- 형사보상청구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구속자의 권리 부인(예, 불법연행시 미석방, 진행재판포기권의 부인, 연행자의 적절한 조건 부정, 기결수와 미분리수감, 미결수의 강제노역)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이 영역은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광범위한 의미로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또 인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위법한 국가행위 전반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절차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는 인신의 문제에 국한한다. 따라서 공식통계는 당연히 수사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경찰과 검찰, 법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승인통계목록에는 검찰과 경찰의 통계적인 기록이 없으며, 국가정보원의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대 법 원	27
계		27

<표 3-2-7-1> 작성기관별 '법적 구제권' 관련지표수

(단위 : 개)

4.2.2 평가

대법원의 통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국가배상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 국가배상판결사건과 관련된 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건수와 총액
- 최초확정판결일로부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기간
-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수와 승소율
-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된 경우 실질구속기간에 대한 국가지급액
- 국선변호인의 평균의뢰인면접횟수와 실질시간
- 대법원의 “사법연감” 중 ‘국가배상사건 누년비교표 - 심급별’의 ‘미제’항목은 ‘미제국가배상사건 누년비교표 - 심급별’지표로 하고 기간별, 사유별로 통계를 내야 함.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4.3 인신보호(항소, 체포, 보상, 보석, 계약이유, 구속적부심)

인신의 보호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신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제도로는 사전영장제도(헌법 제12조 제3항),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보석제도(형사소송법 제95조와 96조) 등이 있다.

사전영장제도는 검사의 청구와 법관에 의한 발부를 결합하여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시에는 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피의자구속에 대한 사법기관에 의한 통제를 실현하는 제

도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절차에 부당함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태(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미의 인신보호영장제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항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석제도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준비하도록 하며, 구금에 의한 악영향을 배제하여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³⁰⁷⁾

4.3.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사전영장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보석제도
- 사전영장신청률(/인용률 또는 기각률)
- 체포영장발행건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인용률, 보석신청수용률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 통계의 종류와 실태

<위의 '법적 구제권' 참조>

307)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p. 281.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대 법 원	14
계		14

<표 3-2-7-2> 작성기관별 '인신보호' 관련지표수 (단위 : 개)

4.3.2 평가

<위의 '법적 구제권' 참조>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경찰의 영장의견에 대한 검찰의 미수용지휘건수
-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면담비율
- 구속기간연장비율
- 긴급체포의 석방비율
- 기각된 영장청구사건³⁰⁸⁾의 기각이유별³⁰⁹⁾ 통계
- 관할별 구속기소비율
- 형사사건의 구속에 대한 불구속에 대한 지수
- 형사사건구속피의자 중 청소년의 비율
- 피의자심문시 변호인입회사건건수 및 비율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4.4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인신보호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재판절차가

308) 구속, 체포, 감호, 압수, 수색, 감정유치, 통신제한조치 허가, 보호관찰구인장, 소장신청유치허가.

309) 예,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음, 증거불충분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101조, 103조와 109조)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의 당연한 요청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동법 제12조 제4항), 진술거부권(동법 제12조 제2항 후단),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형사소송법 제34조),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법관의 제척·기피·회피(형사소송법 제17조 이하)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인신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4.4.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기소, 재판건수, 변호인수임재판, 국선변호인의 선임, 심급별 확정판결기간, 무기평등의 원칙, 방어권
- 기소 후 첫 심리에 이르는 평균기간, 자기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열람권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상고심사건의 공판일정의 무기한 미공개, 합리적 이유 없는 공판지연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이 영역의 공식통계는 소송과 관련되어 있어 대법원의 통계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 방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사건 중심의 통계현황은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형사피의자의 권리 및 사법구조 및 관행 등과 관련된 통계는 공식통계에서 거의 잡히지 않는다.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통 계 청	2
	법 무 부	40
계		42

<표 3-2-7-3> 작성기관별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관련지표수 (단위 : 개)

4.4.2 평가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권속재판건수
- 2년 이상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사건의 죄명별 통계(/피의자의 변호인의 법조경력별)
- 판결문에 국제인권조약 및 ILO협약인용비율
- 국선변호인의 승소율
- 약식명령사건의 정식재판청구
- 국민관심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 변호사의 연간납세액
- 국선변호인이 아닌 변호사의 무료변론건수
- 공익소송건수
-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사건
- 재판부기피신청건수와 그 사유
- 허가보석신청의 보석금총액 및 평균액
- 군사재판유죄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확정된 사건수
- 군지휘관의 군인 및 군속에 대한 구속 또는 기소지휘
- 군지휘관에 의한 영창처분건수 및 평균구금일수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4.5 적정절차

적정절차의 원리(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는 1215년 Magna Carta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인신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속원리의 하나로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차원의 적정성'(procedural due process)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된 법률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는 '실체적 차원의 적정성'(substantive due process)까지를 요구한다.³¹⁰⁾ 따라서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부당한 장기구금, 변호인 선임권 또는 접견교통권의 제한, 피고인의 공판조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제한, 피고인의 진술권의 부당한 제한 등은 적정절차의 원리에 반한다.

4.5.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적정절차
- 비례의 원칙, 변호인 선임, 미란다원칙의 고지, 휴무일영장집행, 가택침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체포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적정절차를 무시한 연행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경찰, 검찰 및 출입국관리소 직원 및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근로감독관 등의 공식통계는 없다.

310) Adair v. United States, 208 U.S. 161(1908); Woods v. Miller, 333 U.S. 138(1948); 헌재결 1992. 12. 24, 92헌가8; 1993. 7. 29, 90헌바35; 1994. 12. 29, 94헌마201.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대 법 원	12
계		12

<표 3-2-7-4> 작성기관별 '적정절차' 관련지표수

(단위 : 개)

4.5.2 평가

적정절차가 인권영역과 결부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공권력집행기관인 경찰과 검찰 등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한정된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진 여타의 부처에서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나온 통계는 거의 없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경찰과 검찰의 적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민원/진정/제소건수
- 적정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한 검찰의 패소판결건수
- 미란다원칙의 미고지건수
- 연행/구인시 계구종류별 건수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4.6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법절차적 권리로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불구속수사 또는 재판이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구속수사 또는 재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구속기간이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³¹¹⁾ 인간의 존엄을 인권의 가치적 핵심으로 보장하고 있는 오늘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의 형벌작용이 지속

311) 김철수, 앞의 책, p. 332.

해야 하는 필연적인 원리이다. 왜냐하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범죄인으로 취급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 인간의 존엄은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되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보호에 기초한 ‘일사부재리의 원칙’(ne bis in idem)³¹²⁾이 특별히 국가의 형벌권을 기속하는 원리로 기능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³¹³⁾ 이에 의하면 재판결과 무죄가 확정되거나 심판이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인신의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4.6.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무죄추정, 행정형벌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직접적인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 및 검찰의 공식통계다. 다만, 경찰의 “범죄분석”에서 관련내용은 기소전 단계이므로 이 영역에서 배제하였지만, 본질적인 맥락은 기소를 전제로 한 검찰의 <범죄분석>이 가장 직접적인 통계이다.

312)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313) 허영, 앞의 책, p. 344.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법 무 부	5
	검 찰 청	16
계		21

<표 3-2-7-5> 작성기관별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관련지표수 (단위 : 개)

4.6.2 평가

경찰과 검찰의 공식통계에서 용어와 항목의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무죄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는 관행과 관련한 통계는 거의 없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경찰과 검찰의 범죄분석통계는 수사 또는 기소사건을 중심으로 범죄자로 규정한 사항을 내고 있는데, 확정판결된 사건에 기초하여 범죄분석통계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러기 전에는 경찰청의 “범죄분석” 또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모두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경찰청은 “형사용의자/피의자통계” 또는 “형사사건통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범죄분석”은 “형사사건분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런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함.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수집은 금지되어야 함.

4.7 죄형법정주의(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며, 그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과할 때에는 그 형벌의 종류와 양이 국민의 의사에 기한 법률이 정

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³¹⁴⁾으로서 형벌법규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기본적인 내용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법의 금지’, ‘형벌규정의 소급효금지’, ‘유추적용의 금지’와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벌칙규정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이나 소급입법에 의한 형벌의 강화 등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러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소급효력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³¹⁵⁾

4.7.1 관련 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 개념어

- 관습형법의 금지
- 형벌규정의 소급효금지
- 유추적용의 금지
-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 공소시효적용의 소급효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공식통계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314) 헌재결 1997. 3. 27, 95헌가17.

315) BVerfGE 25, S. 269; 헌재결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13(병합). 이러한 의미에서 “5·18특별법”(동법 제2조)이나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에관한특별법”(동법 제3조)에서 공소시효의 정지 내지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허영, 앞의 책, p. 344).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검찰청	2
	대법원	8
계		10

<표 3-2-7-6> 작성기관별 '죄형법정주의' 관련지표수 (단위 : 개)

4.7.2 평가

죄형법정주의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비교적 잘 지켜지고 통계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다만, 상징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사례건수 및 관행에 관한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경찰/검찰)의 혐의내용/기소내용 변경사건건수
-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관련통계/지표가 없어 해당 없음>

4.8 수형자의 권리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과정에서도 개인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형자는 형의 집행을 위해 구금시설에 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국민보다 권리의 제한을 많이 받게 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형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되는 것이 수형자의 권리인데, 이는 수형자가 정상적으로 재사회화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권리들을 말한다.

따라서 수형자의 권리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인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의 시민적 권리와 생활조건과 관련된 각종 권리(행복추구권, 의료권, 건강권, 여가활용 등), 수형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법적 구제권으로서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이 제시될 수 있다.

4.8.1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① 관련개념어

- 항소, 변호인접견, 면회
- 인간답게 처우 받을 권리

② (잠재적) 관련내용

- 직접침해 : 수형자의 법적 권리 부인(예, 소송권의 제한, 항소권의 제한), 적절한 수형조건보장의 부인(예, 존엄하고 인간으로 처우 받을 권리의 부인, 적절한 편의시설이용의 제한, 적절한 음식제공의 실패, 적절한 의료서비스제공의 실패, 규제에 관한 정보의 미제공, 진정권의 부인), 감형배제, 사면배제, 사회적응 또는 교화목적의 처우 부인(/징벌적 처우)
- 입법 및 정책 : 이 권리를 침해하는(/또는 줄이는) 법률 또는 정책의 공포/시행, 이 권리를 보장했던 법률 또는 정책의 폐지/폐기, 이 권리의 보장 또는 향유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미비 또는 미이행(/부작위)

③ 관련통계의 종류와 실태

현행 행형법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요소가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관련통계는 비교적 풍부하게 작성되지만 피의자의 권리에 착목해서 작성된 통계는 거의 없다. 이 영역의 통계는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암수 또는 암역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지표의 개발에 따라 인권침해의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군교도소에 관한 통계는 공식통계로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관련지표수		
작성 기관	통 계 청	1
	법 무 부	36
계		37

<표 3-2-7-7> 작성기관별 '수형자의 권리' 관련지표수

(단위 : 개)

4.8.2 평가

수형자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통계가 일부 존재하지만, 간행물의 형태로 발행하는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① 관련통계(/지표)가 없거나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예시)

- 수형자의 월사식신청건수와 사식비용총액
- 수형자 1인당 의료비예산
-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형자의 만족도
- 흡연에 대한 수형자의 태도조사
- 수형자의 국립의료기관 이용실적
- 수형자 1인당 평균면회신청(월)
- 1회 면회시간에 대한 수형자의 만족도
- 수형자의 총진정건수 및 1인당 평균진정건수(/진정한 수형자 1인당 평균진정건수)
- 수형자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외상치료건수
- 지병을 갖고 있는 수형자의 수
- 미성 수형자의 학교학습기회 부여건수(/비율) 및 실적

② 비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항목)

- '법무부 교정국'의 '2002년 수용자교육훈련'통계에서 '사회견학인원' 지표의 '사회견학'이라는 말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를 전제하고 있는데, 교정시설 자체도 하나의 사회이고 민주적인 기본원칙과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임. '외부견학인원'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장 결론 : 요약 및 정부통계의 개선사항

1. 총평 및 개선방향

정부 차원에서 인권으로 명명하는 통계는 없다. 인권관련영역에서 여성, 환경, 보건, 사회보장, 노동 등 사회권영역의 일부분야는 비교적 양질의 통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통계들에 인권친화적·인권중심적인 항목을 의식적으로 배치해서 자유권분야의 인권침해요소를 억제 또는 제거하는 기준으로 삼고, 사회권분야의 인권침해요소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제인권기준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의 사회지표”와 같이 인권관련지표들로 구성된 종합통계의 경우에도 인권을 존중하거나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표개발이나 항목의 배치보다는 현상을 서술하고 파악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인권분야를 포함한 사회지표분야에는 수행지표와 선행지표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행위에 대해 국가는 설명을 다하여야 하는데, 인권분야의 통계는 아주 미흡하다. 각 기관의 소관업무사항 가운데 특히 인권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실적뿐만 아니라 미추진/미진척/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 부속연구기관들의 통계나 지표 가운데 인권관련통계나 지표가 존재하지만, 법령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단순히 외부용역에 의한 단

속적인 조사이거나 직무상 보고통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친인권적인 정책에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중앙부처의 직무로서가 아니라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므로 각종 지표나 통계의 조사 및 발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등은 매년 통계에 기반하여 정책평가자료를 가공·작성하고 공표하는 통계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산하 연구기관의 업무를 중앙행정부처의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통계 중에서 일부 차별적인 인식을 반영한 항목들이나 각종 통계/지표는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시정되어야 한다.(부록 4참조)

국민의 인권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는 통계청이 지정하여 국가의 기간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정부통계 가운데 수사 및 사법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찰과 경찰의 통계는 범죄에 대한 통계일반을 서술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의 직무수행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통계나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국민의 인권수호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및 사법절차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통계뿐만 아니라 수사상 적법한 통신감청 등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이 깊은 영역에 대해서도 관련통계작성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청과 협의하여 승인통계로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도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고 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인 만큼 당연히 해당통계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국방부에는 승인통계가 하나도 없다. 군사법절차 등과 관련한 인권관련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현황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군수사와 사법절차, 가혹행위 등과 같이 사병의 인권문제와 같은 영역은 정기적인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승인받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중앙부처는 인권과 관련해 지표나 통계를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과 관련이 없다고 간주되는 행정기관은 인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통계를 수요자, 즉 국민의 권리보호의 맥락에서 보면 상당한 인권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부처일수록 과거의 통계항목이 그대로 지속되는 관행이 있어 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시설입소자의 현황 및 임금실태와 관련하여 해당연합회나 협회가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계청이 승인하고 있어 통계의 각 지표가 균형이 없거나 신뢰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해당사무의 주무행정기관이 민간 또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작성하는 통계와는 별도로 직접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 통계에 나타난 인권현상이나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실태, 노인생활실태 등과 같이 특정집단의 통계는 5년의 주기로 작성되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통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계(적정주기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기본통계업무를 관장하는 통계청의 경우 '한국의 사회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종합적인 가공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영역의 통계를 확대하는 추세는 바람직하다. 다만, 사회지표는 인권영역에서 주로 사회권과 관련이 깊은데, 자유권영역에 대한 내용도 개발하여 사회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부처는 인권업무전담공무원을 지정하거나 부서를 확정하고 여기에서 관련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권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통계팀을 구성하여 향후 체계적인 인권통계를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협력업무를 하여야 한다.

인권의 어느 한 분야만의 통계실태로 인권상황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 인권이 갖고 있는 권리간의 불가분적·상호의존적인 특성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통계사무를 인권 중심으로 서술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현행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 뿐만 아니라 인권분야 전반을 체계화한 종합인권통계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 관련통계를 조정, 지원, 협력할 주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관련인권 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인권의 존중과 보호 및 증진을 꾀하여야 한다.

2. 부처별 인권통계실태의 개괄 및 개선제안사항

국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은 물론, 사후평가를 통해서 민주국가의 이념을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통계는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인권통계는 단순히 그 존재성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통계를 생산하는가가 중요하다.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들이 작성하는 통계는 아직도 행정편의적이거나 행정 중심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어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현행 통계 가운데 기관별 통계의 개선사항은 이 연구의 <부록 4>에 수록하였다.

참고문헌

<유엔·정부문서 및 보고서>

유엔문서번호: A/56/326

유엔문서번호: A/RES/55/2

"Preparatory study for the impact assessment and ex-ante evalu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gency: Annexes To the Final Report"(EPE③ 2005)

"Statistics and Indicators in the Fields of Human Rights and Governance: The 2000-2003 follow-up of the Montreux Conference on "Statistics, Development and Human Rights""(스위스 통계청, 2003년 3월 3일)

<단행본>

"2004 인권백서 제1집"(국가인권위원회, 2004)

"국제법사전"(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평양, 2002)

"국제인권조약집"(정인섭 편역, 사람생각, 2000)

"기본권론"(장영수, 홍문사, 2003)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문유경, 한국여성개발원, 2001)

"정부승인통계목록(제29호)"(통계청, 200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연구(I),(II)"(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004)

"한국헌법론"(허영, 신판, 박영사, 2001)

"헌법학신론"(김철수, 제11전정신판, 박영사, 2001)

"A Dictionary of Human Rights"(David Robertson, Europa Publications Limited, 1997)

"Compilation of General Comment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UN, 유엔문서번호 : HRI/GEN/1/Rev.712, 2004)

"Dictionar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John S.Gibson, Scarecrow Press, In③, Lanham, Maryland, US, 1996)

"European Human Rights Law: Text and Materials"(Mark W. Janis 외,
Clarendon Press, Oxford, 1995)

"Fact Sheet No. 3(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An
introduction to the core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treaty
bodies)",(UNHCHR)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UNDP, 2000)

"Human Rights and Social Policy in the 21st Century"(Joseph Wronka,
University Press of America; Lanham, Maryland, US, 1998)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toward Rights Based Practice"(Jim 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Human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 Dictionary and Documents(Rita
Cantos Cartwright and H. Victor Conde, ABC-CLIO, In③, California① 2000)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DJ Harris 외,
Butterworths, 1995)

"The DAC Guidelines: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OECD, 2001)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Linos-Alexander
Sicilianos e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Athens, 2001)

"Training Manual on Human Rights Monitoring"(UNHCHR, 2001)

"Handbook on Social Indicators"(유엔통계실 경제사회부; 발간물번호 :
ST/ESA/STAT/SER.F/49)

"Human Rights and Statistics: Getting the Record Straight"(Thomas ②
Jabine and Richard P. Claude 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1992)

"Human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 Dictionary and Documents
Volume 1, 2"(Rita Cantos Cartwright and H. Victor Condé ed., ABC-CLIO,
in③, California, 2000)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 Under Six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외 ed., UN Publication, Sales No. GV.E.97.o.16, 1997; Geneva)

"Philosophical Theory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William Sweet ed., University of Ottawa Press, Ottawa, 2003)

“The Judici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Law: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Jurisprudence”(Nihal Jayawickra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논문>

“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방안”(최봉호, “국가통계 발전방향 심포지엄자료집”, 대한통계학회, 2005년)

“복지국가와 시민적 권리”(김형식, 「사회과학연구」, 제9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정인섭 편저, 박영사, 2004)

“인권이란 무엇인가?: 자연권론과 기본권론의 비판적 성찰”(이창수, 새사회연대 간부 인권세미나자료, 2001; 미발표 논문 초안)

"A family of decent work indexes", (Florence Bonnet 외,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2(2003), No. 2, ILO)

"Accountabil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newal of Higher Education"(John Fielden and Karen Abercromby, Paris, UNESCO, 2001)

"Decent work and human development"(Iftikhar AHMED,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2(2003), No. 2, ILO)

"Decent work: Concept and Indicators"(Dharam Ghai,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2(2003), No. 2, ILO)

"Gender Equity: Is there Statistical evidence?"(Rosa M Bermúdez, 제52차 국제통계기구(ISI;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대회(/세계통계대회) 발표문; 헬싱키, 1999년 8월 10일 - 19일)

"Statisticians as Human Rights Defenders: Putting Economic and Society Rights into Economic and Social Statistics"(Soctt Leckie, 제52차 국제통계기구(ISI;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대회 발표문; 헬싱키, 1999년 8월 10일 - 19일)

부 록

- 〈부록1〉 인권영역별 관련 국제인권조약(예시) ▪ 2
- 〈부록2〉 인권 영역별 관련 국내법령(예시) ▪ 27
- 〈부록3〉 인권 영역별 인권통계 및 지표 목록 ▪ 39
- 〈부록4〉 정부통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기관별) ▪ 93
- 〈부록5〉 통계작성기관의 인권영역별 통계/지표수(종합) ▪ 121
- 〈부록6〉 연구대상 인권통계 현황 ▪ 122

<부록1. 인권영역별 관련 국제인권조약(예시)>

1. 인간의 존엄성

영역	국제인권조약
천부적 자유와 존엄성	세계인권선언(전문, 제1조) ³¹⁶ , 국제사회권조약(전문) ³¹⁷ , 국제자유권조약(제10조) ³¹⁸ , ACR(전문, 제11조의 1,2,3) ³¹⁹
생명권	세계인권선언(제3조) ³²⁰ , 국제자유권조약(제6조의 1, 2, 3, 4, 5, 6) ³²¹ , 국제자유권조약 제2선택의정서(제1조의 1, 제1조의 2) ³²² , CRC(제6조의 1, 제6조의 2, 제37조 a) ³²³ , ECR(제2조의 1) ³²⁴ , ECR 제6추가의정서(제1조) ³²⁵ , ACR(제4조의 1, 2, 3, 4, 5, 6) ³²⁶ , AFR(제4조) ³²⁷
신체의자유와 안전	세계인권선언(제3조) ³²⁸ , 국제자유권조약(제9조의 1) ³²⁹ , ECR(제5조의 1) ³³⁰ , ACR(제7조의 2) ³³¹ , AFR(제4조) ³³²
강제노동과 노예금지	세계인권선언(제4조) ³³³ , 국제자유권조약(제8조의 1,2,3) ³³⁴
고문금지	세계인권선언(제5조) ³³⁵ , 국제자유권조약(제7조) ³³⁶ , CEDAW(제2조의 b 등) ³³⁷ , ECR(제3조) ³³⁸ , ACR(제5조의 2, 3) ³³⁹ , AFR(제5조, 제7조의 2) ³⁴⁰
법 앞에 평등	세계인권선언(제7조) ³⁴¹ , 국제자유권조약(제14조의 1, 제26조) ³⁴² , CERD(제5조의 a) ³⁴³ , ECR(제14조) ³⁴⁴ , ACR(제24조) ³⁴⁵ , AFR(제3조의 1) ³⁴⁶

316)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전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제1조>

317) ...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전문>

318)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제10조1>

319) ...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달성될 수 있음을... <전문>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존중받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남용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1의1,2,3>

320)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제3조>

32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 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

- 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6조1,2,3,4,5,6>.
- 322)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의 관할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제1조1>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조2>.
- 323)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제6조1,2>
-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제37조 a>.
- 324)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의 유죄확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2조1>.
- 325)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사형선고를 받지 아니하며, 집행당하지도 아니한다.<제1조>.
- 326)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일반적으로 임신의 순간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만 범죄 행위 이전에 제정되어 그러한 형벌을 규정한 법에 따라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 그러한 형벌의 적용은 현재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는 확대되지 아니한다.
- 사형은 이를 폐지한 국가에서는 다시 도입되지 아니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은 정치적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사형은 범행시 18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신부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면, 특사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여될 수 있다.
- 사형은 그러한 청원이 담당기관에 의하여 검토되는 동안에는 집행될 수 없다.<제4조1,2,3,4,5,6>.
- 327) 인간은 불가침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의 완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이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4조>.
- 328)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제3조>.
- 329)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9조1>.
- 330)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5조1>.
- 331) 당사국의 헌법이나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미리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7조2>.
- 332) 인간은 불가침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이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4조>.
- 333)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제4조>.
- 334)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직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직무<제8조1,2,3>.
- 335)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5조>.
- 336)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제7조>.
- 337)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제2조b>.

2. 시민적·정치적 권리

2.1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영역	국제인권조약
사생활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제12조) ³⁴⁷⁾ , 국제자유권조약(제17조의 1, 2) ³⁴⁸⁾ , ECR(제8조의 1, 2) ³⁴⁹⁾ , ACR(제11조의 1, 2, 3) ³⁵⁰⁾
거주이전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제12조, 제13조의 1, 2, 제14조의 1, 2) ³⁵¹⁾ , 국제자유권조약(제12조의 1, 2, 3, 4, , 제17조의 1, 2) ³⁵²⁾ , ECR(제8조의 1, 2) ³⁵³⁾ , ECR 제4차 추가의정서(제2조의 1, 2, 3, 4, 제3조의 1, 2) ³⁵⁴⁾ , ACR(제11조의 1, 2, 3, 제22조의 7) ³⁵⁵⁾ , AFR(제12조의 3, 제23조 2-a, b) ³⁵⁶⁾
국적취득권	세계인권선언(제15조의 1, 2) ³⁵⁷⁾ , 국제자유권조약(제24조의 3) ³⁵⁸⁾ , CEDAW(제9조의 1, 2) ³⁵⁹⁾ , CERD(제5조d(iii)) ³⁶⁰⁾ , CRC(제7조의 1) ³⁶¹⁾ , ACR(제20조의 1, 2, 3) ³⁶²⁾

338)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3조>.

339)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형벌 또는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처우되어야 한다.

형벌은 범죄인 이외의 사람에게 확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5조2,3>.

340)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모욕, 특히 노예제도, 노예무역,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형벌과 처우는 금지된다.<제5조>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행위시에 규정이 없던 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벌도 가해질 수 없다. 형벌은 개인적인 것이며, 범죄인에 대하여서만 부과될 수 있다.<제7조2>.

34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

342)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름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제14조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제26조>.

343)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계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a.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제5조a>.

344)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제14조>.

345)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따라서 그들은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

346)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제3조1>.

347)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아동의 권리	사회권조약(제10조의 3) ³⁶³ , 국제자유권조약(제24조의 1, 2, 3) ³⁶⁴ , CEDAW(제16조의 1(d)(e)(f)) ³⁶⁵ , CRC(전체), ECR(제5조1(d)) ³⁶⁶ , ACR(제17조의 5, 제18조, 제19조) ³⁶⁷ , AFR(제18조의 3) ³⁶⁸
재산소유권	세계인권선언(제17조의 1, 2) ³⁶⁹ , CEDAW(제16조의 1) ³⁷⁰ , CERD(5(d)(i)(ii)(iii)(iv)(v)(vi)(vii)(viii)(ix)) ³⁷¹ , CMW(제15조) ³⁷² , ECR 제1추가정의정서(제1조) ³⁷³ , ACR(제21조의 1,2,3) ³⁷⁴ , AFR(제13조의 3, 제14조) ³⁷⁵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제18조) ³⁷⁶ , 국제자유권조약(제18조의 1, 2, 3, 4) ³⁷⁷ , CRC(제14조의 1, 2, 3) ³⁷⁸ , ECR(제9조의 1, 2) ³⁷⁹ , ACR(제13조의 1, 2, 3, 4, 5) ³⁸⁰ , AFR(제8조) ³⁸¹

-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
- 348)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7조1,2>.
- 349)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제8조1,2>.
- 350)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존중받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남용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1조1,2,3>.
- 351)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제12조>
-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제13조1,2>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에는 활용될 수 없다.<제14조1,2>.
- 352)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12조1,2,3,4>
-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해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제13조>
-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7조 1, 2>.
- 353)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제8조 1, 2>.
- 354) 합법적으로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유와 주거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공공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위생 및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특정한 분야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권리들이 민주사회에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계약을 받을 수 있다.<제2조1,2,3,4>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국의 영역으로부터 개별적으로든 집단적 조치에 의하든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국적국의 영역으로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3조1,2>.

355)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존중받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소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남용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예나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치적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일반범죄로 인하여 추적받고 있는 경우, 모든 사람은 외국에서 그 국가의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비호를 구하고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7>.

356) 모든 개인은 박해를 받는 경우 타국의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그 국가에서 비호를 요청하고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3>

이 헌장 제12조에 의하여 비호권을 향유하고 있는 개인은 출신국이나 현장의 다른 당사국에 대한 파괴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자국의 영토가 이 현장의 다른 당사국의 인민들에 대한 파괴나 테러활동의 기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2-a, b>.

357)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제15조 1,2>.

358)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제24조3>.

359)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제9조1,2>.

360) 국적 취득권<제5조d(iii)>.

36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1>.

362)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다른 국적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 또는 국적을 바꿀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20조1,2,3>.

36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협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제10조3>.

364)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제24조1,2,3>.

365)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d)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e)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f)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제16조 1(d)(e)(f)>.

366)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제5조1(d)>.

367) 법률은 서출자와 적출자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제17조5>

모든 사람은 이름과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의 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법률은 필요하다면 가명 사용에 의해서라도 이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도록 하는 방법을 규율하여야 한다.<제18조>

모든 아동은 미성년이라는 조건에 의하여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게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9조>.

368) 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보장하고, 국제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호를 보장한다.<제18조3>.

369)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17조1,2>.

370)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6조1>.

371) (d) 기타의 민권 특히

(i) 당해 계약국 국경이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ii)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iii) 국적 취득권

(iv)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v)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vi) 상속권

(vii)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viii)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ix)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5(d)(i)(ii)(iii)(iv)(v)(vi)(vii)(viii)(ix)>.

37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취업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당할 경우, 이들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5조>.

373)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공공을 위하여나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규정은 국가가 일반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세금이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률을 시행할 권리를 결코 해하지 않는다.<제1조>.

37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그러한 사용과 향유를 사회의 이익에 증속시킬 수 있다.

공공의 이용이나 사회적 이익을 이유로 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 정한 형식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고리대금 및 기타 형태의 사람에 대한 사람의 착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제21조1,2,3>.

375) 모든 개인은 법 앞에 만인의 엄격한 평등에 따라 공공재산과 역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3>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 권리는 공공의 필요성이나 공동체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적절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제14조>.

376)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제18조>.

377)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제18조1,2,3,4>.

378)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제14조1,2,3>.

379)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제9조1,2>.

380) 모든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인쇄물, 예술의 형태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위의 조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가 사전검열을 받지는 아니하나, 사후적 책임부과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또는

2.2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영역	국제인권조약
의견/표현의 자유 (알권리와 정보공개권이 파생권리)	세계인권선언(제19조) ³⁸² , 국제자유권조약(제19조의 1, 2, 3) ³⁸³ , CERD(제4조, 제5조의 (viii)) ³⁸⁴ , ECR(제10조의 1,2) ³⁸⁵ , ACR(제13조, 제14조) ³⁸⁶ , AFR(제9조) ³⁸⁷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제20조) ³⁸⁸ , 국제사회권조약(제8조의 1-a) ³⁸⁹ , 국제자유권조약(제21조, 제22조) ³⁹⁰ , CERD(제5(d)(ix)) ³⁹¹ , CRC(제15조) ³⁹² , ECR(제11조의 1) ³⁹³ , ACR(제15조, 제16조의 1, 2, 3) ³⁹⁴ , AFR(제10조, 제11조) ³⁹⁵
참정권	세계인권선언(제21조의 1, 2, 3) ³⁹⁶ , 국제자유권조약(제25조) ³⁹⁷ , CEDAW(제7조, 제8조) ³⁹⁸ , CERD(제5조 c) ³⁹⁹ , ECR 제1추가의정서(제3조) ⁴⁰⁰ , ACR(제23조의 1, 2) ⁴⁰¹ , AFR(제13조) ⁴⁰²

b)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표현의 권리는 신문용지, 무선방송 주파수 또는 정보의 보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정부나 민간의 규제납용과 같은 간접적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또는 사상과 의견의 전달과 유포를 저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다.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요락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덕적 보호를 위하여 그에 대한 접근을 규율할 목적에 서만 법률에 의한 사전검열을 받게 할 수 있다.

전쟁의 선전과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불법적인 폭력 또는 기타 유사한 행동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증오의 주장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제13조1,2,3,4,5>.

381) 양심의 자유와 종교를 표명하고 자유로이 실행할 자유가 보장된다. 법과 질서를 따르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제8조>.

382)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제19조>.

383)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

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제19조1,2,3>

384) 계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계약국은 이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계약국은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제 4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5조(viii)>

385)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제10조1,2>

386) 모든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인쇄물, 예술의 형태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위의 조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가 사전검열을 받지는 아니하나, 사후적 책임부과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또는

b)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표현의 권리는 신문용지, 무선방송 주파수 또는 정보의 보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정부나 민간의 규제비용과 같은 간접적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또는 사상과 의견의 전달과 유포를 저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다.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오락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덕적 보호를 위하여 그에 대한 접근을 규율할 목적에 위법률에 의한 사전검열을 받게 할 수 있다.

전쟁의 선전과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불법적인 폭력 또는 기타 유사한 행동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증오의 주장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제13조>

법률로 규율되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대중일반에게 유포된 부정확하거나 공격적인 발언 또는 생각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동일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반론하거나 정정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이나 반론은 이미 초래된 다른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 주지 아니한다.

명예와 신용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출판사, 신문,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회사는 면제나 특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면서 책임을 질 사람을 둔다.<제14조>

387) 모든 개인은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은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제9조>

388)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제20조>

389)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제8조1-a>

390)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제21조>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제22조>.

391)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5(d)(ix)>.

392)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안 된다.<제15조>.

393)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제11조1>.

394) 비무장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제15조>

모든 사람은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노동, 사회적, 문화적, 체육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에만 복종한다.

이 조의 규정은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에 대한 결사의 권리의 행사금지들을 포함하여 합법적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6조1,2,3>.

395) 모든 개인은 법률을 준수하는 한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모든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규정된 필요한 제한, 특히 국가안보, 안전, 보건, 윤리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규정된 제한에만 구속된다.<제11조>.

396)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제21조1,2,3>.

397)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제25조>.

398)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a)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서의 피선거권

(b)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c)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제7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 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8조>.

399)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 평등 선거의 기초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종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제5조 c>.

400) 계약국들은 입법부의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하에 합리적인 간격을 두고 비밀투표에 의한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제3조>.

401) 모든 시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향유한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공적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것;

b) 진정으로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선출되는 것. 선거는 보통 및 평등선거에 의하여, 그리고 유권자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는 비밀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c) 일반적으로 평등한 조건하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법률은 연령, 국적, 거주, 언어, 교육, 민사적 및 정신적 능력 또는 형사소송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한 선고를 근거로 하여서만 위 조항에서 언급된 권리와 기회의 행사를 규제할 수 있다.<제23조1,2>.

402)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자국의 공무에 평등하게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은 법 앞에 만인의 엄격한 평등에 따라 공공재산과 의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제13조>.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3.1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s)

영역	국제인권조약
사회보장권	세계인권선언(제22조) ⁴⁰³ , 국제사회권조약(제9조) ⁴⁰⁴ , CEDAW(제11조1-(e), 제14조2-c, 제26조) ⁴⁰⁵ , CERD(제5조-e-iv) ⁴⁰⁶ , CRC(제26조) ⁴⁰⁷ , ACR 추가의정서(제9조) ⁴⁰⁸ , AFR(제18조4) ⁴⁰⁹ , ILO 102, 157 ⁴¹⁰
노동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제23조 제1항) ⁴¹¹ , 국제사회권조약(제6조의 1, 2) ⁴¹² , CEDAW(제11조1-(a)) ⁴¹³ , CERD(제5조-e-(i)) ⁴¹⁴ , ACR 추가의정서(제6조) ⁴¹⁵ , AFR(제15조, 제29조의 6) ⁴¹⁶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제23조의 2) ⁴¹⁷ , 국제사회권조약(제7조 (a)) ⁴¹⁸
유리한 근로조건 향유권(실권리 포함)	세계인권선언(제24조) ⁴¹⁹ , 국제사회권조약(제7조) ⁴²⁰ , 국제자유권조약(제8조의 1) ⁴²¹ , CEDAW(제11조의 1, 2) ⁴²² , CERD(제5조-e-i) ⁴²³ , ACR 추가의정서(제7조) ⁴²⁴ , AFR(제15조) ⁴²⁵
노동조합의 권리	세계인권선언(제23조의 4) ⁴²⁶ , 국제사회권조약(제8조의 1, 2, 3) ⁴²⁷ , 국제자유권조약(제22조의 1, 3) ⁴²⁸ , CERD(제5조-e-ii) ⁴²⁹ , ECR(제11조) ⁴³⁰ , ACR(제16조의 1) ⁴³¹ , ACR 추가의정서(제8조, 제9조) ⁴³²

403)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제22조>

40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제9조>

405)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제11조1-(e)>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c)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제14조2-c>

본 협약의 개정요구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로 당사국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국제연합 총회는 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제26조>

40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iv)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제5조-e-iv>

407)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제26조>.
- 408) 모든 사람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품위있고 점잖은 생계수단의 보장을 저해하는 노령 및 장애로부터의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수혜자의 사망시 사회보장의 혜택은 그의 피부양자에게 적용된다.
- 피고용인의 경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의 경우 의료진료와 봉급 또는 퇴직급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여성의 경우 분만 전후의 유급 출산휴가를 포함하여야 한다.<제9조>.
- 409) 노인과 장애인은 그들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필요에 부합하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8조4>.

410) 제102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952년)

제157호 사회보장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제 확립에 관한 협약(1982년).

- 41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3조1항>.
- 41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1.2>.
- 413)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제11조1-(a)>.
- 414)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한 권리<제5조-e-(i)>.
- 415)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합법적인 활동을 통하여 품위있고 점잖은 생활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다.
- 당사국은 노동권을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완전고용의 달성, 직업안내, 기술 및 직업훈련계획의 개발이 포함되며, 또한 장애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여성들이 노동권을 행사할 실질적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정보호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제6조>.
- 416) 모든 개인은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5조>
- 모든 개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제29조6>.
- 417)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3조2>.
- 418)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보장
-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있는 생활.
- 419)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제24조>.
- 420)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보장
-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제7조>.
- 42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제8조1>.

422)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c)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d)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제11조1-b,c,d>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1조2>.

423)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한 권리<제5조-e-i>.

424)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위 조의 노동권은 모든 사람이 정당하고,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하에서 이 권리를 향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에 관하여 이 조건을 국내법으로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품위있고 점잖은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보수와 동등한 노동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하고 동등한 보수.

b. 모든 노동자가 그의 직업에 종사하며 자신의 기대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에 전념하고, 관련 국내규정에 따라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권리.

c. 모든 노동자의 자질, 능력, 성실성 및 연공서열이 고려된 직장 내 승진이나 상승 이동의 권리.

d. 각 산업과 직업의 성격 및 정당한 이타의 사유를 전제로 하는 고용의 안정.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자는 국내법에 따라 배상이나 복직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e. 직장의 안전과 위생.

f. 18세 미만자에 대한 야간작업, 건강을 해지거나 위험한 작업조건 및 일반적으로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하는 모든 작업의 금지. 16세 이하의 연소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근무보다 우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일이 등교의 장애가 되거나, 교육의 혜택에 대한 제한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g. 1일 및 주당 작업시간의 합리적 제한. 위험하거나 건강을 해하는 작업 또는 야간작업의 경우 근무일수는 축소되어야 한다.

h. 국경일에 대한 보수지급은 물론, 휴식, 여가 및 유급휴가.<제7조>.

425) 모든 개인은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5조>.

427)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제8조1,2,3>.

428)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제22조1,3>.

3.2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영역	국제인권조약
가족형성권	세계인권선언(제16조의 1, 2, 3) ⁴³³ , 국제사회권조약(제10조) ⁴³⁴ , 국제자유권조약(제23조) ⁴³⁵ , CERD(제16조) ⁴³⁶ , ECR(제12조) ⁴³⁷ , ACR(제17조) ⁴³⁸ , ACR 추가의정서(제15조) ⁴³⁹ , AFR(제18조의 1, 2, 제27조의 1, 제29조의 1) ⁴⁴⁰
적정생활수준 향유권	세계인권선언(제25조의 1) ⁴⁴¹ , 국제사회권조약(제11조) ⁴⁴² , CRC(제27조1) ⁴⁴³ , ACR 추가의정서(제12조) ⁴⁴⁴
건강권	세계인권선언(제25조의 2) ⁴⁴⁵ , 국제사회권조약(제12조) ⁴⁴⁶ , 국제자유권조약(제7조) ⁴⁴⁷ , CEDAW(제11조 1-(f), 제12조, 제14조2-(b)) ⁴⁴⁸ , CRC(제24조의 1, 2, 3, 4) ⁴⁴⁹ , ACR 추가의정서(제10조) ⁴⁵⁰ , AFR(제16조) ⁴⁵¹

429)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제5조-e-ii>.

430)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1조>.

431) 모든 사람은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노동, 사회적, 문화적, 체육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로운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제16조1>.

432)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a.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권리. 이 권리의 연장으로, 당사국은 노동조합이 전국적 연맹이나 연합체의 설립, 기존 조합과의 연계는 물론, 국제적 노동조합기구를 구성하고 원하는 기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노동조합, 연맹 및 연합체들이 자유롭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b. 파업권.

위에 규정된 권리의 실행은 그러한 제한이 민주사회의 성격이며, 공공질서를 보전하고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제한에만 복종한다. 군대와 경찰 및 기타 필수적 공익사업 담당자들은 법률에 의한 제한과 규제에 복종하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제8조>

모든 사람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품위있고 겸손한 생계수단의 보장을 저해하는 노령 및 장애로부터의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수혜자의 사망시 사회보장의 혜택은 그의 피부양자에게 적용된다.

피고용인의 경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의 경우 의료진료와 봉급 또는 퇴직급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여성의 경우 분만 전후의 유급 출산휴가를 포함하여야 한다.<제9조>.

433)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6조1,2,3>.

43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 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신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신부에게는 유급

- 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제10조>.
- 435)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23조>.
- 436)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b)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c)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d)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e)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 (f)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g)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 (h)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6조>.
- 437) 혼인적령의 남녀는 이 권리행사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제12조>.
- 438)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적령기의 남녀는 혼인을 하고 가정을 부양할 권리가 인정된다. 단 그 요건들은 이 협약에 규정된 비차별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의 해소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평등과 책임의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 오직 아동의 최선 이익만을 기반으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야 한다.
- 법률은 서술자와 적출자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제17조>.
- 439)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요소로서 국가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가정의 정신적 및 물질적 여건의 개선에 유의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관련 국내법 규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각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베풀 것을 약속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 a. 분만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 b. 아동의 유아기와 재학기간 중 적절한 영양을 보장한다.
 - c. 청소년의 신체적, 지적 및 도덕적 능력의 완전한 개발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채택한다.
 - d. 아동이 이해, 결속, 존경 및 책임감의 의의를 수용하고 함양할 수 있는 안정되고 긍정적인 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되는 특별 가족훈련계획을 실시한다.<제15조>.
- 440)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 단위이며 기초이다. 가정은 이의 신체적 건강과 도덕을 돌보는 국가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국가는 공동체에 의하여 인정된 도덕과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인 가정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제18조1,2> 모든 개인은 자신의 가정, 사회, 국가 및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공동체와 국제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제27조1> 모든 개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가정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호하고 가정의 융화와 존중을 위하여 노력한다; 항상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을 부양한다.<제29조1>.
- 44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제25조1>.
- 44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

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제11조>.

443)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제27조1>.

444) 모든 사람은 최고수준의 신체적, 감정적 및 지능의 개발을 향유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영양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시행을 촉진하고 영양실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식량의 생산, 공급 및 분배 방법의 개선을 약속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관련 국내정책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동의한다.<제12조>.

445)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제25조2>.

446)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제12조>.

447)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제7조>.

448)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 안전에 대한 권리 <제11조1-(f)>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직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2조>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b)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제14조2-(b)>.

449)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 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제24조1,2,3,4>.

450) 모든 사람은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향유를 의미하는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건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건강을 공적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채택한다.

a. 기본적 보건진료, 즉 공동체의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필수적 보건진료.

b. 국가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에 대한 보건 서비스 혜택의 확장.

c. 주요 전염병에 대한 일반적 면역조치.

d.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e. 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교육.

f. 극히 위험한 집단 및 가난으로 인하여 취약한 집단의 건강상의 요구의 충족.<제10조>.

451) 모든 개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현장의 당사국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에 걸리면 진료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6조>.

3.3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

영역	국제인권조약
교육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제26조) ⁴⁵² , 국제사회권조약(제13조, 제14조) ⁴⁵³ , 국제자유권조약(제18조의 4) ⁴⁵⁴ , CEDAW(제10조) ⁴⁵⁵ , CERD(제5조e-(v)) ⁴⁵⁶ , CRC(제28조, 제29조) ⁴⁵⁷ , ECR 제1추가정서(제2조) ⁴⁵⁸ , ACR(제12조의 4) ⁴⁵⁹ , ACR 추가정서(제14조, 제15조, 제18조) ⁴⁶⁰ , AFR(제17조의 1, 3) ⁴⁶¹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저작권	세계인권선언(제27조) ⁴⁶² , 국제사회권조약(제15조) ⁴⁶³ , CEDAW(제5조-a) ⁴⁶⁴ , CERD(제5조e-(vi)) ⁴⁶⁵ , CRC(제31조의 1) ⁴⁶⁶ , ACR 추가정서(제14조) ⁴⁶⁷ , AFR(제17조의 2, 제22조, 제29조의 7) ⁴⁶⁸
자기문화향유권	국제자유권조약(제27조) ⁴⁶⁹
인권질서추구권	세계인권선언(제28조) ⁴⁷⁰

452)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제26조>

45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 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제14조>.
- 45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제18조4>.
- 455)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e)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지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f)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제10조>.
- 456)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제5조e-(v)>.
- 457)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인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제28조>
-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안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제29조>.
- 458) 어느 누구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교육 및 교수와 관련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가 자기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에 관련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가 자기의 종교적 및 철학적 신념에 일치하는 교육 및 교수를 보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2조>.
- 459)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나 피후견인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제12조4>.
- 460)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모든 자의 다음의 권리를 인정한다.
- a. 공동체의 문화 및 예술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 c. 자신이 창작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 이 의정서의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 문화 및 예술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과학, 예술 및 문화 영역에서의 국제적 협력관계의 장려와 발전에서 연유하는 이익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더욱 조장하기로 합의한다.<제14조>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요소로서 국가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가정의 정신적 및 물질적 여건의 개선에 유의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관련 국내법 규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각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베풀 것을 약속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 a. 분만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 b. 아동의 유아기와 재학기간 중 적절한 영양을 보장한다.
- c. 청소년의 신체적, 지적 및 도덕적 능력의 완전한 개발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채택한다.
- d. 아동이 이해, 결속, 존경 및 책임감의 의의를 수용하고 함양할 수 있는 안정되고 긍정적인 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되는 특별 가족훈련계획을 실시한다.<제15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감소로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인격의 최대한의 개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히 다음의 조치를 채택할 것에 동의한다.

- a. 장애인에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함을 특히 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실시한다. 이에는 그들의 가능성에 부합되며, 그들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자유롭게 수락된 취업계획이 포함된다.
- b. 장애인 가족들이 더불어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및 감정적 개발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특별훈련을 마련한다.
- c. 이들의 필요에 따른 특별한 요구사항의 해결책의 검토를 도시개발계획의 우선요소로 포함시킨다.
- d. 장애인이 보다 풍족한 삶을 향유하도록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집단의 결성을 장려한다.<제18조>

461) 모든 개인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동체에 의하여 인정된 도덕과 전통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제17조1.3>

462)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46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제15조>

464)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제5조-a>.

465)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제5조e-(vi)>.

466)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제31조1>.

467)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모든 자의 다음의 권리를 인정한다.

- a. 공동체의 문화 및 예술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 c. 자신이 창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이 의정서의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 문화 및 예술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과학, 예술 및 문화 영역에서의 국제적 협력관계의 장려와 발전에서 연유하는 이익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더욱 조장하기로 합의한다.<제14조>.

468) 모든 개인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제17조 2>

모든 인민은 자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유산을 동등하게 향유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발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제22조>

4. 법절차적 권리(Legal procedure Rights)

영역	국제인권조약
법적 인격체의 인정	세계인권선언(제6조) ⁴⁷¹ , 국제자유권조약(제16조) ⁴⁷² , ACR(제3조) ⁴⁷³ , AFR(제5조) ⁴⁷⁴
법적 구제권(체포, 구금/처벌중 또는 후)	세계인권선언(제6조, 제8조) ⁴⁷⁵ , 국제자유권조약(제2조의 3, 제9조의 5, 제14조의 3-d, 제14조의 6) ⁴⁷⁶ , CAT(제14조) ⁴⁷⁷ , CERD(제6조) ⁴⁷⁸ , ECR(제5조의 5, 제6조3-c, 제13조) ⁴⁷⁹ , ECR 제7추가정서(제2조의 1, 2, 제3조) ⁴⁸⁰ , ACR(제4조의 6, 제8조의 2-h, 제10조, 제25조) ⁴⁸¹ , AFR(제7조의 1-a, c) ⁴⁸²
인신 보호(항소, 체포, 보상, 보석, 계약이유, 구속적부심)	세계인권선언(제9조) ⁴⁸³ , 국제자유권조약(제9조의 1, 2, 3, 4, 제10조의 1, 제11조) ⁴⁸⁴ , CRC(제37조) ⁴⁸⁵ , ECR(제5조) ⁴⁸⁶ , ECR 제4추가정서(제1조) ⁴⁸⁷ , ACR(제7조) ⁴⁸⁸ , AFR(제6조) ⁴⁸⁹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제10조) ⁴⁹⁰ , 국제자유권조약(제9조의 3, 제10조의 2-b, 제14조의 1, 2, 3, 4, 5) ⁴⁹¹ , ECR(제5조의 3, 제6조의 1, 제7조의 2) ⁴⁹² , ACR(제7조의 5, 6, 제8조의 1) ⁴⁹³ , AFR(제7조의 1) ⁴⁹⁴
적정 절차	자유권조약(제6조의 5, 제10조의 2-b, 제10조의 3, 제14조의 1, 제14조의 3) ⁴⁹⁵ , ECR(제5조의 1-d, 제6조의 1) ⁴⁹⁶ , ACR(제4조의 5, 제5조의 5, 제8조의 2-g) ⁴⁹⁷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세계인권선언(제11조의 1) ⁴⁹⁸ , 국제자유권조약(제10조의 2-a, 제14조의 2, 7) ⁴⁹⁹ , ECR(제6조의 2) ⁵⁰⁰ , ECR 제7추가정서(제4조의 1, 2) ⁵⁰¹ , ACR(제8조의 2, 4) ⁵⁰² , AFR(제7조의 1-b) ⁵⁰³
죄형법정주의	세계인권선언(제11조의 2) ⁵⁰⁴ , 국제자유권조약(제

모든 개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관용과 대화와 협의의 정신으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시키며, 일반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제29조7>

469)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제27조>

470)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제28조>

	15조의 1, 2) ⁵⁰⁵ , ECR(제7조의 1, 2) ⁵⁰⁶ , ACR(제9조) ⁵⁰⁷ , ACR 추가의정서(제5조) ⁵⁰⁸ , AFR(제7조의 2) ⁵⁰⁹
수형자의 권리	세계인권선언(제5조) ⁵¹⁰ , 국제자유권조약(제10조의 3) ⁵¹¹ , CAT, CEDAW(제2조의 b) ⁵¹² , ECR(제3조) ⁵¹³ , ACR(제5조의 2, 3) ⁵¹⁴ , AFR(제5조, 제7조의 2) ⁵¹⁵

- 471)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조>.
 472)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6조>.
 473) 모든 사람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474)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모욕, 특히 노예제도, 노예무역,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형벌과 처우는 금지된다.<제5조>.
 475)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8조>.
 476)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체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제2조3>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9조5>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제14조3-d>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4조6>.
 477)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피해자나 그 밖의 개인들이 국내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4조>.
 478) 체약국은 권한있는 국가법원 및 기타 기관을 통하여 본 협약에 반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행위로부터 만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만인에게 보증한다.<제6조>.
 479) 이 조의 규정에 위반된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5>
 직접 또는 본인이 선택한 법적 조력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할 것, 또는 법적 조력을 위한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법적 조력이 부여될 것.<제6조3-c>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당국 앞에서의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받아야 한다.<제13조>.
 480) 법원에서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결이나 선고를 상급심에 의하여 재검토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여 이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률에 규정된 경범, 당사자가 최고심에서 제1심 판결을 받은 경우, 석방에 대한 이의 제기의 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권리의 행사가 배제될 수 있다.<제2조1,2>
 형사범죄에 관하여 확정판결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재판상의 잘못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후 그 판결이 번복되었거나, 사면을 받았다면, 몰랐던 사실이 적절한 시기

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유죄판정의 결과 처벌을 받았던 자는 해당국가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제3조>.

481) 사형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은 사면, 특사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여될 수 있다. 사형은 그러한 청원이 담당기관에 의하여 검토되는 동안에는 집행될 수 없다.<제4조6>

형사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송 계속 중 모든 사람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h)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제8조2-h>

오심에 의한 확정판결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10조>

모든 사람은 관련국의 헌법이나 법률 또는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권한 있는 법원이나 법정에서 단순하고 신속하거나 여타의 효율적인 구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침해가 공무수행 중인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a) 그러한 구제를 청구하는 자에게 국가의 법제도에 의하여 규정된 담당기관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결정되도록 보장한다;

b)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그리고

c) 구제가 부여되면 담당기관이 그러한 구제를 집행할 것을 보장한다.<제25조>.

482) 모든 개인은 자신의 주장을 호소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현행의 조약, 법률, 규정 및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되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호소할 권리;

c) 자신이 선입한 변호인에 의하여 변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방어권; <제7조1-a.c>.

483)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제9조>.

484)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제9조 1,2,3,4>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제10조1>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제11조>.

485)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중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협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37조>.

486)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되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의 체포 사유 및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 이 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에 의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지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 이 조의 규정에 위반된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 487) 어느 누구도 계약상의 의무이행 불가능만을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1조>.
- 488) 모든 사람은 개인적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당사국의 헌법이나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미리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구금된 자는 자신의 구금사유를 통지받아야 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신속하게 고지받아야 한다.
- 구금된 자는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타 관헌 앞에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소송절차의 계속을 침해함이 없이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법원이 그의 체포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단하고, 체포나 구금이 불법적인 경우 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자는 그러한 위협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법률을 가진 당사국에서, 이러한 구제조치는 제한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 이해관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이러한 구제조치를 추구할 수 있다.
- 어느 누구도 체포로 인하여 구금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원칙은 부양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기관이 내리는 명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제7조>.
- 489) 모든 개인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사전에 법률로 규정된 이유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당하지 아니한다.<제6조>.
- 490)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평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0조>.
- 491)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제9조3>
-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제10조 2-b>
-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4조1,2,3,4,5>

492) 이 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에 의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제5조3>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도기관 또는 공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1>

이 조는 그 행위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7조2>

493) 구금된 자는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타 관헌 앞에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소송절차의 계속를 침해함이 없이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그가 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자는 법원이 그의 체포나 구금의 적법성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단하고, 체포나 구금이 불법적인 경우 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할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자는 그러한 위협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법률을 가진 당사국에서, 이러한 구제조치는 제한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 이해관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이러한 구제조치를 추구할 수 있다.<제7조5,6>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형사기소를 확정함에 있어서나 자신의 민사상, 노동, 재정상 또는 기타 성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사전에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 의하여 정당한 보장을 받으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8조1>

494) 모든 개인은 자신의 주장을 호소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현행의 조약, 법률, 규정 및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되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호소할 권리;
- b) 권한 있는 법원이나 법정에 의하여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 c)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 의하여 변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방어의 권리;
- d) 공정한 법원이나 법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제7조1>

49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제6조5>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제10조2-b>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제10조3>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제14조1>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4을 받을 것
-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제14조3>.
- 496)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제5조1-d>
-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도기관 또는 공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1>.
- 497) 사형은 범행시 18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신부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제4조5>
- 형사소송에 계속 중인 미성년자는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특별법원에 회부되어야 하며, 미성년자로서의 지위에 알맞는 처우를 받는다.<제5조5>
- 형사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송 계속 중 모든 사람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g)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유죄인정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제8조2-g>.
- 498)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1조1>.
- 499)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1조1>.
- 500)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6조2>.
- 501) 어느 누구도 한 국가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유죄판정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같은 국가의 관할권하의 형사절차에서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당하지 아니한다.
-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거나, 과거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근본적 오류가 있었다면 위의 규정은 관련 당사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당해 사건이 재심리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4조1,2>.
- 502) 형사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소송 계속 중 모든 사람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상소할 수 없는 판결에 의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자는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2,4>.
- 503) 모든 개인은 자신의 주장을 호소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b) 권한 있는 법원이나 법정에 의하여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제7조1-b>.
- 504)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제11조2>.
- 505)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5조1,2>.
- 506) 어떤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이 조는 그 행위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7조1,2>.
- 508) 당사국은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기반이 되는 목적 및 이유와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주사회의 공공복지를 유지할 목적으로 공포된 법률에 의하여만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제5조>.
- 509)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행위시에 규정이 없던 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벌도 가해질 수 없다. 형벌은 개인적인 것이며, 범죄인에 대하여서만 부과될 수 있다.<제7조2>.
- 510)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5조>.
- 511)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제10조3>.
- 512)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 (b)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제2조-b>.
- 513)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3조>.
- 514)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형벌 또는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처우되어야 한다.

5. 인권영역의 차별 금지 국제조약 조문

영역	차별금지 국제인권조약 ⁵¹⁶⁾
인권 각 영역	세계인권선언(제1조, 제2조, 제7조) ⁵¹⁷⁾ , 국제사회권조약(전문, 제2조의 2, 제3조) ⁵¹⁸⁾ , 국제자유권조약(전문, 제2조의 1, 제3조, 제4조의 1, 제20조의 2, 제24조의 1, 제26조, 제50조) ⁵¹⁹⁾ , CEDAW(제1조) ⁵²⁰⁾ , CERD(전문 등) ⁵²¹⁾ , CRC(제2조의 1) ⁵²²⁾ , ECR(제14조) ⁵²³⁾ , ACR(제1조의 1, 제13조의 5, 제24조) ⁵²⁴⁾ , AFR(제2조, 제183조) ⁵²⁵⁾

형벌은 범죄인 이외의 사람에게 확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5조2,3>

515)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와 모욕, 특히 노예제도, 노예무역,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형벌과 처우는 금지된다.<제5조>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행위시에 규정이 없던 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벌도 가해질 수 없다. 형벌은 개인적인 것이며, 범죄인에 대하여서만 부과될 수 있다.<제7조2>

516) 이 연구에서 다른 실제적인 영역의 차별 관련 증거들은 모두 같다. 따라서 이후에는 생략한다.

517)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 <전문>

모든 인간은 ...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제2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

518)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제2조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제3조>

519)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전문>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제2조1>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제3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1>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제20조2>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부록2. 인권영역별 관련 국내법령(예시)>

1. 인간의 존엄성

<p>받지 아니하며 영혼 자신의 가족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1></p>	<p>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부터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1></p>
<p>모든 부류는 자유 위에 존엄하고 평등하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당할 권리가 없다.<제26조></p>	<p>이름 526(별명 사용 금지), 평등권보장법(인종차별금지법 528)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당할 권리가 없다.<제26조> 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묘자보검법(50)겨울방학 안전에 관한 법률(531), 520(2)명예훼손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분과 처우의 불평등 및 여성 차별의 방지, 관공법 537, 평등의 원칙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함을 또는 행사하는 것을.<제1조></p>
<p>521) 국제연합 헌장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위하여 특별히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증진하고 촉진하는.<전문></p>	<p>형법상의 사형규정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법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및 처우의 불평등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 없이 불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평등한 권리를 함(530), 존경한 민족의 무침(530)하여계(536)2조1></p>
<p>523)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관하여 차별을 함이 없이 평등한 권리를 함(530)하여계(536)2조1></p>	<p>도로교통법(539), 동점규제 및 공경거리에 관한 법률(방송법 540)적외선 관련 법(541), 노동관할 등에 관한 법률(542), 상해배상지급법(543)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위하여 특별히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증진하고 촉진하는.<제1조></p>
<p>524) 이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를 법원까지 내어줌으로써 평등하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사회적 조건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러한 권리와 장의 자유롭고 완전한 행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제1조1></p>	<p>법 527(성년 연령법 546)를 인정할 자를 법원까지 내어줌으로써 평등하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사회적 조건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러한 권리와 장의 자유롭고 완전한 행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제1조1></p>
<p>전쟁의 선전과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불법적인 폭력 또는 기타 유사한 행동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증오의 주장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제13조5></p>	<p>전쟁의 선전과 인종, 피부색, 종교, 언어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불법적인 폭력 또는 기타 유사한 행동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증오의 주장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제13조5></p>
<p>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따라서 그들은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p>	<p>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따라서 그들은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p>
<p>525) 모든 개인은 인종, 민족집단,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으로 인한 차별없이 이 헌장에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제2조></p>	<p>525) 모든 개인은 인종, 민족집단,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및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으로 인한 차별없이 이 헌장에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제2조></p>
<p>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보장하고, 국제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한다.<제183조></p>	<p>국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보장하고, 국제선언과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한다.<제183조></p>

	및시위에관한법률54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550), 형사소송법551), 행정법552)
강제노동과 노예금지	헌법553), 근로기준법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행정법555)
고문금지	헌법556), 국가인권위원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557), 형법558), 형사소송법559)
법 앞에 평등	헌법560), 가사소송법561), 건강가정기본법562), 교육기본법563), 국가공무원법56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565), 근로기준법566), 남녀고용평등법56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568), 독립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569), 방송법570), 여성발전기본법571), 외국인토지법572), 정당법57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574), 지방공무원법575), 지방자치법576), 직업안정법577), 특수교육진흥법578), 행정법579)

- 526) 제10조(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제13조(이중위험금지), 제27조(헌법상 보장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34조, 제37조.
- 527) 방송법 제5조 제1항.
- 528) 제1조(목적), 제11조(인간복제의 금지), 제12조(이중간의 착상 등 금지), 제22조(체세포핵이식행위), 제25조(유전자검사의 제한), 제26조(유전자검사의 동의), 제40조(개선명령), 제43조(과징금), 제45조(성체줄기세포연구의 지원), 제46조(국고보조), 제49조 이하(벌칙).
- 529)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1항, 2항.
- 530)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모성등의 의무),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21조(경비의 보조),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
- 531) 제1조(목적), 제6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 제9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제11조, 제13조(배아의 생성 등), 제15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제17조(잔여배아의 연구), 제20조(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제23조(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유전자치료), 제40조(개선명령), 제43조(과징금), 제45조(성체줄기세포연구의 지원), 제46조(국고보조), 제49조 이하(벌칙).
- 532) 제59조(사형, 무기형의 완화).
- 533)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 제4호(뇌사자를 살아있는 자에서 제외), 제6조(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7조(장기등 이식윤리위원회), 제10조(장기 등 적출·이식의 금지 등), 제11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제14조(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제17조(뇌사자의 사망원인), 제18조(장기 등의 적출요건), 제27조 제1항 제3호(비밀의 유지), 제39조 이하(벌칙).
- 534) 제41조, 제250조 이하(살인의 죄), 제267조 이하(과실치사의 죄), 제269조 이하(낙태의 죄),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 등.
- 535) 제12조 제1항, 제3항(불법한 강제처분 등으로부터의 자유)5항 6항 7항, 제13조, 제27조4항 무죄추정의 원칙 제28조형사보상청구권 제19조~제22조, 제37조.
- 536)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 537) 제3조, 불심검문.
- 538)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1.1.1.1.1. 539) 제119조3항.
- 1.1.1.1.2. 540) 제2조.
- 541) 제4조(보안관찰처분), 제11조(보안관찰처분의 면제), 제16조(결정의 취소 등), 제23조(행정소송).
- 542) 제32조 제2항(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9조 제1항(구인), 제42조 제1항(유치), 제44조(유치의 해제), 제52조(가해제),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 543) 제8조.
- 1.1.1.1.3. 544) 제58조의2 제1항.
- 545) 제13조(소환, 동행영장), 제14조(긴급동행영장),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제53조,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제65조(가석방).
- 546) 제38조(안전관리).
- 1.1.1.1.4. 547) 제25조.
- 548) 제39조 제1항(제1군전염병예방조치).
- 1.1.1.1.5. 549) 제2조 2호 제5조1항 제11조4호.
- 550) 제257조 이하(상해와 폭행의 죄), 제266조 이하(과실치사의 죄).
- 1.1.1.1.6. 551) 제69조 제75조, 제200조의3, 5, 제275조.
- 552) 제14조의 2(강제력의 행사), 제15조(무기의 사용), 제17조의 2(신체검사 등), 제49조 이하(가석방) 제66조.
- 553) 제12조 제1항 제2문 후단(불법한 강제노역의 금지).

-
- 554)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555) 제36조(휴일의 작업).
 556) 제12조 제2항(고문금지).
 557) 제4조의 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558)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559) 제310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560) 제11조(법 앞의 평등), 제27조 제2항과 제110조 제4항(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군사재판), 제29조 제2항(군경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31조 제1항(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 제4항(근로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2조 제6항(국가유공자유가족의 취업우선기회의 보장), 제33조 제2항과 제3항(공무원 등의 근로3권 제한),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정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평등선거), 제43조-제45조(국회의원의 특권), 제84조와 제85조(대통령의 특권),
 561) 제1조(목적).
 1.1.1.1.7. 562) 제3조, 제5조, 제7조.
 563)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564) 제35조(평등의 원칙), 제42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1.1.1.1.8. 565) 제34조 제1항(제한) 제13, 47조 제801, 제807, 제826조.
 566) 제5조(균등처우).
 567) 제5조와 제6조 제2항(모집과 채용), 제6조의 2(임금),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 제8조(정년·퇴직 및 해고), 제16조-제18조(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
 568)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1.1.1.1.9. 569) 제12조 제16조 제18조.
 570) 제6조 제2항(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1.1.1.1.10. 571) 제1조(목적), 제6조(적극적 조치) 제24조.
 572) 제3조(외국인의 토지소유 등의 제한).
 573) 제31조 제4항(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574) 제8조 제1항(채용시 우대 등).
 575) 제33조(평등의 원칙),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576) 제13조 제1항(주민의 권리).
 577) 제2조(균등처우).
 578) 제13조(차별의 금지 등).
 579) 제18조-제19조(접견·통신의 제한 및 서신의 검열).

2. 시민적·정치적 권리

2.1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영역	관련 법령
사생활의 자유	헌법58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581),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582),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58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584), 공직선거법585), 공직자윤리법586), 교육기본 법587), 국민건강보험법588),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589), 근로기준 법59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591), 관세법592), 군사법원 법593), 군행형법594), 근로기준법59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른, 모자보건법596), 방송법59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598), 보건의료기 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599), 주민등록법, 통신비밀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600), 생 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60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6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603), 신문등의자유와기능 보장에관한법률60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605), 아동복지 법606), 우편법60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608), 장기등이식 에관한법률609), 전기통신기본법610), 전기통신사업법611), 전자거래기본 법612), 전자서명법61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614), 전자법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6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617), 주민등록법618), 증권거래법619), 직업안정법620), 초중등교육법621), 통신 비밀보호법62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623), 행형 법624), 형법625), 형사소송법626)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627), 검역법628), 계엄법629), 민법630), 범죄인인도법631), 보안관찰 법63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633), 전염병예방법634), 주민등록법635), 출입국관리법636), 해외이주법637)
국적취득권	헌법638), 국적법639)
아동의 권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640), 근로기준법, 모· 부자복지법, 소년법641)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64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643), 최저임금법, 학교 급식법, 형법
재산소유권	헌법644), 건축법64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646), 광업법647), 공직자윤리법648), 국가배상법6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650), 도로법6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652), 문화재보호법653), 민 법654), 산림법655), 수산업법656), 식품위생법657), 약사법658), 정보화촉진 기본법659), 형법660)
사상·양심·종 교의 자유	헌법661), 교육기본법662), 국가보안법663), 군형법, 근로기준법664), 병역 법66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666), 초중등교육법667), 형법668)

580) 제16조(주거에 대한 수색),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21조 제4항(언론출판 물에 의한 침해의 금지).

581) 제1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64조(비밀업수 등 의무의 위반죄).

582) 1994년 도입,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제9조(개인 정보의 안전성확보),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4조(처리정보 의 정정), 제134조(처리정보의 열람 제한),

1.1.1.1.11. 583) 제2조.

584) 제9조 제1항 제6호(비공개정보대상).

585)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586) 제1조(목적), 제3조(등록의무자), 제6조(변동사항의 신고), 제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10조(등록 재산의 공개), 제10조의 2(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제11조(전보된 자 등의 재산신고), 제12조(성실등록

- 의무 등),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 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제14조의 7(신탁제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제28조(비밀누설의 죄).
- 1.1.1.1.12. 587) 제23조의2.
588) 제86조(비밀의 유지).
589) 제8조(감사 및 조사의 한계).
590) 제101조 제1항(기숙사생활의 보장).
591)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5항(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의 2(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제4조의 3(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 등의 기록관리), 제6조 제1항(벌칙).
- 1.1.1.1.13. 592) 제256조, 제257조.
- 1.1.1.1.14. 593) 제131조.
- 1.1.1.1.15. 594) 제15조, 제16조.
- 1.1.1.1.16. 595) 제101조.
596)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6조(벌칙).
597) 제5조 제3항(방송의 공적 책임).
598) 제54조(직무상비밀과 증언거부).
599) 1999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칭변경.
600) 제43조 제6항과 제7항(건강진단).
601) 제35조(유전정보 등의 보호).
602) 제14조,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22조 제3호(벌칙).
603)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14조의 2(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제21조의 2 제1항(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2조(심리의 비공개).
604)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605) 제1조(목적), 제13조(수집·조사의 원칙), 제15조 제1항 제3호(수집·조사의 제한), 제18조 제2항(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1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제25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27조(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28조(손해배상의 책임).
606)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607) 제27조(우편물내용의 신고와 개파), 제28조(법규위반우편물의 개파),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51조(비밀침해의 금지).
- 1.1.1.1.17. 608)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609) 제2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비밀의 유지), 제44조(벌칙).
610) 제21조 제1항 본문(목적 외의 사용의 제한), 제47조 제2항(벌칙).
- 1.1.1.1.18. 611) 제54조.
612) 제12조(개인정보보호), 제13조(영업비밀보호).
613)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614) 제10조(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제11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제12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제21조 제3항(행정정보공동이용).
- 1.1.1.1.19. 615) 제49조 내지 제51조.
616) 제3조(정보화촉진의 기본원칙), 제5조 제3항 제9호(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 제14조(정보보호 등).
617) 제1조(목적), 제3조 제1항과 제3항(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 제1항과 제2항 제6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제22조와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의 제한),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제25조(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이용자의 권리), 제31조, 제32조(손해배상), 제33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6조의 3(정보보호 안전진단), 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 2(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의 2-제48조의4(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50조의 1-7항(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51조(중요정보 국외유출제한 등), 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제53조(국제협력), 제54조(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57조 본문(비밀유지 등), 제61조 이하(벌칙).
- 618) 제1조, 제6조, 제10조, 제17조의8 제18조의 2 제1항과 제2항(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8조의 3(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 등의 의무), 제21조(벌칙).
- 619) 제59조(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제60조(정보제공요구의 금지), 제61조(부당조사의 거부), 제208조(벌칙).
- 1.1.1.1.20. 620) 제42조(비밀보장의무), 제48조(벌칙).
- 1.1.1.1.21. 621) 제25조.
622)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자정보통신의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13조의 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제한),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5조(국회의 통제), 제16조 이하(벌칙).
- 1.1.1.1.22. 623) 제7조.
624) 제18조-제19조(접견·서신·전화통화의 제한).
625) 제316조와 제317조(비밀침해의 죄).

1.1.1.1.23. 626) 제91조,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 627) 제6조 제14조, 제37조 제2항.
- 628) 제13조(격리 또는 감시).
- 629)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630)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914조와 제945조(미성년자에 대한 거소지정).
- 631) 제8조(정치적 성격을 가진 범죄 등의 인도거절).
- 632) 제3조-제6조(보안관찰처분).

1.1.1.1.24. 633)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 제32

조 제2항(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634) 제39조 제1항(제1군전염병예방조치).
- 635) 제14조-제17조(거주지이동의 신고).

1.1.1.1.25. 636) 제12조 제3항.

- 637)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 638) 제2조 제1항(국민의 요건).
- 639)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제3조-제7조(혼인·인자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제12조-제15조(국적의 상실),

1.1.1.1.26. 640) 제5조.

1.1.1.1.27. 641) 제49조.

1.1.1.1.28. 642) 제49조.

1.1.1.1.29. 643) 제18조, 31조~34조.

- 644)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금지), 제23조 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29조(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제119조 제2항(사용·수익의 제한), 제122조(국토의 이용·개발제한), 제126조 전단(사업기업의 국·공유화 등).

- 645) 제1조(목적),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등).
- 646) 제1조(목적), 제61조(사업시 행자의 보상).
- 647) 제1조(목적), 제11조(광업권 및 조광권행사의 제한), 제11조의 2(석유에 관한 광업권의 특례), 제29조(공익상 이유 등에 의한 불허가), 제39조(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 제83조(토지의 출입 및 장애물제거), 제84조(토지출입권 및 사용권), 제85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86조와 제87조(토지사용 및 수용의 목적), 제88조(토지사용·수용의 인정), 제91조(손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제113조의 2 이하(벌칙).

- 648) 제1조(목적), 제3조(등록의무자), 제6조(변동사항의 신고), 제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의 2(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제11조(전보된 자 등의 재산신고),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4조의 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 6(주식취득의 제한), 제14조의 10(주식의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제24조 이하(벌칙).

- 649) 제2조(배상책임).
- 650) 제1조(목적),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의무), 제8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제9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81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6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의준용), 제97조(국·공유지의처분제한),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제134조(행정심판), 제140조 이하(벌칙).

- 651) 제1조(목적), 제48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49조(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제49조의 2(토지 등의 수용), 제79조와 제80조(손실보상), 제82조 이하(벌칙).

- 652) 제41조(무상수거).
- 653) 제20조(허가사항), 제21조(수출 등의 금지), 제30조(손실의 보상).

- 654) 제2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
- 655) 제1조(목적), 제54조(임산물의 사용제한 등).
- 656) 제1조(목적), 제12조(어업의 제한 및 조건), 제75조(범죄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76조(범죄어획물의 방류명령).

- 657) 제17조(무상수거).
- 658) 제55조(판매 등의 금지).
- 659) 제16조의 4(지적소유권의 보호).
- 660) 제329조-제372조(재산에 대한 죄).
- 661) 제11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9조, 제103조.
- 662) 제6조 제2항(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금지).
- 663) 제7조 제1, 2, 3, 4, 5, 6, 7항.

- 664) 제5조(균등치우).
- 665) 제3조(병역의무), 제88조 제1항(입영의 기피).
- 666) 제18조 제1~5항.
- 667) 제43조 입학자격 등, 제47조 입학자격등, 제77조 고등학교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668) 제158조 이하(신앙에 관한 죄).

2.2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영역	관련 법령
의견/표현의 자유 (알권리와 정보공개 권이 파생권리)	헌법669), 제업법670),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671), 공 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672), 공직선거법673), 공직자윤리 법674),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675), 국가보안법676), 국민건강보험법677),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678), 군사기밀보호 법679), 국회법68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681), 모자보 건법682), 방송법68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684), 산업안전보건 법68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686), 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687), 소년법688), 신문등의자유와기능 보장에관한법률689),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690), 아동복 지법691),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692), 우편법693), 음반·비 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694),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695), 저작권 법696), 전기통신사업법697),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 화촉진에관한법률698), 정당법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700), 정보화촉진기본법701), 증권거래법702), 지방자치 법703), 직업안정법704), 청소년보호법705), 출판및인쇄진흥법, 통신 비밀법, 행정심판법706), 형법707)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708), 국가보안법709), 민법710), 방송법711), 언론중재및피해구제 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71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 한법률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713), 제업법714), 공직선거법715),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716), 국가공무원법717), 국가보안법718),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719), 도시공원법, 소음진동규제법720), 전염병예방법7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722), 정당법723), 지방공무원법724), 형법725)
참정권	헌법726), 공직선거법727), 교육공무원법728), 국가공무원법729), 근로 기준법730), 정당법731), 지방분권특별법732)

669) 제21조 제1항 전단(언론·출판의 자유), 제21조 제2항 전단(허가나 검열의 금지), 제21조 제4항(명예훼손 등의 금지), 제26조, 제77조 제3항(계약).

670) 제9조(계약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1.1.1.30. 671) 제4조.

672) 제1조(목적), 제3조(정보공개 원칙),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8조-제21조(불복구제절차),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673) 제1조(목적),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 제8조의 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8조의 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 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64조(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제79조(신문광고 및 방송연설 등), 제80조(연설금지장소), 제82조-제82조의 3(언론기관 등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 제82조의1,4,6(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5조와 제86조(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의 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조-제102조(탈법방법 등에 의한 선거운동 등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33조(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137조-제139조(정당정책 등의 표현의 제한), 제145조(당사계시선전물 등의 제한),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에 관한 특례), 제210조(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37조-제240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674) 제1조(목적), 제3조(등록의무자), 제6조(변동사항의 신고), 제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제10조(등록 재산의 공개), 제10조의 2(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제11조(전보된 자 등의 재산신고), 제12조(성실등록 의무 등).

675)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 676) 제1조(목적 등), 제7조(찬양고무 등).
- 677) 제86조(비밀의 유지).
- 678) 제12조(공개원칙),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와 보고).
- 679) 제4조 제1항(군사기밀의 지정원칙),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제6조와 제7조(군사기밀의 해제 및 공개),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제9조(공개요청), 제12조-제14조(누설 등).

1.1.1.1.31. 680) 제9장.

- 681)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5항(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6조 제1항(벌칙).
- 682)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6조(벌칙).
- 683) 제1조(목적),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5항(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 제1항과 제2항(제한), 제6조 제4항(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684) 제54조(직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685) 제52조의 6(비밀유지).
- 686) 제19조(비밀업무 등의 의무), 제22조 제3호(벌칙).
- 687) 제3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35조(벌칙).
- 688) 제68조(보도금지).
- 689) 제1조(목적),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4조(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 제5조(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39조 이하(벌칙).
- 690)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제25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27조, 제28조, 제35조.
- 691)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 692) 제1조(목적),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보호 및 제한),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제30조(손해의 배상),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32조(시정권고), 제34조(과태료).
- 693) 제51조(비밀침해의 금지).

1.1.1.1.32. 694) 제2조 제8호 내지 12조, 제32조.

- 695) 제2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비밀의 유지).
- 696) 제54조(출판권의 설정).
- 1.1.1.1.33. 697) 제53조의 2, 제53조.
- 698) 제9조(행정정보공개 원칙), 제11조, 제12조.
- 699) 제28조 제1항(강령 등의 공개), 제45조(비밀업수의 의무), 제52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 700) 제42조, 제44조, 제57조 본문(비밀유지 등), 제61조 이하(벌칙).
- 701) 13조(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 등), 제16조의 2(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 702) 제59조(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제60조(정보제공요구의 금지), 제208조(벌칙).

1.1.1.1.34. 703) 제65조.

- 704) 제42조(비밀보장의무), 제48조(벌칙).
- 1.1.1.1.35. 705) 제10조.
- 706) 제26조의 2(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 707) 제90조 제2항(내란죄의 선진, 선동), 제101조 제2항(외환죄의 선진, 선동), 제243조(음화분포 등),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죄),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10조(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 708) 제12조, 제19조, 제21조 제1, 2, 3, 4항, 제23조.

1.1.1.1.36. 709) 제7조 1, 5항.

1.1.1.1.37. 710) 제750조.

- 1.1.1.1.38. 711) 제1조, 제69조, *시행령51조 / 제5조, 제8조,
- 1.1.1.1.39. 712) 제53조, 제71조 7호.
- 1.1.1.1.40. 713) 제21조 제1, 2항(집회·결사의 자유), 제33조 제2항(공무원집단 행위 등의 금지), 제37조, 제77조 제3항(계엄).

- 714)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715)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 716) 제1조(목적),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 717)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 718) 제1조(목적 등), 제3조 제2항(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8조(회합 등).

1.1.1.1.41. 719) 제1조(목적),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제10조(설립의 신고).

1.1.1.1.42. 720) 제23조.

- 721) 제39조 제1항 제2호(제한).
- 722) 제1조(목적), 제2조,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1항~6항, 제8조 2항, 3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1항, 2항, 3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5항.
- 723) 제1조(목적), 제4조의 2(합당), 제10조의 2(창당집회의 공개), 제11조(등록신청), 제19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20조(입당), 제23조(탈당), 제42조(대체정당의 금지), 제55조(창당방해 등의 죄).
- 724) 제57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 725) 제90조 제2항(내란죄의 선진, 선동), 제101조 제2항(외환죄의 선진, 선동).
- 726) 제7조, 제8조(정당결성 및 가입 등), 제13조 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제21조 제1항(정치적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24조(선거권), 제25조(공무담임권), 제35조 제1항(환경보호 등을 위한 시민운동권), 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시민운동권과 저항권), 제41조 제1항(국회의원선거권), 제67조 제1항(대통령선거권), 제72조(중요정책의 국민투표), 제116조 제1항(선거운동권), 제124조(소비자보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3.1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s)

영역	관련 법령
사회보장권	헌법733), 고용보험법7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사회보장기본법735),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발전기본법736), 아동복지법, 의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직업안정법
노동에 대한 권리	헌법737),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738), 교육공무원법739), 근로기준법740),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741)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헌법742), 최저임금법743)
유리한 근로조건 향유권(월권리 포함)	헌법744), 근로기준법
노동조합의 권리	헌법745),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 교육기본법74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호를 위한 시민운동권), 제130조 제2항과 제3항(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표결권).
 727)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8조 및 그 5항(인터넷 언론 배제), 제9조,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제38조1항, 제58조 제2항(선거운동권의 보장), 제58조 제1, 2항(법률에 의한 제한), 제59조, 제60조 4항 (공무원과 교사 정치활동 금지)(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제6조), 제82조 3항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보장) 6항(실명확인),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제103조, 제108조(선거운동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 공포 금지).
 728) 제24조의 2(선거운동의 제한).
 1.1.1.1.43. 729) 제65조1항.
 730)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731) 제1조(목적), 제6조(정당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제19조 제1항(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42조(대체정당의 창설 금지), 제47조(입당강요죄 등), 제55조(창당방해 등의 죄).
 1.1.1.1.44. 732) 제14조.
 733) 제34조 제2항-제6항(사회보장권) 제119조2항.
 1.1.1.1.45. 734) 제45조.
 1.1.1.1.46. 735) 제3조, 제5조, 제9조.
 1.1.1.1.47. 736) 제22조.
 737) 제32조 제1항 제1문(근로의 권리), 제32조 제1항 제2문 전단(근로의 권리) 제33조.
 1.1.1.1.48. 738) 제55조.
 1.1.1.1.49. 739) 제11조.
 1.1.1.1.50. 740) 제10조, 제30조1항 제31조 제37조1항 제58조1항, 제61조, 741) 제6조.
 742) 제32조 제1항 제2문(작장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시행).
 1.1.1.1.51. 743) 제5조 2항, 제7조.
 744) 제32조 제3항(근로조건 기준),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45) 제21조(결사의 자유), 제33조(근로자의 단결권 등),
 1.1.1.1.52. 746) 제16조.

3.2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영역	관련 법령
가족형성권	헌법74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건강가정기본법748), 국가공무원법749), 남녀고용평등법750), 모자보건법751), 민법75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753), 영유아보육법754), 유아교육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적정생활수준 향유권	헌법75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756), 고속국도법, 철도건설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먹는물관리법757), 소음진동규제법, 수도법758), 식품위생법759), 임대주택법, 주택법760), 주택임대차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급식법761), 학교보건법76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763)
건강권	헌법764),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765), 국민건강보험법766), 국민건강증진법767),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768),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769),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770), 보건의료기본법771), 보건의료기술진흥법772), 사회보장기본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773), 암관리법774), 응급의료에관한법률775),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776),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777), 지역보건법778),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779), 형법7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47)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보장).
 1.1.1.1.53. 748) 제8조, 제22조.
 1.1.1.1.54. 749) 제71조, 제72조.
 1.1.1.1.55. 750)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1.1.1.1.56. 751) 제1조, 제3조, 제14조, 제28조.
 752) 제826조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를 규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상호부양의무를 규정.
 1.1.1.1.57. 753) 제23조 제26조 제28조.
 1.1.1.1.58. 754)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26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
 755)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1.1.1.1.59. 756) 제53조.
 1.1.1.1.60. 757) 제1조, 제2조.
 1.1.1.1.61. 758) 제1조, 제2조.
 1.1.1.1.62. 759) 제3조, 제4조, 제7조.
 760) 최저주거기준 법제화(2003년 개정).
 1.1.1.1.63. 761)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1.1.1.1.64. 762) 제5조, 제6조.

3.3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

영역	관련 법령
교육에 대한 권리	헌법781), 고등교육법782) 과학교육진흥법, 교육공무원법783), 교육기본법784), 교육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785), 국가인권위원회법786), 국민기초생활보장법787),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소년원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발전기본법788),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복지법78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790), 초·중·등교육법791), 특수교육진흥법792), 평생교육법793),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저작권	헌법794), 과학기술기본법, 특허법
자기문화향유권	헌법795)
인권질서추구권	-

- 1.1.1.1.65. 763)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3.
- 764) 제34조, 제36조 제3항(국민보건보호).
- 1.1.1.1.66. 765)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 1.1.1.1.67. 766) 제9조, 제39조, 제62조, 제67조, 제68조.
- 1.1.1.1.68. 767) 제1조, 제3조.
- 1.1.1.1.69. 768) 제1조, 제5조, 제15조.
- 1.1.1.1.70. 769) 제13조, 제14조.
- 1.1.1.1.71. 770) 제3조.
- 1.1.1.1.72. 771)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23조, 제30조, 제52조.
- 1.1.1.1.73. 772) 제6조.
- 1.1.1.1.74. 773) 제3조.
- 1.1.1.1.75. 774) 제11조.
- 1.1.1.1.76. 775)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 1.1.1.1.77. 776) 제5조,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7조의3, 제47조의2, 제54조의2,3,4,5,6.
- 1.1.1.1.78. 777)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 1.1.1.1.79. 778) 제9조.
- 1.1.1.1.80. 779) 제4조, 제5조.
- 1.1.1.1.81. 780) 제317조.
- 781) 제31조.
- 1.1.1.1.82. 782) 제4조, 제32조.
- 1.1.1.1.83. 783) 제22조의2, 제37조.
- 784) 제4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5조, 제10조 제1항 제3항.
- 1.1.1.1.84. 785) 제4조, 제12조, 제21조, 제35조.
- 1.1.1.1.85. 786) 제26조.
- 1.1.1.1.86. 787) 제12조.
- 1.1.1.1.87. 788) 제6조 15조 제20조 제21조.
- 1.1.1.1.88. 789) 제18조, 제45조.
- 1.1.1.1.89. 790) 제4조.
- 791) 체벌, 제9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47조, 제60조의2, 제68조, 제77조, 제81조, 제84조.

4. 법절차적 권리(Legal procedure Rights)

영역	관련 법령
법적 인격체의 인정	-
법적 구제권(체포, 구금/처벌중 또는 후)	헌법796), 군사법원법797), 행형법798), 형사보상법799), 형사소송법800)
인신 보호(항소, 체포, 보상, 보석, 계약이유, 구속적부심)	헌법801), 소년법802), 형법803), 형사보상법804), 형사소송법805)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806), 법원조직법807), 범죄피해자구조법808), 보안관찰법, 소년법809),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810),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81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812),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813), 형사소송법814)
적정 절차	헌법815)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헌법816), 경범죄처벌법817), 도로교통법818), 소년법819),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820)
죄형법정주의	헌법821), 경범죄처벌법, 군사법원법, 소년법822), 청소년보호법823), 행형법, 형법824), 형사소송법825)
수형자의 권리	헌법826), 군행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면법, 소년원법827), 치료감호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1.1.1.90. 792) 제5조 제13조.

793) 평생교육사의 양성(제17조 이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20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21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22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제23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제24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제25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제26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제27조).

794) 제22조 제2항(저작권 등의 보호),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95) 제9조(전통문화).

796) 제12조 1항 적법절차, 3항 사전영장제도-자의적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금지, 4항 변호인 조력권 5항 체포·구속 사실 통지제도, 6항 적부심사 청구권, 제27조 4항, 제28조(형사보상청구권), 제29조(국가배상청구권),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797) 제239조, 구속 1일간.

798) 제66조 변호인 접견 및 서신.

799) 제1조(보상요건), 제5조(손해배상과의 관계).

- 800) 기록열람 및 등사권 제35조, 55조, 사전영장제도, 제200조, 215조, 216조 3항, 217조 1항.
- 801) 제12조 제1항 제2문(적법절차의 원칙),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제12조 제5항(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제12조 제6항(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제29조 제1항(국가배상청구권), 제77조 제3항(비상계엄하에서의 영장주의의 제한).
- 802) 제4조 제1항(보호의 대상), 제13조(소환, 동행영장), 제14조(긴급동행영장),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 803) 제124조(불법체포·감금자의 형사처벌).
- 804) 제1조(보상요건), 제5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2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 805)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1조(구인의 효력), 제73조(구속영장의 발부), 제79조(출석, 동행명령), 제93조(구속의 취소), 제94조(보석의 청구),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40조(검증),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제200조의 2(체포), 제200조의 3(긴급체포), 제201조(구속),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14조의 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 3(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 806) 제12조 제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7조 제1항과 제2항(재판을 받을 권리).
- 807) 법정내 녹화 등 허가.
- 1.1.1.1.91. 808) 제3조1항.
- 809)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 810) 제1조(목적), 제21조와 제22조(판결선고기간의 제한), 제 23조(결석재판제도).
- 811) 제1조(목적), 제6조(즉시심판).
- 812) 제20조 2항 제1호, 신상공개.
- 1.1.1.1.92. 813) 제10조(집중심리주의), 제13조(판결선고기간의 제한).
- 814) 제17조-제24조(체척·기파·회피제도),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33조(국선변호인), 제34조(접견교통권), 제35조(변호인의 소송기록열람권),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 제184조(증거보전청구권), 제200조 제2항(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66조(공소장부분의 송달), 제267조와 제270조(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76조(피고인의 공판정출석권), 제279조(제267조와 제270조[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제299조[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제300조[변론의 분리과 병합] 등에 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제286(피고인의 진술권), 제286조의 2(간이공판 절차), 제289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292조 제2항(피고인의 증거서류열람 등), 제294조(증거신청권), 제358조와 제374조(상소기간의 제한), 제361조와 제377조(상소기록의 송부기간제한), 제361조의 3과 제379조(상소이유서·답변서 제출기간의 제한), 약식절차(제448조), 제420조 제3항 제453조(정식재판 청구기간의 제한), 제454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허용).
- 1.1.1.1.93. 815) 제12조 제1항 제2문(적법절차의 원칙).
- 1.1.1.1.94. 816) 제12조 제2항(고문금지), 제13조 제1항 후단(일사부재리), 제27조 제4항(무죄추정).
- 1.1.1.1.95. 817) 제7조 제3항(벌칙금의 납부).
- 1.1.1.1.96. 818) 제119조 제3항(벌칙금의 납부).
- 1.1.1.1.97. 819)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 1.1.1.1.98. 820) 제34조(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70조(구속요건의 제한),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91조(구속된 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95조(필요적 보석), 제214조의(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제275조의 2(무죄추정), 제326조 제1호(면소의 판결), 제345조 이하(상소심의 회복), 제420조(재심), 제441조(비상상고).
- 1.1.1.1.99. 821) 제12조 제1항 제2문 후단(죄형법정주의), 제13조 제1항 전단(형벌불소급).
- 1.1.1.1.100. 822) 제60조 제1항(부정기형).
- 1.1.1.1.101. 823)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 1.1.1.1.102. 824)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 제2항과 제3항(피고인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허용), 제20조(정당행위),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112조(중립명령위반죄), 제370조(경계침범죄).
- 1.1.1.1.103. 825) 제323조 제1항(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1.1.1.1.104. 826)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 1.1.1.1.105. 827)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확인), 제29조(교과교육소년원), 제32조(학교 전·편입학), 제33조(통학), 제40조(특별활동).

<부록3. 인권영역별 인권 통계/지표 목록>

☆ 표시와 ★ 표시는 각각 《2004여성통계연보》(2004, 한국여성개발원 발간), 《한국의사회지표》(2004, 통계청 발간)에도 실려 있는 지표임.

천부적 자유와 존엄성

성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태아사망 분포(1999·2000년)	(1999·2000년)
모 연령별 태아사망(1999·2000년)	사망시 모성사망 유무별 태아사망 분포(1999·2000년)
성별 태아사망(1999·2000년)	태아사망의 분만방법별 분포(1999·2000년)
성별 임신주수별 태아 사망 분포(1999·2000년)	의료기관 종류별 태아사망 분포(1999·2000년)
성 및 체중별 태아 사망 분포(1999·2000년)	태아사망률(1999·2000년)(1000명당)
사망시기별 태아 사망(1999·2000년)	성별 주산기 사망분포(1999년)
태수별 태아사망 분포(1999·2000년)	주산기 사망률(1996·1999년)
선천성 기형동반 유무별 태아사망 분포	

영아사망조사, 1999년도 영아사망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생명권

시도별 평균연령

시도별 추계인구, 《시도별추계인구》, (2002), 통계청

사망 - 사망자의 주소, 주민번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발병(사고발생)당시직업, 사망원인진단업소
 사회통계조사,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의료기관 조사내용	분임 방법별 사망영아 분포(1999 출생 코호트)
OECD회원국의 영아사망률 수준비교	월별 사망영아 분포(1999 출생 코호트)
OECD회원국 주산기 사망률 비교	사망영아의 출생 및 사망 발생 의료기관 분포(1999 출생 코호트)
기존 자료 내용	사망영아의 의료기관 종류별 분포(1999출생코호트)
기존 자료 모집	행정기관별 사망영아의 사망발생 장소(1999 출생 코호트)
출생신고 자료	생존기간 및 성별 영아사망률 추세
사망진단서 모집 자료 내용(영아사망)	사망시기별 영아 사망률 성비 추세
건강보험 자료 종류 및 내용	지역별 출생아 수(1999년)
지역별 의료기관별 조사대상 의료기관 분포	지역별 사망영아 수(1999년)
생존기간별 자료원별 영아사망 포함율	지역별 영아사망률(1996·1999년)
자료원별 기관간 공유상태별 영아사망 분포	1999년도자료의 전체 추정치와 통계청 자료비교
화장장 자료의 생존기간별 영아사망 포함율	출산 및 사망관계 자료 입수 내역
성별·생존기간별 사망영아 분포(1999출생코호트)	자료원별 영아 사망 포함율(1999년출생코호트)
모 연령별 사망영아 분포(1999 출생 코호트)	영아 사망건수의 각 기관별 일치도
출생순위별 사망영아 분포(1999 출생 코호트)	자료원별 영아 사망 공유율(1999년)
성별·임신 주수별 사망영아 분포(1999 출생코호트)	생존기간별 자료원별 영아 사망 포함율(1999년)
성별·출생체중별 사망영아 분포(1999 출생 코호트)	생존기간별 화장장 자료의 영아사망 포함율(1999년)
사망영아의 출생체중별 생존기간 분포(1999 출생 코호트)	
태수별 사망영아 분포(1999 출생 코호트)	

영아사망조사, 1999년도 영아사망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제1심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사형인원수 누년비교표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일반사망 요약분류표(103항목)에 의한 성/연령(5세계급)별 ★
 일반사망 요약분류표(103항목)에 의한 성/시도별
 일반사망 요약분류표(103항목)에 의한 성별 ☆
 사망원인별(236항목)/성/연령(5세계급)별 사망률 사망자수 및 사망원인 구성비 ☆
 사망원인별(236항목)/성/교육정도별
 사망원인별(103항목)/성/특정연령계급/혼인상태별
 사망원인별(103항목)/성/직업별(1993~)
 사망원인별(103항목)/성/직업(구)별(~1992)
 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10세계급)/시도별
 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10세계급)/시도별
사망원인통계, 《사망원인통계(2004년)》, (2005), 통계청

평균수명(출생시 기대여명) ☆ 연도별 평균수명 연령별 기대여명 및 증가율 ☆ 80세까지의 생존확률 추이	현재 연령에서 80세까지의 생존 확률 출생후 특정연령까지의 생존확률 특정사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사인 제거시 연령별 증가 기대여명
--	---

생명표, 《생명표》, (2004), 통계청

준법수준 ☆ 공중 질서 수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전화폭력 경험여부(복수응답)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형법범중 주요범죄 발생건수 ☆ 범행동기별 범죄자수 ☆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 유형별 범죄자수 및 여성범죄자 비율 ☆ 주요 범죄자수 및 소년범죄자 비율 주요 범죄자 평균연령 외국인 범죄자 비율 주요 범죄 재범자 비율 ☆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별 분포	주요 범죄 미신고 비율 및 이유 경찰관수 및 순찰 차량수 교통수단별 사고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교통사고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원인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율 고속도로 교통사고 총도로연장 및 교통안전시설 법률 구조, 상담 및 개업 변호사수 재해 주택형태별 화재보험 가입건수, 가입금액 및 보 험료 지역별 화재보험 가입건수, 가입금액 및 보험료 소방관수 및 소방자동차수
--	---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 교통문제 ★

사회통계조사,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처분별현황(사건수,인원수,근거법률 기준)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남여별현황(총계, 소년사건, 성인사건)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활동상태별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죄명별 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연령별 현황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대상자분류등급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보호관찰경력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집행유예자와 보호관찰 기간 현황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집행유예자에 대한 판결내용별 현황(단독명령 제외)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원호 및 응급구호, 성적별 조치, 구인·유치대상자처리현황,
 구인(긴급구인포함) 당시의 보호관찰기간 경과 현황)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종료사유별 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보호처분변경자의 처분변경현황(1·2호 처분계, 1·3호 처분계)
 보호관찰자등대상자관리현황/보호관찰기간중 재범현황(연령, 근거법률, 보호관찰 기간 경과 기준, 죄명별 재범시의 죄명 현황)
 조사업무처리현황(판결전 조사, 사안조사, 환경조사)
 범죄예방위원활용현황/보호관찰대상자를 지정받은 범죄예방위원현황
 범죄예방위원활용현황/범죄예방위원이 지정된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범죄예방위원활용현황/특별범죄예방위원 활용현황
보호관찰통계, 《보호관찰통계연보(2004)》,(2004), 법무부

도로보수비 집행현황(일반국도) | 도로보수비 집행현황(고속도로)

도로보수현황,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해양안전 심판현황 | 해기사별 해양사고(총괄)
 사고유형별 해양사고(총괄) | 선박톤수별 해양사고(총괄)
 선종별 해양사고(총괄) | 징계별 해양사고(총괄)
 원인별 해양사고(총괄) | 항로 표지 시설현황

해난사고현황,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2005), 해양수산부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교통법규 위반 처리 결과현황(운전자)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2004)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 | 음주교통사고 및 단속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2004) |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2004)
 운전면허 취득년수별 교통사고 현황 | 교통사고 처리현황
 보행자 사고 유형별 현황(2004) |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고 발생 현황
 도로 선형별 사고 발생 현황(2004) |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고 검거 현황

교통사고 발생상황, 경찰청 홈페이지 통계자료실, 경찰청

남녀별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합격자 현황
 운전면허 종별 현황 | 응시자별 운전면허 취득자 현황

운전자배출현황, 경찰청 홈페이지 통계자료실, 경찰청

2004년도 범죄개요/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 | 재산 피해 정도
 2004년도 범죄개요/범죄동기별(형법범) |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재산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 | 신체 피해상황
 재산 피해정도 | 신체 피해(상해) 정도
 재산 피해상황 |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기간
 재산범죄의 처분결과 | 침입강도의 침입구와 방법
 강력범죄 연도별 발생 및 검거상황 | 침입절도의 침입구와 방법
 강력범죄 처분 결과 |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음모
 특별법범 연도별 발생상황☆ | 범죄의 공범수
 주요 특별법범 발생상황 | 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범죄자 처분결과☆ | 살인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범죄발생검거상황(총괄, 전국지검별) | 강도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범죄발생 시간 | 절도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범죄발생 요일 | 폭력범죄의 공범수와 범행도구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시간 | 범행도구 조치상황
 강도·절도 및 사기 수법 | 범죄자 범행도구 입수방법
 절도범죄의 발생 장소와 수법 | 살인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 강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범행시 일기 | 절도범 범행도구 입수방법
 범죄의 수사단서 | 범죄의 검거 단서
 범죄피해자 미신고 이유 | 장물 처분 방법
 피해자 성별·연령 | 금전 소비용도
 피해자 피해시 상황 | 범죄사건 처리 기간
 범죄 발생지 | 가정폭력 처분결과
 범죄 발생장소

범죄분석통계, 《범죄분석》,(2005), 대검찰청

화재 발생 현황	특수 장소 화재현황/위험물 제조소 등 화재 현황
원인별 화재 현황	특수 장소 화재현황/위험물제조소 등 장소·원인별 화재 현황
장소별 화재 현황	특수 장소 화재현황/사찰·교회·비닐하우스·동물관련시설 화재현황
월별 화재 현황	특수 장소 화재현황/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총괄
시·도별 화재 현황	특수 장소 화재현황/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원인별 화재현황
최근 5년간 화재 현황	소방차출동 현황/소방서 출동현황
최근 5년간 대형화재 현황	소방차출동 현황/오인 출동 현황
중요·특수 화재 현황	소방차출동 현황/지원출동 현황
산불 발생 현황	현장도착 시간별 화재 현황
원인별·시도별 산불 현황	화재 피해 규모별 현황
특수 장소 화재현황/소방검사 대상물 화재 현황	
특수 장소 화재현황/지하층 화재 현황	
특수 장소 화재현황/위락시설 화재 현황	
특수장소 화재현황/위락시설 장소·원인별 화재 현황	

화재발생총괄표, 《2004년 화재통계연보》,(2004), 소방방재청

풍수발생 및 피해(피해총액, 재산피해액, 기타피해액, 이재민 및 인명피해 수, 인명피해 종류별)
풍수해상황보고, 《2003 재해연보》,(2005), 소방방재청

119구급대(차량·대원)	2004년도 구급활동실적/응급처치 실적
2004년도 구급활동실적/총괄	2004년도 구급활동실적/시·도별 구급활동 실적
2004년도 구급활동실적/환자유형별 이송실적	2004년도 구급활동실적/연도별 구급활동 실적
2004년도 구급활동실적/진료과목별 이송실적	2004년도 구급활동실적/구급장비 보유현황
2004년도 구급활동실적/직업별 이송실적	구급대원 국외연수 현황
2004년도 구급활동실적/연령별 이송실적	

119구급활동실적보고, 《200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2005), 소방방재청

일반구조대	2004년도 구조활동실적/연도별 구조활동 실적(1997~2004)
직할 및 특수 구조대	2004년도 구조활동실적/시·도별 구조활동 현황
소방항공대 현황/헬기보유	2004년도 구조활동실적/소방항공대 활동 실적
소방항공대 현황/헬기 운영인력 및 구조대원	2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2004년도 구조활동실적/총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2004년도 구조활동실적/사고종별 구조인원	2004년도 긴급구조훈련 실적/총괄
2004년도 구조활동실적/사고장소별 구조인원	2004년도 긴급구조훈련 실적/참여기관·단체
2004년도 구조활동실적/사고종별 구조건수	2004년도 긴급구조훈련 실적/장비동원현황
2004년도 구조활동실적/시·도별 구조건수 및 구조인원	2004년도 긴급구조훈련 실적/시도별 훈련현황

119구조활동실적보고, 《200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2005), 소방방재청

여객사고통계, 《철도통계연보》, 한국철도공사
화물사고통계, 《철도통계연보》, 한국철도공사
철도보선통계, 《보선업무자료》, 한국철도공사

여성 생애동안의 성폭력 유형별 경험 및 신고율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성폭력실태및인원에관한연구’(1998년등),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범죄원인별표 - 제1심/행위원인별
 가정폭력범죄원인별표 - 제1심/가정구성원별
 가정폭력범죄원인별표 - 제1심/연령별
 가정폭력범죄원인별표 - 제1심/교육정도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제1심 접수인원의 추이

제1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재판결과 누년비교표
 제1심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의 재판결과 누년비교표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강제노동과 노예금지

사회봉사명령사건/ 접수및집행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사회봉사명령사건/명령시간대별 접수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사회봉사명령사건/집행불능자에 대한 사유별 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사회봉사명령사건/죄명별 접수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사회봉사명령사건/활동상태별 접수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사회봉사명령사건/성적불량자 조치(연령, 근거법률 기준)
 사회봉사명령사건/구인·유치대상자 처리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사회봉사명령사건/취소·변경자의 선고시간·집행시간 교차현황
 사회봉사명령사건/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현황
 사회봉사명령사건/사회봉사명령자체·협력 집행현황
 사회봉사명령사건/집행유예자에 대한 처분내용별 현황
 사회봉사명령사건/사회봉사명령 수료자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현황
 수감명령사건/접수 및 집행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수감명령사건/명령시간대별 접수 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수감명령사건/집행불능자에 대한 사유별 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수감명령사건/죄명별 접수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수감명령사건/성적불량자 조치(연령, 근거법률 기준)
 수감명령사건/구인·유치대상자 처리현황(연령, 근거법률 기준)
 수감명령사건/취소·변경자의 선고시간·집행시간 교차현황
 수감명령사건/수감명령협력기관현황
 수감명령사건/수감명령자체·협력집행현황
 수감명령사건/집행유예자에 대한 처분내용별 현황
 수감명령사건/수감명령 수료자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현황
보호관찰통계, 《보호관찰통계연보(2004)》, (2004), 법무부

사생활의 자유

<p>통신감청 / 총괄현황 통신감청 / 기관별 통신감청 / 통신수단별 통신감청 / 문서대비 전화번호 건 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 총괄현황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 기관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 통신수단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 문서대비 전화번호건 수</p>	<p>통신자료 제공 / 총괄현황 통신자료 제공 / 기관별 통신자료 제공 /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 문서대비 전화번호 건 수 기타사항/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제공현황 기타사항/압수수색 절차에 의한 통신내용 제출 현황 통계보고 대상사업자 현황</p>
--	--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통계 현황(인권관련임의/, 정보통신부 보도 자료(2005년 9월 9일), 정보통신부

학력별 현황
징병신체검사통계, 《병무연감》, (2004), 병무청

거주 이전의 자유

시·도별 인구구성 및 인구밀도
 국내인구 이동률
 출입국 현황
 해외이주 신고자★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도로연장 및 도로포장률
 통근 및 통학 이용교통수단 분포
 교통문제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총조사인구(2000) > 인구이동(10% 표본) > 출생지 및 1년전 거주지
 현거주지/성/연령/출생지 종류별 인구
 현거주지/성/출생지별 인구
 현거주지/성/연령/출생지별 인구
 현거주지/성/연령/1년전 거주지 종류별 인구(1세 이상)
 현거주지/성/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세 이상)
 현거주지/성/연령/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세 이상)
 현거주지/성/교육정도/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6세이상)
 현거주지/성/연령, 혼인상태/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현거주지/성/경제활동상태/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현거주지/성/산업/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현거주지/성/직업/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현거주지/성/세대구성/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세 이상)
 현거주지/점유형태/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세 이상)
 현거주지/성/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1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총조사인구(2000) > 인구이동(10% 표본) > 5년전 거주지 및 북한출생
 현거주지/성/연령/5년전 거주지 종류별 인구(5세 이상)
 현거주지/성/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5세 이상)
 현거주지/성/연령/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5세 이상)
 현거주지/성/교육정도/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6세이상)
 현거주지/성/연령, 혼인상태/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현거주지/성/경제활동상태/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현거주지/성/산업/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현거주지/성/직업/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현거주지/성/세대구성/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5세 이상)
 현거주지/점유형태/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5세 이상)
 현거주지/성/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행정구역(구시군)별 북한출생 인구 및 가구, 주택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북한출생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연령/교육정도별 북한출생 인구
 행정구역(시도)/가구주와의 관계/성/혼인상태별 북한출생 인구

인구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통계청

2000~3년 연평균 국제이동률
추계인구, 《장래인구추계》, (2001), 통계청

시도 및 성별 인구이동☆	시도별 순이동이 많은 시군구
성 및 연령 계층별 인구이동	시도별 인구이동 추이
전입지 및 전출지별 시도간 인구이동	수도권 인구이동 추이
전입지 및 전출지별 시도간 순이동	인구이동 추이
시도 및 연령계층별 순이동	

인구이동통계, 《인구이동통계연보》, (2005), 통계청

성/연령별(내, 외국인)	성/연령별(외국인)
성/출국국가별(내국인)☆	성/국적별(외국인)
성/연령별(내국인)	국적/체류자격별(외국인)
출국국가/목적별(내국인)	

국제인구이동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2004), 통계청

시도별 인구★	시도별 인구증가율
시도별 연구계층별 인구	시도별 인구지수

시도별 추계인구, 《시도별장래인구추계》, (2002), 통계청

체류외국인(2002/12/31)	국내거소현황	연도별 출입국자현황
외국적동포		출국목적별 국민출국현황
(1999.12.3~2002.12.31)		행선지별 국민출국현황
불법체류자(총 155개국)		입국목적별 외국인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국적목적별 외국인입국현황

체류외국인통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4), 법무부

출입국자 현황	외국인입국자현황/체류자격별 입국자
국민출국자현황/여행목적별 현황	2004년 월별 출입국자 추이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구별 출국자	최근 5년간 국민출국자 및 외국인 입국자 수 추이 비교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 입국자	

출입국자통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4), 법무부

노선별 연도별 고속버스 수송
고속버스수송실적,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자동차 면허·등록 대수
자동차면허상황,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여객수송(국내/국제)	항공노선 현황(국제선/지역별 취항현황)
화물수송(국내/국제)	항공기 현황(항공기 보유현황, 항공사업체 현황, 항공사고현황)
국내선 운항 실적(정기/부정기)	국내공항시설 현황/공항시설 현황
국제선 운항 실적(정기/부정기)	국내공항시설 현황/공항별 시설규모
항공노선 현황(국내선)	
항공노선 현황(국제선/총괄)	

월간 민간항공운동 통계,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도로별 평균교통량과 구성비
 연도별 분포현황(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노선별 평균교통량(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도로교통량통계,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선박입항(톤급)
입항선박톤급별통계,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 (2005), 해양수산부

여객선수송(여객·화물)	낙도보조항로(총괄)
여객선수송(연인km, 연톤km)	낙도보조항로(항로)
여객선항로현황(정기)	

내항여객선수송실적,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 (2005), 해양수산부

항만시설현황 | 항만하역능력 현황

항만시설및능력현황,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 (2005), 해양수산부

운수성적일보, 철도통계연보, 한국철도공사

아동의 권리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수
-----------------------------	----------------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청소년인구

추계인구, 《장래인구추계》,(2001), 통계청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소년수형자 죄명·형기별 인원

재소자수용 -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 교정자료실 통계자료, 2002,

학생표본 신체(체격) 검사 현황(2004년도)

도)

시도별 학생표본 신체(키)검사 현황(2004년도)

체력검사현황(2004년도)

시도별 학생표본 신체(몸무게)검사 현황(2004년

학생신체검사전례보고, 《2005년 교육통계연보》,(2005), 교육인적자원부

아동건강 부문 - 신체, 발달장애, 의료이용, 입원, 외래이용, 응급실이용, 병력(1년), 병력(2주), 활동 제한, 건강수준, 치과이용, 한방이용, 예방서비스이용, 교통안전, 구강보건, 식이, 체중조절, 일상활동 등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설립구분별, 시도별(1999년 이후)

아동복지 수용시설수 및 수용현황-시도별(1999년 이후)

아동전담시설 설치 현황-시도별(1999년 이후)(장애아 전담시설별, 영아 전담시설별, 방과후 보육 전담시설별)

육아시설수 및 수용현황-시도별(1999년 이후)

일시보호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시도별(1999년 이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중사자현황,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보건복지부

아동상담소수 및 상담실적(공립·사립, 성별, 발생유형별, 발생배경별)☆

아동상담소 아동상담내용(비행·부랑아 선도, 성격이상 심리검사, 미아선도, 미혼모상담, 이성, 성문제, 진로취업, 생계곤란 보호요구, 기타)

아동상담소 상담아동 발생배경(결혼가정, 결합가정, 영세가정, 일반가정, 복합상태가정)

아동상담소 상담아동 발생유형(비행·부랑아, 기아, 학대·방치아, 미아, 일반아동, 기타)

아동상담소 상담아동 조치내용(귀가·연고자인계, 시설보호의뢰, 취업·후원자 연계, 가정위탁 보호, 일시적 귀가조치)

아동상담 고민사항-시도별(1999년 이후)

아동상담현황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계, 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비행·가출·부랑, 빈곤·실직·학대 등 기타)

보호내용/시설보호(아동시설, 장애아시설, 미혼모시설)

보호내용/가정보호(소년소녀가정정책, 입양, 위탁보호)

요보호아동현황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소년범죄 발생상황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주요 죄명별 소년 및 전체 범죄자☆

소년범죄자 처분결과

소년범죄자 범행동기

여성소년범죄자 처분결과

소년범죄자 연령별 및 주요 죄명별

학교폭력 처분결과

소년범죄자 부모관계

소년범죄자(직업, 전과, 전회처분 상황, 보호처분 상황, 재범기간 및 종류, 공범관계, 범행동기, 교육 정도, 생활정도, 부모관계, 범행동기와 부모관계, 소년·소녀 처분결과)

학생범죄자(연령, 전과, 전회처분 상황, 보호처분 상황, 재범기간 및 종류, 공범관계, 범행동기, 생활 정도, 부모관계, 처분결과)

범죄분석통계, 《범죄분석》,(2005), 대검찰청

보호소년 행위원인별 인원

소년보호사건 접수처리·미제별 누년비교표

보호소년 교육정도별 인원

소년보호사건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

보호소년 직업별 인원

소년보호사건 접수구분별/처분별 누년비교표

보호소년 가족관계별 및 주거형태별 인원

보호소년 연령별 누년비교표

소년보호(재)항고 신청사건 내역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20세미만자 재판 인원

수표
 소년보호사건 인원수표
 소년보호 임시조치(가위탁결정) 및 처리 인원수
 표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
 보호소년 신상 및 환경표
 소년보호 신청사건표
 소년보호 항고·재항고 사건표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재산소유권

2004년 지방세 단체별·세목별 규모
 지방세 신장추세
 연도별 지방세 징수실적

조세부담률 현황/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 현황/연도별 조세부담률

지방세표작성보고, 《2005 행정자치통계연보》, (2005), 행정자치부

2004년 경지면적 총괄
 경지증감 사유별 면적
 시·도별 경지면적(2004)

최근 10년간 경지면적 추이
 연도별 경지면적

경지면적조사, 《경지면적통계》, (2004), 농림부

자동차 통계표
 관용차 차종별 등록현황
 자가용 차종별 등록현황
 영업용 차종별 등록현황
 차종별 유형별 등록현황
 연료별 차종별 용도별 등록현황
 최대적재량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승용차의 배기량별 등록현황

차령별 차종별 용도별 등록현황
 승합 정원별 등록현황
 차종별 규모별 등록현황
 자가용 자동차 증가추세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신규등록현황(당월계, 누계)
 변경등록현황(당월계, 누계)
 이전등록현황(당월계, 누계)

자동차 등록 현황,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구역지정 현황총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허가구역 지정일람
 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대상지역 지정내역
 토지거래 허가 처리현황

토지거래현황,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연도별 산림기본통계(임야면적, 행정구역별,
 지역별 산림기본통계(연도별, 임야별, 행정구역
 별)
 연도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2004년 시·도별, 소유별 산림현황/산림면적

2004년 시·도별, 소유별 산림현황/임목축적
 행정구역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증감내역
 관리기관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증감내역
 연도별 산림면적 증감내역
 주요요인별 산림면적 증감내역

산림기본통계, 《임업통계연보》, (2004), 산림청

감치 과태료사건 접수 처리 - 전심급
 강제경매사건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사건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
 경매사건 종류별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총
 괄표/부동산/자동차건설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 누년비
 교표 - 법원별 접수
 제1심 가압류·가처분사건 누년비교표- 법원별
 접수

국가사건표 제1심(법원별/처리내역별)· 항소심
 (법원별/처리내역별)· 상고심
 벌과금액표 - 제1심/과형별
 벌과금액표 - 제1심/사건별
 벌과금액표 - 항소심
 벌과금액표 - 상고심
 감치·과태료사건 인원수표 - 제1심
 감치·과태료사건 인원수표 - 항소심
 감치·과태료사건 인원수표 - 상고심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사상 · 양심 · 종교의 자유

종교활동 참여인구☆

종교활동 참여도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참정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투표율

여성공무원 비율☆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민원서비스 만족도

총공무원수,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민원서비스 불만이유(복수응답)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문화정책에 문화예술인의 의사반영 만족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4), 문화관광부

성별 유권자 수 및 투표율

한국여성개발원, 《2004여성통계연보》, (2004); <대통령선거총람><국회의원선거총람>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 수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국회의원선거총람><시·도의회의원선거총람><시·군·구의회의원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각 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한국여성개발원 2004

시도별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여성단체 총괄표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여성단체현황'(2004)

선거소송사건 누년비교표 - 접수

선거재항고·신청사건표

선거소송사건 건수표 - 대법원단심/제1심/상고

제1심 선거신청사건표

심/

제1심 선거소송사건 종류별 건수표-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의 장)/지방의회 의원 기타(교육자치단체의 장 포함)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심판사건총괄표

헌법재판통계, 《헌법재판소공보 제108호》(2005년 10월),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누계표

헌법재판통계, 《헌법재판소공보 제108호》(2005년 10월), 헌법재판소

사회보장권

노후준비방법☆

건강보험부담액 및 건강보험급여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공적연금 수혜자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

공적연금 평균 급여비

국민연금 급여종류별·성별 수급자 현황	노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복지시설 수용자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3)☆	최저생계비
사회복지시설별 시설수, 평균수용인원 및 평균 종사자☆	정부세출의 기능별 구성
일반수급 및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액	국민 1인당 및 GDP대비 기능별 세출
	지방재정자립도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입소사유별 2005년도 1사분기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 현황
 성별 2005년도 1사분기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 현황
 상태별 입소자현황 2005년도 1사분기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 현황
 2005년도 1사분기(정신질환자시설)종사자 현황

정신질환자 시설수용자 및 종사자현황 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서비스별, 직종별, 장애인종사자현황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생활시설수 및 입소현황 - 시도별	퇴소조치결과
장애인복지 시설수 및 생활인원-시설종류별, 시도별	종사자현황

장애인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현황 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모자보호 생활시설수 및 생활현황 - 시도별	아동 부랑인 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 시도별
부랑인 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 - 시도별	입·퇴소인원
성인 부랑인 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 현황- 시도별	

부녀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현황 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2005년 상반기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현황(사유별 입소자·퇴소자현황, 상태별 입소자현황)
 직종별 종사자현황
 부랑인복지시설수 - 시도별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현황,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집행실적(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포함) - 시도별 ☆
 거택보호, 시설보호 등의 가구수 및 가구원수 현황
 생업자금 융자건수 및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현황,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수급자현황 - 수급자 종류별, 시도별
 수급자의 특례현황 - 특례유형별, 시도별
 일반수급자 연령별·종류별 현황(시도별), 취업현황
 일반수급가구 - 가구원수별 현황, 세대구분(가구유형별·가구구성별·시도별현황, 보장기간별·시도별·가구원수별현황), 세대구분별 소득현황(1·2·3·4·5·6·7인이상가구), 재산현황(가구원수별·시도별·1·2·3·4·5·6·7인이상가구), 소득인정액(평균)현황(가구원수별·시도별)
 주거유형별 현황 - 시도별, 가구원수별, 세대구분별
 자가주택 건축상태 - 시도별, 가구원수별, 세대구분별
 부양의무자현황
 부양불능, 부양거부기피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총괄표(시설수·입소인원·종사자수) 및 시도별 현황 ★
 노인여가복지시설 총괄표 및 시도별 현황
 재가노인복지시설 총괄표(시설수·입소인원·종사자수) 및 시도별 현황 ☆

실비양로시설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유료양로시설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무료전문요양시설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실비노인요양시설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유료전문요양시설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휴양소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주간보호시설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실비주간보호시설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단기보호시설 - 시도별(시설수·이용정원, 설립주체, 종사자수 등)

노인복지사업현황 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추이
 산업별 규모별 사업장 현황
 지역별 건설공사금액별 사업장 현황
 산업별 지역별 사업장 현황
 산업별 사업장 성립·소멸 현황
 관서별 사업장 성립·소멸 현황
 규모별 사업장 성립·소멸 현황
 산업별 규모별 성별 피보험자 현황☆
 지역별 건설공사금액별 성별 피보험자 현황
 산업별 지역별 성별 피보험자 현황
 직종별 학력별 성별 피보험자 현황
 학력별 성별 피보험자 현황☆
 산업별 성별 피보험자 취득·상실 현황
 관서별 성별 피보험자 취득·상실 현황
 규모별 성별 피보험자 취득·상실 현황
 직종별 성별 피보험자 취득·상실 현황
 연령별 근속년수별 피보험자격상실사유 현황
 산업별 성별 피보험자격상실사유 현황
 연령별 성별 피보험자격상실사유 현황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인정자 및 실업급여지급 추이
 산업별 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현황
 산업별 실업급여기초임금액별 수급자격자 현황

이직전 사업체규모 및 이직사유별 수급자격자 현황
 산업별 실업급여지급 현황
 규모별 실업급여지급 현황
 고용안정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금 추이
 기업구분별 고용안정사업 현황
 산업별 기업구분별 고용안정사업 현황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현황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추이
 기업구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산업별 기업구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모성보호급여 지원 추이
 산업별 규모별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 및 수급금액 현황☆
 산업별 통상임금별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 및 수급금액 현황
 산업별 규모별 육아휴직급여(신규) 수급자수 및 수급금액현황☆
 규모별 직종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급금액 및 평균휴직기간 현황☆
 산업간 피보험자 이동 현황
 지역간 피보험자 이동 현황
 직종간 피보험자 이동 현황

고용보험통계, 《고용보험 통계월보》, (2005년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도별 보험자수 현황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시도별 연령별 성별 적용인구 현황(의료보장)
 시도별 연령별 성별 적용인구 현황(건강보험)☆
 시도별 연령별 성별 적용인구 현황(직장)
 시도별 연령별 성별 적용인구 현황(근로자)
 시도별 연령별 성별 적용인구 현황(공교)
 시도별 연령별 성별 적용인구 현황(지역)
 시도별 연령별 성별 적용인구 현황(의료급여)
 월별 적용인구 현황
 시군구별 적용인구 현황
 가입자 및 피부양자, 사업장 월별 변동현황(직장)
 시도별 월별 세대주 및 가이자 변동현황(지역)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
 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시도별 요양기관 유형별 병상수
 요양기관 시도별 설립주체 현황
 인력종별 요양기관 유형별 인력 수
 전문과목 요양기관 유형별 전문의 수
 지역별 요양기관 유형별 의사 수
 지역별 의원급 표방과목별 요양기관 수
 지역별 요양기관 유형별 전문의 수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월별 시도별 보험료 현황(총계)
 월별 시도별 보험료 현황(직장)
 월별 시도별 보험료 현황(지역)
 표준보수월액 등급별가입자 및 보험료부담현황(직장)
 산정등급 점수별 보험료 부과 현황(지역)
 부과 요소별 등급별 점수 현황(지역)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 지표(총괄)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 지표(직장)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 지표(지역)
 연도별 보험급여실적
 시군구별 급여형태별 요양급여실적(총계)
 시도별 현금 급여실적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요양급여실적(총계)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요양급여실적(직장)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요양급여실적(지역)
 월별 급여 형태별 요양급여실적(총계)
 월별 급여 형태별 요양급여실적(직장)
 월별 급여 형태별 요양급여실적(지역)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총계)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직장)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지역)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의료기관 소개)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입원)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외래)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약국 소개)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처방 조제)
 연령별 성별 급여실적(직접 조제)
 연령별, 성별 요양기관종별 평균 수진횟수(총계)
 연령별, 성별 요양기관종별 평균 수진횟수(직장)
 연령별, 성별 요양기관종별 평균 수진횟수(지역)
 연령별 진료비 크기별 지급건수 및 진료비(입원)
 연령별 진료비 크기별 지급건수 및 진료비(외래)
 연령별 진료비 크기별 지급건수 및 진료비(약국 소개)
 연령별 진료비 크기별 지급건수 및 진료비(처방

조제)
 연령별 진료비 크기별 지급건수 및 진료비(직접 조제)
 의원급 표방과목별 급여실적(총계)
 의원급 표방과목별 급여실적(입원)
 의원급 표방과목별 급여실적(외래)
 요양기관 종별 진료형태별 진료비 심사현황
 처방전 발행기관 종별 처방조제 실적(약국)
 질병제비용 분류표
 21대 분류별 급여실적
 298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총계)
 298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입원)
 298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외래)
 298 질병분류별 월별 급여현황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계)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남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여자)
 질병 소분류별 입원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계)
 질병 소분류별 입원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남자)
 질병 소분류별 입원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여자)
 질병 소분류별 외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계)
 질병 소분류별 외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남자)
 질병 소분류별 외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여자)
 한방 12대 분류별 급여현황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한방)
 질병 소분류별 입원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계)
 질병 소분류별 외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계)
 증상 분류별 약국조제 실적
 분류별 다빈도 증상 약국 조제 실적

건강보험통계, 《건강보험통계연보》,(2003), 국민건강보험공단

응답자의 일반특성/ 전체 응답자의 지역별 일반 특성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소득계층별 가구형태·가구원수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소득계층별 주거실태·의료이용 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소득계층별·가구규모별 가구총소득 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소득계층별·가구규모별 사회보험급여 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소득계층별·가구규모별 재산소득 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소득계층별 지출규모 및 지출초과 여부·소득증대시 지출희망항목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가구형태별 소득증대시 지출희망항목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소득계층별 자산·동산·부동산·금융재산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소득계층별 부채원인·신용불량 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근로계약실태·임금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장실태·사회보험 가입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자영자의 근로·사업운영 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지난 1년간(2003. 9~2004. 10)실업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성별/연령별 실업기간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미취업자의 구직어려움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미취업자의 창업준비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소득계층별 구직시 고려사항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직업훈련 참여실태·창업지원서비스 이용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사회보험 가입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소득계층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수급실태
 근로빈곤층의 실태분석 /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의료급여수급실태·자활사업 참여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가구형태 및 가구규모(2002~2004)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주거실태(2002~2004)/가족문제(2003~2004)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가구총소득 실태/가구내 임금 및 사업소득 실태(2002~2004)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개인임금·지출규모소득증대시 지출 희망항목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자산·동산·부동산·금융재산실태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저축규모·저축실태·부채실태 표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2002~2004)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임금근로자의 직장·임금실태(2002~2004)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실업기간(2003~2004)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사회보험 가입실태(2002~2004)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실태(2003~2004)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의료급여 수급실태(2002~2004)
 근로빈곤층의 연도별 특성분석 / 자활사업 참여여부 및 참여분야(2002~2004)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변화양상 / 근로빈곤층의 성별·연령별·학력별 구성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변화양상 / 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위 결정요인에 관한 GEE분석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변화양상 / 각 집단 학력별·주거형태·거주지역·장애유무별 구성(n=626)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변화양상 / 각집단의 가구원수·취업가구원수·주당근로시간(n=626)
 근로빈곤층의 소득 및 자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 불평등지표
 근로빈곤층의 소득 및 자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 빈곤가구의 소득변화(f2_all기준)·자산변화(asset기준)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가구특성(2004년)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 /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 / 취업 및 실직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 / 구직상의 어려움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 /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태적 분석 /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근로빈곤층 국제비교 / 경찰빈곤층의 취업상태별 구성비 비교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분석 /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역별·연령별 분포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분석 / 자활조사 대상가구의 특성 변화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분석 / 패널화된 분석대상가구의 소득·자산·지출실태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분석 / 자활사업 참여자의 부채·구직어려움·직업기술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보고》,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계측표준가구
 최저생계비 계측1999년 지역별-비목별 표준가구(4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계측가구균등화를 이용한 지역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계측성인균등화지수(Adult Equivalence Scale)
 최저생계비 계측1999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품목수
 최저생계비 계측 가정식 식료품의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계측 주거비의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계측 광열-수도의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계측 가사집기-가사용품의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계측 피복 및 신발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계측 보건의료비의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계측 교육비의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계측 교양-오락비의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계측 교통-통신비의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계측 기타소비지출의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계측 비소비지출비의 마켓바스켓 구성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기존 공식적 최저생계비 연구와의 표본수 비교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2차 가구실태조사 요약(식료품비)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4인 가구의 가정식 비용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1998년 도시가계년보의 식료품비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주거시설 실태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주거점유형태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주택유형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난방, 취사의 실태조사결과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에너지센서스보고서(난방, 취사)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내구재 소유현황 및 필수품에 대한 인식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가구집기 보유비율(1990)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장수(4인가구)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보유 정장수(4인가구)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의류구입 빈도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학원이나 과외 필요성 및 실태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사교육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저소득층가구의 사교육 월지출액(초등학생 있는 가구만)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주된 교통수단 이용실태(1순위 기준)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주된 교통수단 이용실태(1-2순위의 가중치를 준 경우)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자가용(승용차)의 보유에 대한 인식과 보유현황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지역별 택시이용 회수 및 1회 평균비용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가입비율 및 월평균 이용요금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출근 및 통학 교통수단('95)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흡연인구 비율☆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흡연가구의 가구원 전체 담배소비량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전국 흡연인구 및 흡연량 비율(1995)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서울시 흡연인구 및 흡연량 비율(1997)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현황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사회보험료 납부율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지역별 가구주의 주된 활동 구성형태
 최저생계비 실태조사결과/ 지역별 소득 40% 이하 가구주의 주된활동 구성형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별 공적연금제도 가입자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사학연금통계 등, 사학연금관리공단

공적연금제도 연금종류별 수급률 및 수급자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사학연금통계 등, 사학연금관리공단

표준보수(소득)월액 및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업 및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성 및 급여종류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에 대한 권리

일반가구수 및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경제활동상태 및 참가율☆
 임금근로자 비율☆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55세이상 취업자 비율
 산업별 55세이상 취업자 비율
 장기근속자 비율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여성취업 장애요인☆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구성비☆
 실업률
 교육정도별 실업률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입직률☆
 이직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월평균 근로일수
 노동생산성 지수

직종별 평균 임금격차☆	비☆
주당 근로시간☆	산업별 남녀 대표자별 사업체 비율★☆☆
직업선택요인☆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 지위 (2000)
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장애인등록률 및 의무고용준수율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장애인 취업자 및 취업희망 장애인 비율☆
산업별 실업급여 수혜자수	
성별 임금, 근속년수, 근로시간 격차 및 이직률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 행정구역(시도)/성/연령/경제활동상태별 인구☆
- 행정구역(시도)/성/연령/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직업(대분류)/산업(대분류)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연령/산업(대분류)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연령/직업(대분류)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연령, 혼인상태/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연령, 혼인상태/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연령, 혼인상태/산업(대분류)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연령, 혼인상태/직업(대분류)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교육정도/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교육정도/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교육정도/산업(대분류)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교육정도/직업(대분류)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세대구성/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경제활동상태/전공분야별 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산업(대분류)/전공분야별 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직업(대분류)/전공분야별 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산업(대분류)/근무년수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성/직업(대분류)/근무년수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산업(소분류)/성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직업(소분류)/성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성/산업(중분류)/직업(중분류)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산업(중분류)/성/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직업(중분류)/성/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산업(중분류)/성/연령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직업(중분류)/성/연령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성/연령/교육정도/전공분야별 인구☆
- 행정구역(시도)/산업(중분류)/성/교육정도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직업(중분류)/성/교육정도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산업(중분류)/성/전공분야별 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직업(중분류)/성/전공분야별 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산업(중분류)/성/근무년수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직업(중분류)/성/근무년수별 취업자
- 행정구역(시도)/연령/경제활동상태/전공분야별 여성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 혼인상태/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인구☆
- 행정구역(시도)/혼인상태/교육정도/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 혼인상태/직업별 취업여성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 혼인상태/산업별 취업여성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 혼인상태/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여성인구(1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세대구성/아동보육상태별 아동수
- 행정구역(시도)/모의 연령/경제활동상태/아동보육상태별 기혼여성
- 행정구역(시도)/성/직업/이용교통 수단별 통근인구(12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성/산업/이용교통 수단별 통근인구(12세 이상)
- 행정구역(구시군)/현거주지, 근무지/직업(대분류)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구시군)/현거주지, 근무지/산업(대분류)별 취업자(15세 이상)
- 행정구역/연령/성별 유출입인구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경제활동상태/성/연령별 고령자☆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경제활동상태/세대구성별 고령자(6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경제활동상태/세대구성별 고령자(60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산업,직업/성/종사상의 지위별 고령자(6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산업,직업/성/종사상의 지위별 고령자(60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생계수단별 고령자(6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생계수단별 고령자(60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연령/생계수단별 고령자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생계수단/주부양자별 고령자(65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생계수단/주부양자별 고령자(60세 이상)☆
-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직업/세대구성별 고령자

인구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통계청

- 종사자 5인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 본사명 및 소재지
- 경영조직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부지 및 건물 연면적
-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손익·내국소비세
-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유·무형자산
-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 주요 생산과정
- 연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재고액
- 연간 수원별 용수량
- 연간 에너지 사용량
- 환경오염방지시설 자산 연말잔액
- 종사자 4인이하 광업·제조업 사업체 : 조사표 (1-2)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부지 및 건물 연면적
- 연간 생산비
- 연간 제품출하액 내역
- 연간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유형자산
- 주요 원재료명 및 생산과정
- 광업·제조업 본사용(1-3)
- 기업체명 및 소재지
- 사업조직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광업·제조업 사업체(공장·광산) 소재지
- 경영조직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손익·내국소비세
-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유·무형자산

- 재고액
- 전기업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사업체구분
- 종사자수
- 연간 급여액
- 연간 주요전력량
- 연간 판매전력량 및 판매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연간 증기생산 및 판매
- 유형자산 연말잔액
- 가스업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종사자수
- 연간 급여액
- 배관시설
- 재고량 및 재고액
- 연간 생산량
- 연간 판매량
- 연간 판매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유형자산 연말잔액
- 증기 및 온수공급업
-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종사자수
- 연간 급여액
- 배관시설
- 연간 생산량
- 연간 판매량
- 연간 판매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유형자산 연말잔액
- 수도사업
- 수도사업 관할 기관
- 종사자수
- 연간 급여액
- 연간 공급량
- 연간 수입액
-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유형자산 연말잔액

산업총조사, 《산업총조사보고서》, (2004), 통계청

임가에 관한 사항 - 임가형태별

행정구역별

경영업종별	임산물 채취에 관한 사항
전·겸업별	임산물재배에 관한 사항
임가인구에 관한 사항 - 성명	야생조수 사육에 관한 사항
경영주와의 관계	휴양림 및 영림단 경영에 관한 사항
연령	임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 임산물 총판매액
성별	판매방법
교육정도	경영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연간 임업종사기간	가계소득 및 부채에 관한 사항 - 가계소득, 임
임업외 종사기간	업소득, 가계부채
전·겸업	고용인력에 관한 사항 - 고용인원
보유 산림면적 사항 - 본인소유, 임차한 인공림	고용기간
면적, 천연림면적	문화용품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임업 업종별 경영에 관한 사항-영림에 관한 사항	

임업총조사, 《임업총조사》, (2000), 통계청

어가사항	성별	주된어획어종
전·겸업별	교육정도	수산물사항 - 주된상품형태
어업형태별	어업종사기간	판매처
행정구역별	주종사분야	판매금액
어가인구사항 - 가구원	어로어업사항 - 어업별 어업종	보유어선 척수
관계	류	컴퓨터 보유 현황
연령	조업수역	주거 환경 등

어업총조사, 《어업총조사보고서》, (2002), 통계청

가구원사항 - 경영주와 관계	어업가구의 형태-자기어업 경영형태(어로,양식)
나이	어선보유 현황-어선명, 동력여부, 어선재질, 톤
성별	수(G/T)등
어업 종사기간 및 형태 등	양식장 면적 - 양식종류, 면적 등
어업가구의 성격 - 전·겸업 구분	정보화현황 - 컴퓨터보유여부
겸업가구의 주종사분야 등	어업관련 활용여부

어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4), 통계청

사업장 면적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전문직종사자
본·지사(점)	(공통)
월간 영업일수	부동산 임대연면적
사업내용	관리연면적(부동산임대, 중개, 관리업)
종사자수	임대건수(기계장비임대업)
월간총매출액(수입액)	주요 전산 장비현황(정보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보유차량수(운수업)	교육서비스업 - 월간 수강인원
화물 보관실적(창고업)	월평균 수강료(1인당)
시설수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월간이용인원
가입자수	시설명 및 시설현황
이용건수(통신업)	

서비스업동태조사, <서비스업 활동동향 보도자료>, (2005년 9월), 통계청

선행구성지표 : 건축허가면적	제조업가동률지수
건설용 중간재생산지수	제조업 전력사용량
기계수주액	생산자 출하지수
수출신용장내도액	도소매판매액지수
수출용 원자재수입액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
총유동성	시멘트소비량
내구소비재출하지수	수입액
재고순환지료	수출액
중간재출하지수	노동투입량
임-이직자수비율	후행구성지표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동행구성지표 - 산업생산지수	비농가실업률

상용근로자수
도시가계소비지출

기계류수입액
회사채 유통 수익률

경기종합지수, 《경기종합지수》, (2005.5), 통계청

성및농가·비농가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성및농가·비농가별 15세이상인구 취업자☆
성및농가·비농가별 15세이상인구 실업자☆
성및농가·비농가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성및농가·비농가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성및농가·비농가별 15세이상인구 실업률☆
성및농가·비농가별 15세이상인구 고용률
연령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15세이상인구 취업자☆
연령별 15세이상인구 실업자☆
연령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연령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 15세이상인구 실업률☆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취업자☆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실업자☆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실업률☆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취업자☆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실업자☆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실업률☆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고용률☆
연령/성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연령/성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연령/성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교육정도/성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교육정도/성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교육정도/성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행정구역(시도)/성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상 동 /성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상 동 /성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상 동 /연령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상 동 /연령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상 동 /연령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상 동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상 동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상 동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산업별/성별 취업자☆
직업별/성별 취업자☆
종사상지위별/성별 취업자
취업시간별 취업자☆
연령/성별 취업자☆
교육정도/성별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성별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취업자☆
행정구역(시도)/교육정도별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직업별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취업시간별 취업자

행정구역(시도)/성/연령별 취업자☆
성별 추가취업희망자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연령/성별 실업자 평균구직기간
교육정도/성별 실업자☆
연령/교육정도별 실업자☆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자☆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실업자☆
성별 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
연령별 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
교육정도별 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
연령/성별 실업률☆
교육정도/성별 실업률☆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률☆
연령/교육정도별 실업률☆
시도/연령별 실업률☆
활동상태/성별 비경제활동인구☆
행정구역(시도)/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성별 구직단념자 구직단념자☆
1주 기준 성및농가·비농가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상 동 /취업자
상 동 /실업자
상 동 /비경제활동인구
1주기준 성및농가·비농가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상 동 /실업률
상 동 /고용률
1주기준 연령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1주기준 연령별 15세이상인구 취업자
1주기준 연령별 15세이상인구 실업자
1주기준 연령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1주기준 연령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주기준 연령별 15세이상인구 실업률
1주기준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1주기준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취업자
1주기준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실업자
1주기준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1주기준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주기준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실업률
1주기준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1주기준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취업자
1주기준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실업자
1주기준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1주기준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주기준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실업률
1주기준 행정구역(시도)별 15세이상인구 고용률
1주기준 연령/성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1주기준 연령/성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1주기준 연령/성별 15세이상인구경제활동참가율
 1주기준 교육정도/성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
 인구
 상 동 /성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상 동 /성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1주기준 행정구역(시도)/성별 15세이상 인구 경
 제활동인구
 상 동 /성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상 동 /성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상 동 /연령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상 동 /연령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상 동 /연령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상 동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상 동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상 동 /교육정도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 통계청

일계부
 작물재배현황
 도정량
 수입·지출
 농업노동투입내역

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
 자가농업생산물 중 자가소비량
 농가원부 - 가구원현황
 농가자산
 농가부채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통계》, (2005), 통계청

농가 - 경지규모별, 영농형태별, 전·겸업별 농가수,
 농가인구 - 성별, 연령, 농사종사기간별, 농외 종사기간별, 주종사 분야별 농가인구
 농축산물 판매현황, 정보화현황

농업기본통계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4)·통계바다 STAT-KOREA, 통계청

가구 - 전·겸업형태별, 영농형태
 가구원-성별, 연령별, 경영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영농승계자, 경영주농사경력기간, 농업종사기간, 주
 종사분야
 경지 - 논면적(이모작논, 경지정리된 논, 수리불안정 논), 밭면적, 과수원 면적, 목초지 면적
 작물 - 노지작물 수확면적 및 판매여부, 시설면적, 시설작물 수확면적, 시·군지역작물 수확면적 및
 판매여부
 가축 - 축종별 사육마리수
 농기계 - 동력 농기계별 보유대수, 논벼 영농방법 및 위탁여부
 농축산물 판매 - 농축산물 판매금액 및 주 판매처
 친환경 농업관련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작물별 수확면적 및 재배방법, 친환경농산물의 주 판매처
 정보화 사항 - 컴퓨터보유 및 농업에 활용여부, 주된 사용용도, 인터넷사용여부, 홈페이지개설여부
 주거 및 생활환경 - 거처형태 및 신축년도, 부업·화장실·상수도시설, 난방연료, 차량보유여부
 기타 - 향후 영농규모, 생산자조직 참여현황

농업총조사, 《농업총조사》, 통계정보시스템 KOSIS, 통계청

도소매업·음식숙박업·서비스업 사업체의 사업체명 및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창설년월 및 사
 업기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사업장면적, 객석수 또는 객실수, 사업경비, 연
 간 총매출(수입)액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및서비스업 총조사보고서》, 통계정보시스템 KOSIS, 통계청

생산가능인구
 중위연령★

연령계급 및 성별 추계인구(2000~2050년)☆★

추계인구, 《장래인구추계》, (2001), 통계청

사업체개요
 대표자현황
 업종별 재무정보/형태구분
 업종별 재무정보/해당사업업종
 업종별 재무정보/해당사업영위 업종별 매출실적
 고용현황/해당사업비용
 고용현황/형태별, 성별 종사자수
 고용현황/학력별, 연령별 종사자수
 고용현황/직무별 종사자수
 고용현황/제작과정별 참여인력 수

해외진출현황/국가별, 거래형태별 해외수출액/
 수입액
 해외진출현황/해외진출형태 및 경로
 해외진출현황/해외 투자현황
 해외진출현황/해외투자 유치현황
 해외진출현황/해외 프로젝트 공동제작 최우선
 사유
 저작권현황/국내외 지적재산권 보유등록현황
 저작권현황/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여부, 저작권
 분쟁사례

정부지원정책/정부지원 현황 | 정부지원정책/정부지원 희망분야

문화산업통계, 《2004 문화산업통계》,(2005),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의 정규직업 소유현황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4), 문화관광부

가축사육 및 구입에 관한 일반사항

가축사육에 투입되는 경영비(사료비, 방역치료비 등), 사료작물 생산 및 노동력투입, 토지, 건물, 대농구의 자본평가액 및 감가상각비

축산물생산비조사, 《축산물생산비》,(2004), 농림부

임지농지현황

임차농지소유자의 작업별 면적

임차농가현황

임차농지의 소유자와의 관계별면적

임차농지의 소유자별 면적

연간 임차료 및 임차료 지불형태 등

비농가의 임대사유별 면적

농지임대차조사, 농업통계정보, 농림부

품목별 - 생산량, 가격, 생산액, 생산지수

농림업생산지수, 《2004 농림통계연보》,(2004), 농림부

건물임대형태

월평균매출액

물품대금결제수단

1일평균 고객수 등

운송수단

중소유통업실태조사, 《전국중소유통업 총람》,(2003), 산업자원부

무연탄(분탄) 수급

국내 탄광현황-생산규모,사업별

유연탄 수입

무연탄(분탄)소비-계절별, 시도별

광업소별 무연탄 생산

전국 연탄 공장 현황

무연탄 수입

모광, 조광별 생산실적

연탄가격

연도별 저탄 현황

연도별인원 및 생산성(O.M.S)

탄광 재해 현황

무연탄 소비

현황

일반광 재해 현황

탄전별 무연탄 매장량

유연탄 수급

민수용탄및연탄수급상황보고, 《2004 에너지통계연보》,(2004), 산업자원부

농공단지편의시설현황

폐수처리시설

고용현황

입주심사

농공단지(단지명) 지역별 - 지정년월일, 면적, 입주현황, 부지조성소요기간

농공단지경영현황, 《2004 에너지통계연보》,(2004), 산업자원부

광산 재해 현황 - 연도별

광산재해유형(붕괴, 낙반, 가스, 출수, 화약 등)별 발생건수

광산재해통계, 《2004 산업자원백서》,(2004), 산업자원부

광산물 수급 현황

광산 및 광산물별 생산량, 조업상황 등

광산물생산량조사, 《2004 에너지통계연보》,(2004), 산업자원부

200대기업 업종별 조사결과표(전년동기대비)

실적 및 전망별 국내 설비투자 총규모

투자동기별(국내), 자원별(국외), 주요 프로젝트별 투자동향(국내)

국내설비투자 관련 기업 애로요인

200대주요기업설비투자계획조사, <200대기업설비투자계획조사결과 보도자료(2004.12.)>, 산업자원부

재가 취업장애인 경제활동분야

활동제약자실태조사,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요약)(2000), 보건복지부

산업(중분류)별·노동비용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2003)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4년판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2004), 노동부

산업(중·소분류)별·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상의 지위별·성별 종사자수

시·도별 산업(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2.12.31)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04 노동통계연감》,(2005), 노동부

산업(소분류)별·직종(주요대분류)별 현원, 부족인원 및 부족률(2003)

직종(세분류)별·사업체규모별 현원, 부족인원 및 부족률(2003)

노동력수요동향조사, 《2004 노동통계연감》,(2005). 노동부

우편이용 성향 및 이용자여론조사

접수우편물 이용실태

통상우편 이용실태

소포우편물의 중량별 접수개수

우편총조사, 통계정보시스템 KOSIS, (2001), 정보통신부

화물수송(총괄)

수출입화물수송(지역)

화물수송(항·품목)

화물수송(연안여객선)

화물수송실적,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2005), 해양수산부

천해양식어업 어종별·연도별 어업권현황

천해양식어업 시도별·연도별 어업권현황

천해양식어업권통계,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2005), 해양수산부

경영자정보

경영정보

정부지원시책 및 외부자원활용

창업정보

조직정보

재무정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백서》,(2005), 중소기업청

업체현황

매출실적증감여부

경기체감현황

자금사정현황

예상경기현황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소상공인에 대한 동향조사, 소상공인에 대한 동향조사 보도자료(2005.11), (2005), 중소기업청

업체개요

설비투자

고용

공장

판매

정보화

원부자재

수위탁거래

재무제표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2004), 중소기업청

인력현황

주5일근무제 현황 및 대책

인력부족현황 및 대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특별분양 관련 현황

교육훈련현황

정부의 인력정책 활용 및 효과 등의 현황

외국인근로자현황★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2004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2004), 중소기업청

장애인고용/ 직종별

장애인고용/ 등급별

장애인고용/ 학력별

장애인고용/ 중증 장애인별

장애인고용/ 연령별

장애인고용/ 기능별

장애인고용/ 산업별

장애인고용/ 규모별

장애인고용/ 임금별

장애인고용/ 지역별

장애인고용/ 유형별

장애인고용동향, <2005년 2/4분기 장애인고용동향>, (2005년 9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구인·구직 및 취업통계 : 전체 ☆

기관별 구인·구직 및 취업통계

시도별 취업알선통계
구인이 많은 직종과 평균제시임금

구직이 많은 직종과 평균제시임금

구인구직및취업동향,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2005년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결과보고서》, (2004),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 《국가기술자격검정자격통계연보》, (2004), 한국산업인력공단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2005년도 취업통계자료집》, (2005),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6차 [2003]년도 한국 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05), 한국노동연구원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내부자료」(1999-2000), 교육인적자원부

산업 및 사업체 남녀 대표자별 사업체 분포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성별 언론종사자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한국신문방송연감> 언론재단

산업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고용보험통계연보》, 중앙고용정보원

직업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고용보험통계연보》, 중앙고용정보원

도산관련 및 제1심 민사신청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적정 보수에 대한 권리

전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서울 전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서울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가구구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가구의 소비지출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근로자가구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월평균 가계수지

사무직 가구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

계수지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 가계수지

근로자 가구 입주형태, 가구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근로자 가구의 산업 및 직업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가구주 교육정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주요 항목별 표본 오차

가계조사, 《가계조사연보》, (2004). 통계정보시스템 KOSIS, 통계청

GNI, GDP 및 1인당 GNI

국민처분가능소득 및 개인처분가능소득

월소득 계층별 가구분포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구분 및 연간경상소득계층별

가구분포(2000)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연간경상소득

농가 월평균 소득 및 소비지출

지역내 총생산 및 생산구조★

총저축률 및 총투자율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성향 및 흑자율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원천별 구성

저축용도

부채사유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 노동소득 분배율,

조세부담률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

소득만족도☆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및 수출입물가지수

건축소비지출 - 우선적으로 줄일 항목(1999)

교육정도별 월평균 임금수준☆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비율

산업별 평균 임금격차☆

직종별 월평균 임금수준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지출 - 10대 지출비목, 타가구 생활보조금, 각종 세금납부액
저축·부채 - 저축항목별 적립 등, 차입방법별 부채 ★
소득 - 근로 및 사업, 부업, 재산, 이전 소득 등
가계지출 - 품명, 금액
연간소득 - 가구원별/가구당 소득종류에 따른 연간소득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결과>, 통계청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 경제활동 부문별 지역내총생산 및 요소소득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민간소비지출(가계의 목적별,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정부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자본재 형태별 총자본형성
시·도별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재화와 서비스의 이출·입

지역소득통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통계정보시스템 KOSIS, 통계청

경기관련 - 6개월전·후의 경기상태
소비지출에 관한 사항 - 6개월후의 소비지출, 내구소비재 구입시기, 외식·여가문화생활과 관련된 소비지출
경제인식에 관한 사항 - 6개월 후의 취업기회, 물가오름폭

소비자전망조사, <소비자전망조사보도자료>, (2005년8월)·통계바다 STAT-KOREA, 통계청

516개 품목의 가격 및 요금, 집세(전세, 월세) 등 - 기본분류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별지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연쇄지수)

소비자물가지조사, <물가연보>, (2004)·통계바다 STAT-KOREA, 통계청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수입 |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지출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2004), 문화관광부

재가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요약)(2000), 보건복지부

직종별 근로시간, 월급여액 및 학력별 근로자구성비☆ | 산업별 근로시간, 월급여액 및 학력별 근로자구성비☆
직종별·경력년수별 월급여액 및 월급여액수준 | 학력별, 연령계층별 월급여액 수준
직종별, 연령계층별 월급여액 및 월급여액수준 | 임금계층별·성별 근로자 구성비 추이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03), 노동부

임금동향/내역별 임금수준 및 추이 | 임금동향/사업체규모별 월평균임금 수준 및 추이
임금동향/산업별 월평균임금 수준 및 추이★

매월노동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분석자료(2005.8)>, (2005), 노동부

직종별, 규모별 월급여격차★ | 학력별, 경력년수별 월급여격차☆
임금계층별, 성별 근로자 분포☆ | 직종별, 경력년수별 월급여격차☆
연도별, 학력별 월급여격차 | 연령계층별, 성별 월급여격차☆
산업별, 학력별 임금격차★☆

직종별, 성별 근속년수,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평균급여액 및 연간특별급여액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4), 노동부

산업(중분류)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복리비(2003)
산업(중분류)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리비(2003)
1998년 이후 규모별 노동비용(91년산업분류, 10인이상)
1998년 이후 규모별 법정복리비 및 구성비(91년산업분류, 10인이상)
1998년 이후 규모별 법정외복리비(91년산업분류, 10인이상)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04년판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2004), 노동부

농가판매가격지수/곡물 | 농가판매가격지수/청과물, 축산물, 기타농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곡물제외, 채소제외, 축산물제외
 농가구입가격지수/가계용품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용품

농가구입가격지수/농촌임료금
 농업노동임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농협조사월보》, (2005년 9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일반사항/경영조직 (년 :1995~1999)
- 일반사항/노동조합 결성유무 (년 :1995~2001)
- 임금현황/ 근로자1인당 임금내역별 지급현황-전체 (년 :1995~2001)
- 임금현황/ 근로자1인당 임금내역별 지급현황- 사무직 (년 :1995~2000)
- 임금현황/ 근로자1인당 임금내역별 지급현황- 생산직 (년 :1995~2000)
- 근로자1인당 임금내역별 구성비 - 전체 (년 :1995~2001)
- 근로자1인당 임금내역별 구성비 - 사무직 (년 :1995~2000)
- 근로자1인당 임금내역별 구성비 - 생산직 (년 :1995~2000)
- 임금지급 형태 - 사무직 (년 :1995~2000)
- 임금지급 형태 - 생산직 (년 :1995~2001)
- 상여금/ 상여금지급 현황 (년 :1995~2001)
- 상여금/ 상여금지급 기준 (년 :1995~2001)
- 상여금/ 기본급기준 상여금지급률 (년 :1998~2001)
- 상여금/ 지급기준별 상여금지급률 (년 :1995~2001)
- 임금조정/임금조정의 주요내용 - 가중누계 (년 :1998~2001)
- 임금조정/임금조정의 주요내용 -1 순위 (년 :1998~2001)
- 임금조정/임금조정의 주요내용 -2 순위 (년 :1998~2001)
- 임금조정/임금조정의 주요내용 -3 순위 (년 :1998~2001)
- 임금조정/임금 조정요인 -가중누계 (년 :1999~2001)
- 임금조정/임금 조정요인 -1 순위 (년 :1999~2001)
- 임금조정/임금 조정요인 -2 순위 (년 :1999~2000)
- 임금조정/임금 조정요인 -3 순위 (년 :1999~2000)
- 임금조정/ 임금조정 내역 (년 :1998~2001)
- 임금조정/ 임금 조정을 (년 :1995~2001)
- 임금결정/ 임금결정방식 (년 :1995~2001)
- 임금결정/ 임금결정시 노사간 최초제시율 및 최종타결률 (년 :1995~2000)
- 임금결정/ 임금교섭 평균횟수 (년 :1995~2000)
- 연봉제/ 연봉제 실시목적 - 가중누계 (년 :1998~2001)
- 연봉제/ 연봉제 실시목적 -1 순위 (년 :1998~2001)
- 연봉제/ 연봉제 실시목적 -2 순위 (년 :1998~2001)
- 연봉제/ 연봉제 실시목적 -3 순위 (년 :1998~2001)
- 연봉제/ 성과배분제 현황 (년 :1998~1999)
- 연봉제/ 성과배분제 실시(예정포함)시기 (년 :1998~1999)
- 연봉제/ 연봉제 현황 (년 :1998~2001)
- 연봉제/ 연봉제의 임금지급 방법 (년 :1998~2001)
- 연봉제/ 연봉제 실시(예정포함)시기 (년 :1998~2000)
- 연봉제/ 연봉제 적용대상(복수응답) (년 :1998~2000)
- 복리후생/ 복리후생 시설보유 현황(복수응답) (년 :1995~2001)
- 복리후생/ 복리후생적 수당 등 지급현황(복수응답) (년 :1995 ~2001)
- 복리후생/ 제조부문 임금(일급) (년 :1995~2004)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중소제조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통계DB(~200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평균임금현황/전체직종
 평균임금현황/일반공사 직종
 평균임금현황/광전자 직종
 평균임금현황/문화재 직종

평균임금현황/원자력 직종
 평균임금현황/기타 직종
 개별직종노임단가(146개 직종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2004년 상반기 적용), 대한건설협회

유리한 근로조건 향유권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건강진단 수검률 및 직업병 근로자 비율

산업재해도수율, 재해강도를 및 재해사망률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근로시간동향/근로일수 및 내역별 근로시간수
추이

근로시간동향/산업별 근로시간수 추이

근로시간동향/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수 추이
노동이동동향/월별 노동이동 현황

매월노동통계조사,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분석자료(2005.8)》, (2005), 노동부

산업(대분류)별·연도별 산재보험적용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지역별·산업(대분류)별 산재보험적용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2003)

연도별 산재보험료등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사업종류별보험적용징수상황보고, 《2004 노동통계연감》, (2005), 노동부

연도별·산업(대분류)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연도별·급여종류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연도별·산업(대분류)별 산재보험급여 지급 건수

연도별·급여종류별 산재보험급여 지급건수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상황보고, 《2004 노동통계연감》, (2005), 노동부

연도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건수(초심)

연도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건수(재심)

조정,심판사건 통계, 《2004 노동통계연감》, (2005), 노동부

성별 연령, 근속년수 및 학력별 근로자 구성비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03), 노동부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일반건강진단실시현황/건강진단실시사업장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일반건강진단실시현황/건강진단실시근로자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직업병요관찰자(C)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일반질병유소견자(D2)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실시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특수건강진단실시현황/직업병요관찰자(C)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특수건강진단실시현황/근로자특수건강진단실시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특수건강진단실시결과/일반질병요관찰자(C2)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특수건강진단실시결과/직업병요관찰자(C1) 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특수건강진단실시결과/일반질병유소견자(D2)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특수건강진단실시결과/직업병유소견자(D1)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진폐건강진단실시현황/건강진단실시사업장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진폐건강진단실시현황/건강진단실시근로자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진폐건강진단실시결과/일반질병유소견자(D2) 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진폐건강진단실시결과/직업병요관찰자(C1)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진폐건강진단실시결과/일반질병유소견자(D2) 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진폐건강진단실시결과/직업병유소견자(D1)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임시건강진단실시현황/건강진단실시사업장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임시건강진단실시현황/건강진단실시근로자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임시건강진단실시현황/일반질병유소견자(C2)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임시건강진단실시현황/직업병요관찰자(C1)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임시건강진단실시현황/일반질병유소견자(D2) 발생현황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임시건강진단실시현황/직업병유소견자(D1)발생현황

연도별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상황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상황, 《2004 노동통계연감》, (2005), 노동부

연도별 재해강도를 및 도수율

연도별·산업(대분류)별 재해건수 및 재해자수

- 산업재해조사, 《2004 노동통계연감》·<’05.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2005), 노동부
- 성별 산업재해자수 및 재해율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여성과취업>, (1999,2000), 노동부
- 모성보호휴가 실시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고용보험통계연보》, 중앙고용정보원
- 종업원 규모별 산전후휴가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고용보험통계연보》, 중앙고용정보원
- 산업재해원인조사, 《산업재해원인조사》·산업재해원인통계DB·안전보건DB(한국산업안전공단운영), 한국산업안전공단

노동조합의 권리

-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 | | |
|-----------------------------|---------------------------|
| 연도별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 2003년도 노동조합 조직현황/연도별 조직현황 |
| 2003년도 노동조합 조직현황/총괄 | 2003년도 노동조합 조직현황/지역별 조직현황 |
| 2003년도 노동조합 조직현황/연합단체별 조직현황 | 각국의 노조 조직을 |
-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2004 노동통계연감》, (2005), 노동부
- 연도별·산업(대분류)별 설치수 | 연도별 규모별 설치수
- 노사협의회설치현황, 《2004 노동통계연감》, (2005), 노동부
- 산별 및 성별 조합원수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 노동부 노사정책실 자료(2004)

가족형성권

- | | |
|---------------------------------|-------------------------|
| 인구성장의 구성요인 | 조혼인율, 조이혼율 및 재혼건수☆ |
| 연령별 인구 | 연령별 여성 이혼율☆ |
| 지역별 출생 성비 | 사유별 이혼 구성비 |
|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비(15세이상)☆ |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 |
| 지역별 및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 유배우 부인의 특성별 첫 자녀 출산연령☆ |
| 지역 및 연령 집단별 성비 |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
| 유배우 부인당 평균출생아수 | 편부모 가구 비율 |
| 가족계획실천율 | 결혼에 대한 태도☆ |
| 유배우 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을 및 인공임신중절경험률 | 이혼에 대한 태도☆ |
| 가구주의 성별 장래가구☆ | 재혼에 대한 태도☆ |
| 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 가정생활 만족도☆ |
| 가족의 형태별 분포☆ | 가사분담 실태 |
| 평균 초혼, 이혼 및 재혼연령☆ |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 60세이상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2002) |
| 성별 초혼연령 구성비☆ | 자녀 양육실태☆ |
|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 행정구역(시도)/연령/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행정구역(시도)/연령(5세 계급)/교육정도/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행정구역(시도)/남편의 연령(5세 계급)/교육정도/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행정구역(시도)/연령/경제활동상태/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행정구역(시도)/연령/교육정도별 여성인구☆
 행정구역(시도)/성씨·본관별 가구 및 인구☆
 행정구역(구시군)/성씨·본관별 가구 및 인구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인구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통계청

가구원 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및 결혼년도, 직업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결과>, 통계청

주 결혼연령층 인구	가정별 주요 연령계급별 추계인구(2004~2050년)
평균수명 추이	
가정별 추계인구 및 인구성장률(2004~2050년)	

추계인구, 《장래인구추계》, (2001), 통계청

가구주의 성, 연령, 혼인상태별 가구	가구구성/가구원수별 가구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주 성별 가구☆	

장래가구추계일반, 《장래가구추계》, 통계정보시스템 KOSIS, 통계청

인구동태건수
 인구동태율
 시도별 인구동태건수
 시도별 인구동태율
 행정구역(구시군)별 출생 (년, 월 :2000.01 ~ 2004.12)☆
 행정구역(구시군)/출산순위별 출생 (년 :2000 ~ 2004)☆
 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년 :1980 ~ 2004)
 성/모의연령(5세계급)/출산순위별 출생 (년 :1980 ~ 2004)☆
 행정구역(시도)/성/모의 연령(5세 계급)/출산순위별 출생 (년 :1990 ~ 2004)
 행정구역(시도)/성/출산순위/출생시 체중별 출생 (년 :1993 ~ 2004)
 행정구역(시도)/성/출산순위/출생시 체중별 출생(쌍태아 이상) (년 :2000 ~ 2004)
 행정구역(시도)/성/모의연령(5세계급)/출생시 체중별 출생 (년 :1993 ~ 2004)
 행정구역(시도)/성/모의연령(5세계급)/출생시 체중별 출생(쌍태아 이상) (년 :2000 ~ 2004)
 행정구역(시도)/모의연령(5세계급)/교육정도별 출생 (년 :1980 ~ 2004)
 행정구역(시도)/모의 연령(5세)/동거기간별 출생 (년 :2000 ~ 2004)
 행정구역(시도)/모의 연령(5세)/동거기간별 출생(쌍태아 이상) (년 :2000 ~ 2004)
 시도/출생장소별 출생 (년 :1991 ~ 2004)
 시도/쌍태아,성별 출생 (년 :1991 ~ 2004)
 시도/쌍태아 출산순위별 출생 (년 :1991 ~ 2004)
 행정구역(시도)/부의연령(5세계급)/교육정도별 출생 (년 :2003 ~ 2004)
 임신기간별 출생 (년 :2003 ~ 2004)
 행정구역(구시군)별 사망 (년, 월 :2000.01 ~ 2004.12)
 행정구역(시도)/성/연령(5세, 각세)별 사망 (년 :1980 ~ 2004)
 성/연령(5세)/직업별(신) 사망 (년 :1993 ~ 2004)
 성/연령(5세)/직업별(구) 사망 (년 :1980 ~ 1992)
 성/연령(5세)/혼인상태별 사망 (년 :1990 ~ 2004)
 행정구역(시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년 :1990 ~ 2004)
 행정구역(구시군)별 혼인 (년, 월 :1990.01 ~ 2004.12)
 혼인부부의 연령별 혼인 (년 :1990 ~ 2004)☆
 연령/행정구역(시도)별 혼인 (년 :1990 ~ 2004)☆
 행정구역(시도)별 초혼·재혼 종류별 혼인 (년 :1990 ~ 2004)☆
 행정구역(시도)별 평균초혼연령 (년 :1990 ~ 2004)☆
 행정구역(시도)별 평균재혼연령 (년 :1990 ~ 2004)☆
 행정구역(시도)별 초혼연령별 혼인 (년 :1990 ~ 2004)☆
 행정구역(시도)별 재혼연령별 혼인 (년 :1990 ~ 2004)☆
 행정구역(시도)별 사별후 재혼연령별 혼인 (년 :1993 ~ 2004)
 행정구역(시도)별 이혼후 재혼연령별 혼인 (년 :1993 ~ 2004)

- 행정구역(시도)별 초혼부부 연령차별 혼인 (년 :1990 ~ 2004)
- 행정구역(시도)별 재혼부부 연령차별 혼인 (년 :1991 ~ 2004)
- 행정구역(시도)/연령별 혼인을 (년 :2002 ~ 2004)☆
- 연령/교육정도별 혼인 (년 :2000 ~ 2004)
- 연령/교육정도별 혼인(초혼) (년 :2000 ~ 2004)☆
- 연령/교육정도별 혼인(재혼) (년 :2000 ~ 2004)☆
- 행정구역(시도)/외국인 처의 국적별 혼인 (년 :2001 ~ 2004)
- 행정구역(시도)/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혼인(년 :2001 ~ 2004)
- 혼인종류/외국인 처의 국적별 혼인 (년 :2001 ~ 2004)
- 혼인종류/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혼인 (년 :2001 ~ 2004)
- 행정구역(시도)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년 :1990 ~ 2004)
- 행정구역(구시군)별 이혼 (년, 월 :1990.01 ~ 2004.12)
- 이혼부부의 연령별 이혼 (년 :1990 ~ 2004)
- 연령/행정구역(시도)별 이혼 (년 :1990 ~ 2004)
- 행정구역(시도)별 이혼사유별 이혼 (년 :1990 ~ 2004)☆
- 행정구역(시도)별 협의·재판종류별 이혼 (년 :1993 ~ 2004)
- 행정구역(시도)별 동거기간별 이혼 (년 :1990 ~ 2004)☆
- 행정구역(시도)별 이혼당시 미성년자녀수별 이혼 (년 :1993 ~ 2004)
- 동거기간 및 연령계급별 이혼 (년 :1990 ~ 2004)☆
-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이혼율 (년 :2002 ~ 2004)
- 연령/교육정도별 이혼 (년 :2002 ~ 2004)

인구동태조사, 《인구동태통계연보》,(2004), 통계청

입양기관별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 유형★ | 양부모의 소득별 친자유무 및 직업현황
 입양아동의 건강상태별 성 및 연령현황

국내입양현황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모자보호시설의 보호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보건복지부 2004

운영주체별 보육시설 수 및 이용자수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자료(2004)

운영주체별 특수보육시설 수 및 아동 수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자료(2004)

가정보호사건 구성 및 추이 - 접수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 가정보호사건 법원별 처리상황 가정보호사건 연령별 구성 가정폭력행위자 행위원인별/가정구성원별/교육 정도별 인원 이혼사건에 대한 병합사건 건수표(제1심) 가정보호사건 인원수표	호적비송사건표 - 집계 호적비송사건표 - 호적법 위반 호적비송사건표 - 취적 호적비송사건표 - 개명 호적비송사건표 - 호적정정/연령정정 호적비송사건표 - 호적정정/기타정정 호적비송사건표 - 협의이혼 의사확인 호적비송사건표 - 기타
--	---

이혼사건 항목별(학력별·연령별·직업별·원인별(피고기준)·동거기간별·자녀수별)
 사법통계, 《사법연감》,(2005), 대법원

적정 생활수준 향유권

중요한 생활 관심사 60세이상 가구의 주택형태별 분포(2000)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소비생활 만족도★ 주택보급 및 주택투자율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건축년도 및 주택형태별 주택분포 도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가구당 주거비 지출률 현주택의 상태(2001) 주택마련 방법 주거공간 연건평별 주택 분포
--	---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
 시설형태별 가구비율
 가정용 연료
 자동차 차고지 확보유무(2000)
 폐수발생량 및 1인당 오수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 수질 및 해수오염도(SO2, BOD, COD)
 주요 도시의 소음공해도
 상수도 시설과 식수사용 형태
 식량작물 생산량 대비 비료소비량 및 농약출하량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환경오염 방지노력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
 환경보호 부담의향(2001)
 환경오염방지 지출액
 재생산업 사업체수

공해배출 부과금 및 징수액
 쓰레기 봉투 사용시 불편한 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최종에너지(석유환산) 및 전력소비량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
 향후 늘려야할 공공시설☆
 65세 이상 인구의 생계수단(2000)
 65세 이상 인구의 자녀거주 장소(2000)
 65세 이상 인구의 주부양자(2000)
 노인문제
 60세이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2002)
 60세이상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2002)
 60세이상 여가시간 활용의향(2002)
 60세이상 장래 살고 싶은 곳(2002)
 장애인 복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
 1인당 도시공원면적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주택소유여부
 주택마련시기
 결혼후 내집 마련시까지의 이사횟수
 주택구입자금 마련방법
 원하는 주택형태

원하는 점유형태
 현 주택 거주년수
 주택에 대한 만족도
 현 거주지 선택이유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시도별 부양비☆★

시도별추계인구, 《시도별장래인구추계》 (2002), 통계청

연도별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연령구조 및 부양비

연령계층별 노령인구

추계인구, 《장래인구추계》, (2001), 통계청

총조사인구 총괄(행정구역/성/연령별)☆
 행정구역(동읍면)별 인구,가구 및 주택
 행정구역(구시군)/연령/성/교육정도별 인구(6세이상)
 행정구역(구시군)/연령/성/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성/연령/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
 행정구역(구시군)/가구주와의 관계/성/혼인상태별 인구☆
 인구규모별 행정구역수
 행정구역(시도)/성/연령/혼인상태/세대구성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연령/혼인상태/교육정도별 인구(15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성/연령별 외국인
 국적/성/연령별 외국인
 행정구역(구시군)/성/국적별 외국인
 국적/성/직업(대분류)별 외국인
 국적/성/교육정도별 외국인
 행정구역(구시군)/연령/성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연령/교육정도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연령/가구주와의 관계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세대구성/성/연령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연령/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연령/성/거처의 점유형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세대구성/성/거처의 점유형태별 고령자(65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세대구성/성/거처의 점유형태별 고령자(60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거처의 점유형태/성/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5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거처의 점유형태/성/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0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연령/자녀의 거주장소별 고령자(60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성/연령/거동불편여부별 고령자(60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세대구성/성/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5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연령/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행정구역(시도)/세대구성/성/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0세 이상)
인구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통계청

총조사가구 총괄(행정구역/거처의 종류/가구원수/사용방수별)☆
 행정구역(구시군)/거처의 종류별 거처수,가구수,핵수,가구원☆
 행정구역(구시군)/주택의 종류/접유형태별 주택☆
 행정구역(구시군)/주택의 종류/연건평/거주인수별 주택
 행정구역(구시군)/주택의 종류/연건평/총방수별 주택
 행정구역(구시군)/주택의 종류/연건평/건축년도별 주택
 행정구역(구시군)/연건평/단독주택의 종류/편의시설수별 단독주택
 행정구역(구시군)/연건평/단독주택의 종류/대지면적별 단독주택
 행정구역(구시군)/연건평/단독주택의 종류/거주가구수별 단독주택
 행정구역(구시군)/접유형태/총방수/거처의 종류별 주택
 행정구역(구시군)/주택의 종류별 빈집
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통계청

취업여부별 평균시간(20세이상)(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취업시간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월평균소득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기혼여자의 취업여부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기혼여자의 취업시간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맞벌이·비맞벌이가구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편부모·양부모가구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농가, 비농가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지역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취업여부별 행위자비율(20세이상)(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취업시간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월평균소득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기혼여자의 취업여부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기혼여자의 취업시간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맞벌이·비맞벌이가구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편부모·양부모가구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농가, 비농가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지역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취업여부별 행위자평균시간(20세이상)(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취업시간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취업자의 월평균소득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기혼여자의 취업여부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20세이상 기혼여자의 취업시간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맞벌이·비맞벌이가구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편부모·양부모가구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농가, 비농가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지역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산업별 요일평균 '일' 행위자비율 - 20세 이상 취업자(5년주기:1999~2004)
 직업별 요일평균 '일' 행위자비율 - 20세 이상 취업자(5년주기:1999~2004)
 종사상 지위별 요일평균 '일' 행위자비율 - 20세이상 취업자(5년주기:1999~2004)
 '운동·취미활동·여가관련물품구입'행위자비율-20세이상취업·기혼여자(5년주기:1999~2004)
 '운동·취미활동·여가 물품구입'행위자비율-20세이상미취업·기혼여자(5년주기:1999~2004)

생활시간조사, 《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2005), 통계청

주거 - 거처구분, 사용면적
 가구내구재 - 주요가구내구재 보유수량, 소유품목명
 부동산 - 입주형태별 구분, 살고 있는 주택이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가구소비실태 조사결과>, 통계청

가계생활형편 사항 - 6개월전·후의 생활형편, 생활수준의 위치
 가계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1년전 현재의 가계소득상태, 주택상가, 토지임야, 금융저축, 주식채권 등의 6개월전 대비 변동사항, 6개월전 대비 저축 및 부채 상황, 1개월간의 가구원들의 소득합
소비자전망조사, <소비자전망조사보도자료>, (2005년8월)·통계마다 STAT-KOREA, 통계청

산업별(업종별)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현황	수계별 오염부하량 현황
산업별(업종별) 오염부하량 현황	공단별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현황
수계별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현황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2005 환경통계연감》,(2005), 환경부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해양배출량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	처리방법별 일반폐기물 처리현황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변화추이	처리방법별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시·도별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현황('03)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거주인구 추세
지정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변화추이(전국)	폐기물 재활용현황
시·도별 지정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	폐기물 수출·입 현황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05 환경통계연감》,(2005),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 현황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 《화학물질 유통실태 조사보고서》,·
 《2005 환경통계연감》,(2005), 환경부**

주요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	주요도시의 오존 오염도★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주요도시의 일산화탄소 오염도	주요도시의 납 오염도
주요도시의 이산화질서 오염도	

대기오염도 자동측정, 《2005 환경통계연감》,(2005), 환경부

하천수의 수질현황	지하수수질기준 초과현황	연안의 수질현황
호수수의 수질현황	먹는물의 수질현황★	

수질오염실태보고, 《2005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상수도 보급현황★	상수도 요금현황
-----------	----------

상수도통계, 《2005 환경통계연감》,(2005),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현황
하수도 보급률 변화추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하수도 요금현황	하수처리구역내 인구현황

하수도통계, 《2005 환경통계연감》,(2005), 환경부

대기오염 배출업소 현황	유독물 등록업소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폐수 배출시설 처리 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소음·진동 배출시설 현황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대기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재활용부과금 부과 및 납부현황
소음·진동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폐수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배출시설업무처리현황, 《2005 환경통계연감》,(2005), 환경부

문화예술인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4), 문화관광부

가구현황 - 농사규모, 경영형태, 경영주, 예금액

농업종사경력 및 향후계획 - 농업종사경력, 향후농업계획(생산규모확대/축소계획, 신규농사 및 창업의향)

농업노동분담현황 - 농업노동 기여도, 분야별 농사일 작업비중

노동시간 - 시기별 노동시간(농업, 가사, 농외노동시간)

의사결정참여도 - 농업경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도

컴퓨터 이용현황

여성농업인의식 - 농업인 정체성, 농업관, 여성농업인 진취성, 성역할의식

건강 - 건강검진 현황, 출산/산후조리 현황

보호노동 및 보육 - 보호를 요하는 가구원현황, 보육현황, 보육시설 요구사항

연금가입현황 -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현황☆

문화복지현황 - 문화행사 참석 현황

조직 가입 및 활동 현황 -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관련조직 가입 및 활동 현황

농촌 거주 의향 - 향후농촌거주의향,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교육현황 - 교육경험여부, 교육참석빈도, 불편사항

관련정책인지 및 시설이용현황 - 제도인지, 제도이용여부

여성농업인실태조사, <2003년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2003), 농림부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 에너지절약 상황

에너지사용 설비현황, 건물현황, 제품별 에너지 사용현황, 주요 수배전용전압기 생산현황, 에너지 관리자 등

에너지사용량통계, 《2004 에너지통계연보》,(2005), 산업자원부

에너지 수급현황

| 에너지 수입액 추이

에너지원별 소비추이

| 발전용 연료(1차에너지) 투입 구조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소비, 발전용 연료 사용실적, 총에너지 공급과 소비, 생산·소비·수입·수출

에너지수급통계, 《2004 에너지통계연보》,(2005), 산업자원부

에너지원별·부문별 소비 추이 및 구조

산업부문(농림업·어업·광공업·건설업)의 에너지원별·용도별 사용량 등

수송부문(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철도 및 지하철) - 일반사항, 종업원수 및 자본금, 건물면적, 운행현황과 연료소비량 등

운수관련서비스업 및 창고업 - 일반사항, 종업원수 및 자본금, 건물면적,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등

자가용 및 관용차량 - 차량 및 운행에 관한 사항, 차종별·연료별 소비, 승용차 배기량별 소비구조

상업공공부문 - 일반사항,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 업종별 설비에 관한 사항, 연간에너지원별, 용도별 사용량

운송업 차량의 연료경제

가정부문의 가구당 및 1인당 소비 지표

가정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추이, 월평균 전기료 및 난방비(월동기 기준)

대형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

대형건물의 면적규모별 에너지소비

에너지총조사, 《2004 에너지통계연보》,(2004), 산업자원부

온실가스 배출량(CO2, CH4, N2O, HFC, PFC, SF6)

온실가스배출통계, 《2004 산업자원백서》,(2004), 산업자원부

주택건설현황

주택건설실적통계, 《건설교통통계연보》,(2004), 건설교통부

건축물현황(용도별, 층수별, 면적별)

건축물 통계, 《건설교통통계연보》,(2004), 건설교통부

시도별 지하수 시설현황

| 시도별 지하수 이용현황

지하수조사, 《건설교통통계연보》,(2004), 건설교통부

건축허가 현황(동수, 연면적)

건축허가통계, 《건설교통통계연보》,(2004), 건설교통부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총괄 집계표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성별·연령별 장애인 출현율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1995년도와 2000년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현황 비교

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

1995년도와 2000년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 수 비교

장애유형별 장애출현율★

2000년도 전국 지역별 장애인가구 출현율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시 타인도움정도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여부

장애유형별 외출(집밖활동)불편정도

장애유형별 보장구 소유 여부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재가장애인 연령별·성별·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재가장애인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재가장애인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재가장애인 장애인 복지사업내용 및 실시기관의 인지를 및 경험을, 이용희망을

재가장애인 사회나 국가에 대한 복지욕구(우선순위)

생활보호대상 재가장애인 비율

미등록 장애인의 미등록 사유

장애인가구의 차량소유, 연료, 표지발급 여부

활동제약자실태조사,<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요약)(2000),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현황/세대주★

소년소녀가정현황/세대주 학력

소년소녀가정현황/세대원

소년소녀가정세대현황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연안의 수질현황

사고에 의한 해양오염 발생현황

해수수질실태보고,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2005), 해양수산부

산림피해상황

산림피해원인별 발생상황

산림피해 처리상황

피해액 피해면적

산림피해단속상황보고, 《임업통계연보》,(2004)·통계바다 STAT-KOREA, 산림청

국토이용현황

소유별 산림현황

지역별 산림현황 - 임야면적, 임목축적, 임목

임상별 산림 현황

생장량 및 생장률

영급별 산림 현황

소관별 산림현황

전국산림실태조사, <산림자원조사보고서>, (2001), 산림청

자금별(보조, 융자, 지방비, 자비) 식재본수, 활착본수, 생존본수

조림활착상황, 《임업통계연보》,(2004)·통계바다 STAT-KOREA, 산림청

목적별 형질허가사항, 신고사항, 협의사항(건수, 면적, 복구비)

목적별 복구비에치 복구상황, 금후복구대상(건수, 면적, 금액)

산림형질변경허가및복구상황보고, 《임업통계연보》,(2004)·통계바다 STAT-KOREA,산림청

개인 및 가구특성, 인구 및 사회부문, 가족생활, 여가생활, 식생활, 건강생활, 주거 및 환경부문, 가정경제부문, 교육 및 교양부문 등

농산물소득조사, 《2004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004), 농촌진흥청

원인별 발생현황
오염원별 발생현황(200)
유출량별 발생현황(200)
해역별 발생현황(200)

월별 발생현황(200)
시간대별 발생현황
연도별 해양오염사고 발생주이

해양오염사고통계, 《해양경찰백서》, (2004), 해양경찰청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지역별 가구형태별 분포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지역별 노인가구형태별 분포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가구형태별 세대구성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가구형태별 가족유형 분포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가구의 일반특성별 주관적 경제상태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가구의 일반특성, 소득원별 유무(노인가구)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가구의 일반특성, 소득원별 유무(비노인가구)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가구의 일반특성, 소득원별 소득수준(노인가구)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가구의 일반특성, 소득원별 소득수준(비노인가구)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가구의 일반특성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가구형태 및 성별 가구의 연령분포
- 조사가구 및 가구의 특성/ 연령별 가구의 특성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가구의 일반특성별 가구주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생존여부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가구의 일반특성별 가구주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가구의 일반특성별 부모 몸 불편시 선호하는/간호, 수발 방법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가구의 일반특성별 부모 거주형태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부모와 동거중인 기혼 가구의 연령별 동거이유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부모와 동거중인 기혼 가구의 형제, 자매순위, 교육수준별 동거이유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부모와 동거중인 기혼 가구의 가구소득별 동거이유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가구의 부모와 별거중인 기혼가구의 거주형태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부모와 별거중인 가구의 지역, 성별 별거 이유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부모와 별거중인 가구의 연령별 별거이유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부모와 별거중인 가구의 형제, 자매순위, 교육수준 별거이유
- 부모와의 관계 및 거주형태/ 가구의 부모와 별거중인 가구의 가구소득별 별거이유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시기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연령별 노인에 대한 이미지
- 상 동 /응답자의 지역, 성별 노인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관심사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연령별 노인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관심사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노후의 시간 활용 계획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경제적 노후 준비율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노후생활비 마련 대책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지역별, 성별 건강악화 후 희망하는 거주형태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연령별 건강악화 후 희망하는 거주형태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여유돈 우선지출 선호항목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선호하는 (노)부모 동거자녀
-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선호하는 노후 생활비 마련방법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지역별 노인의 일반특성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성별 노인의 일반특성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연령별 노인의 일반특성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노인가구형태별 노인의 일반특성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기혼자녀와 동거중인 노인의 지역, 성별 동거이유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기혼자녀와 동거중인 노인의 연령, 결혼상태별 동거이유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기혼자녀와 별거중인 노인의 지역, 성별 별거이유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기혼자녀와 별거중인 노인의 연령, 결혼상태별 별거이유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단독거주기간
-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형태/ 노인의 지역, 성별 가구형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노인의 일반특성 및 거주실태/ 노인의 연령,결혼상태별 가구형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녀 및 친지의 평균 수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지역,성별 별거자녀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연령,가구형태별 별거자녀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의 제특성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생존여부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지역,성별 부모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지역,성별 손자녀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지역,성별 형제,자매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지역,성별 친척과의 접촉 및 연락빈도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지역,성별 친구,이웃과의 접촉 및 연락빈도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제,신체,도구,정서적 도움의 수혜율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제,신체,도구,정서적 도움의 제공률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노인의 경제적 지원의 제공자 및 수혜자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노인의 손자녀(아동) 돌보기의 제공자 및 수혜자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노인의 교통편의의 제공자 및 수혜자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노인의 걱정거리나 문제점 등 상담의 제공자 및 수혜자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노인의 상황별 도움요청 희망자수
 노인의 부양교환실태/ 노인의 상황별 도움요청 희망자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시기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거주지역별,성별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계기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연령,가구형태별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계기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교육수준,취업상태별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계기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가구소득,기능상태별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계기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의 시간 활용 계획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제적 노후 준비율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노후생활비 마련대책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거주지역별·성별 건강악화 후 희망하는 거주형태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연령별 건강악화 후 희망하는 거주형태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여유돈 우선지출 선호항목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노)부모 동거자녀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일반특성별 선호하는 노후 생활비 마련방법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소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지역별·성별 재산 상속 실태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연령·가구형태별 재산 상속 실태
 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
 노인의 경제 상황/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소득원 유무
 노인의 경제 상황/ 노인의 일반특성별 소득수준분포
 노인의 경제 상황/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개인소득수준
 노인의 경제 상황/ 노인가구소득 중 노인개인소득의 비중
 노인의 경제 상황/ 노인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용돈
 노인의 경제 상황/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지역·성별 취업률☆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취업률☆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지역·성별 종사직종☆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종사직종☆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지역·성별 주평균 근무시간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주평균 근무시간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지역·성별 취업이유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취업이유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지역·성별 취업 지속희망 여부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취업 지속희망 여부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미취업노인의 지역·성별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미취업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취업희망노인의 지역·성별 구직경로(중복응답)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취업희망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구직경로(중복응답)

-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취업희망노인의 지역·성별 희망 근로형태
-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취업희망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희망 근로형태
-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노인의 지역·성별 노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노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지원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흡연상태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음주상태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운동실천 여부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이 일반특성별 주된 운동 종목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끼니별 식사 비율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식사를 거른 이유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독감예방접종을 및 건강검진수진을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건강검진 경로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성별 주요 만성질환유병률 및 의사진단 비율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만성질환으로 인해 힘든 점 유무 및 이유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낙상사고율 및 낙상사고 장소
- 노인의 보건의료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치료·건강을 위한 약 또는 건강식품 복용여부 및 종류
-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노인의 성·연령별 신체기능 정도
-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노인의 성 및 연령별 보조기 착용시 신체기능 정도와 보조기 착용률
-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노인의 성·연령별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노인의 성·연령별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수발 실태
-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노인의 가구형태·가구소득별 수발실태
-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노인의 지역·연령·결혼상태별 주수발자의 어려움 유무 및 가장 힘든 점
-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노인의 성·가구형태·가구 소득별 주수발자의 어려움 유무 및 가장 힘든 점
- 노인의 여가활동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장 즐거움(보람)을 느꼈던 활동 비율
- 노인의 여가활동실태/ 사회단체종류별 지역별 월 참여 빈도
- 노인의 여가활동실태/ 노인 일반특성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 노인의 여가활동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경험
- 노인의 여가활동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자원봉사 활동영역
- 노인의 여가활동실태/ 노인의 일반특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실태
- 노인의 생활환경/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택의 편리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
- 노인의 생활환경/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택의 편리성에 대한 조사원의 판단
- 노인의 생활환경/ 노인의 거주지역·성별 주거환경
- 노인의 생활환경/ 노인의 연령·가구형태별 주거환경
- 노인의 생활환경/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 교통수단
- 노인의 생활환경/ 노인의 일반특성별 외출시 불편사항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이용 욕구/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이용경험률,향후 이용희망률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이용 욕구/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률 및 이용빈도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이용 욕구/ 노인의 지역·성별 경로당 이용하지 않는 이유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이용 욕구/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 만족도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이용 욕구/ 노인의 지역·성별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는 이유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이용 욕구/ 노인의 지역·성별 경로당 이용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이용 욕구/노인의 지역·성별 노인수발을 위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서비스이용 욕구/ 노인의 지역·성별 노인을 위한 사회적 관심사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연구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연구조사》,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유공자등생활실태및복지수요조사, 국가유공자및제대군인의생활실태외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지역별 유형별 주택매매 가격지수 주요지역별 유형별 주택전세 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주택전세 종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주요지역별 월별 주택가격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지역별 연도별 주택가격지수 주택규모별 월별 주택가격지수 주요지역별 월별 월세이율 주요지역별 임대차계약 구성비 매매시장동향 전세시장동향 아파트 매매가격/전세가격 비율
---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05년 11월), 국민은행

건강권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연령별 학생의 신장☆
 연령별 학생의 체중☆
 연령별 학생의 신체중량지수
 연령별 학생의 가슴둘레☆
 건강 관리 방법☆
 개인의 건강평가☆
 음주 인구 비율☆
 음주량
 음주자의 과음횟수
 주류 출고량(19세이상 인구 1인당)
 흡연 인구 비율☆
 연간 담배 판매량
 일상생활 동작능력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20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조사직전 2주간)☆
 영양 공급량(1인 1일당)
 식품 공급량(1인 1일당)
 쌀 및 육류 소비량(1인 1일당)
 1일 평균 재원환자수 및 평균 입원일수
 1인당 연간평균 내원일수(외래)
 병상이용률
 진료자수 및 치료일수(조사직전 2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유☆
 의료인력 현황☆
 의료가관 및 병상수
 한방의료기관 이용자 비율 및 평균 방문횟수
 60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 여부(2000)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출생(율),사망(율), 국제이동(율) | 향후 출산율 가정 | 향후 사망확률 가정

추계인구, 《장래인구추계》, (2001), 통계청

신장	피부두겹(대퇴)	팔굽혀펴기
체중	체지방률	윗몸 일으키기
BMI	50m 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피부두겹(가슴)	1,200m 달리기	
피부두겹(복부)	제자리 멀리뛰기	

국민체력실태조사, 《2004년도 국민체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2004), 문화관광부

암등록 현황 - 원발장기별, 연령별, 성별

한국인암등록조사, <한국중앙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 (2004), 보건복지부

한센등록자연령분포	보건소 나환자 투약, 검진실적
보건소 나환자 등록관리현황	보건소 나환자 등록관리현황

한센병관리사업실적,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종류별 모집단 및 조사기관수	상병분류별·성별·연령계층별·평균재원일수
표준오차성·연령계층별 환자수	의료기관 종류별 퇴원환자 진료비 지불 방법
성별분류별 환자수	성·연령계층별 외래환자수 및 수진율(10만명당)
의료기관 종류별 입원-외래 환자수 및 구성비	남자의 수진율이 높은 질병
연령계층별 외래환자수 및 구성비	여자의 수진율이 높은 질병
상병분류별 외래환자수 및 구성비	성, 상병분류별 외래환자 수진율 및 성비
의료기관 종류별 외래환자 진료비 지출방법	의료기관종류별 외래환자 거주지별 수진율☆
의료기관 종류별 평균 환자수	조사연도별 외래-입원 환자 추이
환자 거주자별 의료기관 이용실태 - 외래환자	의료기관 종류별 환자수 및 구성비 추이
연령계층별 퇴원환자수 및 구성비	조사연도별 인구10만명당 외래환자수진율 순위 및구
상병분류별 퇴원환자수 및 구성비	성비
퇴원환자 성별 10대 상병 순위	노령연령층의외래환자 수진율 및 평균재원일수

환자조사, <환자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통계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보건소 신규등록 결핵 환자수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수(1967년 이전)
엑스선상 활동성 폐결핵 유병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수(1967년 이후)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수 - 지역별, 환자분류별 | 보건소등록 결핵환자수 변동-신규, 증가, 연말현재

전국결핵자현황,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보건복지부통계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장내기생충실태조사 연도별 감염현황 | 제7차 장내기생충실태조사(시·도별 추정값)

전국장내기생충실태조사, 《전국기생충감염실태 조사보고서》,(2003),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의 일년 유병률 및 추정 환자수 | 알코올 사용장애의 일년 유병률 및 추정 환자수
불안장애의 일년유병률 및 추정 환자수 | 수

정신질환자실태조사,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전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실태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보건소 결핵예방 접종실적 - 시도별 | 보건소 결핵검진 실적 - 시도별

결핵관리사업실적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련 현황 | 숙박업소 현황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보건소구강보건 사업실적 - 시도별
구강보건사업현황보고,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구강건강의식행태조사 - 구강진료기관 방문주기, 소요시간 등
구강건강상태조사(구강검진)
구강검사결과 기록 - 치아상태, 보철물 필요 등
악안면외상, 악관절 장애, 구강암 등
구강보건교육 - 회수, 인원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구강실태조사》,(2003), 보건복지부

해항검역실적 - 검역소별
국제검역상황,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보건소 인력현황 - 시도별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수 - 시도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현황 - 시도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성병 연도별 발생현황 | 황
성별 월별 발생현황 | 성병 연령별/성별 발생현황
성병 신고기관별(보건소, 병의원)/성별 발생현

성병관리사업실적, 《2004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보건복지부

시·도별 주요 전염병발생현황 | 주요 전염병 감시체계 발생특징
주요 전염병 최근 5년간 주별 발생현황 | 해외유입기생충전염병 연도별 발생상황
주요 전염병 최근 10주간 환자분류별 발생현황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주요 전염병 연령별/성별 발생현황 |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현황
주요전염병 최근4주간 유행현황(과거4년간 동기간 대비) | 해외유입 전염병 발생현황
주요 전염병 지역별(시도)발생률 지도 | 해외전염병 발생현황 및 소식
시군구별 주요 전염병 발생현황

바이러스성 간염, 성병, 인플루엔자,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소아전염병, 안과 전염병 표본감시 전염병 발생현황

감염병발생주보,<감염병 발생주보 (2005년 37주)>, (2005), 보건복지부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본인인지 건강수준
 2주간 급·만성질환 이환자들
 유병률의 변동추이
 유병률이 높은 계층
 주요 만성질환의 종류
 만성질환의 주 치료기관
 이환으로 인한 활동제한
 질병 및 사고로 초래된 활동제한으로 인한 생산성 손

실액
 의료이용 실태
 보건의식행태조사결과-흡연, 음주, 운동, 건강
 검진
 건강검진조사결과 - 고혈압, 비만
 결식상황(연령별)
 외식빈도(연령별)
 생후 1년 이내의 수유형태(지역별)

식품 섭취실태조사 결과 - 식물성·동물성 식품섭취실태, 식품군별 섭취실태, 3대 영양소의 에너지 구
 성비 추이, 영양소 섭취량의 연차적 추이, 에너지·단백질·칼슘·철·비타민A·리보플라빈·비타민C 섭취수준☆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보건복지부

지역별 의료기관별 조사대상 의료기관
 OECD 회원국의 모성사망률 비교
 WHO-UNHCEF-NFPA 에 의한 UN 지역의 모성사망
 추정
 연도별 모성사망자 비율
 사망종류별 모성사망자 비율
 연령별·사망종류별 임신관련 사망자 비율
 사망시기별 모성사망자 비율
 모성사망자의 임신결과별 비율
 지역별 모성 사망자 비율

모성사망비
 연령별 모성사망비
 도서 산료적 모성사망비
 모성사망률
 가임기여성사망 중 모성사망비율
 생애모성사망위험
 연도별·지역별 모성사망 원인의 비율
 모 연령별 모성사망의 비율
 문제 모성 사인의 비율

특수환자조사, <2002환자조사보고서 ; 모성사망률 조사>, (2002), 보건복지부

역증별 현황 | 신체등위별 현황

정병신체검사통계, 《병무연감》,(2004), 병무청

의약품·화장품의 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20개 제약업소별 생산실적
 상위 20개 외자 제약업소별 생산실적

상위 20개 의약품 생산실적
 약효별 의약품 생산실적

의약품등생산실적보고, 《2005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련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 품목유형, 시도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품목유형, 시도별
 식품판매업소현황 - 업종, 시도별
 식품접객업소 - 업종, 시도별
 기타 식품위생관련업소 - 업종, 시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사업장 규모별 업체현황
 매출액 규모별 업체현황
 식품산업 매출현황 - 시도별

국내 산업대비 식품산업 비중(명목금액)
 식품수거검사(시도·청별, 품목유형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시도·청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실적(시도·청별)
 식중독 발생원인 - 시도별, 장소별
 식품 등 수입현황 - 품목유형, 기관별
 상위 10개 품목 식품 등 수입현황
 상위 10개 국가별 식품 등 수입현황
 품목유형별 식품 등 수입현황
 상위 10개 국가 식품 등 수입검사 부적합 현황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처리(시도·청별), 신고보상금지급(시도·청별)
 식품제조·가공업소 감시·위반(품목유형별, 시도·청별) 및 감시·위반, 위반(시도·청별), 행정처분(품목유형별, 시
 도·청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감시·위반내용(품목유형별, 시도·청별)(시도·청별), 행정처분(품목유형별, 시도·
 청별)
 식품판매업소 감시·위반(업종별, 시도·청별) 및 감시·위반내용(시도·청별), 행정처분(업종별, 시도·청별)
 식품접객업소 감시·위반내용(업종별, 시도·청별), 행정처분(업종별, 시도·청별)
 기타 식품관련업소 감시·위반내용(업종별, 시도·청별) 및 행정처분(업종별, 시도·청별)
 식품 등 수입검사 - 내용, 기관별,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농·임산물

식품위생업소실적보고, 《2005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연도별 가구원수별 분포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가구주의 일반특성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연도별 세대별 구성 비율(1966~200)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지역별 친족가구 및 비친족가구의 유형별 분포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핵가족의 형태별 분포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확대가족 구성원의 연령분포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유형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현 거주주택의 소유형태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보유재산 규모분포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부채 규모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가계소득 수준분포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항목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15~44 세 유배우부인의 총임신향수의 변화(1994~200)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15~44 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전·후 남아출산노력 경험률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15~44 세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 형태별 평균횟수(1994~200)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15~44 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 임신소모 횟수(200)
 출산행태 및 출생아 현존자녀수 변화/ 합계출산율의 변화
 출산행태 및 출생아 현존자녀수 변화/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1960~2002년)
 출산행태 및 출생아 현존자녀수 변화/ 세계 주요 국가의 출생통계 지표
 출산행태 및 출생아 현존자녀수 변화/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동추이
 출산행태 및 출생아 현존자녀수 변화/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출산행태 및 출생아 현존자녀수 변화/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출생아 성비
 출산행태 및 출생아 현존자녀수 변화/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1994~200)
 출산행태 및 출생아 현존자녀수 변화/ 15~49세 초혼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결혼연령과 첫째 및 막내아 출산 시 연령
 피임수용실태/ 15~44 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태 변화(1976~200)
 피임수용실태/ 15~44 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피임실태
 피임수용실태/ 15~44 세 유배우부인의 피임방법별 피임실천율(1976~200)☆
 피임수용실태/ 15~44 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및 방법별 피임실천율☆
 피임수용실태/ 15~44 세 유배우부인의 지역, 연령 및 취업여부별 피임실천율
 피임수용실태/ 15~44 세 유배우부인 중 비영구적 피임실천부인의 방법별 계속 사용의향 및 변경희망 피임방법
 피임수용실태/ 15~44 세 현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의 지역 및 연령별 과거사용 최종 피임방법
 피임수용실태/ 15~44 세 현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중단 및 무경험부인의 비율과 이유
 피임수용실태/ 15~44 세 피임비실천 유배우부인 중 피임희망부인의 선호 피임방법
 피임수용실태/ 15~44 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노출상태
 피임수용실태/ 15~44 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자녀추가 희망여부 및 피임실천
 인공임신중절실태/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인공임신중절을 변동추이
 인공임신중절실태/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인공임신중절실태/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인공임신중절실태/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분포
 인공임신중절실태/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별 당시 자녀수 분포
 인공임신중절실태/ 유배우부인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당시 자녀의 성
 인공임신중절실태 / 유배우부인 중 2001년 이후 인공임신중절 수용 부인의 특성별 임신 당시 피임 실천여부
 인공임신중절실태/ 유배우부인의 첫 인공임신중절 수용이유
 인공임신중절실태/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시 태아 성감별 여부
 모자보건실태/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전수진율(1985~200)
 모자보건실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 출산 후 산후수진을
 모자보건실태/ 15~49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시설분만을 및 분만장소
 모자보건실태/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산시 제왕절개분만 권유자 및 이유
 모자보건실태/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출생시 체중
 모자보건실태/ 모자보건사업에 의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종류 및 지급비용
 모자보건실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최종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검 여부
 모자보건실태/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모유수유 실태
 모자보건실태/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생후 15개월간 모유수유양상
 모자보건실태/ 15~44세 유배우부인의 모유수유 중단이유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1991~200)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 변동추이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15 ~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1991 ~ 2003자녀)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15 ~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의 필요이유 1)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15 ~44세 유배우부인의 이상자녀의 성구별 여부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15 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15 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이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의 변화/ 15 세 이상 기혼부인의 특성별 재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기혼부인의 지역별 결혼상태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기혼부인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기혼부인 및 남편의 결혼경력별 분포의 비교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15 ~ 49세 기혼부인과 남편의 결혼경력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15 세 이상 기혼부인과 남편의 초혼연령별 분포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남편 및 부인의 특성별 평균 초혼연령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기혼부인의 특성별 평균 혼인지속기간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사별,이혼,별거부인의 일반특성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해혼상태별 해혼당시 부인 및 남편의 연령분포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이유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이혼,별거 부인의 결혼연도별 이혼,별거 이유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해혼부인의 결혼년도별 평균 결혼지속기간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이혼,별거 부인의 특성별 이혼,별거 제의자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이혼,별거 부인의 이혼,별거당시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15 세 이상 초혼부인의 초혼년도별 출생아 유무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15 세 이상 초혼 출산경험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결혼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1)의 평균연령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육구/ 15 ~ 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육구/ 15 ~ 59세 기혼가구의 부부권력관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육구/ 15 ~ 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의 의사결정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육구/ 15 ~ 59세 기혼가구의 배우자 만족수준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육구/ 15 ~ 59세 기혼가구의 자녀관계 만족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육구/ 15 ~ 59세 기혼가구의 자녀와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육구/ 15 ~ 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정의 행복결정 요인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육구/ 15 ~ 59세 기혼가구의 거주지역별 가족생활 악화의 주요 요인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육구/ 15 ~ 59세 기혼가구의 특성별 가족문제의 책임소재 인식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정책육구/ 15 ~ 59세 기혼가구가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정책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도별 제왕절개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령 및 성별 치매 노인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치매관리<Mapping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령 및 성별 신규 HIV/AIDS 감염자 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보도자료(2004)

HIV/AIDS 감염자 발생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보도자료(1996, 1998, 2004)**

성별 약국 요약급여실적

**한국여성개발원, 《2004 여성통계연보》,(2004)
 ; 《건강보험심사통계연보》(20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왕절개실태분석, <제왕절개 현황> 관련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인체측정조사,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200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육에 대한 권리

성·연령계층별 평균 교육년수☆ 25세이상 인구의 학력구성비 유치원 취원을☆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취학을☆ 졸업생의 진학률☆ 시·도별 학생현황 장애자 취학자수 교원 및 학교수 각급 학교 교원현황☆	여교사 비율 교원 이직률☆ 사무직원당 교원수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교급별 컴퓨터 보유현황 학생1인당 건물, 교지, 체육장 면적 학교당 용도별(시설)면적(2004) 급식실시 학교 및 학생비율 정부예산대비 교육인적자원부예	산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중도탈락률 비행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계열별 학위 취득자☆ 전공분야별 대학생수 학교도서관 좌석 및 장서수
---	---	--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이유☆★ 학교교육의 효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생의 기대 교육수준 및 목적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 및 교육이수 일수☆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교육비 부담요인☆
--	---

학생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및 내역별 지출액☆☆
교육비 지출액 -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분포 및 내역별 지출, 자녀1인당 월평균 교육비 및 내역별 지출액,
사회통계조사,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학령인구

추계인구, 《장래인구추계》, (2001), 통계청

인구총조사 > 인구부문 > 총조사인구(2000) > 통근통학(10% 표본)
행정구역(구시군)/성별 통근·통학인구(12세 이상)
행정구역(시도)/가구규모/성별 통근·통학인구(12세 이상)
인구 및 주간인구
행정구역(구시군)/성/연령/이용교통수단별 통근·통학인구(12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성/각급학교/이용교통수단별 통학인구(12세 이상)
장애인고용동향/ 단별 통근·통학인구(12세 이상)
대도시/성/통근통학지/이용교통수단별 통근·통학인구(12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소요시간/이용교통 수단별 통근·통학인구(12세 이상)
인구(서울,인천,경기)(12세 이상)
성/현거주지/통근학지별 통근·통학인구(부산,울산,경남)(12세 이상)
성/현거주지/통근학지별 통근·통학인구(대구,경북)(12세 이상)
성/현거주지/통근학지별 통근·통학인구(광주,전남)(12세 이상)
성/현거주지/통근학지별 통근·통학인구(대전,충북,충남)(12세 이상)
성/현거주지/통근학지별 통근·통학인구(강원)(12세 이상)
성/현거주지/통근학지별 통근·통학인구(전북)(12세 이상)
성/현거주지/통근학지별 통근·통학인구(제주)(12세 이상)
행정구역(시도)/성/소요시간/각급학교별 통학인구(12세 이상)
수도권,광역시/출발시각대/이용교통수단별 통근·통학인구(12세 이상)
수도권,광역시/출발시각대/소요시간별 통근·통학인구(12세 이상)
시도/자동차 보유여부/성,연령/이용교통수단별 통근통학인구(12세이상)
행정구역(구시군)/통근·통학지/성별 경제활동인구,재학인구

인구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통계청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요약)(2000), 보건복지부

학교 기본 통계 각급 학교 개황	학교총개황 학교현황	학생현황 시설현황
----------------------	---------------	--------------

교원현황
 사무직원현황
 학급 및 학과현황
 유치원현황
 유치원개황
 설립별 유치원수☆
 원아수별 유치원수☆
 연령별 원아수☆
 직위별 교원수☆
 자격별 교원수☆
 경력년수별 교원수☆
 학력년수별 교원수
 소지 자격 취득후 경과 년수별 교원수
 소지자격별 연수이수 교원수
 연령별 교원수
 호봉별 교원수
 교원 변동상황☆
 학교용지
 교사용도별 면적
 구조별 건물 동수
 구조별 건물 면적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 면적
 사무직원수
 초등학교 현황
 초등학교 개황
 학급수별 학교수
 학생수별 학교수
 학급편제 방식별 학급수
 특수지공립초등학교 현황(1)
 특수지공립초등학교 현황(2)
 복식학급 학교수
 학생수별 학급수
 학생변동상황
 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학년 및 연령별 학생수
 입학 상황
 졸업후 상황
 직위별 교원수☆
 자격별 교원수
 경력년수별 교원수☆
 학력년수별 교원수
 소지자격취득후 경과년수별 교원수
 소지자격별 연수이수 교원수
 연령별 교원수
 호봉별 교원수
 출신학교별 교원수
 교원 변동상황☆
 학교용지
 용도별 교사면적
 구조별 건물동수
 구조별 건물면적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 면적
 컴퓨터 보유 현황
 사무직원수
 중학교 현황☆
 중학교 개황

체육중학교 현황
 예술중학교 현황
 학급수별 학교수
 학생수별 학교수
 학생수별 학급수
 특수지 공립중학교 현황(1)
 특수지 공립중학교 현황(2)
 학년 및 연령별 학생수
 학생변동상황
 입학상황
 졸업후 상황
 장학금급여 및 학비감면자수
 장학금급여 및 학비감면액
 재량활동 선택교과목 개설 현황
 직위별 교원수☆
 자격별 교원수
 경력년수별 교원수☆
 학력년수별 교원수
 소지자격취득후 경과년수별 교원수
 소지자격별 연수이수 교원수
 담당과목별 교원수
 연령별 교원수
 주당수업시간별 교원수
 호봉별 교원수
 교원 변동상황☆
 출신별 자격증과목별 교원수
 자격증과목별 퇴직교원수
 학교용지
 용도별 교사면적
 구조별 건물 동수
 구조별 건물 면적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 면적
 컴퓨터 보유 현황
 사무직원수
 고등학교 현황☆
 고등학교 개황
 학급수별 학교수
 특수지 공립고등학교 현황(1)
 특수지 공립고등학교 현황(2)
 학생수별 학교수
 일반계 고등학교 현황☆
 일반고 개황
 예술고등학교 현황☆
 체육고등학교 현황
 과학고등학교 현황☆
 외국어고등학교 현황☆
 학급수별 학교수
 학생수별 학교수
 학생수별 학급수
 학년 및 연령별 학생수
 학생변동상황☆
 입학상황
 졸업자의 진학상황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
 장학금급여 및 학비감면자수
 장학금급여 및 학비감면액

종합고등학교 보통과 현황☆
 보통교과과정 현황
 보통교과 선택교과목 개설현황(인문사회과학군)
 보통교과 선택교과목 개설현황(과학기술과목군)
 보통교과 선택교과목 개설현황(예체능과목군)
 보통교과 선택교과목 개설현황(외국어과목군)
 보통교과 선택교과목 개설현황(교양과목군및기타)
 직위별 교원수☆
 자격별 교원수
 경력년수별 교원수☆
 학력년수별 교원수
 소지자격취득후 경과년수별 교원수
 소지자격별 연수이수 교원수
 담당과목별 교원수
 연령별 교원수
 주당수업시간별 교원수
 호봉별 교원수
 교원 변동상황☆
 출신별 자격증과목별 교원수
 자격증과목별 퇴직교원수
 학교용지
 교사용도별 면적
 구조별 건물 동수
 구조별 건물 면적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 면적
 컴퓨터 보유 현황
 사무직원수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실업계 고등학교 개황
 농업고등학교 현황☆
 공업고등학교 현황☆
 상업고등학교 현황☆
 수산 및 해양고등학교 현황☆
 실업고등학교 현황☆
 종합고등학교 현황☆
 학급수별 학교수
 학생수별 학교수
 학생수별 학급수
 학년 및 연령별 학생수
 과정별 학생수
 학생변동상황
 입학상황
 졸업후 상황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총괄)☆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인문계)☆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사회계)☆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교육계)☆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공학계)☆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자연

계)☆	고등공민학교 개황	장학금급여 및 학비감면자수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의약계)☆	고등기술학교 개황☆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총괄)☆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예체계)☆	각종학교(중학교) 개황☆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학교소재지별)☆
장학금급여 및 학비감면자수	각종학교(고교) 개황☆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전문대학)☆
장학금급여 및 학비감면액	연령별 학생수(공민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교육대학)☆
직위별 교원수☆	연령별 학생수(고등공민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대학)☆
자격별 교원수	연령별 학생수(고등기술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방송통신대학)☆
경력년수별 교원수☆	연령별 학생수(각종학교(중학교과정))☆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산업대학)☆
학력년수별 교원수	연령별 학생수(각종학교(고교과정))☆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기술대학)☆
소지자격취득후 경과년수별 교원수	분야별 학생수(고등기술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각종학교)☆
소지자격별 연수이수 교원수	분야별 학생수(각종학교(중고교과정))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원격대학)☆
담당과목별 교원수	학생변동상황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대학원)☆
연령별 교원수	검정고시 상황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사내대학)
주담당수업시간별 교원수	졸업자의 진학상황	졸업자의 진학상황
호봉별 교원수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공민학교)☆	직위별 교원수☆
교원변동상황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고등공민학교)☆	학위별 교원수
출신별 자격증과목별 교원수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고등기술학교)☆	전공계열별 교원수☆
자격증과목별 퇴직교원수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각종학교(중고교과정))☆	연령별 교원수
학교용지	자격별 교원수	경력연수별 교원수
교사용도별 면적	호봉별 교원수	주당 수업시간별 교원수
구조별 건물 동수	학교용지	호봉별 교원수
구조별 건물 면적	용도별 교사면적	교원변동상황
에너지 사용량	구조별 건물 동수	사무직원수
냉난방 면적	구조별 건물 면적	국적별 외국인 교원수
컴퓨터 보유 현황	에너지 사용량	구조별 건물 면적
사무직원수	냉난방 면적	교사용도별 면적
특수학교 현황	사무직원수	학교용지
특수학교 개황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도서관 현황
수용대상별 학교수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운영현황	전문대학 현황☆
연령별 학생수	고등교육기관 현황	전문대학 개황
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고등교육기관 개황(1) (총괄)☆	계열별 학생수☆
수용대상별 학생수	고등교육기관 개황(2) (전문대학)	연령별 학생수☆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고등학교 과정)☆	고등교육기관 개황(3) (대학)	입학상황(지원자)(1)
직위별 교원수☆	고등교육기관 개황(4) (대학원)	입학상황(입학자)(2)
자격별 교원수	고등교육기관 개황(5) (교육대학)	학생변동상황
경력년수별 교원수☆	고등교육기관 개황(6) (각종학교)	교육대학 현황☆
학력년수별 교원수	고등교육기관개황(7) (방송통신대학)☆	교육대학 개황
연령별 교원수	고등교육기관 개황(8) (산업대학)☆	연령별 학생수☆
호봉별 교원수	고등교육기관 개황(9) (기술대학)	입학상황
교원변동상황	고등교육기관 개황(10) (원격대학)	학생변동상황
학교용지	고등교육기관 개황(11) (사내대학)	
교사용도별 면적	재적외국인 학생수(1) (국가별)	
구조별 건물 동수	재적외국인 학생수(2) (유학형태별)	
구조별 건물 면적		
에너지 사용량		
냉난방 면적		
컴퓨터 보유 현황		
사무직원수		
기타 학교 현황		
공민학교 개황☆		

교육통계조사, 《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한국교육개발원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욕구 총괄/ 아동 개인 단위 가구원별 동거 여부 특성/제 특성별 아동 다위 부모의 특성

- 상 동 / 아동구분 및 지역별 아동단위 취업모의 월평균 소득 특성
- 상 동 / 미취학아동 연령별·학년별 현재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 상 동 / 아동특성별 모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험 및 그 시기☆
- 상 동 / 아동구분별 기관의 주변지역 백분율 분포
- 상 동 / 아동구분 및 지역별 보육시설 보육·교육 계획지공·급간식단 제공·부 및 빈도
- 상 동 / 아동구분 및 지역별 유치원 보육·교육계획제공·급간식단 제공·가정통신제공·발달 평가 제공 여부 및 빈도
- 상 동 / 아동구분 및 지역별 반일제이상 학원 보육·교육 계획 제공·급간식단 제공·발달평가 제공 여부 및 빈도
- 상 동 / 아동구분 및 지역별 선교원 보육·교육 계획 제공·급간식단 제공·발달평가 여부 및 빈도
- 상 동 / 아동구분 및 지역별 보육시설·유치원·반일제이상 학원·선교원 부모교육 실시여부 및 빈도
- 상 동 / 아동구분 및 지역별 보육시설·유치원·반일제이상 학원·선교원 부모교육 참여정도
- 상 동 / 아동구분 및 지역별 보육시설·유치원·반일제이상 학원·선교원 부모교육 도움정도
- 상 동 / 제 특성별 보육시설·유치원·반일제이상 학원·선교원 이용후 부모변화 정도
- 상 동 / 특기교육 종류별 별도 비용 지불시 비용/제특성별 기관이용 아동 월평균 추가 비용
- 상 동 / 보육시설 유형별 3세아·제특성별 3세아 보육시설·제특성별 3세아 유치원 월평균 비용
- 상 동 / 선교원 만족도 4점 평균 비교
- 상 동 / 미취학아동 모취업 및 가구소득별 기관서비스 이용 아동의 최초 서비스
- 상 동 / 현재 연령별 기관서비스 이용아동의 최초 이용 이유
- 상 동 / 제 특성별 정부지원 증가시 미취학아동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계획
- 상 동 / 아동연령별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
- 상 동 / 제 특성별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의 미이용이유/유치원 이용 중단 경험 및 가장 최근 이유
- 상 동 / 제 특성별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 비용·프로그램·교사 차이 인식
- 상 동 / 아동연령,가구소득별 시간제보육·야간보육·24시간보육·가구소득별 휴일 보육 필요성
-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교육기관 이용 및 육구 / 모취업 및 가구소득별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 여부
- 상 동 / 가구소득별 특기적성 프로그램 주당 횟수/프로그램에서 아동능력 개발 비중/프로그램 내용(순위종합)
- 상 동 / 가구소득별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이용 여부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및 육구 / 제 특성별 영유아 기관 및 개인보육 서비스 수
- 상 동 / 제 특성별 초등학생·영유아 개인보육 서비스 이용 수
- 육아지원정책 관련 의견 / 가구소득별 보육시설서비스의 중요점·유치원서비스의 중요부분에 대한 의견
- 상 동 / 모취업 및 가구소득별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 상 동 / 가구소득별 가정보육교사의 조건

전국보육교육이용및육구실태조사, 《전국보육교육이용및육구실태조사》,(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2004 한국교육인적자원지표》,(2004), 한국교육개발원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저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 연구개발비 패키지 소프트웨어 생산액 전기통신 특허수 통신 기술도입액 및 기술수출액 인구 천명당 PC보급대수(신규) 정보통신서비스 인력비중 컴퓨터 사용능력☆ 컴퓨터 이용시간(주평균)☆ 컴퓨터 이용목적(복수응답)☆ 전화보급률 이동통신, PC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인터넷 호스트수 및 도메인수 인터넷 이용목적(복수응답)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이용의향 인터넷 상거래 금액 최근6개월내 인터넷 쇼핑 경험 및 구매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6개월내 유료콘텐츠이용경험, 이용종류(복수응답) 케이블 TV 가입가구 판매관리전산시스템 도입 점포수 및 단말기대수★ 금융기관의 주전산기 및 단말기대수 필요 정보 압수경로(복수응답)☆ 정보화의 영향★☆ 정보예산대비 문화관광부 예산 문화예술시설 공간수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 도서관수, 장서수 및 이용자수 CD와 TAPE 구입(2000) 신간 도서발행실적 정기 간행물(잡지) 건수 해외여행자 비율☆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
--	---

가구당 여가활용비 지출률 ☆
공공 체육시설수 및 면적

생활시간(1999)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행정구역(시도)/성/연령/컴퓨터 활용상태별 인구 ☆
행정구역(시도)/성/연령/컴퓨터 보유여부/컴퓨터 활용상태별 인구 ☆
행정구역(시도)/성/가구주와의 관계/컴퓨터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교육정도/컴퓨터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직업(중분류)/컴퓨터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산업(중분류)/컴퓨터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연령/인터넷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연령/컴퓨터 보유여부/인터넷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연령/인터넷전용회선 보유여부/인터넷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가구주와의 관계/인터넷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교육정도/인터넷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직업(중분류)/인터넷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산업(중분류)/인터넷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컴퓨터 활용상태/인터넷 활용상태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연령/개인휴대용 통신기기 보유여부별 인구 ☆
행정구역(시도)/성/가구주와의 관계/개인휴대용 통신기기 보유여부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직업(중분류)/개인휴대용 통신기기 보유여부별 인구
행정구역(시도)/성/산업(중분류)/개인휴대용 통신기기 보유여부별 인구

인구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통계청

10세이상 인구의 평균시간-주행동,모든행동, 동시행동(5년주기:1999~2004)
연령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학생과 학생이외 인구의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학생의 재학정도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학생이외 인구의 학력별 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혼인상태별 평균시간(20세이상)(5년주기:1999~2004)
10세이상 인구의 행위자비율 - 주행동, 모든행동, 동시행동(5년주기:1999~2004)
연령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학생과 학생이외 인구의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학생의 재학정도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학생이외 인구의 학력별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
혼인상태별 행위자비율(20세이상)(5년주기:1999~2004) ☆
10세이상 인구의 행위자평균시간 - 주행동, 모든행동, 동시행동(5년주기:1999~2004)
연령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학생과 학생이외 인구의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학생의 재학정도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학생이외 인구의 학력별 행위자평균시간(5년주기:1999~2004)
혼인상태별 행위자평균시간(20세이상)(5년주기:1999~2004) ☆
'개인유지' 행위자비율 - 10세이상 인구(5년주기:1999~2004)
연령별 요일평균 '개인유지'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
'일'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
재학정도별 '학습' 행위자비율 - 학생(5년주기:1999~2004)
'음식준비·의류관리·청소' 행위자비율 - 20세이상 남자,여자(5년주기:1999~2004)
'음식준비·의류관리·청소' 행위자비율 - 20세이상 미혼,기혼자(5년주기:1999~2004)
'음식준비·의류관리·청소' 행위자비율-20세이상 기혼남자,여자(5년주기:1999~2004)
'집·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가정경영'행위자비율-20세이상 남녀(5년주기:1999~2004) ☆
'집·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가정경영'행위자비율-20세이상미혼,기혼자(5년주기:1999~2004)
'집·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가정경영'행위자비율-20세이상기혼남녀(5년주기:1999~2004)
'가족보살피기' 행위자비율 - 20세이상 남자,여자(5년주기:1999~2004)
'가족보살피기' 행위자비율 - 20세이상 미혼자,기혼자(5년주기:1999~2004) ☆
'가족보살피기' 행위자비율 - 20세이상 기혼남자,여자(5년주기:1999~2004) ☆
성별 '참여 및 봉사활동' 행위자비율 - 10세이상 인구(5년주기:1999~2004)
연령 및 취업여부별 요일평균'참여 및 봉사활동'행위자비율-남녀(5년주기:1999~2004)
'교제 · 일반인의 학습' 행위자비율 - 10세이상 남자·여자, 학생(5년주기:1999~2004)

- ‘교제·일반인의 학습’행위자비율-20세이상 취업자,취업기혼여자(5년주기:1999~2004)☆
- ‘교제·일반인의 학습’행위자비율-20세이상미취업자,미취업기혼여자(5년주기:1999~2004)
- ‘미디어 이용·종교활동·관광’행위자비율-10세이상 남녀, 학생(5년주기:1999~2004)
- ‘미디어 이용·종교활동·관광’행위자비율-20세이상취업자·기혼여자(5년주기:1999~2004)☆
- ‘미디어 이용·종교활동·관광’행위자비율-20세이상미취업자·기혼여자(5년주기:1999~2004)☆
- ‘운동·취미활동·여가관련 물품구입’행위자비율-10세이상남녀, 학생(5년주기:1999~2004)
- ‘이동’ 행위자비율 - 10세이상 남자·여자(5년주기:1999~2004)☆
- ‘일관련 이동’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 ‘학습관련 이동’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관련 이동’ 행위자비율(5년주기:1999~2004)☆
- ‘교제 및 여가관련 이동’ 행위자비율-남자,여자, 학생(5년주기:1999~2004)
- ‘교제 및 여가관련 이동’ 행위자비율-20세이상 미취업자·취업자(5년주기:1999~2004)
- 10세 이상 인구의 행동별 행위자비율(10분간격)(5년주기:1999~2004)

생활시간조사, 《생활시간조사보고서》(2005), 통계청

신문구독★

- 신문의 관심부문★☆
- 신문보도 내용에 대한 만족여부★
- TV 시청률 및 TV 시청시간★☆
- 즐거보는 TV 프로그램★☆
- 방송내용에 대한 만족여부 및 불만족이유☆
- 비디오 시청★☆
- 독서량, 만화등 기타서적 독서량★☆
- 음악감상방법★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방법★☆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 국내 관광여행 횟수★☆
-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
-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 레저시설별 이용자★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 지역문화 예술행사 참여 및 관람여부와 만족도★☆
- 지역문화 예술행사 불만족 이유★

독서인구 - 비율, 독서량, 잡지류를 제외한 총독서량, 잡지류 독서량, 교양서적 독서량, 직업·취미·정보서적

사회통계조사, 《2004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5), 통계청

-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문화예술인의 정보화실태
- 문화예술인의 첫 활동방식
- 문화예술인의 작품발표 기회
- 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
- 문화예술인의 의식
- 문학인의 발표 작품
- 문학인의 창작단행본 발표
- 문학인의 평론 및 논문 발표
- 미술인(발표작품, 단체전 발표횟수, 개인전 발표 횟수)
- 사진인(발표작품, 단체전 발표횟수, 개인전 발표 횟수)
- 건축인(발표작품, 단체전 발표횟수, 개인전 발표

- 횟수)
- 국악인(발표작품, 단체전 발표횟수, 개인전 발표 횟수)
- 음악인(발표작품, 단체전 발표횟수, 개인전 발표 횟수)
- 연극인(발표작품, 단체전 발표횟수, 개인전 발표 횟수)
- 무용인(발표작품, 단체전 발표횟수, 개인전 발표 횟수)
- 영화인의 발표 작품
- 대중예술인의 발표 작품
- 대중예술인의 방송출연 작품
- 대중예술인의 개인발표회 횟수
- 대중예술인의 단체발표회 횟수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4), 문화관광부

- 운동에 대한 정보원
- 운동빈도
- 주로 이용하는 운동장소

- 체육동호인회 가입률 및 가입하지 않는 이유
- 월평균 운동경비
- 운동경기 관람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04 문화예술통계》,(2005), 문화관광부

- 연간 문학행사 참가
- 연간 미술전시회 관람
- 연간 클래식·오페라공연 관람
- 연간 전통음악공연 관람
- 연간 연극공연 관람
- 연간 무용공연 관람
- 연간 영화 관람

- 연간 대중예술공연 관람
- 문화예술행사 참가 걸림돌
- 문화예술행사 관련 정보원☆
- 문화비 최대지출 항목
- 문화비 지출희망 항목
- 문화예술 사교육 경험
- 희망하는 예술교육 분야

연간 시·군·구민회관 문화행사 참여
연간 복지회관 문화행사 참여
연간 청소년회관 문화행사 참여

연간 문화원 문화행사 참여
연간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문화행사 참여
연간 사설문화센터 문화행사 참여

문화향수실태조사, 《2003 문화향수 실태조사》, (2004), 문화관광부

권리별, 시도별, 국별, 산업분류별, 내·외국인별 출원 및 등록
산업재산권통계, 《산업재산권 통계월보》, (2005년 9월), 특허청

연도별 총연구개발비 추이
연구개발비의 개발주체별, 재원별, 비목별, 단계별 현황
연구개발관계 종사자수 및 연구원수
수행기관수 및 성별, 학위별, 전공별 연구원수
연구개발주체별 외부유입, 연구종사자, 연구원 1인당 연구비, 지역별 분포
자체사용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주체별, 사회경제적 목적별 구성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2004)·통계정보시스템 KOSIS, 과학기술부

<p>인터넷 이용시기 및 이용률 유형별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성별 인터넷 이용률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직업별 인터넷 이용률 학력별 인터넷 이용률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이용 장소, 시간</p>	<p>가구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접속 가구 및 방법 가구 정보화 기기 보유 현황 유료콘텐츠 이용 현황 인터넷 쇼핑 이용률 및 만족도, 쇼핑구매품목★ 인터넷 बैं킹, 주식거래/투자활동, 전자메일 이용현황, 메신저 이용현황, 블로그이용 현황</p>
---	--

정보화실태조사,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2005), 정보통신부

정보화기반 - 컴퓨터/ 전체 PC보유현황
정보화기반 - 컴퓨터/ 가구부문 PC보유대수
정보화기반 - 컴퓨터/ 사업체부문 PC보유대수
정보화기반 - 네트워크/ 사업체부문/ 네트워크 구축
정보화기반 - 네트워크/ 사업체부문/ 네트워크 연결 형태
정보화기반 - 네트워크/ 사업체부문/ 네트워크 월평균 장애건수
정보화기반 - 네트워크/ 사업체부문/ 네트워크 장애요인
정보화기반 - 인터넷/ 연도별 인터넷 이용자수
정보화기반 - 인터넷/ KR도메인 현황
정보화기반 - 인터넷/ IP주소 보유현황
정보화기반 - 인터넷/ IP주소 할당현황
정보화기반 - 인터넷/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정보화기반 - 인터넷/ 모바일 주수(WINC) 등록현황
정보화기반 - 인터넷/ 국가망 이용신청 통계
정보화기반 - 통신/ 유선통신서비스 기반 및 이용
정보화기반 - 통신/ 무선통신서비스 기반 및 이용
정보화이용 - 통신/ 유선통신 서비스
정보화이용 - 인터넷 접속방법/ 가구부문 인터넷 주 접속방법
정보화이용 - 인터넷 접속방법/ 사업체부문 인터넷 주 접속방법
정보화이용 - 가구부문 인터넷 주 이용장소
정보화이용 - 가구부문 인터넷 이용자의 주 평균 이용시간
정보화이용 - 홈페이지/ 사업체부문 홈페이지 보유현황
정보화이용 - 홈페이지/ 홈페이지 제공기능
정보화이용 - 홈페이지/ 사업체부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업데이트, 업데이트 주기)
정보화이용 - 기타 응용서비스
정보화이용 - 가구부문 유료콘텐츠 이용현황(이용 경험, 이용 종류, 이용 비용, 결제방식)
정보화이용 - 인터넷뱅킹 이용현황(등록고객수, 월간 이용현황)

- 정보화이용 - 모바일뱅킹 이용현황
- 정보화이용 - 온라인증권(온라인 계좌수 및 위탁자 활동 계좌수, 온라인증권 및 전체 증권 약정금액)
- 정보화이용 - 사업체부문 원격근무 도입현황
- 정보화이용 - 통신/ 유선통신서비스(매출액, 이용건수)
- 정보화이용 - 통신/ 무선통신서비스(매출액, 이용건수)
- 정보화이용 - 통신/ 부가통신서비스(매출액, 이용건수)
- 정보화 투자 - 사업체부문 온라인 직원교육 현황(실시, 미실시 이유, 실시의향)
- 정보화 투자 - 정보통신부문 인력(전체 정보통신산업 인력현황, 비정보통신산업 IT인력현황)
- 정보화 인력 - 사업체부문 정보화책임관(CIO) 채용현황
- 정보화 인력 - 사업체부문 전산실 운영현황(운영비율, 운영방식)
- 정보화 인력 - 사업체부문 해킹 피해정도(등급별 횟수)
- 정보화 인력 - 사업체부문 해킹 신고 현황
- 정보화 인력 - 사업체부문 해킹 피해복구비용 발생현황
- 정보보호(보안)제품 - 사업체부문 정보보호(보안) 제품 사용현황(사용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사용현황, 정보(보안)제품 - 사업체부문 정보보호(보안)제품 사용효과(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사용효과, 방화벽(FIREWALL)사용 효과, 침입탐지시스템(IDS) 사용효과, 가상사설망(VPN) 사용효과, 인증/암호화(PKI) 사용효과, 보안서비스 사용효과, 통합 보안관리도구(ESM) 사용효과, 보안서버 사용효과, 백업제품 사용효과)
- 정보보호(보안)제품 - 사업체부문 정보보호(보안) 제품 사용의향(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사용의향, 정보보호(보안)제품 사용의향)
- 정보보호(보안)제품 - 사업체부문 보안정책 현황/ 사업체부문 자체보안정책 제정 실시
- 정보보호(보안)제품 - 사업체부문 보안정책 현황/ 사업체부문 보안 전담조직 운영
- 정보보호(보안)제품 - 사업체부문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현황/ 개인정보 수집현황
- 정보보호(보안)제품 - 사업체부문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현황/ 보호지침 제정 및 운영현황
- 정보보호(보안)제품 - 정보보호산업 현황 및 전망/ 정보보호산업 부문별 매출 현황 및 전망
- 정보보호(보안)제품 - 정보보호산업 현황 및 전망/ 정보보호산업 생산, 수출입, 내수 현황 및 전망

정보화통계조사, 《2004년 정보화 통계집》, (2004), 정보통신부

설악산 훼손지 복원사업(1998년이전)	문화재관람료현황	입장객현황
자연휴식년제 현황	청소장비보유현황	수입금 현황
자연학습관찰로 현황	2004년 월별 오물처리설치	입장료수입현황
자연해설 프로그램 운영현황	연도별 오물처리현황	집 사용료 수입현황
불법시설물 정비현황	연도별 헬기사용 오물처리현황	직영사업현황
산불예방 현황	연도별 청소작업인원 동원현황	국립공원 지정현황
산불방지기간 개방 및 통제탐방로 현황	연도별 안전사고현황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현황
연도별 행위 허가 처리현황	자동우량경보시설현황	국립공원 토지소유 현황
덕유산 훼손지 복원사업(1997년)	공원별 구조대 편성현황	국립공원 시도별 면적 현황
소백산 훼손지 복원 사업(1998년 이전)	공원별 구조장비현황	국립공원 시군구별 면적 현황
지리산 훼손지 복원 사업(1997년 이전)	탐방안내소 현황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현황
	사무소현황	매표소 현황
	안내표지판현황	주차장 현황
	공중화장실현황	야영장 현황
	탐방객 현황	대피소현황

국립공원기본통계, 《국립공원기본통계》, (2005), 국립공원관리공단

특허사건 접수·처리·미제 총괄	특허신청 재항고사건 처리상황
특허사건내용별 구성 - 접수	특허소송사건 누년비교표 - 접수
특허소송사건 종류별건수비교- 접수	특허소송사건 건수표 - 제1심(특허법원), 상고심
특허소송사건 접수·처리·미제건수	특허소송사건 처리기간별 건수표
특허소송사건 처리결과	제1심 특허신청사건표
특허소송사건 처리기간별/미제기간별 건수 및 평균 처리기간	상고심 특허재항고·신청사건표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인권질서 추구권

사회적 이동가능성에 대한 태도 | 사회단체 참여도 ☆ |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
주관적 계층 의식 | 자원봉사 참여율 ☆ | 주관적 만족감(2003)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법적구제권(체포, 구금/처벌중 또는 후)

영장사건 처리상황 - 전심급
구속영장 발부율 추이 - 전심급
제1심 형사신청사건의 추이 - 접수
제1심 형사신청사건 법원별 처리상황
형사신청사건 종류별 처리상황
배상명령사건 연도별 비교 - 전심급
형사(재)항고사건의 추이 - 접수
형사(재)항고사건 처리상황
가정보호(재)항고 임시조치 배상신청사건
국가배상사건 누년비교표 - 심급별
행정 재항고 및 상고심 신청사건 누년비교표 - 접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요죄명별 집행유예율 누년비교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인원수 및 무죄율 누년비교표
항소심/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처리결과 누년비교표
형사공판사건 판결률 및 상소율 누년비교표 - 합의·단독별
항소심/상고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인별 파기인원수 누년비교표
상고심 형사공판사건결과 인원수표 - 항소심(집계/고등법원/지방법원/), 상고심
형사사건 신청표 - 제1심/상소권회복
형사사건 신청표 - 항소심/상소권회복
형사항고·재항고사건표 - 형사항고사건표/집계
형사항고·재항고사건표 - 형사항고사건표/보석에 대한 항고
형사항고·재항고사건표 - 형사항고사건표/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형사항고·재항고사건표 - 형사항고사건표/구속의 취소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
형사항고·재항고사건표 - 형사항고사건표/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항고·재항고사건표 - 형사항고사건표/재심기각에 대한 항고
형사항고·재항고사건표 - 형사항고사건표/기타 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항고·재항고사건표 - 형사재항고사건표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인신보호(항소, 체포, 보상, 보석, 계약이유, 구속적부심)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청구인별 처리상황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석방률 비교
보석청구사건 처리결과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수 누년비교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비율의 추이
제1심 보석인원수 누년비교표
제1심 보석허가율의 추이
상고심 형사신청 및 재항고사건 누년비교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합의·단독, 구속불구속별 인원 수표 - 금년접수
형사사건 신청표 - 제1심/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사건 신청표 - 제1심/보석
형사사건 신청표 - 제1심/배상명령
형사사건 신청표 - 제1심/형집행유예취소
형사사건 신청표 - 항소심/보석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소송사건(처리)

| 검사 수사 사건

한국의사회지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약식명령사건 처리상황 및 법원별 처리상황
 즉결심판사건 법원별 접수인원 및 처리내용
 형사사건 누년비교표(총괄표) - 전심급
 형사공판사건 누년비교표(총괄표) - 심급별
 형사공판사건의 추이
 제1심 형사공판사건 누년비교표(총괄) - 법원별 접수
 제1심 형사공판 합의사건/단독사건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
 항소심/상고심 형사공판사건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
 제1심 형사공판사건 누년비교표 - 합의·단독별 접수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합의·단독별 구성 - 접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월별 접수인원수 누년비교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월별 평균 접수인원수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처리인원수 누년비교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과형별(자유형) 누년비교표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 - 심급별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별 인원수 누년비교표 - 심급별
 형사영구미제사건 법원별 누년비교표
 국선번호인 선정건수 누년비교표 - 심급별
 국선번호인 선정건수의 추이
 약식명령사건/즉결심판사건/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
 약식명령사건/즉결심판사건 접수인원의 추이
 재정신청사건 누년비교표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증감률 및 지수표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 누년비교표(총괄)
 본안사건 법관 1인당 부담건수의 추이
 본안외사건 중 기타사건/신청등사건 법관 1인당 부담건수의 추이
 본안사건 법관 1인당 부담건수 누년비교표 - 법원별
 본안외사건 중 기타사건 법관 1인당 부담건수 누년비교표 - 법원별(민사조정·간사조정·소년보즉결심판·영장)
 본안외사건 중 신청등사건 법관 1인당 부담건수 누년비교표 - 법원별(신청·독촉·집행·항고·재태료)
 행정소송사건 처리기간별 건수표 - 제1심(지방법원), 제1심(고등법원), 항소심,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별 인원수표 - 제1심(집계/합의사건/단독사건), 항소심, 상고심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사건 처리 인원수표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사건 처리기간별 인원수표
 국선번호인 선정 사건표
 약식명령사건 인원수표
 즉결사건 인원수표
 형사사건 신청표 - 제1심/기피
 형사사건 신청표 - 항소심/기피
 가정보호(재)·항고·임시조치·배상신청·국선보조인선임사건표
 법관 1인당 사건부담건수표 - 접수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적정절차

영장발부 인원수표
 행정소송사건 법원별 접수 및 종류별 건수
 행정소송(본안)사건 접수 처리 미제 건수
 행정소송(본안)사건 처리결과 -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행정소송사건 처리기간별/미제기간별 건수와 평균처리기간

행정신청 (재)항고사건 처리상황
 행정소송사건 누년비교표 - 심급별
 제1심 행정소송사건/행정신청사건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
 제1심 행정소송사건/행정신청사건 종류별 누년비교표 - 접수
 제1심 구속영장사건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
 제1심 압수수색검증영장 누년비교표 - 법원별 접수
 제1심 구속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감호영장·감정유치장 발부율 누년비교표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무죄추정/이중위험 금지

004년도 범죄개요/범죄자 생활정도·혼인관계 및 미혼자의 부모관계 ☆
범죄분석통계, 《범죄분석》, (2005), 대검찰청

명수배활용현황/의뢰 및 해제현황(연령, 근거법률기준)
 명수배활용현황/검거된 자에 대한 처리 현황
 명수배활용현황/지명수배 의뢰시점 기준 검거시까지의 소요기간
 명수배활용현황/지명수배 의뢰 당시의 보호관찰 잔여기간
 명수배활용현황/검거된 대상자의 종국처리현황
보호관찰통계, 《보호관찰통계연보(2004)》, (2004), 법무부

여성범죄 발생상황 ☆
 여성범죄 범행동기 ☆
 여성범죄자 생활정도·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여성범죄자 연령별
 여성범죄자 처분결과 ☆
 범죄자(범행시 연령, 성별, 직업, 내·외국인별, 외국인 처분결과, 전과, 남녀 및 성·소년별 전과, 전회처분 상황, 범행 후 은신처, 마약류 등 상용여부, 범행시 정신상태, 범행동기, 교육정도, 종교, 조치상황, 자백여부) ☆
 재범자(남여 및 성·소년별 전회처분 상황, 재범기간 및 종류) ☆
 범죄자 공범 관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강도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절도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여성범죄자(범행시 연령, 직업, 전과, 전회처분 상황, 재범기간 및 종류, 공범관계, 범행동기, 교육정도, 생활정도·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처분결과) ☆
 공무원범죄자(소속기관, (직무관련)소속기관과 직급, 범행동기, 생활정도 및 혼인관계, 처분결과, (직무관련)소속기관별 처분결과)
 전과자(범행시 연령, 전회처분 상황, 보호처분 상황, 재범기간 및 종류, 마약류 등 상용여부(A,B), 정신상태(A,B), 범행동기, 생활정도 및 혼인관계, 구속·불구속 상황, 처분결과)
 정신장애 범죄자(전과, 전회처분 상황, 보호처분 상황, 범행동기, 생활정도 및 혼인관계, 구속·불구속 상황, 처분결과)
범죄분석통계, 《범죄분석》, (2005), 대검찰청

죄형법정주의

재산범죄의 죄명별 발생상황 | 강력범죄 죄명별 발생 및 검거상황

범죄분석통계, 《범죄분석》, (2005), 대검찰청

재산범죄의 죄명별 발생상황 강력범죄 죄명별 발생 및 검거상황 제1심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무기형(징역·금고) 인원수 누년비교표 소년보호사건 중요죄명별 누년비교표 - 접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20세 미만자 중요죄명 별 재판 인원수표 사회보호처분 청구사건 인원수표 가정보호사건죄명별 접수 재정신청사건 죄명별 인원수표
---	---

사법통계, 《사법연감》, (2005), 대법원

수형자의 권리

교도소 수용인원, 교도관수 및 교도예산

한국의 사회지표일반/,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통계청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기소유에 실시현황/개시 및 종료(급수별, 남녀별, 연령별, 활동상태별, 죄명별 현황)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기소유에 실시현황/처우별현황(성적불량자 조치, 원호 및 응급구호)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기소유에 실시현황/재범현황(당해년도 재범현황, 개칭이후 재범현황)

보호관찰통계, 《보호관찰통계연보(2004)》, (2004), 법무부

수용현황/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현황/인구대비 수용인원
 수용현황/수용자 성별인원
 수용현황/수형자 연령별 인원
 수용현황/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수용현황/수형자 죄명별 인원
 수용현황/수형자 죄명, 형기별 인원

수용현황/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수용현황/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미결구금자/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미결구금자/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가석방/가석방자 입소사유별 인원
 가석방/가석방 인원과 전체 수형자 석방인원

재소자수용 -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 교정자료실 통계자료, 2002, 법무부

수용자 교육훈련/일반학과 교육인원
 수용자 교육훈련/검정시험 합격인원
 수용자 교육훈련/검정고시 수석합격 인원
 수용자 교육훈련/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수용자 교육훈련/대학입학시험 합격인원
 수용자 교육훈련/직업훈련 인원
 수용자 교육훈련/수능자격 취득인원

수용자 교육훈련/기능경기대회 입상인원
 수용자 교육훈련/귀휴인원
 수용자 교육훈련/사회견학 인원
 수용자 교육훈련/교화위원 현황
 수용자 교육훈련/교화위원 활동실적
 수용자 교육훈련/종교위원 현황
 수용자 교육훈련/종교위원 활동실적

수용자 교육훈련 -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 교정자료실 통계자료, 2002, 법무부

생산실적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년도별 관수용품 공급실적

작업상여금 지급실적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감호자 위로금 지급실적

교도작업운영 -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 교정자료실 통계자료, 2002, 법무부

<부록4. 정부통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기관별)>828)

1. 통계청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1	지표	'성차별에 대한 인식' 지표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이 인간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보느냐 아니냐' 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통계를 내야함	2004 한국의 사회지표	평가척도·방법 개발해 성차별 현황과악과 개선에 활용
2	지표	'60세 이상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 지표에서 '용돈'은 삭제하고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충당) 방법'으로 교체	상 동	노인을 자기생활의 주체로 보아야 함
3	지표	'노인문제'의 영문지표 'Problems of old man'을 'Problems of the aged/the elderly'로 교체	상 동	성차별 의식 반영
4	지표	'노인문제' 지표만이 아니라 노인이 주체적으로 느끼는 '노인의 일들(daily affairs)'에 대한 지표 추가	상 동	노인은 문제가 있다고 기정사실화한 비인권적 접근임
5	지표	'노동생산성 지수' 지표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물적 노동생산성 지수' 및 '부가가치 생산성 지수' 지표 추가	상 동	물적노동생산성지수가 전체 노동생산성을 의미하지 않음.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도가 노동자의 일할권리에 근접
6	지표	'유배우 부인당 평균출생아수' 지표 외에 '유배우자 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평균출생아수' 지표 추가	상 동	-여성 건강 조사목적에 부합 -중복(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지표	'가족계획실천율' 지표 삭제하고 '진료소나 보건소 등의 피임 관련 실적'으로 교체	상 동	피임방법 조사 지표임. 정책에 대한 '실천' 조사는 부적절하며 반인권적
8	지표	'연령별 여성 이혼율'을 '연령별 이혼율'로 교체	상 동	성차별적
9	지표	'편부모 가구 비율'에서 '편부모' 용어 교체	상 동	-
10	지표	2장의 '가족' 부문에서 가족형성의 관심영역 하위에 세부 관심영역인 '가족의 해체'는 '가족관계의 변경 또는 해소'로 하고 '변경'은 자녀 등 기존 관계 유지의 경우, '해소'는 그렇지 않는 경우로 지표화하고 같은 영역의 세부지표인 '평균 이혼 연령', '조이혼율', '사유별 이혼 구성비'는 삭제	상 동	양성 결합만을 전제한 '가족'개념임. 현실 미반영
11	지표	'가족의 형태별 분포' 지표에 '비혼인 가족' 추가	상 동	남성 중심적

828) ①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관별 인권친화적으로/인권보장을 위해 수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없다고 하여 해당기관이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혹은 기관별 인권친화적으로/인권보장을 위해 수정/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여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는 아님. ②해당사항이 없는 기관은 목록에서 생략함. ③<비고>란에 해당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는 부처를 표기하였으며, '각 부처(기관포함) 공통' 은 중앙부처 전체가 수정/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뜻하며, 해당내용의 주 부처에 이를 표기함. ④통계청의 통계 승인순서에 따라 부처 순서를 기술함.

12	지표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 지표 삭제	상 동	여성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결혼·출산과 결부하여 인식
13	지표	‘성씨, 본관’ 지표 폐기	인구총조사	가부장적
14	지표	‘노사분규 건수’ 지표는 ‘과업 발생수’/‘단체행동 건수’로 교체	2004 한국의 사회지표 ·2004노동통계연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권에 대한 반인권적 인식
15	지표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방법’·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지표의 재구성과 국가 또는 공공 영역의 서비스 및 시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추가	2004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여가의 권리는 쉼 권리(right to rest)와 달리 ‘정신적이거나 자신의 관심사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위 지표들은 노동일 외의 시간에 쉬는 방법으로 잘못 이해하고 구성됨
16	항목	학력별의 통계들에서 ‘조졸 이하’ 항목은 ‘중졸 이하’로 통합하고 ‘정규교육 받지 않은 국민’ 항목 추가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임
17	항목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용방법’·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지표에서 ‘개인의 교육정도’의 항목을 ‘소득 수준별’ 로 수정	2004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교육정도와 여가활용의 연관성이 적으며, 소득별 통계가 현실을 반영함
18	항목	모든 ‘종사자수’는 ‘피고용인수/(근로자수)’ 및 ‘자영인수’로 교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기존 직군구분을 종사자로 변경한 것은 사람 중심이나 일, 업종 등에 부속된 의미가 강해 차별적 인식 내포
19	항목	‘성차별에 대한 인식’ 지표의 ‘학력별’ 항목을 (‘공무원을 포함한) 직업군별’ 항목으로 교체	2004 한국의 사회지표	-학력차별 -직종/직업군별 성차별인식을 확인하고 -공무원의 성차별인식 실태도 파악해야함
20	항목	‘편부모 가구 비율’ 지표의 ‘혼인 상태’ 항목의 ‘미혼’ 삭제	상 동	취약가구에 미혼 자녀 포함은 부적절
21	항목	‘정부세출의 기능별 구성’· ‘국민 1인당 GDP대비 기능별 세출’ 지표에 ‘사회개발’ 항목 추가	상 동	-
22	항목	‘60세이상 인구의 거동불편 여부’ 지표와 연동하여 ‘60세 이상 인구의 거동불편자 중 생활실태 항목 추가 (거동 도움자 유무, 바깥 출입 회수 등)’	2004 한국의 사회지표·인구총조사	-
23	항목	‘노후 준비 방법’ 지표 중 ‘준비없음’ 항목에 ‘사유’ 추가	상 동	-
24	항목	‘65세이상 취업자의 산업 및 종사상 지위’에 관한 지표에서 ‘임금 봉급 근로자’ 항목은 ‘근로자’/‘임금노동자’/‘피고용자’/‘피용자’로 교체, ‘임원’, ‘중간관리자’ 추가, ‘숙련/미숙련 임금 노동자’ 추가	상 동	-
25	항목	‘노인문제’ 지표에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등 항목 세	상 동	노인 주체가 아닌 전

		분화 필요. 노인 연령대 항목 '60세 이상'도 노인들 인식에 따라 현실성 있게 수정		세대가 인식하는 노인 문제로 접근
26	항목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지표의 '미혼'은 '비혼' 또는 '단독(/독신)'으로 교체. '기타' 항목에 '사별', '이혼'으로 세분하고 '부양가족 유무' 추가	상 동	-
27	항목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 지표와 그 외 직종을 표시하는 통계의 항목에서 '종사자'라는 용어를 직군별로 세분화해 수정해야함 (서비스종사자는 서비스직(또는 서비스직 근로자), 전문가는 전문직, 기능원은 기능직, 단순노무종사자는 노무직 등)	상 동	차별적 인식 내포
28	항목	'외국인 근로자 현황' 지표 중 '예술행' 항목은 '공연예술'로 교체	상 동	예술을 상업과 결부시켜 예술가 지위 격하. 해당 E6비자는 '공연·예술비자'임
29	항목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연간경상소득' 지표의 '무직(not employed)' 항목은 '미고용' 또는 '미취업'으로 교체	상 동	사회통념상 무직에 대한 비하 의미 내포
30	항목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태도' 지표 중 '소득별' 항목 추가	상 동	-
31	항목	'유배우 부인당 평균출생아수' 지표 중 '부인'은 '여성'으로 교체	상 동	-
32	항목	'한방의료기관 이용자 비율 및 평균 방문횟수' 항목 중 '무학'은 '교육기회 농침' 또는 '교육기회 없음'으로 교체	상 동	-
33	항목	'사회단체 참여도' 지표 중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는 삭제하고 '전문 영역'으로 통합하고 '사회봉사단체'는 '사회단체'와 '봉사단체'로 세분화하고 전자는 직능단체, 시민운동단체, 인권단체, 후자는 공적봉사단체, 자발적 봉사단체로 구분. '사회단체 참여도' 지표에 참여방식, 시간 등을 추가	상 동	-
34	항목	'여성 취업에 관한 견해' 지표와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항목 중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과 '여성의 능력 부족' 항목은 '사회적 편견과 관행' 항목과 중복. 삭제 또는 항목 세분화	2004 한국의 사회지표·사회통계조사	여성에 대한 사회적·객관적 항목과 남성 중심 인식 항목 병기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4개 (통계: 0종, 지표: 15개, 항목: 19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국민의 국정참여도 총조사	-	-
2	통계	성 소수자의 가족형성권에 대한 태도조사	-	-
3	통계 지표	환자의 권리나 건강 관련 정보 문제와 의료윤리처럼 인권영역에의 중요 부분의 통계/지표 개발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중복(보건복지부)
4	지표	여성취업에 대한 사업주의 요인별 태도 조사	2004 한국의 사회지표	-
5	지표	합의 이혼시 '이혼 제의 주체' 조사	상 동	-
6	지표	'55세 이상 취업자 비율' 지표는 '60세 이상 취업자 비율'로 변경 또는 55세부터 1세 간격 추계. 또한 "55세~59세	상 동	사실상의 노동상실 또는 노인에 속하는 연

		실업자 수와 실업기간 및 구직활동 기간” 지표 개발		령으로 바뀌어야 함
7	지표	‘여성 취업에 관한 견해’ 지표 삭제 및 성별 ‘결혼과 취업에 관한 태도’ 지표 개발	상 동	성 평등
8	지표	‘독신에 대한 태도’ 지표	상 동	-
9	지표	‘문화예술 시설 방문 또는 관람 여부’ 관련 지표는 문화의 실질적인 향유와 문화 접근의 용이성 여부로 지표 (/항목) 개발	청소년 통계	승인통계 아님
10	항목	노인 관련 각종 항목 중 연령구분을 60세부터 1세 단위로 세분화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보장 기초자료로 활용성 증대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0개 (통계: 3종, 지표: 6개, 항목: 1개)		
계		수정·개발되어야할 통계·지표·항목: 44개 (통계: 3종, 지표: 21개, 항목: 20개)		

2. 과학기술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지원 연구실적의 사회화 정도에 관한 실태조사	-	-
2	통계	불법 배아복제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	중복(보건복지부)
3	통계	배아복제 등의 의료인 윤리문제 관련 통계 개발	-	상 동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개 (통계: 3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할 통계·지표·항목: 3개 (통계: 3종, 지표: 0개, 항목: 0개)		

3. 환경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지표	적절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	-	단속위주의 통계임
2	지표	사회적 유해 환경에 대한 지표	-	상 동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2개 (통계: 0종, 지표: 2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할 통계·지표·항목: 2개 (통계: 0종, 지표: 2개, 항목: 0개)		

4. 행정자치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각종 행정자문위원회의 직업(/직군)별 민간 참여 현황	-
2	통계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관한 설명의무와 책임의무에 대한 태도	-
3	통계	공무상 상해를 당한 경찰, 군인 및 공무원 현황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실 >경무
4	통계	(이유별)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횟수와 비율	-
5	통계	주민등록 직권 말소 건수와 이에 대한 민원/이의신청/진정/고발/제소 건수	-
6	지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요구 건수	-
7	지표	정책 반영 및 정책/행정 서비스 만족도와 불만족의 원인	-
8	지표	각종 민원 서류의 발행 실적(대리인 신청에 의한)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8개 (통계: 5종, 지표: 3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8개 (통계: 5종, 지표: 3개, 항목: 0개)		

5. 법무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지표	'2002 수용자교육훈련' 통계에서 '사회견학 인원' 지표의 '사회견학'은 '외부견학 인원'으로 교체	법무부>교정자료실>통계자료
2	항목	'2002 재소자 수용' 통계 중 '소년수형자' 항목은 '미성년수형자' 또는 '아동 수형자'로 교체	상 동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2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1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생명권 존중을 위한 통계 개발	-

과거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자료와 사법외, 약식처형, 현행법상의 사형관

				련 통계를 포함해야함
2	통계	천부적 자유와 존엄성 영역의 공식 통계가 거의 없는 것 자체가 우려할 만하고 개발되어야함	-	천부적 자유와 존엄을 일반 사회관행으로 인식하거나 사회 온정주의에 기대어 공적영역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임
3	통계	과거 국가개입 생명권 침해 사건 현황	-	-
4	통계	적극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설·제도·운영분야 통계에서 국민 또는 고객의 만족도 또는 국민 인식과 같은 조사통계 등으로의 개발	-	-중복(검·경찰청, 소방방재청) - 관련부서의 자기업무에 대한 추적 또는 실적에 대한 기록(records)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보고한 보고통계임-국민의 인권과 눈높이 하는 인식이 통계에 반영돼야
5	통계	국가가 직간접으로 관여된 생명권 침해사건 현황 및 침해	-	-
6	통계	사형 확정자의 현황(사회경제적 지위 포함)과 처우에 관한 통계	-	-
7	통계	내국인 아동의 해외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건수	-	-
8	통계	내국인의 국적 이탈자 수(국적 취득국별)	-	-
9	통계	외국인의 귀화 신청 건수와 승인 수 및 비율	-	-
10	통계	재외교포(국적 이탈자 포함)의 국적 회복자 수	-	-
11	통계	강제노역자의 노임지급 실태와 노임의 적립 방법에 관한 통계	-	-
12	통계	구급시설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현황	-	-
13	통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보호조치 제외)	-	-
14	통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아동의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건수	-	-
15	통계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부모 상봉 제한 건수	-	중복(노동부, 보건복지부)
16	통계	보호처분된 외국인의 기간별 보호 현황	-	-
17	통계	퇴거 외국인의 재입국률	-	-
18	통계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자행된 국민에 대한 왜곡된 국가기록 실태조사	-	-
19	통계	주민등록증 발급 거부자/미발급자 현황	-	-
20	통계	지문 및 유전자 등 국민의 생체적인 정보의 강제 취득 실태	-	중복(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21	통계	인감증명서 발급 실적 및 도용 건수	-	중복(행정자치부, 검찰청)
22	통계	잘못된 신상에 관한 국가기록 시정 요구 건수와 실현 건수	-	중복(행정자치부)
23	통계	민간인 학살 사건이나 사범외 살인 사건에 대한 법원 및 법무부 등의 통계	-	중복(대법원,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4	지표	중대한 범위반(인권침해) 예방 활동 실적 및 성과 지표	-	중복(경찰청, 검찰청)
25	지표	취업 목적의 내국인 출국 현황 또는 장기 해외체류자 현황	출입국가 통계	-
26	지표	보호관찰자의 민원 및 진정 사건 처리 결과에 관한 통계	보호관찰통계	통계/지표
27	지표	강제출국 대상자 또는 보호조치 대상자의 이의신청 건수와 수용 비율	-	-
28	지표	미성년 수형자의 부모 및 후견인, 기타 관계인의 면회횟수	법무부>교정자료실>통계자료	승인통계 아님
29	지표	원인별 미성년 수형자 중 재범(누범) 비율	상 동	-
30	지표	미성년 수형자의 부과 징역형별 현황	상 동	-
31	지표	미성년 수형자의 학교 학습 기회 부여 건수(비율) 및 실적	상 동	-
32	지표	청소년 수형자 현황	상 동	-
33	지표	수형자 1인당 의료비 예산	상 동	-
34	지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형자의 만족도	상 동	-
35	지표	흡연에 대한 수형자의 태도 조사	상 동	-
36	지표	수형자의 국립 의료기관 이용 실적	상 동	-
37	지표	수형자 1인당 평균 면회 신청(월) (+건수)	상 동	-
38	지표	1회 면회시간에 대한 수형자의 만족도	상 동	-
39	지표	수형자의 총 진정건수 및 1인당 평균 진정 건수(/진정을 한 수형자 1인당 평균 진정 건수)	상 동	-
40	지표	수형자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외상 치료 건수	상 동	-
41	지표	지병을 갖고 있는 수형자 수	상 동	-
42	지표	벌금을 대신하여 강제노역을 하는 자의 수	-	중복(대법원)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42개 (통계: 23종, 지표: 19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44개 (통계: 23종, 지표: 20개, 항목: 1개)			

6. 교육인적자원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연수 근무 실태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7. 문화관광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국민의 문화권 향유 실태 (공공문화 시설 무료 입장 실적/공공 미술관의 국민참여 프로그램 유무 및 총 참여 인원수/공공 미술관의 입장료 수익과 흥행목적의 전시회 유치 건수와 일수/공공 미술관 및 음악당, 공연장의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설치 여부)	-
2	통계	공공 문화시설의 문화향유권 보장 현황과 실태(공공 미술관의 작품 매입 비용)	-
3	통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의 기여 형태와 기여 총액	-
4	통계	시·군구별 문화향유권 보장실태 등(시군구별 문화예술인 총람 존재 여부 또는 현황 유지/연간 시군구별 지역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개최 건수와 연참여 인원/주민자치센터 또는 문화의 집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주민수(중복 회피)/시군구별 정기적인 문화예술제 실시 여부와 관련 지출 현황/시군구별 옥외 공공 극장 또는 공연장소 존재 여부 및 운영 실적/시군구별 문화 수요 조사/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문화교류 현황 및 실적/최근 1년 이내에 개봉된 영화를 지자체 문화시설에 무료로 상영한 횟수)	-
5	통계	우리문화 보전 실태(해외 소개 또는 약탈 문화재 현황 및 보전·반환 노력 실적/인간문화재 및 그 이수자의 생활 실태 조사/전통문화 보전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국립·공공 민속박물관 등의 운영 실태와 지원 현황)	-
6	통계	정부 기관 또는 공공시설에서 특정 종교 차별에 관한 실태 조사	-
7	지표	‘문화정책에 문화예술인의 의사반영 만족도’ 지표의 개선 및 원인관련 지표 추가 개발	문화예술인실태조사
8	지표	시군구별 게임방 현황 및 청소년 이용실태	-
9	지표	재외 공관 및 재외 한국문화관 등의 운영 실적	-
10	지표	한글의 바른 사용을 위한 국가기관의 교육 및 홍보 실적	-
11	지표	공연 및 영상물에 대한 사후 금지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건수	중복(대법원)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1개 (통계: 6종, 지표: 5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1개 (통계: 6종, 지표: 5개, 항목: 0개)		

8. 농림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의 유통 실태	-	-
2	지표	농림부의 농업과 임업 등의 기본조사 또는 총조사 통계에서 관련 업종의 노동자 또는 실업 및 고용 상태에 대한 지표 개발	각 실태조사 및 현황보고 통계	-
3	지표	귀농인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 실적	-	-
4	지표	농업 외 직업을 갖고 있는 농가 수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4개 (통계: 1종, 지표: 3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4개 (통계: 1종, 지표: 3개, 항목: 0개)		

9. 산업자원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지표	산업자원부의 통계는 산업 위주의 통계로 실업 또는 동일 업종의 해고나 실업 관련 지표의 개발 필요	-	기업입장에서 '고용'과 관련된 통계 또는 인력 수급의 차원만 다름
2	지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차별 인식 조사	-	중복(노동부)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2개 (통계: 0종, 지표: 2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2개 (통계: 0종, 지표: 2개, 항목: 0개)		

10. 건설교통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강제철거 집행과 개발지구 세입자의 주거 실태	-	-
2	통계	국내(또는 국제) 여객선 및 여객 항공기의 취항 취소 및 결항률 및 국민의 불편 제기 현황	-	-
3	지표	주택 원가 공개와 주택소유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개 (통계: 2종, 지표: 1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개 (통계: 2종, 지표: 1개, 항목: 0개)		

11. 보건복지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1	통계	통계 명 자체가 부적절하고 '부녀'를 '여성' 또는 '어머니'로 수정	부녀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현황 보고	'부녀(婦女)'는 봉건적 의미로 평등원칙에 부 합되지 않음(관련통계 는 2005.6월부터 여성 가족부로 이관됨)
2	통계	통계 명을 '한센인 치료 현황'으로 수정	한센병 관리 사업실적	난치병 환자에 대한 방 치·격리· 관리적 의 미
3	통계	통계명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설치 및 개선 현황'으로 수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보고	-5년주기 조사는 실태 파악과 개선에 미흡 -용어가 행정 시혜적 용어이며, 권리 중심적 용어로 수정해야함
4	통계	통계명을 '미성년 가정세대 현황보고' 또는 '미성년 세대주 (/원) 현황보고'로 수정	소년소녀가정 세대현황보고	-
5	지표	'아동상담소 상담아동 발생배경' 지표의 (결손가정, 결함가 정, 영세가정, 일반가정, 복합상태가정) 등은 으로 완전개 편 혹은 관련 지표 삭제	요보호아동현 황보고	특정집단에 대한 이유 없는 배제를 전제 한 차별관행
6	지표	보건복지부 인터넷 통계자료실 분류의 나환자등록관리현 황의 '나환자'를 '한센인'으로 수정	한센병 관리 사업실적	반인권적 용어
7	항목	'세대주 학력' 지표에서 '미재학자' 항목은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로 구분한 지표 필요	소년소녀가정 세대현황보고	-
8	항목	'사망진단서 모집자료 내용(영아사망)' 지표의 양로원, 고아 원 항목은 '노인 보호시설' 또는 '아동 보호시설'로 수정	영아사망조사	-
9	항목	'출생신고 자료' 지표의 항목 중 '적자여부' 라고 표현한 것 은 '혼인내 출산 또는 혼인의 출산' 아니면 그 항목 자체를 삭제	상 동	비인권적 용어
10	항목	'아동 상담소 상담아동 발생유형' 지표의 '비행·부랑아, 기 아, 학대·방치아, 미아, 일반아동, 기타'의 항목의 개선도 필요하며, 지표 자체의 적절성도 문제가 됨으로 지표 삭제 검토	아동상담현황 보고	아동구분은 차별에 해 당
11	항목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 지표에서 '미혼모 부모'라는 항목 삭제	요보호아동현 황보고	-
12	항목	'부랑인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현황' 지표에서 입소자와 퇴 소자란에 '자진입소' 항목을 '자원입소'로 수정	부랑인복지시 설 입소자 및 종사자현황	-
13	항목	'부랑인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현황' 지표에서 기밀수용자 수란의 '건강상태별'란 항목의 '정신박약'을 '정신지체'로 수 정	상 동	비인권적 용어
14	항목	'부랑인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현황' 지표에서 퇴소자란의 '도망'항목을 '알리지 않고(/미통보) 떠남(/이탈)'으로 수정	상 동	반인권적·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용어
15	항목	'부랑인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현황' 지표에서 퇴소자를 구 분하는 항목 중 전원(轉院)의 경우 '다른 시설 또는 (정신)병원 입원' 등의 항목 추가	상 동	-
16	항목	'부랑인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현황' 지표의 '기타' 항목에	상 동	-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알리지 않고(/미통보) 떠남(/이탈)’ 또는 ‘자원 퇴소’자는 별도 항목의 통계		
17	항목	‘부랑인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현황’ 지표의 ‘기타’ 항목을 ‘퇴원’후 재입소(재입소율 및 재입소자별 재입소 횟수 및 원인)하는 경우를 구분한 항목 추가	상 동	-
18	항목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총괄 집계표’ 지표에서 설치대상수와 실제설치수, 설치율의 항목에 개선대상수 · 실제개선수와 개선율을 포함해야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보고	-
19	항목	‘2005년도 1사분기 정신요양시설 입소환자 현황’ 지표 ‘1분기 퇴소’란의 항목을 ‘유료/무료 위탁자’와 ‘연고자 유/무’를 병기한 통계	정신질환자 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절대적인 약자를 보호
20	항목	‘일반수급자 연령별 · 종류별 현황(시도별)’ 지표에서 5년 주기의 미성년 · 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항목을 각 연령별로 세분화해 공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현황	절대적인 사회적 보호 관련통계로 사용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 · 지표 · 항목: 20개 (통계: 4종, 지표: 2개, 항목: 14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태아사망원인’에 대한 별도 통계	영아사망조사	태아사망의 구체적 항목부족
2	통계	생체실험이나 배아에 관한 종합 관리 통계 (병의원별 냉동 보관 배아 현황/ 병의원별 배아 이식 현황/ 인공수태시술기관의 배아 냉동보관 동의서 현황/ 생명공학 업체의 배아 이용현황 등)	-	중복(과학기술부)
3	통계	인신매매 등 직접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것과 관련된 통계	-	-
4	통계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행위	-	-
5	통계	16세~64세 사이의 만성 장애인 인구 비율	-	-
6	통계	사회구조적인 약자에 대한 실태와 관련된 통계	-	-
7	통계	수용시설 또는 보호시설에 사실상 구급되어 있는 아동의 실태조사 (수용시설 또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비자발적인 노동 실태)	-	-
8	통계	시설 수용자의 (사실상의) 강제 근로와 임금 지급 현황	-	-
9	통계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관련 통계(장애인 접근과 관련한 목표 대비 개선 실적 현황/ 장애인 이동 수단별 현황과 동행 등의 지원 현황)	-	-
10	통계	정신지체 장애자 또는 전염병 감염인의 예방적 격리 현황	-	-
11	통계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4조의 거주지 이동 상황 신고 이행 실태 및 처벌 상황	-	-
12	통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자의 소득실태	-	-
13	통계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의 추정 조사(또는 전수조사)와 그 원인에 관한 통계	-	-
14	통계	상대적 빈곤선에 속한 자의 각종 보험 급여 지급 현황	-	-

15	통계	연간 의료 분쟁 건수 및 총액과 재판 결과	-	-
16	통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의료 접근권에 관한 실태	-	-
17	통계	만성질환자 및 난치병 환자들의 약품 구입 지출 및 의료비 지출 현황	-	-
18	통계	난치병 치료약의 특허 현황과 국내(/국가)의 의약품 특허 보유 현황	-	-
19	통계	노인성 및 성인성 질환에 대한 국가의 공적 지출 비율	-	-
20	통계	육체노동자 중 10대 상병과 치료 현황	-	-
21	통계	지문 및 유전자 등 국민 생체적인 정보의 강제취득 현황	-	-
22	통계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실태와 범죄 현황	-	중복(정통부, 검·경, 청소년보호위)
23	통계	섹스 산업의 현황과 종사자(특히 미성년자)의 인권실태 조사통계	-	중복(여성가족부, 청소년위)
24	통계	아동 실종 현황	-	-
25	통계	정신건강과 사회건강 관련 통계 개발	-	-
26	통계	의료지식, 의료윤리 관련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통계	-	국민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국가로부터 당연히 구호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의식의 형성 확보
27	통계	환자의 권리, 건강 관련 정보 문제, 의료윤리 부문의 통계 개발	-	-
28	지표	(아동/노인/여성) 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주관적 지표)	-	중복(여성가족부)
29	지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부모 상봉 제한 건수	-	중복(법무부, 노동부)
30	지표	‘재입소자(다른 요양시설에 있던 경험을 포함) 현황’ 지표/항목 개발	정신질환자 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현황	-
31	지표	‘부랑인생활시설수 및 생활인원현황’ 지표에서 ‘시설생활수용자’ 항목에 입소기간별 통계 개발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현황	-
32	지표	입소자 중 직업보도대상자 현황 지표 개발	상 동	-
33	지표	입소자 1인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및 보조금 총액지급 총액(용도별) 통계 개발	상 동	-
34	지표	입소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주별 평균 노동시간 및 월별 노임에 관한 지표(현금 보관 방법 포함) 개발	상 동	-
35	지표	1인당(/1가구당/가구 구성원당)(월별) 평균 급여 집행 실적(지역별,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구분) 개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36	지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중 유료(또는 실비) 생활자의 월별 평균 부담비용 및 조달방법에 관한 지표 추가 개발	노인복지사업 현황 보고	-
37	지표	아동(또는 미성년) 가장의 병원 이용률(비교)	-	-
38	지표	유해환경에 노출된 아동의 수	-	-

39	지표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 받는 자의 이 분야 개선 만족도	-	-
40	지표	특정 병력 환자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
41	지표	특정 전염병자와 감염인에 대한 격리 조치 건수와 그 조치에 대한 민원/이의신청/진정/고발/제소 건수	-	-
42	지표	환자의 진료 기록 및 병력(病歷) 유출 현황	-	-
43	지표	(소득 중단으로 인해/사유별)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신청자 수와 승인율	-	-
44	지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료 납부 연체자의 가계소득별 조사현황	-	-
45	지표	국민연금의 장애급여수급자 가계소득이 최저생활에 미치지 못한 건수	-	-
46	지표	국민연금 장애급여수급자 중 장애등급 변동율	-	-
47	지표	소득별 건강보험급여액	-	-
48	지표	방학 중 결식 아동의 숫자	-	-
49	지표	미성년 가구주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지표	-	-
50	지표	전력공급계약 해지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미성년 가정세대주의 수와 그 비율	-	-
51	지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미성년 가정세대주의 주거시설(/집)에 겨울철 평균 온도 또는 에너지 사용 비율	-	-
52	지표	의료지식 홍보 및 전달 실적	-	-
53	지표	사회적·환경적 장애 또는 사회적·환경적 건강에 대한 이해도	-	-
54	지표	응급대처 요령 숙지 및 관련 지식 전파 실적	-	-
55	지표	수형자 등 구급자에 대한 의료적지원에 관한 국민적 태도	-	-
56	지표	유행성 또는 전염성 질병의 예방백신의 확보율 및 무료 접종 실적	-	-
57	지표	의료기관 이용시 일반환자/건강보험 적용환자/의료급여 환자의 동종의 질병 중 입원 비교	-	-
58	지표	미성년 가장 중 형사입건 수	-	중복(청소년위원회, 검·경찰청)
59	항목	공중보건원의 1일 평균 의료상담 회수와 상담자의 만족도	-	-
60	항목	아동상담소 이용자의 만족도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60개 (통계: 27종, 지표: 31개, 항목: 2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80개 (통계: 31종, 지표: 33개, 항목: 16개)		

12. 노동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1	지표	각 '연령계층별' 지표에 '15세~19세'의 미성년 취업자의 항목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
2	지표	조사대상자에 비정규직도 포함	상 동	-
3	지표	'근로손실일수'라는 지표·항목에 '단체 행동으로 인한 임금 상실 총액' 및 '보전 현황' 추가 지표·항목 개발	노동통계연감	-
4	항목	'산업(중·소분류)별·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상의 지위	사업체노동실	착취에 해당

		별·성별 종사자수' 지표에서 '무급종사자'는 취업자가 아니므로 삭제	태현황	
5	항목	'노사분류'라는 용어는 '파업 발생수' 또는 '단체행동 건수'로 수정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산업평화를 깨버린 것으로 인식하는 반인권적인 표현임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5개 (통계: 0종, 지표: 3개, 항목: 2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강제철거 집행과 개발지구 세입자의 주거 실태	-	-
2	통계	실질적 최저빈곤층에 대한 급여 지급 거부	-	-
3	통계	사회보험(고용보험 등)료 납부 연체자의 가계소득별 조사 현황	-	-
4	통계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 및 미가입 이유	-	-
5	통계	해고자의 해고 유형에 관한 통계	-	-
6	통계	통근 차량 제공(또는 상응하는 지원) 여부 현황	-	-
7	통계	(월별) 최저임금 적용 배제 사업장 및 피고용자 수 및 임금실태 현황	-	-
8	통계	ILO의 품위있는 노동(decent work) 기준에 부합되는 보수 관련 종합 통계 모델 개발	-	-
9	통계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	-	-
10	통계	산재 노동자의 가족 상황 실태조사	-	-
11	통계	생산직 또는 제조업 노동자의 공공 문화 시설 이용 통계	-	-
12	통계	산재노동자의 산업재해 판정 불수용율(/관련 민원/진정 및 제소/소송 건수)	-	-
13	통계	업종별/연령별(특히 19세 미만 아동 노동자) 산재 발생률	-	-
14	통계	산업별, 업종별, 기업별 고용율과 실업률의 상대적 비율	-	-
15	통계	급여 형태별(연봉제 등) 소득수준 비교	-	-
16	통계	노동조합 결성 신고 접수 및 반려 현황	-	-
17	통계	유니언숍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조합 현황	-	-
18	통계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부모 상봉 제한 건수	-	중복(법무부, 보건복지부)
19	통계	고용보험 고용형태별(정규직, 상용직,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절차 등의 홍보내용과 관련 통계	-	-
20	지표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 항목을 '정규직'과 '상용직'(직접소계약직/파견직 구분), '비정규직'(1년 미만 고용된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을 구분)으로 구분한 추가 통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기간만을 종사상의 지위로 보는 등 비인권적인 요소
21	지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차별 인식 조사	-	중복(산자부)
22	지표	특정 업종의 사회보장 급여 거부 현황	-	-
23	지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신청률	-	-
24	지표	중소기업의 취업 1년 이내에 이동하는 노동자 수 및 그 원인조사	-	-
25	지표	분기별 해고 등을 이유로 한 파업 횟수 및 해고 무효 소송 및 진정 건수 및 그 결과	-	-
26	지표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시도 평균횟수(년간) 및 타결률	-	-
27	지표	업종별 임금교섭시 최초 임금액(/임금인상률)과 타결 임금액(/임금인상률)(평균)	-	-

28	지표	업종별(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 시간 및 동일 노동 대비 평균임금 격차	-	-
29	지표	임금체불 현황 및 해결 방법 및 해결 평균 기간	-	-
30	지표	산재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율(/진정율 및 제소율/승소율)	-	-
31	지표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율	-	-
32	지표	1인당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연월차 등 유급휴가 승인 건수 및 비율	-	-
33	지표	업종별/근무여건 만족도	-	-
34	지표	19세 미만 학생 노동자의 학교 결석률	-	-
35	지표	범외 노동조합 현황 및 조합원 조직률	-	-
36	지표	파업을 단행한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자 등에게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한 사건 수	-	-
37	지표	노동조합의 활동비 및 기금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건수와 총액	-	-
38	지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소송 사건의 승소율/패소율	-	-
39	지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조직률	-	-
40	지표	파업에 참여한 이유로 징계 당하거나 해고당한 건수	-	-
41	지표	노동조합 활동(파업 포함)과 관련해 징계 당한 건수	-	-
42	지표	노동조합이 없는(페이퍼/엘로우 노동조합 등 사실상 노동자의 대표체가 아닌 경우 포함) 기업 건수	-	-
43	지표	정리해고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없거나 불성실한 협의를 한 기업수	-	-
44	지표	기업 또는 사업주(/CEO)의 인권에 대한 태도조사	-	-
45	지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집단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고통과 관련한 지표 개발	-	-
46	지표	물가와 직접 연동한 실질임금 및 적정노동과 적정임금을 비교하는 지표	-	-
47	항목	비전염성 질병을 이유로 한 해고자 수	-	-
48	항목	월별 정리해고된 노동자 수	-	-
49	항목	월별 교통비 대비 출퇴근 비용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49개 (통계: 19개, 지표: 27개, 항목: 3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54개 (통계: 19종, 지표: 30개, 항목: 5개)		

13. 정보통신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터넷 방문회수와 자유게시판에 참여 유형별 통계	-	각 부처(기관포함) 공통
2	통계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 중 프리웨어 종류 및 보급 건수	-	-
3	통계	시군구의 등록 소프트웨어 가운데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 종류별 건수 및 총액	-	-

4	통계	국비 또는 지방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실적 및 주민 배포 현황	-	-
5	통계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실태와 범죄 현황	-	중복(보건복지부, 검·경, 청소년보호위)
6	통계	개인 정보(특히 신용불량자)의 불법 매매 현황	-	중복(검·경찰청)
7	통계	행정기관 등의 보유 데이터베이스 및 공동 이용 현황 건수(년간)	-	-
8	통계	금융기관의 인터넷 개인정보 공유 실태와 개인 정보 유출 건수	-	-
9	통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시설 이용 경험 및 동 컴퓨터 시설의 노후화 정도’ 통계 추가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 조사	-
10	지표	‘저소득층에 대한 컴퓨터 구입 지원 및 인터넷 망 지원 실적’ 추가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 조사	-
11	지표	‘인터넷을 이용한 대화 가능 정도’ 추가	상 동	-
12	지표	‘전자메일 사용 인구수’ 추가	상 동	-
13	지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현황 및 비율’ 추가	상 동	-
14	지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 프로그램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지원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추가	상 동	-
15	지표	인터넷상의 의견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
16	지표	각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실적과 유출 건수	-	-
17	지표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시 신청 건수 당 대상자와 관련자의 전화번호 및 통신자료 대상 평균 건수	-	통신비밀보호법 상
18	지표	의사를 공유할 목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신문 등에 의견을 쓰거나 투고하는 국민 비율	-	-
19	지표	소프트웨어 또는 온라인 게임 운영 홈페이지에서 반인권적인 요소가 있어 유통금지 되거나 차단된 홈페이지	-	-
20	지표	행정기관 등의 보유 데이터베이스 해킹 및 도용 건수	-	중복(국정원)
21	지표	휴대용 전화번호 및 주민번호 도용 실태	-	-
22	지표	개인 신용 정보의 도용 건수	-	-
23	지표	내사종결 사건의 통화내역 조회 횟수	-	중복(검·경찰청)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23개 (통계: 10종, 지표: 13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23개 (통계: 10종, 지표: 13개, 항목: 0개)			

14. 해양수산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군복무시 비군사적인 영역의 노동이 이루어진 횟수(예, 계절작업, 홍수피해, 산불진압 등에 예외 없이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경우)	-	-
2	지표	해양수산업의 수산업/어업 등의 기본조사 또는 총조사에서 관련 업종의 노동자 또는 실업 및 고용 상태에 대한 지표 개발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2개 (통계: 1종, 지표: 1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할 통계·지표·항목: 2개 (통계: 1종, 지표: 1개, 항목: 0개)		

15. 국방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승인통계없음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군복무시 비군사적인 영역의 노동이 이루어진 횟수(예, 계절작업, 홍수피해, 산불진압 등에 예외 없이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경우)	-	-
2	통계	군교도소에 관한 통계	-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3	통계	사병들의 인권침해 통계	-	-
4	통계	군대내 의료체계 관련 통계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4개 (통계: 4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할 통계·지표·항목: 4개 (통계: 4종, 지표: 0개, 항목: 0개)		

16. 여성가족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승인통계없음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아동실종 현황	-	중복(보건복지부)
2	통계	섹스 산업의 현황과 종사자(특히 미성년자)의 인권실태 조사통계	-	중복(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3	지표	성폭력 피해자(일반 범죄 피해자) 현황 및 사건 처리 만족도 조사	-	중복(검. 경찰청)
4	지표	(아동/노인/여성) 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주관적 지표)	-	중복(보건복지부)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4개 (통계: 2종, 지표: 2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할 통계·지표·항목: 4개 (통계: 2종, 지표: 2개, 항목: 0개)		

17. 통일부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승인통계없음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납북자(/월북자) 실종 현황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18. 경찰청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1	통계	수사 또는 기소 사건으로 범죄자로 규정한 범죄통계와 분석을 확정판결된 사건의 통계로 개발	범죄분석	-
2	통계	통계 간행물인 '범죄분석' 명칭을 경찰의 통계 또는 그 간행물 명칭을 '사건통계' 또는 '사건분석'으로 수정	상 동	-법원의 확정판결 전의 사건대상 통계로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벗어남 -중복(검찰청)
3	통계	'형사 용의자/피의자 통계' 또는 '형사사건 통계' 로 수정	상 동	중복(검찰청)
4	통계	반드시 해당 지표에 예로 "해당 집단에 속하는 국민이 이 지표의 제목이나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통계년도의 범죄 상황을 표현한 것임"이라는 취지의 표현 기재	상 동	중복(검찰청)
5	통계	각 지표와 항목에서 '범죄자' 용어는 경찰단계(기소전 단계)의 통계에서는 '용의자'로 수정	상 동	-
6	지표	'연도별 불법 무기 자진신고 및 색출 실적'은 자진신고와 경찰의 자체 노력인 색출 실적을 구분	범죄분석	-
7	지표	'여성범죄자' 지표명 삭제	상 동	-중복(검찰청) -여성과 관련된 범죄와 개연성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 '여성이 저지른 범죄'(학생의 경우도 동일)통계나 지표가 필요없음
8	지표	각 '죄중별' 지표도 법원처럼 '죄명' 정도로 용어 수정	상 동	중복(검찰청)
9	지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된 '학생범죄자' 지표 삭제	상 동	-학생신분을 범죄와 연결시킨 차별적 인식

				-중복(검찰청)
10	지표	'불법·과격·폭력 시위 현황' 지표명을 '법위반 시위현황'으로 수정	'사이버경찰청 경찰통계 자료실'	-
11	항목	'화염병 시위'와 '최루탄 사용', '부상자' 항목을 '집회 시위의 횟수'와 '법위반 시위 횟수'를 비율로 수정하고 사유를 '불법'과 '폭력' 시위로 구분	'사이버경찰청 경찰통계 자료실'	-
12	항목	'폭력시위의 진압방법' 지표의 '최루탄 사용 여부' 는 삭제	상 동	폭력 시위의 진압방법을 별도의 지표로 개발 혹은 항목에 '자진 해산', '폭력 행사', '동원 진압경찰 병력', 경찰 및 시위자의 피해상황 동시에 병기
13	항목	'여성'과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한 지표의 부모와의 관계를 구분 항목 삭제	범죄분석	-중복(검찰청) -범죄예방과 무관한 단순한 행정적 편의 -차별적 의식 반영
14	항목	'소년범죄자' 지표에서 '소년'은 '미성년 용의자'로 수정	상 동	-
15	항목	용의자, 피의자 연령대를 단순히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연령 등은 범죄와 그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재조정해 개선필요	상 동	-중복(검찰청) -수사에 상관없고 해당 군에 속하는 연령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입
16	항목	'(일부)자백' 항목의 '범죄사실 인정(일부 인정)'로 수정	상 동	-중복(검찰청) -헌법은 자백을 금지함
17	항목	'범행시 정신상태' 지표에서 '정신이상', '정신박약'용어를 각각 "정신상실" 또는 "정신미약"으로 하거나, "정신장애" 또는 "정신지체"로 수정	상 동	-중복(검찰청) -장애에 대한 편견적 용어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7개 (통계: 5종, 지표: 5개, 항목: 7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실적 및 내용	-	-
2	통계	장애인(및 저소득자)의 운전면허 응시율/합격률/면허 취득률/활용률 및 장애인 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실적	-	-

3	통계	확정 판결전 피의자 평균 구속 기간 및 변화에 관한 통계	-	-
4	통계	(경찰/검찰)의 혐의내용/기소내용 변경 사건 건수	-	-
5	통계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실태와 범죄 현황	-	중복(보건복지부, 정통부, 검찰청, 청소년보호위)
6	통계	홍신업소의 사생활 관련 대행에 관한 실태조사	-	중복(검찰청)
7	통계	공무원의 고문 및 가혹행위 사건 통계	-	중복(검찰청)
8	통계	수사 또는 조사시 가혹행위 및 고문, 협박, 폭행, 폭언 등의 강박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사건 수 또는 진정/제소 수	-	중복(검찰청)
9	통계	공공 기관 및 공공 시설물에 특정시간, 특정한 사람, 집단에 대한 접근 금지에 관한 사항(예, 자체 행사를 이유로 한 공공 서비스 지연 또는 거부)	-	각 부처(기관포함) 공통
10	통계	개인 정보(특히 신용불량자)의 불법 매매 현황	-	중복(정보통신부, 검찰청)
11	통계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범죄 현황	-	중복(검찰청)
12	통계	신고 되지 않은 사망사건 표본조사	-	중복(검찰청)
13	통계	집회·시위 시 경찰의 예방적 일시 구금 조치(interim custody measure) 현황 및 불법 감금 현황	-	-
14	통계	경찰관 직급별/업무별 노동 실태조사(교통경찰관의 1인당 1일 평균 현장근무시간, 교통경찰관 1인당 담당 차량수, 경찰관 1인당 1일 단속/순찰 평균 시간 등)	-	-
15	지표	미성년자의 형사 입건(또는 형확정자, 미성년 가장 등) 수	-	중복(검찰청)
16	지표	미성년 가장 중 형사입건 수	-	중복(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검찰청)
17	지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관련 민원인 만족도 조사	-	-
18	지표	불법 등의 시위 전력을 이유로 동일인 또는 동일 집단의 집회를 불허한 건수	-	-
19	지표	장기간 동일한 집단이 동일한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한 건수	-	-
20	지표	집회가 신고 되어 다른 집단의 집회 신고가 반려된 건수(장기간 집회 신고된 건수는 별도로 작성)	-	-
21	지표	위법 체포에 대한 진정/제소 건수	-	중복(법무부)
22	지표	경찰과 검찰의 적절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민원/진정/제소 건수	-	중복(검찰청)
23	지표	미란다원칙 미고지 건수	-	중복(검찰청)
24	지표	연행/구인 시소계구 종류별 건수	-	-
25	지표	구속사건 중 무죄판결 건수 및 평균 구금일수	-	중복(검찰청)
26	지표	구속사건 중 재판을 받지 않은 사건(불기소, 기소유예 등 포함) 및 평균구금일수	-	중복(검찰청)
27	지표	중대한 범위반(인권침해) 예방 활동 실적 및 성과 지표	-	중복(법무부, 검찰청)
28	지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소송 건수	-	중복(검찰청)
29	지표	성폭력 피해자/(일반 범죄 피해자) 현황 및 사건 처리 만족도 조사	-	중복(여성가족부, 검찰청)
30	지표	내사종결 사건의 통화내역 조회 횟수	-	중복(정통부, 검찰청)
31	지표	순찰 지구대 범죄억제(예방) 지표	-	-
32	지표	유형별 차별관련 민원(국가기관 일반), 진정(국가인권위원회) 및 제소(법원) 또는 고발(경찰 또는 검찰) 건수	-	각 부처(기관포함) 공통
33	항목	용의자, 피의자 학력 구분에 대한 개선	상 등	-중복(검찰청)

			-범죄연관 설명없이 학력 차별임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3개 (통계: 14종, 지표: 18개, 항목: 1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50개 (통계: 19종, 지표: 23개, 항목: 8개)		

19. 대검찰청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수사 또는 기소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자로 규정한 사항을 확정판결된 사건의 범죄분석 통계 작성	범죄분석 중복(경찰청)
2	통계	통계 간행물 '범죄분석'을 검찰의 통계 또는 그 간행물 명칭을 '사건통계' 또는 '사건분석'으로 수정	상 동 법원 확정판결 전 사건으로 통계를 낸 것은 무죄추정주의 원칙 위배
3	통계	반드시 해당 지표에 예로 "해당 집단에 속하는 국민이 이 지표의 제목이나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통계년도의 범죄 상황을 표현한 것임"이라는 취지의 표현 기재	상 동 중복(경찰청)
4	통계	'범죄자'라는 용어는 검찰단계(기소후 단계)에는 '피의자'로 수정	상 동 -
5	지표	'범죄분석' 통계는 "형사사건 분석"으로 수정	범죄분석 -
6	지표	'여성소녀범죄자 처분 결과' 지표 삭제	상 동 -
7	지표	'소년'은 '미성년' 또는 '아동'(/'어린이')로 수정	상 동 -
8	지표	'여성범죄자' 지표명 삭제	상 동 -여성과 관련된 범죄의 개연성을 제외하고 '여성이 저지른 범죄' (학생의 경우도 동일) 통계/지표 필요없음 -중복(경찰청)
9	지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된 '학생범죄자' 지표 삭제	상 동 -학생신분을 범죄와 연결시킨 차별적 인식 -중복(경찰청)
10	지표	'소년범죄자' 지표에서 '소년'은 '미성년 용의자'로 수정	상 동 -
11	항목	'여성소녀범죄자'를 특별히 구분한 것을 삭제	상 동 남녀차별 관행
12	항목	혼인하지 않은 성인인 용의자, 피의자의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 명기하는 항목의 삭제	상 동 -
13	항목	여성과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한 지표의 부모와의 관계를 구분 항목 삭제	범죄분석 -중복(경찰청) -범죄예방과 무관한 단순한 행정적 편의의 차별적 의식 반영임
14	항목	용의자, 피의자 연령대를 단순히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연령 등은 범죄와 그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재조정해 개선	상 동 -중복(경찰청) -수사에 상관없고 해당 군에 속하는 연령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임
15	항목	'(일부)자백' 항목의 '범죄사실 인정/(일부 인정)'로 수정	상 동 -중복(경찰청)

				-헌법은 자백 금지함
16	항목	‘범행시 정신상태’ 지표에서 ‘정신이상’, ‘정신박약’ 용어를 각각 “정신상실” 또는 “정신미약”으로 하거나, “정신장애” 또는 “정신지체”로 수정	상 동	-중복(경찰청) -장애에 대한 편견적 용어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6개 (통계: 4종, 지표: 6개, 항목: 6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구급에 처해 있는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인권침해의 별도 통계	-	-
2	통계	사이버 종교와 관련된 피해자와 피해 규모	-	-
3	통계	인신매매 범죄 현황 및 예방, 실태 통계	-	-
4	통계	기각된 영장 청구사건의 기각 이유별 통계	-	-
5	통계	경찰과 검찰의 적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민원/진정/제소/검찰의 폐소 판결 건수	-	-
6	통계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실태와 범죄 현황	-	중복(보건복지부, 정통부, 경찰청, 청소년보호위)
7	통계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범죄 현황	-	중복(경찰청)
8	통계	홍신업소의 사생활 관련 대행에 관한 실태조사	-	중복(경찰청)
9	통계	공무원의 고문 및 가혹행위 사건 통계	-	중복(경찰청)
10	통계	수사 또는 조사시 가혹행위 및 고문, 협박, 폭행, 폭언 등의 강박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사건 수 또는 진정/제소 수	-	중복(경찰청)
11	통계	개인 정보(특히 신용불량자)의 불법 매매 현황	-	중복(정보통신부, 경찰청)
12	통계	신고 되지 않은 사망사건 표본조사	-	중복(경찰청)
13	지표	미성년자의 형사 입건(또는 형확정자, 미성년 가장 등) 수	-	중복(경찰청)
14	지표	미성년 가장 중 형사입건 수	-	중복(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15	지표	경찰의 영장 의견에 대한 검찰의 미수용 지휘 건수	-	-
16	지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 비율	-	-
17	지표	구속기관 연장 비율	-	-
18	지표	긴급체포 석방 비율	-	-
19	지표	관할별 구속기소 비율	-	-
20	지표	형사사건의 구속에 대한 불구속에 대한 지수	-	-
21	지표	형사사건 구속피의자 중 청소년의 비율	-	-
22	지표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입회 사건 건수 및 비율	-	-
23	지표	(경찰/검찰)의 혐의내용/기소내용 변경 사건 건수	-	중복(경찰청)
24	지표	구속사건 중 무죄판결 건수 및 평균 구급일수	-	중복(경찰청)
25	지표	구속사건 중 재판을 받지 않은 사건(불기소, 기소유예 등 포함) 및 평균구급일수	-	중복(경찰청)
26	지표	중대한 범위반(인권침해) 예방 활동 실적 및 성과 지표	-	중복(법무부, 경찰청)
27	지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소송 건수	-	중복(경찰청)
28	지표	성폭력 피해자/(일반 범죄 피해자) 현황 및 사건 처리 만족도 조사	-	중복(여성가족부, 경찰청)
29	지표	내사종결 사건의 통화내역 조회 횟수	-	중복(정통부, 검찰청)
30	항목	용의자, 피의자 학력을 구분에 대한 개선	상 동	-중복(경찰청)

			-범죄연관 설명없이 학력 차별임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0개 (통계: 12종, 지표: 17개, 항목: 1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46개 (통계: 16종, 지표: 23개, 항목: 7개)		

19. 특허청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국가의 특허 건수와 특허의 사회적 활용 실적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20. 중소기업청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지표	중소기업청의 산업 위주의 통계에서 실업 또는 동일 업종의 해고나 실업 문제관련 지표 개발	기업입장에서 '고용'과 관련된 통계 또는 인력수급의 차원만 주로 다룸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0개)		

21. 병무청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지표	'역종별, 신체등위별, 학력별 현황(종합)' 지표에서 징병 대상자를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등급에 따라 확정하는 현행 제도에 비추어 대졸자 이상과 고졸자 이하로 구분한 내용의 개선 필요	징병신체검사 통계
2	항목	'역종별, 신체등위별, 학력별 현황(종합)' 지표에서 '신분결함' 항목은 '(병역)제외대상', '신체결함'은 '신체적 곤란' 또는 '신체불합치' 등으로 수정	상 동

			법적으로 병역대상자가 아닌 자인데도 합리적 이유없이 집단을 비하하는 항목임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2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1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공익근무 요원의 현황과 근무 실태 통계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개 (통계: 1종, 지표: 1개, 항목: 1개)			

22. 식품의약품안전청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지표	식품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경보 체계 도입을 위한 지표 개발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0개)			

23. 해양경찰청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지표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환경권 침해'(예: 사고 해역의 통과 및 접근 금지 일수 등) 및 '생업에 미친 영향 평가' 지표 개발	해양오염사고 통계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0개)			

24. 소방방재청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	--	--	--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시·군·구별 화재 발생 시(/화재 신고 시)부터 현장 도착 시간 현황	-	-
2	지표	구급/구조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	-
3	지표	화재예방 활동의 유형별 실적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개 (통계: 1종, 지표: 2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개 (통계: 1종, 지표: 2개, 항목: 0개)		

25. 법제처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승인통계없음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각부처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현황과 의견 반영실적(/비율)	-	각 부처(기관포함) 공통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26. 방송위원회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현행통계	비고
-	-	-	-	승인통계없음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당할 위기에 처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언론이 이차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27. 선거관리위원회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	--	--	--	--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승인통계없음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선거 정보 획득 방법에 관한 통계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승인통계없음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제한을 직접 의도하거나 우려가 큰 입법에 관한 통계	-
2	지표	국민 인권의식 지표 개발	-
3	지표	인권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 조사	-
4	지표	인권단체와 인권전문가들의 비인권/반인권 관행에 대한 태도조사	-
5	지표	공직자(특히 선출직)의 인권성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5개 (통계: 1종, 지표: 4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5개 (통계: 1종, 지표: 4개, 항목: 0개)	

29.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지표	피보험자와 관련된 지표들과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사업과 관련된 각 지표들의 항목에 학력별 및 소득수준별로의 통계개발	고용보험통계월보
2	항목	위의 각 영역의 지표에서 가능하면 1인당 급여평균수령액을 학력별, 소득별로 구분한 통계 작성	상 동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2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1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2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1개)	

30. 한국철도공사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이동 수단의 적절한 제공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 추가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통계 명칭을 재가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 내용으로 '장애인생활복지욕구실태조사'로 수정	-비인권적 통계명 -장애인 문제를 시혜적보며, 장애인권리문제 인식 -주기도 5년은 의례적이며, 격년 등이 합당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32. 대법원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지표	'국가배상사건 누년비교표-심급별'의 '미제' 항목은 '미제 국가배상사건 누년비교표-심급별' 지표 수정하고 기간별, 사유별로 통계 추가	사법통계
2	지표	아동 관련 지표에 나타나는 '보호소년'의 지표명과 항목을 '보호 미성년' 또는 '보호 아동'으로 수정	상 동
3	지표	'보호소년 교육정도별 인원' 지표 삭제	상 동
4	항목	'가정폭력행위자(가정구성원별) 인원' 지표에서 '계부모와 자' 또는 '직모의 서자관계' 등의 항목삭제	사법통계
5	항목	'가정폭력행위자(교육정도별) 인원'에서 '무학'은 '배울 기회 없었음'으로 수정	상 동
			차별적 용어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5개 (통계: 0종, 지표: 3개, 항목: 2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관련통계	비고
1	통계	관련 소송의 패소 판결의 경우 패소자의 판결에 대한 태도	-	-
2	통계	2년 이상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사건의 죄명별 통계(/피의자의 변호인의 법조 경력별)	-	-
3	통계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토지 거래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 및 위헌 신청 사건에서 원고 건수 및 승소율	-	-
4	지표	체포영장/구속영장 기각률	-	-
5	지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재판 건수	-	각 부처(기관포함) 공통
6	지표	(이유별)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회수와 비율	-	각 부처(기관포함) 공통
7	지표	국가 배상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기간	-	-
8	지표	국가배상 판결 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건수와 총액	-	-
9	지표	최초 확정판결일로부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기간	-	-
10	지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 건수와 승소율	-	-
11	지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경우 실질 구속기간에 대한 국가 지급액	-	-
12	지표	국선변호인의 평균 의뢰인 면접 회수와 실질 시간	-	-
13	지표	결석재판 건수	-	-
14	지표	판결문에 국제 인권 조약 및 ILO 협약 인용 비율	-	-
15	지표	국선변호인의 승소율	-	-
16	지표	약식 명령 사건의 정식 재판 청구	-	-
17	지표	변호사의 연간 납세액	-	-
18	지표	국선변호인이 아닌 변호사의 무료 변론 건수	-	-
19	지표	공익 소송 건수	-	-
20	지표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 사건	-	-
21	지표	재판부 기피 신청 건수와 그 사유	-	-
22	지표	허가 보석 신청의 보석금 총액 및 평균액	-	-
23	지표	군사재판 유죄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확정된 사건 수	-	-
24	지표	군 지휘관의 군인 및 군속에 대한 구속 또는 기소 지휘	-	-
25	지표	군 지휘관에 의한 영창처분 건수 및 평균 구금 일수	-	-
26	지표	공연 및 영상물에 대한 사후 금지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건수	-	중복(문광부)
27	지표	강제경매 물건의 현실가와 낙찰가의 비율	-	-
28	지표	금융기관의 담보주택 및 담보토지에 대한 압류 또는 강제매각 건수	-	-
29	지표	국민 관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	-
30	지표	토지이용에 관한 분쟁 건수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0개 (통계: 3종, 지표: 27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35개 (통계: 3종, 지표: 30개, 항목: 2개)			

33. 헌법재판소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통계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토지 거래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 및 위헌 신청 사건에서 원고 건수 및 승소율	중복(대법원)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1종, 지표: 0개, 항목: 0개)	

34. 국민은행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수정되어야 할 사항	비고
1	지표	주택담보의 담보능력 변화주세 등을 추가하고 주택담보 현황을 함께 공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소계		수정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0개)	
인권보장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사항			
번	구분	개발되어야 할 사항	비고
-	-	-	-
소계		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0개	
계		수정·개발되어야 할 통계·지표·항목: 1개 (통계: 0종, 지표: 1개, 항목: 0개)	

<부록5. 통계작성기관의 인권영역별 통계/지표수(종합)>

작성기관	인 권 영 역																													계								
	천부적자유와집합적자유	생명권	신체자유와양심적자유	가정생활자유와가족생활자유	개인정보보호	사생활의자유	거주지의자유	거주지역의자유	아내의권리	재산자유권	사상양심종교의자유	이견표현의자유	언론출판의자유	정치적사회의자유	참정권	사회모정권	노동에대한권리	적정보수의권리	유리한근로조건	노임조정할권리	가정생활개선권	적정생활수준향유권	건강권	근업에대한권리	민회생활권	자기문화향유권	인권을서구권	법정외적체임의권	법정구제권		인신보호	무죄추정의원칙	정당한징주의	수형자의권리				
통계청	1	2	48	0	-	-	0	60	-	4	0	2	-	-	-	6	17	412	51	3	1	105	145	32	63	118	-	6	-	0	0	2	0	0	1	1079		
과기부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0	0	0	0	9	-	0	-	0	0	0	0	0	0	9		
환경부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54	0	0	0	-	0	-	0	0	0	0	0	0	0	54		
행자부	0	0	0	0	-	-	0	0	-	0	5	0	-	-	-	0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5		
법무부	0	0	17	23	-	-	0	16	-	3	0	0	-	-	-	0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5	0	36	100		
교육부	0	0	0	0	-	-	0	0	-	4	0	0	-	-	-	0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4	
문광부	0	0	0	0	-	-	0	0	-	0	0	2	-	-	-	1	0	20	4	0	0	0	1	13	0	47	-	0	-	0	0	0	0	0	0	0	88	
농림부	0	0	0	0	-	-	0	0	-	0	5	0	-	-	-	0	0	10	0	0	0	15	0	0	0	-	0	-	0	0	0	0	0	0	0	0	30	
산자부	0	0	0	0	-	-	0	0	-	0	0	0	-	-	-	0	0	34	0	0	0	20	0	0	0	-	0	-	0	0	0	0	0	0	0	0	54	
건교부	0	0	2	0	-	-	0	15	-	0	20	0	-	-	-	0	0	0	0	0	0	5	0	0	0	-	0	-	0	0	0	0	0	0	0	0	42	
복지부	14	36	0	0	-	-	0	0	-	15	0	0	-	-	-	0	44	1	1	0	0	3	25	106	2	0	-	0	-	0	0	0	0	0	0	0	247	
노동부	0	0	0	0	-	-	0	0	-	0	0	0	-	-	-	0	0	5	22	40	8	0	0	0	0	0	-	0	-	0	0	0	0	0	0	0	75	
정통부	0	0	0	0	-	-	15	0	-	0	0	0	-	-	-	0	0	4	0	0	0	0	0	0	0	64	-	0	-	0	0	0	0	0	0	0	83	
해수부	0	0	8	0	-	-	0	8	-	0	0	0	-	-	-	0	0	6	0	0	0	2	0	0	0	-	0	-	0	0	0	0	0	0	0	0	24	
경찰청	0	0	18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18	
검찰청	0	0	49	0	-	-	0	0	-	11	0	0	-	-	-	0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16	2	0	78		
산림청	0	0	0	0	-	-	0	0	-	0	9	0	-	-	-	0	0	0	0	0	0	13	0	0	0	-	0	-	0	0	0	0	0	0	0	0	22	
특허청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0	0	0	0	1	-	0	-	0	0	0	0	0	0	0	1	
중기청	0	0	0	0	-	-	0	0	-	0	0	0	-	-	-	0	0	28	0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28	
농진청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1	0	0	0	-	0	-	0	0	0	0	0	0	0	0	1	
병무청	0	0	0	0	-	-	1	0	-	0	0	0	-	-	-	0	0	0	0	0	0	0	2	0	0	-	0	-	0	0	0	0	0	0	0	0	3	
식약청	0	0	24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0	32	0	0	-	0	-	0	0	0	0	0	0	0	0	56	
해경청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7	0	0	0	-	0	-	0	0	0	0	0	0	0	0	7	
소방청	0	0	30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30	
산안공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0	1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1	
장고촉	0	0	0	0	-	-	0	0	-	0	0	0	-	-	-	0	0	11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11	
산업공	0	0	0	0	-	-	0	0	-	0	0	0	-	-	-	0	41	7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48	
건강공	0	0	0	0	-	-	0	0	-	0	0	0	-	-	-	0	84	0	0	0	0	0	1	0	0	-	0	-	0	0	0	0	0	0	0	0	85	
공원공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0	0	0	41	-	0	-	0	0	0	0	0	0	0	0	0	41
철도공	0	0	3	0	-	-	0	1	-	0	0	0	-	-	-	0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4	
보건연	0	0	0	0	-	-	0	0	-	0	0	0	-	-	-	0	10	0	0	0	0	152	89	31	0	-	0	-	0	0	0	0	0	0	0	0	373	
표준연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0	1	0	0	-	0	-	0	0	0	0	0	0	0	0	1	
교육원	0	0	0	0	-	-	0	0	-	0	0	0	-	-	-	0	0	1	0	0	0	0	0	304	0	-	0	-	0	0	0	0	0	0	0	0	0	305
노동연	0	0	0	0	-	-	0	0	-	0	0	0	-	-	-	0	0	1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1	
한여개	0	0	1	0	-	-	0	0	-	0	0	0	-	-	-	5	6	5	0	3	1	3	0	6	0	0	-	0	-	0	0	0	0	0	0	0	30	
대법원	0	1	7	0	-	-	0	0	-	16	14	0	-	-	-	5	0	1	0	0	0	16	0	0	12	-	0	-	27	14	40	12	0	8	0	173		
헌법재	0	0	0	0	-	-	0	0	-	0	0	0	-	-	-	2	0	0	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2	
국민은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0	0	0	0	14	0	0	-	0	-	0	0	0	0	0	0	0	0	14	
농업협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7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7	
중기협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40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40	
건설협	0	0	0	0	-	-	0	0	-	0	0	0	-	-	-	0	0	0	7	0	0	0	0	0	0	-	0	-	0	0	0	0	0	0	0	0	7	
계	15	39	207	23	-	-	16	100	-	53	53	4	-	-	-	19	293	546	132	47	10	127	454	282	400	292	-	6	-	27	14	42	12	21	10	37	3281	

<표 132> 통계작성기관의 인권영역별 통계/지표수(중합)

(단위: 개)

* 산안공->한국산업안전공단, 장고촉->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공->한국산업인력공단, 건강공->국민건강보험공단, 공원공->국립공원관리공단, 철도공->한국철도공사, 보건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준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육원->한국교육개발원, 노동연->한국노동연구원, 한여개->한국여성개발원, 헌법재->헌법재판소, 국민은->국민은행, 농업협->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기협->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협->대한건설협회를 줄여 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표수는 제외함.

<부록6. 연구대상 인권통계 현황>

작성기관	통계명	통계성격	작성방법	작성주기	부문	간행물/출처	자료
건설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일반	보고	월간	교통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건축물통계	일반	보고	월간	건설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건축허가통계	일반	보고	월간	건설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고속버스수송실적	일반	보고	월간	교통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	일반	전수조사	연간	교통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도로보수현황	일반	보고	연간	건설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월간민간항공운동통계	일반	보고	연간	교통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자동차면허상황	일반	보고	분기	교통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일반	보고	월간	주택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지하수조사	일반	보고	연간	환경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건설교통부	토지거래현황	일반	보고	월간	토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경찰청	교통사고발생상황	일반	보고	월간	교통	경찰청홈페이지 통계자료실	
경찰청	운전자배출현황	일반	보고	연간	교통	경찰청홈페이지 통계자료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지정	전수조사	연간	과학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 보고》.통계청KOSIS	2004
교육인적 자원부	학생신체검사통계보고	일반	전수조사	연간	보건	《교육통계연보》	2005
노동부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	일반	보고	연간	보건	《노동통계연감》	2004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지정	표본조사	연간	고용	《노동통계연감》	2004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일반	표본조사	연간	고용	《노동통계연감》	2004
노동부	노사협의회설치현황	일반	보고	연간	기업경영	《노동통계연감》	2004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지정	표본조사	월간	고용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분석자료》	2005 .8

노동부	사업종류별보험적용징수상황보고	일반	보고	월간	복지	《노동통계연감》	2004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일반	가공	월간	복지	《노동통계연감》	2004
노동부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상황보고	일반	보고	연간	기업경영	《노동통계연감》	2004
노동부	산업재해조사	일반	보고	월간	복지	《노동통계연감》	2004
노동부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지정	표본조사	연간	고용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03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지정	표본조사	연간	임금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4
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일반	보고	연간	기업경영	《노동통계연감》	2004
노동부	조정/심판사건통계	일반	보고	월간	기업경영	《노동통계연감》	2004
농림부	경지면적조사	지정	전수·표본조사	연간	농림	《경지면적통계》	2004
농림부	농림업생산지수	일반	가공	연간	농림	《농림통계연보》	2004
농림부	농지임대차조사	일반	표본조사	연간	농림	농업통계정보	
농림부	여성농업인실태조사	일반	표본조사	5년	사회	<여성농업인실태조사>	2003
농림부	축산물생산비조사	지정	조사	연간	농림	《축산물생산비》	2004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일반	표본조사	연간	농림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004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일반	보고	연간	사회	《범죄분석》	2005
문화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일반	표본조사	3년	문화	《문화예술통계》	2004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일반	표본조사	3년	문화	《국민체력실태조사》	2004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일반	보고	연간	문화	《문화산업통계》	2004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일반	표본조사	3년	문화	《문화예술통계》	2004
문화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일반	표본조사	3년	문화	《문화예술통계》	2004
법무부	재소자수용(2002)*	-	-	-	-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교정자료실 통계자료 www.corrections.go.kr	2005 .11
법무부	교도작업운영(2002)*	-	-	-	-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교정자료실 통계자료 www.corrections.go.kr	2005 .11

법무부	보호관찰통계	일반	보고	월간	사회	《보호관찰통계연보》	2002
법무부	수용자교육훈련(2002)*	-	-	-	-	법무부교정국홈페이지 교정자료실 통계자료 www.corrections.go.kr	2005 .11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일반	보고	월간	인구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4
법무부	출입국자통계	일반	보고	월간	인구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4
병무청	징병신체검사통계	일반	전수 조사	연간	보건	《병무연감》	2004
보건복지부	감염병발생주보	일반	보고	주간	보건	<감염병발생주보>	2005 .37주
보건복지부	결핵관리사업실적보고	일반	보고	월간	보건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일반	보고	반기	보건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현황보고	일반	표본 조사	연간	보건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국내입양현황보고	일반	보고	반기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정	표본 조사	3년	보건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보건복지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일반	표본 조사	3년	보건	《국민구강실태조사》	2003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일반	보고	분기	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자현황분석》·《보건복 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일반	보고	연간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국제검역상황	일반	보고	분기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일반	보고	연간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현황	일반	보고	반기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시설수용자및종사자 현황보고	일반	보고	연간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5
보건복지부	부랑인복지시설입소자및종사 자현황	일반	보고	연간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성병관리사업실적	일반	보고	연간	보건	보건복지부통계정보시스 템·《보건복지통계연 보》	2004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보고	일반	보고	반기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및종사자현황	일반	보고	반기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아동상담현황보고	일반	보고	반기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영아사망조사	일반	전수조사	3년	보건	1999년도영아사망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현황보고	일반	보고	반기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실태보고	일반	보고	연간	보건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수용자및종사자현황보고	일반	보고	분기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현황	일반	보고	반기	보건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보고	일반	전수조사	5년	보건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전국결핵자현황	일반	보고	연간	보건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보건복지부	전국장내기생충실태조사	일반	표본조사	5년	보건	《전국기생충감염실태조사보고서》	2003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실태조사	일반	표본조사	5년	보건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시설수용자및종사자현황보고	일반	보고	분기	복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특수환자조사	일반	전수조사	3년	보건	<2002환자조사보고서; 모성사망률조사>	2002
보건복지부	한국인암등록조사	일반	보고	연간	보건	<한국중앙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	2004
보건복지부	한센병관리사업실적	일반	보고	분기	보건	《보건복지통계연보》	2004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일반	표본조사	3년	보건	<환자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활동제약자실태조사	지정	조사	5년	보건	<2000년도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요약	2000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지정	전수조사	연간	농림	《임업통계연보》	2004
산림청	산림피해단속상황보고	일반	보고	분기	농림	《임업통계연보》·통계청STAT	2004
산림청	산림형질변경허가및복구상황보고	일반	보고	연간	농림	《임업통계연보》·통계청STAT	2004
산림청	전국산림실태조사	일반	표본조사	10년	농림	<산림자원조사보고서>	2001
산림청	조림활착상황	일반	보고	연간	농림	《임업통계연보》·	2004

						통계청STAT	
산업자원부	200대주요기업설비투자계획조사	일반	표본조사	반기	기업경영	<200대기업설비투자계획조사결과보고도자료>	2004.12월
산업자원부	광산물생산량조사	일반	보고	월간	광공업	《에너지통계연보》	2005
산업자원부	광산재해통계	일반	보고	월간	복지	《산업재해백서》	2005
산업자원부	농공단지경영현황	일반	보고	분기	광공업	《에너지통계연보》	2005
산업자원부	민수용탄및연탄수급상황보고	일반	보고	분기	에너지	《에너지통계연보》	2005
산업자원부	에너지사용량통계	일반	보고	연간	에너지	《에너지통계연보》	2005
산업자원부	에너지수급통계	일반	보고	월간	에너지	《에너지통계연보》	2005
산업자원부	에너지총조사	지정	표본조사	3년	에너지	《에너지총조사결과》	2003
산업자원부	온실가스배출통계	일반	가공	연간	에너지	《산업자원백서》	2004
산업자원부	중소유통업실태조사	지정	표본조사	3년	도소매	《전국중소유통업총람》	2003
소방방재청	119구급활동실적보고	일반	보고	월간	복지	《소방행정자료및통계》	2005
소방방재청	119구조활동실적보고	일반	보고	월간	복지	《소방행정자료및통계》	2005
소방방재청	풍수해상황보고	일반	보고	연간	사회	《재해연보》·통계청KOSIS	2004
소방방재청	화재발생총괄표	일반	보고	월간	사회	《화재통계연보》	2003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업소실적보고	일반	보고	분기	보건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등생산실적보고	일반	보고	연간	보건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5
정보통신부	우편총조사	일반	표본조사	3년	정보통신	<우편총조사결과보고서>	2004
정보통신부	정보화실태조사	지정	표본조사	반기	정보통신	<2005상반기정보화실태조사>	
정보통신부	정보화통계조사	지정	표본조사	연간	정보통신	《정보화통계집》	2004
정보통신부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제공 통계현황’ *	-	-	-	-	정보통신부보도자료	2005.9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일반	전수조사	연간	기업경영	《벤처기업백서》	2005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에대한동향조사	일반	표본	월간	경기	<소상공인에대한동향조	2005

			조사			사보도자료>	.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지정	표본 조사	연간	기업 경영	<중소기업실태보고서>	2004 .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일반	표본 조사	연간	고용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보고서>	2004 .12
통계청	가계조사	지정	표본 조사	월간	가계 소비	《가계조사연보》· 통계청KOSIS	2004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지정	표본 조사	5년	가계 소비	<2000년가구소비실태조 사결과>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일반	가공	월간	경기	《경기종합지수》	2005 .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정	조사	월간	고용	《경제활동인구연보》	2004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일반	가공	분기	사회	《국제인구이동통계》	2004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지정	표본 조사	월간	가계 소비	《농가경제통계》	2005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지정	표본 조사	연간	농림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 서》·통계청STAT	2004
통계청	농업총조사	지정	전수 조사	10년	농림	《농업총조사》· 통계청KOSIS	
통계청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	지정	전수 조사	5년	도소 매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 조사보고서》· 통계청KOSIS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일반	가공	연간	보건	《사망원인통계(2004 년)》	2005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지정	표본 조사	연간	사회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산업총조사	지정	전수 조사	5년	광공 업	《산업총조사보고서》	2004
통계청	생명표	일반	가공	연간	인구	《생명표》	2004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지정	표본 조사	5년	복지	《생활시간조사보고서》	2005
통계청	서비스업동태조사	지정	표본 조사	연간	서비 스	<서비스업활동동향보 도자료>	2005 .9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지정	표본 조사	월간	물가	《물가연보》· 통계청STAT	2004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일반	표본 조사	월간	경기	<소비자전망조사보 도자료>·통계청STAT	2005 .8
통계청	시도별추계인구	일반	가공	일반 5년	인구	《시도별추계인구》	2002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	지정	표본 조사	연간	수산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 서》	2004
통계청	어업총조사	지정	전수	10년	수산	《어업총조사보고서》	2002

			조사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지정	전수조사	월간	인구	《인구동태통계연보》	2004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지정	보고	월간	인구	《인구이동통계연보》	2005
통계청	인구총조사	지정	전수조사	5년	인구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통계청	임업총조사	지정	전수조사	5년	농림	《임업총조사》	2000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일반	가공	일반 5년	농림	《장래가구추계》· 통계청KOSIS	
통계청	주택총조사	지정	전수조사	5년	주택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지정	가공	연간	지역 계정	《지역내총생산및지출》· 통계청KOSIS	
통계청	추계인구	일반	가공	5년	인구	《장래인구추계》	2001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일반	가공	연간	사회	《한국의사회지표》	2004
특허청	산업재산권통계	일반	보고	월간	기타	《산업재산권통계월보》	2005 .9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통계	일반	보고	연간	환경	《해양경찰백서》	2004
해양수산부	내항여객선수송실적	일반	보고	월간	교통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
해양수산부	입항선박톤급별통계	일반	보고	연간	교통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
해양수산부	천해양식어업권통계	일반	보고	연간	수산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
해양수산부	항만시설및능력현황	일반	보고	연간	교통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
해양수산부	해난사고현황	일반	보고	연간	교통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
해양수산부	해수수질실태보고	일반	보고	분기	환경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
해양수산부	화물수송실적	일반	보고	월간	교통	《해양수산통계연보》	2005
행정자치부	지방세표작성보고	일반	보고	연간	재정	《행정자치통계연보》	2005
환경부	대기오염도자동측정	일반	보고	월간	환경	《환경통계연감》	2005
환경부	배출시설업무처리현황	일반	보고	분기	환경	《환경통계연감》	2005
환경부	상수도통계	일반	보고	연간	환경	《환경통계연감》	2005
환경부	수질오염실태보고	일반	보고	월간	환경	《환경통계연감》	2005

환경부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지정	표본 조사	5년	환경	《환경통계연감》	2005
환경부	하수도통계	일반	보고	연간	환경	《환경통계연감》	2005
환경부	화학물질의유통량조사	일반	전수 조사	4년	환경	《화학물질유통실태조사 보고서》 《환경통계연 감》	2005
환경부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	일반	전수 조사	연간	환경	《환경통계연감》	2005
한국산업 안전공단	산업재해원인조사	지정	표본 조사	연간	사회	《산업재해원인조사》· 산업재해원인통계DB	2004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장애인고용동향	일반	보고	분기	고용	<2005년2/4분기장애인 고용동향>	2005
한국산업 인력공단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일반	조사	연간	고용	《산업·직업별고용구조 조사결과보고서》	2004
한국산업 인력공단	고용보험통계	일반	보고	월	고용	《고용보험통계월보》	2005 .10
한국산업 인력공단	구인구직및취업동향	일반	보고	월	고용	《구인구직및취업동향》	2005 .10
한국산업 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	일반	보고	연간	교육	《국가기술자격검정자격 통계연보》	2004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일반	보고	연간	보건	《건강보험통계연보》	2003
국민건강 보험공단	제왕절개실태분석	일반	보고	연간	보건	<제왕절개현황>관련 자 료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립공원기본통계	일반	보고	연간	문화	《국립공원기본통계》	2005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 사	지정	표본 조사	3년	보건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실태조사보고》	2003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조사	일반	표본 조사	연간	복지	《저소득층자활사업실태 보고》	2004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일반	표본 조사	5년	복지	《2004년최저생계비계 측조사연구》	2004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연구 조사	일반	표본 조사	5년	복지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 지연구조사》	2004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국가유공자등생활실태및복지 수요조사	일반	표본 조사	5년	복지	국가유공자및제대군인의 생활실태와복지욕구조사	2005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전국보육교육이용및육구실태 조사	일반	표본 조사	5년	교육	《전국보육교육이용및육 구실태조사》	2004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국민인체측정조사	일반	조사	5년	보건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 서>	2002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일반	보육	연간	교육	《교육통계연보》	2005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의교육인적자원지표	일반	가공	연간	교육	《한국교육인적자원지 표》	2004
한국교육 개발원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 조사	일반	조사	연간	교육	《취업통계자료집》	2005
한국노동 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일반	조사	연간	고용	《한국가구와개인의경제 활동》	2005
한국여성 개발원	공적연금제도연금종류별수급 률및수급자현황* (1990,1992,1994-2003)	-	-	-	-	사학연금통계등 사학연 금관리공단 《여성통계연 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교육전문직의여성비율* (1983,1989,1993,1999,2000,2 02-2004)	-	-	-	-	「내부자료」 (1999-2000)교육인적자 원부·《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모성보호휴가실시현황* (2002-2004)	-	-	-	-	《고용보험통계연보》 중 양고용정보원·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모자보호시설의보호현황* (1987-2001,2003)	-	-	-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4), 《여성통계연 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산별및성별조합원수* (2002)(1),(2)	-	-	-	-	노동부노사정책실자료·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산업및사업체남녀대표자별사 업체분포 * (1997,1999,2001,2002)	-	-	-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 고서」, 통계청,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산업및성별국민연금가입자현 황* (1998,1990,1995,1998,2000,20 02-2003)	-	-	-	-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여 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산업별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 급여현황(2003)*	-	-	-	-	《고용보험통계연보》, 중앙고용정보원,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성및급여종류별국민연금수급	-	-	-	-	《국민연금통계연보》,	2004

개발원	자현황* (1989,1990,1995-2000,2002-2003)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 개발원	성별공적연금제도가입자현황* (1990,1995,2000,2002,2003)	-	-	-	-	사학연금통계 등, 사학연금관리공단,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성별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및당선자수* (1948-2004)	-	-	-	-	<국회의원선거총람><시· 도 의 회 의 원 선 거 총 램 > <시·군·구의회의원선거총 람>, 중앙선거 관리 위 원 회,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성별산업재해자수및재해율 (1985,1990-2002)*	-	-	-	-	<여성과취업>(99,2000)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성별약국요양급여실적* (1990,1995-1999,2003)	-	-	-	-	《건강보험심사통계연 보》(2004)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성별언론종사자현황* (1980,1985,1990,1995-1998,2 000-2004)	-	-	-	-	<한국신문방송연감>언 론재단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성별유권자수및투표율* (1963-2004)	-	-	-	-	<대통령선거총람><국회 의원선거총람>중앙선거 관리위원회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시도별제왕절개현황* (2002,2003)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여성생애동안의성폭력유형별 경험및신고율* (1988,1996)	-	-	-	-	‘성폭력실태및인원에 관 한연구’(1998년등),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여 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여성단체총괄표 (1985,1990,1994,1996,199 9,2001)*	-	-	-	-	‘여성단체현황2002’, 한 국여성개발원, 《여성통 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연령및성별신규HIVAIDS감염 자현황(2004)*	-	-	-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보 도자료(1996,1998,2004),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연령및성별치매노인현황 (1995)*	-	-	-	-	치매관리<Mapping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운영주체별보육시설수및이용 자수* (1990,1995,2000,2002-2003) ;	-	-	-	-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자료(2004),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운영주체별 특수보육시설수및 아동수(2003) *	-	-	-	-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자료(2004),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정부각부처위원회의여성위원 참여현황(2003)(1),(2),(3)*	-	-	-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종업원규모별산전후휴가현황 (2003)*	-	-	-	-	《고용보험통계연보》, 중앙고용정보원, 《여성 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주요만성질환유병률* (2001)	-	-	-	-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여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직업별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 급여현황(2002)*	-	-	-	-	《고용보험통계연보》, 중앙고용정보원, 《여성 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표준보수소득월액및성별국민 연금가입자현황*	-	-	-	-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여 성통계연보》	2004
한국여성 개발원	HIV/AIDS감염자발생현황 (1985-1989,1990-2004)*	-	-	-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보 도자료(2004), 《여성통 계연보》	2004
대법원	사법통계*	-	-	-	-	《사법연감》	2005
헌법재판소	삼판사건통계표*	-	-	-	-	《헌법재판소 공보 제 108호》	2005 .10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지정	조사	월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05 .1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지정	조사	월	-	《농협조사월보》	2005 .9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지정	조사	연간	-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 사보고서》	
대한건설 협회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지정	표본 조사	반기	임금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 고서>2004년상반기적용	2004 상반 기 적용

* 표시는 연구진이 임의 선정한 통계임. 따라서 통계종류 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